

시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1846호

2020년 5월 20일 수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157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2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159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광역시 청사 등 시유 부지 내 집합금지 고시 ... 4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62호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7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267호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공고 .. 22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271호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2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273호 도시계획시설(연희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공고 .. 25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279호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 259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59호 인천광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260

회 람								
--------	--	--	--	--	--	--	--	--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157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2단계]) 사업 실시계획(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 5. 20.

인천광역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750(공촌동 259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 명칭: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사업(2단계)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변경없음)

- 면적: 158,184㎡
- 규모: 오존접촉지 Q = 335,000㎡/일

구 분	사업내용	비 고
오존접촉지동 증축 (지하2층/지상1층)	· 건축면적: 427.78㎡ · 건축연면적: 940.52㎡	금회 시행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도화동)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기정: (착수일) 2019. 6.10. ~ (준공예정일) 2020. 7. 9.
- 변경: (착수일) 2019. 6.10. ~ (준공예정일) 2021. 6.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편입토지조서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구분	
1	서구 공촌동	259	수	157,773	157,773	인천광역시	공유지	
2	서구 공촌동	299-2	구	411	411	인천광역시	공유지	
계				158,184	158,184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변경없음)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159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광역시 청사 등 시유 부지 내 집합금지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천광역시 청사 등 시유 부지 내 집합금지를 고시합니다.

2020. 5. 20.

인 천 광 역 시 장

1. 집합금지 장소 : 인천광역시 청사 등 시유 부지 내(본관청사 현관 앞 민원청사 앞 IDC
센터 앞, 시의회 현관 앞 후문 경비실 앞 인천애플 잔디마당 전체부지 등 포함)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및 1138-7번지, 1336-3 및 1336-5번지 일대(제5호 상세위치도 참조)

2. 고시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3. 적용기간 : 2020. 5. 20.(수)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4. 금지내용 : 금지장소 내 행사, 집회·시위, 기자회견 등 모든 집합행위 금지

5. 금지장소 상세위치(적색 경계선 내)



6. 벌칙조항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99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62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6-110호(2016.05.31.)로 결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0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산업시설용지 등 재배치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된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에 대하여 제영향평가(환경보전방안, 교통, 교육환경) 행정절차와 관계기관(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실시계획을 변경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변경없음)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가. 개발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적(㎡)		증감(㎡)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2,452,645	12,452,645	-	100.0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906,198	904,740	감) 1,458	7.3	7.3		
	공	동 주 택	802,264	800,495	감) 1,769	6.4	6.4		
	연	립 주 택	56,395	56,395	-	0.5	0.5	타운하우스	
	단	독 주 택	47,539	47,850	증) 311	0.4	0.4		
근린생활시설용지	계	167,281	160,321	감) 6,960	1.3	1.3			
상업 시설 용지	소	계	430,894	425,466	감) 5,428	3.4	3.4		
	상업시설용지		215,899	212,264	감) 3,635	1.7	1.7		
	주상복합용지		214,995	213,202	감) 1,793	1.7	1.7		
업무시설용지	계	70,553	68,098	감) 2,455	0.6	0.5			
산업 시설 용지	소	계	912,123	908,892	감) 3,231	7.3	7.3		
	연구용지		545,936	542,506	감) 3,430	4.4	4.4		
	교육연구용지		366,187	366,386	증) 199	2.9	2.9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9,048,969	9,075,643	증) 26,674	72.7	72.9		
	도	로	1,242,769	1,281,510	증) 38,741	9.8	10.1		
		도	로	1,223,673	1,259,354	증) 35,681	9.6	9.9	
		보행자도로	19,096	22,156	증) 3,060	0.2	0.2		
	공	원	7,001,124	6,985,322	감) 15,802	56.2	56.1		
		육	지 부	1,062,018	1,049,085	감) 12,933	8.5	8.4	
		수	로 부	3,035,327	3,032,458	감) 2,869	24.4	24.4	유수지(439,509㎡)등 중복결정
		습	지 구 역	2,903,779	2,903,779	-	23.3	23.3	
	광	장	1,616	1,616	-	0.1	0.1		
	공	공 녹 지	283,105	282,868	감) 237	2.3	2.3		
	공	공 공 지	153,647	153,915	증) 268	1.2	1.2		
	학	교	145,184	146,297	증) 1,113	1.2	1.2		
	중	교 시 설	8,998	8,335	감) 663	0.1	0.1		
	충	전 · 주 유 소	4,942	4,786	감) 156	0.1	0.1		
	주	차 장	66,694	70,534	증) 3,840	0.5	0.6		
자	동 차 정 류 장	24,572	23,810	감) 762	0.2	0.2			
공	공 청 사	56,160	55,624	감) 536	0.5	0.4			
문	화 시 설	9,275	10,753	증) 1,478	0.1	0.1			
공	급 처 리 시 설	31,322	30,907	감) 415	0.2	0.2			
트	램 역 사	15,292	15,001	감) 291	0.1	0.1			
유	지 관 리 용 지	4,269	4,365	증) 96	0.1	0.1			

※ 기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13호(2019. 7. 12.)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변경없음)

나. 면 적(변경없음)

4. 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

○ 2008년 ~ 2020년(기정)

○ 2008년 ~ 2030년(변경)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해당사항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 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의제): (변경)<붙임 1>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붙임 2>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따라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22)에서 열람 가능

나.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 단, 지형도면은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도서로 같음

<붙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의제)(변경)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1	첨단산업클러스터(C) 지구단위계획구역	송도국제도시 11 공구 일원	12,452,645	-	12,452,645	

2. 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합계		12,452,645	-	12,452,645	100.0	100.0	
주거지역	소계	2,858,206	증)517,793	3,375,999	23.0	27.2	
	제1종일반주거지역	143,839	감)591	143,248	1.2	1.2	
	제2종일반주거지역	263,270	감)129	263,141	2.1	2.1	
	제3종일반주거지역	1,133,537	증)119,170	1,252,707	9.1	10.1	
	준주거지역	1,317,560	증)399,343	1,716,903	10.6	13.8	
상업지역	소계	413,037	감)11,813	401,224	3.3	3.2	
	일반상업지역	413,037	감)11,813	401,224	3.3	3.2	
공업지역	소계	1,180,160	증)64,330	1,244,490	9.5	9.9	
	준공업지역	1,180,160	증)64,330	1,244,490	9.5	9.9	
녹지지역	소계	8,001,242	감)570,310	7,430,932	64.2	59.7	
	보전녹지지역	2,903,779	-	2,903,779	23.3	23.3	
	자연녹지지역	5,097,463	감)570,310	4,527,153	40.9	36.4	

■ 용도지역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43,839	143,248	○ 첨단클러스터(C)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및 위치 조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63,270	263,141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133,537	1,252,707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317,560	1,716,903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413,037	401,224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	1,180,160	1,244,490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903,779	2,903,779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5,097,463	4,527,153	

3.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 항만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첨C1	항만	기본시설	11공구 내	258,480 (258,300)	증)739	259,219 (258,300)	-	-

※ 광로2-첨C2 259,219㎡, 근린공원첨C1 1,060㎡ 중복결정, ()는 구역 내 면적

■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세부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첨C1	임항교통시설	11공구 내	258,480 (258,300)	증)739	259,219 (258,300)	-	-

■ 항만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첨C1	항만	면적증가: 증)739	○ 첨단클러스터(C)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항만시설 면적 조정

<붙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

- 기정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기타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128	52,972 (4,352)	1,320,915	39	11,715 (4,352)	223,610	54	25,819	681,971	35	15,398	376,483	38,851	
일반도로	소계	107	50,529 (4,352)	1,250,400	28	9,818 (4,352)	195,747	50	25,639	680,131	29	15,072	374,522	-
	광로	7	13,886	505,957	-	-	-	3	7,387	314,616	4	6,499	191,341	-
	대로	22	13,439	379,235	-	-	-	12	7,553	226,893	10	5,886	152,342	-
	중로	48	17,877	321,462	19	8,736	184,893	20	6,988	108,934	9	2,153	27,635	-
	소로	30	5,327 (4,352)	43,746	9	1,082 (4,352)	10,854	15	3,711	29,688	6	534	3,204	-
특수도로	소계	21	2,443	31,664	11	1,897	27,863	4	220	1,840	6	326	1,961	-
	중로	6	901	17,953	5	889	17,775	1	12	178	-	-	-	-
	소로	15	1,542	13,711	6	1,008	10,088	3	208	1,662	6	326	1,961	-
기타	-	-	38,851	-	-	-	-	-	-	-	-	-	-	

※ 기타는 가각 및 가감속차로, Bus Bay 등 면적임, ()는 도로 전체 연장임.

※ 일반도로 (1,560㎡), 특수도로 (1,182㎡) 중복결정

- 변경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기타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138	48,848 (3,952)	1,281,510	41	14,427 (3,952)	316,793	38	17,041	526,514	59	17,380	361,183	77,020	
일반도로	소계	105	46,241 (3,952)	1,182,334	30	12,893 (3,952)	301,436	36	16,910	525,466	39	16,438	355,432	-
	광로	6	11,821	411,028	-	-	-	3	7,389	318,062	3	4,432	92,966	-
	대로	25	16,036	474,649	2	3,430	120,050	8	4,507	138,867	15	8,099	215,732	-
	중로	50	14,564	263,184	16	7,517	161,895	19	3,645	57,585	15	3,402	43,704	-
	소로	24	3,820 (3,952)	33,473	12	1,946 (3,952)	19,491	6	1,369	10,952	6	505	3,030	-
특수도로	소계	33	2,607	22,156	11	1,534	15,357	2	131	1,048	20	942	5,751	-
	중로	-	-	-	-	-	-	-	-	-	-	-	-	-
	소로	33	2,607	22,156	11	1,534	15,357	2	131	1,048	20	942	5,751	-
기타	-	-	77,020	-	-	-	-	-	-	-	-	-	-	

※ 기타는 가각 및 가감속차로, Bus Bay 등 면적임, ()는 도로 전체 연장임.

※ 도로면적 1,281,510㎡ 중 일반도로 27,633㎡, 특수도로 4,102㎡는 중복결정

- 일반도로(27,633㎡)는 근린공원 2,517㎡, 공공공지 6,368㎡, 수변공원·유수지 18,748㎡ 중복결정

- 특수도로(4,102㎡)는 공공공지 565㎡, 수변공원·유수지 3,537㎡ 중복결정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광로	2	21	56	주간선	1,486	중로1-296	광로3-35	일반도로		2008.5.9	일부폭 포함
기정	광로	2	1	55	주간선	942	광로2-2	광로3-35	일반도로			유수지, 공공공지1,20 중복결정
기정	광로	2	2	50	주간선	4,959	북측구역계	남측구역계	일반도로			문화공원1 중복결정
기정	광로	3	35	49	주간선	2,803	광로2-21	소로1-1	일반도로		2008.5.9	일부폭 포함
기정	광로	3	1	44	주간선	941	광로2-2	광로3-35	일반도로			유수지, 공공공지1,2 중복결정
기정	광로	3	2	44	주간선	2,519	광로2-2	광로2-2	일반도로			
기정	광로	3	3	40	주간선	236	광로3-2	중로1-1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1	30	보조간선	1,385	광로2-2	광로3-2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2	30	보조간선	831	광로2-2	대로2-4	일반도로			유수지, 공공공지1,2 중복결정
기정	대로	2	3	30	집산도로	685	광로3-1	대로2-4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4	30	보조간선	937	광로2-2	광로2-21	일반도로			유수지, 공공공지1,2 중복결정
기정	대로	2	5	30	보조간선	397	광로2-2	대로2-1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6	30	보조간선	169	대로2-1	중로1-1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7	30	보조간선	636	광로3-1	대로2-9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8	33	집산도로	101	광로2-2	중로1-9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9	30	보조간선	942	광로2-2	광로3-35	일반도로			유수지, 공공공지1,15 중복결정
기정	대로	2	10	30	보조간선	399	광로2-2	광로3-2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11	30	보조간선	132	광로3-2	중로1-1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12	30	보조간선	939	광로2-2	광로3-35	일반도로			유수지, 공공공지1,20 중복결정
기정	대로	3	1	25.5	집산도로	707	광로3-1	대로2-4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2	25.5	집산도로	466	광로2-2	광로3-2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3	26.5	집산도로	420	광로3-35	대로3-4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4	25	보조간선	1,105	광로2-1	대로2-9	일반도로			문화공원1 중복결정
기정	대로	3	5	25.5	집산도로	454	광로2-2	광로3-2	일반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대로	3	6	25.5	집산도로	139	광로3-2	중로1-1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7	26.5	집산도로	422	광로3-35	대로3-8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8	26.5	집산도로	848	광로2-1	대로2-12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9	26.5	집산도로	849	광로2-1	대로2-12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10	25	집산도로	476	광로3-2	중로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	23	집산도로	3,391	중로2-18	중로2-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2	20	집산도로	226	대로2-1	중로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3	20	집산도로	474	광로2-2	대로2-4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4	20	집산도로	338	광로2-2	대로2-5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	20	집산도로	534	대로2-5	대로2-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	20	집산도로	173	대로2-1	중로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7	20	집산도로	686	광로3-1	대로2-4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8	20	집산도로	435	광로2-2	광로3-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9	20	집산도로	482	대로2-9	중로1-8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0	20	집산도로	27	광로3-2	공동주택 부지경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1	20	집산도로	130	광로3-2	중로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2	20	집산도로	353	대로3-3	중로2-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3	20	집산도로	542	광로2-1	대로3-3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4	20	집산도로	210	광로2-1	대로3-7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5	20	집산도로	62	광로3-2	공동주택 부지경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6	20	집산도로	217	광로3-2	중로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7	20	집산도로	27	대로2-12	공동주택 부지경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8	20	집산도로	78	대로2-12	중로1-19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9	20	집산도로	351	대로2-12	주차장15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	20	특수도로	143	광로2-21	중로1-7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중로	1	2	20	특수도로	361	광로3-35	대로3-8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중로	1	3	20	특수도로	107	대로3-8	공공공지1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중로	1	4	20	특수도로	107	대로3-9	공공공지20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중로	1	5	20	특수도로	171	광로2-2	대로3-9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604	중로1-1	중로3-1	일반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749	대로2-2	대로2-2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693	대로2-4	중로2-3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4	15	집산도로	129	중로1-7	중로2-1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5	15	집산도로	27	대로2-4	공동주택 부지경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6	16.5	집산도로	190	대로2-3	중로1-7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7	15	집산도로	152	광로3-1	대로3-1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8	16.5	집산도로	380	광로2-2	대로3-1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9	15	집산도로	424	대로2-7	중로1-9	일반도로			유수지, 공공공지1 중복결정
기정	중로	2	10	16.5	집산도로	138	광로3-2	중로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1	15	집산도로	564	중로1-12	중로1-12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2	17	집산도로	701	중로1-13	중로2-13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3	17	집산도로	133	중로1-13	중로2-12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4	17	집산도로	139	중로1-13	중로2-15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5	17	집산도로	553	대로3-3	중로1-13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6	15	집산도로	60	광로3-2	공동주택 부지경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7	15	집산도로	334	대로3-10	중로2-18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8	15	집산도로	871	광로2-2	중로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9	15	집산도로	27	대로2-12	공동주택 부지경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20	15	집산도로	120	대로2-12	공공공지20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	15	특수도로	12	광로2-21	중로2-4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중로	3	1	12	집산도로	324	중로1-1	대로2-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313	대로2-1	중로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	13.5	국지도로	172	대로2-7	중로2-9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4	13.5	국지도로	315	대로2-9	중로2-9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5	13.5	국지도로	79	대로2-7	중로3-4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6	13	집산도로	584	광로2-2	대로3-4	일반도로			유수지, 공공공지1,15 중복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3	7	13	집산도로	109	중로3-6	소로2-9	일반도로			유수지1, 공공공지1 중복결정
기정	중로	3	8	13	집산도로	118	대로3-4	소로1-4	일반도로			유수지1, 공공공지1 중복결정
기정	중로	3	9	13	집산도로	139	대로3-7	중로1-1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	10-40	국지도로	400 (4,352)	광로3-10	인천LNG 인수기지	일반도로		1999.07.26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19	중로1-8	수변공원3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184	대로2-9	중로1-9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4	10.5	국지도로	67	중로3-8	소로2-10	일반도로			유수지1 중복결정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31	대로3-4	공공공지1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38	대로3-4	공공공지1	일반도로			공공공지1 중복결정
기정	소로	1	7	10	국지도로	38	대로3-4	공공공지1	일반도로			공공공지1 중복결정
기정	소로	1	8	10	국지도로	132	광로2-1	문화시설 부지경계	일반도로			유수지1, 공공공지20 중복결정
기정	소로	1	9	10	국지도로	73	소로2-15	유수지1	일반도로			유수지1, 공공공지8 중복결정
기정	소로	1	1	10	특수도로	132	대로2-3	근린공원4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1	2	10	특수도로	282	대로2-3	대로3-1	보행자 전용도로			유수지1, 공공공지2, 중복결정
기정	소로	1	3	10	특수도로	252	광로2-2	대로3-1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1	4	10	특수도로	49	대로2-7	중로3-4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1	5	10	특수도로	233	대로3-9	대로3-8	보행자 전용도로			유수지1, 공공공지1,20 중복결정
기정	소로	1	6	10	특수도로	60	공공공지20	공공공지1	보행자 전용도로			유수지1 중복결정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91	중로1-3	일반상업 부지경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223	중로2-9	중로3-3	일반도로			유수지1, 공공공지4, 중복결정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76	중로2-9	소로2-4	일반도로			유수지1 중복결정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429	중로3-4	중로3-4	일반도로			유수지1, 공공공지1,11 중복결정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152	중로1-8	중로2-9	일반도로			유수지1, 공공공지2,13 중복결정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245	중로2-9	소로1-3	일반도로			유수지1, 공공공지12,15 중복결정

※ ()는 도로 전체 연장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30	중로3-6	공공공지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147	중로3-7	단독주택 부지경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217	중로3-7	소로3-6	일반도로			유수지 중복결정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396	소로1-4	소로1-4	일반도로			유수지 중복결정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42	소로2-10	수변공원6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2	8	국지도로	509	중로3-8	소로3-마	일반도로			유수지 중복결정
기정	소로	2	13	8	국지도로	38	소로2-12	단독주택 부지경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4	8	국지도로	53	소로1-8	일반상업 부지경계	일반도로			유수지 중복결정
기정	소로	2	15	8	국지도로	1,063	중로3-6	소로1-8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	8	특수도로	83	공공공지4	공공공지2	보행자 전용도로			유수지 중복결정
기정	소로	2	2	8	특수도로	65	공공공지15	공공공지11	보행자 전용도로			유수지 중복결정
기정	소로	2	3	8	특수도로	60	공공공지20	공공공지1	보행자 전용도로			유수지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72	소로2-2	소로3-2	일반도로			유수지 공공공지5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151	중로2-9	중로2-9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16	소로2-2	소로3-2	일반도로			유수지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130	중로2-9	중로2-9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40	소로2-4	소로3-4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125	소로2-4	소로2-4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	6	특수도로	25	광로2-2	중로2-8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2	6	특수도로	130	중로1-12	중로2-11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3	6	특수도로	99	중로1-12	근린공원5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4	6	특수도로	47	중로1-13	중로2-12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5	6	특수도로	7	소로2-12	소로2-10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6	6	특수도로	18	소로2-9	소로2-11	보행자 전용도로			

- 폐지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폐지	광로	2	1	55	주간선	942	광로2-2	광로3-35	일반도로			유수지1, 공공공지1.20 중복결정
폐지	광로	2	2	50	주간선	4,959	북측구역계	남측구역계	일반도로			문화공원1 중복결정
폐지	광로	3	1	44	주간선	941	광로2-2	광로3-35	일반도로			유수지1, 공공공지1.2 중복결정
폐지	광로	3	2	44	주간선	2,519	광로2-2	광로2-2	일반도로			
폐지	광로	3	3	40	주간선	236	광로3-2	중로1-1	일반도로			
폐지	대로	2	1	30	보조간선	1,385	광로2-2	광로3-2	일반도로			
폐지	대로	2	2	30	보조간선	831	광로2-2	대로2-4	일반도로			유수지1, 공공공지1.2 중복결정
폐지	대로	2	3	30	집산도로	685	광로3-1	대로2-4	일반도로			
폐지	대로	2	4	30	보조간선	937	광로2-2	광로2-21	일반도로			유수지1, 공공공지1.2 중복결정
폐지	대로	2	5	30	보조간선	397	광로2-2	대로2-1	일반도로			
폐지	대로	2	6	30	보조간선	169	대로2-1	중로1-1	일반도로			
폐지	대로	2	7	30	보조간선	636	광로3-1	대로2-9	일반도로			
폐지	대로	2	8	33	집산도로	101	광로2-2	중로1-9	일반도로			
폐지	대로	2	9	30	보조간선	942	광로2-2	광로3-35	일반도로			유수지1, 공공공지1.15 중복결정
폐지	대로	2	10	30	보조간선	399	광로2-2	광로3-2	일반도로			
폐지	대로	2	11	30	보조간선	132	광로3-2	중로1-1	일반도로			
폐지	대로	2	12	30	보조간선	939	광로2-2	광로3-35	일반도로			유수지1, 공공공지1.20 중복결정
폐지	대로	3	1	25.5	집산도로	707	광로3-1	대로2-4	일반도로			
폐지	대로	3	2	25.5	집산도로	466	광로2-2	광로3-2	일반도로			
폐지	대로	3	3	26.5	집산도로	420	광로3-35	대로3-4	일반도로			
폐지	대로	3	4	25	보조간선	1,105	광로2-1	대로2-9	일반도로			문화공원1 중복결정
폐지	대로	3	5	25.5	집산도로	454	광로2-2	광로3-2	일반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폐지	대로	3	6	25.5	집산도로	139	광로3-2	중로1-1	일반도로			
폐지	대로	3	7	26.5	집산도로	422	광로3-35	대로3-8	일반도로			
폐지	대로	3	8	26.5	집산도로	848	광로2-1	대로2-12	일반도로			
폐지	대로	3	9	26.5	집산도로	849	광로2-1	대로2-12	일반도로			
폐지	대로	3	10	25	집산도로	476	광로3-2	중로1-1	일반도로			
폐지	중로	1	1	23	집산도로	3,391	중로2-18	중로2-1	일반도로			
폐지	중로	1	2	20	집산도로	226	대로2-1	중로1-1	일반도로			
폐지	중로	1	3	20	집산도로	474	광로2-2	대로2-4	일반도로			
폐지	중로	1	4	20	집산도로	338	광로2-2	대로2-5	일반도로			
폐지	중로	1	5	20	집산도로	534	대로2-5	대로2-1	일반도로			
폐지	중로	1	6	20	집산도로	173	대로2-1	중로1-1	일반도로			
폐지	중로	1	7	20	집산도로	686	광로3-1	대로2-4	일반도로			
폐지	중로	1	8	20	집산도로	435	광로2-2	광로3-1	일반도로			
폐지	중로	1	9	20	집산도로	482	대로2-9	중로1-8	일반도로			
폐지	중로	1	10	20	집산도로	27	광로3-2	공동주택 부지경계	일반도로			
폐지	중로	1	11	20	집산도로	130	광로3-2	중로1-1	일반도로			
폐지	중로	1	12	20	집산도로	353	대로3-3	중로2-11	일반도로			
폐지	중로	1	13	20	집산도로	542	광로2-1	대로3-3	일반도로			
폐지	중로	1	14	20	집산도로	210	광로2-1	대로3-7	일반도로			
폐지	중로	1	15	20	집산도로	62	광로3-2	공동주택 부지경계	일반도로			
폐지	중로	1	16	20	집산도로	217	광로3-2	중로1-1	일반도로			
폐지	중로	1	17	20	집산도로	27	대로2-12	공동주택 부지경계	일반도로			
폐지	중로	1	18	20	집산도로	78	대로2-12	중로1-19	일반도로			
폐지	중로	1	19	20	집산도로	351	대로2-12	주차장15	일반도로			
폐지	중로	1	1	20	특수도로	143	광로2-21	중로1-7	보행자 전용도로			
폐지	중로	1	2	20	특수도로	361	광로3-35	대로3-8	보행자 전용도로			
폐지	중로	1	3	20	특수도로	107	대로3-8	공공공지1	보행자 전용도로			
폐지	중로	1	4	20	특수도로	107	대로3-9	공공공지20	보행자 전용도로			
폐지	중로	1	5	20	특수도로	171	광로2-2	대로3-9	보행자 전용도로			
폐지	중로	2	1	15	집산도로	604	중로1-1	중로3-1	일반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폐지	중로	2	2	15	집산도로	749	대로2-2	대로2-2	일반도로			
폐지	중로	2	3	15	집산도로	693	대로2-4	중로2-3	일반도로			
폐지	중로	2	4	15	집산도로	129	중로1-7	중로2-1	일반도로			
폐지	중로	2	5	15	집산도로	27	대로2-4	공동주택 부지경계	일반도로			
폐지	중로	2	6	16.5	집산도로	190	대로2-3	중로1-7	일반도로			
폐지	중로	2	7	15	집산도로	152	광로3-1	대로3-1	일반도로			
폐지	중로	2	8	16.5	집산도로	380	광로2-2	대로3-1	일반도로			
폐지	중로	2	9	15	집산도로	424	대로2-7	중로1-9	일반도로			유수지1, 공공공지1 중복결정
폐지	중로	2	10	16.5	집산도로	138	광로3-2	중로1-1	일반도로			
폐지	중로	2	11	15	집산도로	564	중로1-12	중로1-12	일반도로			
폐지	중로	2	12	17	집산도로	701	중로1-13	중로2-13	일반도로			
폐지	중로	2	13	17	집산도로	133	중로1-13	중로2-12	일반도로			
폐지	중로	2	14	17	집산도로	139	중로1-13	중로2-15	일반도로			
폐지	중로	2	15	17	집산도로	553	대로3-3	중로1-13	일반도로			
폐지	중로	2	16	15	집산도로	60	광로3-2	공동주택 부지경계	일반도로			
폐지	중로	2	17	15	집산도로	334	대로3-10	중로2-18	일반도로			
폐지	중로	2	18	15	집산도로	871	광로2-2	중로1-1	일반도로			
폐지	중로	2	19	15	집산도로	27	대로2-12	공동주택 부지경계	일반도로			
폐지	중로	2	20	15	집산도로	120	대로2-12	공공공지20	일반도로			
폐지	중로	2	1	15	특수도로	12	광로2-21	중로2-4	보행자 전용도로			
폐지	중로	3	1	12	집산도로	324	중로1-1	대로2-1	일반도로			
폐지	중로	3	2	12	집산도로	313	대로2-1	중로1-1	일반도로			
폐지	중로	3	3	13.5	국지도로	172	대로2-7	중로2-9	일반도로			
폐지	중로	3	4	13.5	국지도로	315	대로2-9	중로2-9	일반도로			
폐지	중로	3	5	13.5	국지도로	79	대로2-7	중로3-4	일반도로			
폐지	중로	3	6	13	집산도로	584	광로2-2	대로3-4	일반도로			유수지1, 공공공지1,15 중복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폐지	중로	3	7	13	집산도로	109	중로3-6	소로2-9	일반도로			유수지1, 공공공지1 중복결정
폐지	중로	3	8	13	집산도로	118	대로3-4	소로1-4	일반도로			유수지1, 공공공지1 중복결정
폐지	중로	3	9	13	집산도로	139	대로3-7	중로1-14	일반도로			
폐지	소로	1	2	10	국지도로	119	중로1-8	수변공원3	일반도로			
폐지	소로	1	3	10	국지도로	184	대로2-9	중로1-9	일반도로			
폐지	소로	1	4	10.5	국지도로	67	중로3-8	소로2-10	일반도로			유수지1 중복결정
폐지	소로	1	5	10	국지도로	31	대로3-4	공공공지1	일반도로			
폐지	소로	1	6	10	국지도로	38	대로3-4	공공공지1	일반도로			공공공지1 중복결정
폐지	소로	1	7	10	국지도로	38	대로3-4	공공공지1	일반도로			공공공지1 중복결정
폐지	소로	1	8	10	국지도로	132	광로2-1	문화시설 부지경계	일반도로			유수지1, 공공공지20 중복결정
폐지	소로	1	9	10	국지도로	73	소로2-15	유수지1	일반도로			유수지1, 공공공지18 중복결정
폐지	소로	1	1	10	특수도로	132	대로2-3	근린공원4	보행자 전용도로			
폐지	소로	1	2	10	특수도로	282	대로2-3	대로3-1	보행자 전용도로			유수지1, 공공공지1,2 중복결정
폐지	소로	1	3	10	특수도로	252	광로2-2	대로3-1	보행자 전용도로			
폐지	소로	1	4	10	특수도로	49	대로2-7	중로3-4	보행자 전용도로			
폐지	소로	1	5	10	특수도로	233	대로3-9	대로3-8	보행자 전용도로			유수지1, 공공공지1,20 중복결정
폐지	소로	1	6	10	특수도로	60	공공공지20	공공공지1	보행자 전용도로			유수지1 중복결정
폐지	소로	2	1	8	국지도로	91	중로1-3	일반상업 부지경계	일반도로			
폐지	소로	2	2	8	국지도로	223	중로2-9	중로3-3	일반도로			유수지1, 공공공지4 중복결정
폐지	소로	2	3	8	국지도로	76	중로2-9	소로2-4	일반도로			유수지1 중복결정
폐지	소로	2	4	8	국지도로	429	중로3-4	중로3-4	일반도로			유수지1, 공공공지1,11 중복결정
폐지	소로	2	5	8	국지도로	152	중로1-8	중로2-9	일반도로			유수지1, 공공공지2,13 중복결정
폐지	소로	2	6	8	국지도로	245	중로2-9	소로1-3	일반도로			유수지1, 공공공지12,15 중복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폐지	소로	2	7	8	국지도로	30	중로3-6	공공공지1	일반도로			
폐지	소로	2	8	8	국지도로	147	중로3-7	단독주택 부지경계	일반도로			
폐지	소로	2	9	8	국지도로	217	중로3-7	소로3-6	일반도로			유수지 중복결정
폐지	소로	2	10	8	국지도로	396	소로1-4	소로1-4	일반도로			유수지 중복결정
폐지	소로	2	11	8	국지도로	42	소로2-10	수변공원6	일반도로			
폐지	소로	2	12	8	국지도로	509	중로3-8	소로3-마	일반도로			유수지 중복결정
폐지	소로	2	13	8	국지도로	38	소로2-12	단독주택 부지경계	일반도로			
폐지	소로	2	14	8	국지도로	53	소로1-8	일반상업 부지경계	일반도로			유수지 중복결정
폐지	소로	2	15	8	국지도로	1,063	중로3-6	소로1-8	일반도로			
폐지	소로	2	1	8	특수도로	83	공공공지4	공공공지2	보행자 전용도로			유수지 중복결정
폐지	소로	2	2	8	특수도로	65	공공공지15	공공공지11	보행자 전용도로			유수지 중복결정
폐지	소로	2	3	8	특수도로	60	공공공지20	공공공지1	보행자 전용도로			유수지 중복결정
폐지	소로	3	1	6	국지도로	72	소로2-2	소로3-2	일반도로			유수지 공공공지5 중복결정
폐지	소로	3	2	6	국지도로	151	중로2-9	중로2-9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3	6	국지도로	16	소로2-2	소로3-2	일반도로			유수지 중복결정
폐지	소로	3	4	6	국지도로	130	중로2-9	중로2-9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5	6	국지도로	40	소로2-4	소로3-4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6	6	국지도로	125	소로2-4	소로2-4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1	6	특수도로	25	광로2-2	중로2-8	보행자 전용도로			
폐지	소로	3	2	6	특수도로	130	중로1-12	중로2-11	보행자 전용도로			
폐지	소로	3	3	6	특수도로	99	중로1-12	근린공원5	보행자 전용도로			
폐지	소로	3	4	6	특수도로	47	중로1-13	중로2-12	보행자 전용도로			
폐지	소로	3	5	6	특수도로	7	소로2-12	소로2-10	보행자 전용도로			
폐지	소로	3	6	6	특수도로	18	소로2-9	소로2-11	보행자 전용도로			

- 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변경	광로	2	21	56	주간선	1,488	북측구역계	광로3-35	일반도로		2008.5.9	
신설	광로	2	첩C1	55	주간선	942	광로2-첩C2	광로3-35	일반도로			유수지첩C1 수변공원첩C1 공공공지첩C1,2 중복결정
신설	광로	2	첩C2	50	주간선	4,959	북측구역계	남측구역계	일반도로			근린공원첩C1 항만첩C1 중복결정
변경	광로	3	35	49	주간선	2,823	광로2-21	남측구역계	일반도로		2008.5.9	근린공원첩C1 중복결정
신설	광로	3	첩C1	44	주간선	941	광로2-첩C2	광로3-35	일반도로			유수지첩C1 수변공원첩C1 공공공지첩C1,2 중복결정
신설	광로	3	첩C2	40	주간선	668	광로2-첩C2	중로1-첩C2	일반도로			
신설	대로	1	첩C1	35	보조간선	1,376	광로2-첩C2	광로3-첩C2	일반도로			
신설	대로	1	첩C2	35	보조간선	2,054	광로3-첩C2	광로2-첩C2	일반도로			근린공원첩C1 중복결정
신설	대로	2	첩C1	30	보조간선	937	광로2-첩C2	광로2-21	일반도로			유수지첩C1 수변공원첩C1 공공공지첩C1,2 중복결정
신설	대로	2	첩C2	30	보조간선	400	광로2-첩C2	대로1-첩C1	일반도로			
신설	대로	2	첩C3	30	보조간선	155	대로1-첩C1	중로1-첩C2	일반도로			
신설	대로	2	첩C4	30	보조간선	634	광로3-첩C1	대로2-첩C6	일반도로			
신설	대로	2	첩C5	33	집산도로	98	광로2-첩C2	중로1-첩C6	일반도로			
신설	대로	2	첩C6	32.5	보조간선	942	광로2-첩C2	광로3-35	일반도로			유수지첩C1 수변공원첩C1 공공공지첩C1,2 중복결정
신설	대로	2	첩C7	32.5	보조간선	403	광로2-첩C2	대로1-첩C2	일반도로			
신설	대로	2	첩C8	30	보조간선	938	광로2-첩C2	광로3-35	일반도로			유수지첩C1 수변공원첩C1 공공공지첩C1,2 중복결정
신설	대로	3	첩C1	28	보조간선	802	광로2-첩C2	대로2-첩C1	일반도로			
신설	대로	3	첩C2	28	집산도로	683	광로3-첩C1	대로2-첩C1	일반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신설	대로	3	첨C3	28	보조간선	697	광로3-첨C1	대로2-첨C1	일반도로			
신설	대로	3	첨C4	25	집산도로	362	광로2-첨C2	대로3-첨C3	일반도로			
신설	대로	3	첨C5	25	집산도로	401	광로2-첨C2	대로1-첨C1	일반도로			
신설	대로	3	첨C6	25	집산도로	205	대로1-첨C1	중로1-첨C2	일반도로			
신설	대로	3	첨C7	25.5	집산도로	403	광로2-첨C2	대로1-첨C2	일반도로			
신설	대로	3	첨C8	28	집산도로	417	광로3-35	대로3-첨C9	일반도로			
신설	대로	3	첨C9	25	보조간선	1,102	광로2-첨C1	대로2-첨C6	일반도로			근린공원첨C1 중복결정
신설	대로	3	첨C10	25.5	집산도로	405	광로2-첨C2	대로1-첨C2	일반도로			
신설	대로	3	첨C11	25.5	집산도로	182	대로1-첨C2	중로1-첨C2	일반도로			
신설	대로	3	첨C12	28	집산도로	827	광로2-첨C1	대로2-첨C8	일반도로			
신설	대로	3	첨C13	28	집산도로	828	광로2-첨C1	대로2-첨C8	일반도로			
신설	대로	3	첨C14	25	집산도로	540	대로1-첨C2	중로2-첨C10	일반도로			
신설	대로	3	첨C15	25	집산도로	245	대로3-첨C14	도시생태공원 첨C1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첨C1	20	집산도로	817	대로3-첨C1	대로3-첨C1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첨C2	23	집산도로	3,362	대로3-첨C15	중로2-첨C12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첨C3	20	집산도로	230	대로1-첨C1	중로1-첨C2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첨C4	20	집산도로	58	대로1-첨C1	공동주택 부지경계	일반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신설	중로	1	첨C5	20	집산도로	433	광로2-첨C2	광로3-첨C1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첨C6	20	집산도로	480	대로2-첨C6	중로1-첨C5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첨C7	21	집산도로	134	대로1-첨C2	중로1-첨C2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첨C8	21	집산도로	349	대로3-첨C8	근린공원첨C1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첨C9	21.5	집산도로	537	광로2-첨C1	대로3-첨C8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첨C10	20	집산도로	354	대로2-첨C8	주차장첨C20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첨C11	20	집산도로	172	대로3-첨C9	중로3-첨C11	일반도로			유수지첨C1 수변공원첨C1 공공공지첨C1 중복결정
신설	중로	1	첨C12	20	집산도로	132	광로2-첨C1	문화3용지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첨C13	20	집산도로	78	대로2-첨C8	중로1-첨C10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첨C14	20	집산도로	64	대로1-첨C2	공동주택 부지경계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첨C15	21	집산도로	180	대로1-첨C2	중로1-첨C2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첨C16	20	집산도로	137	대로1-첨C2	중로1-첨C2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첨C1	15	집산도로	326	중로2-첨C12	중로3-첨C1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첨C2	15	집산도로	16.5	중로3-첨C1	중로3-첨C2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첨C3	18	집산도로	17	대로2-첨C1	공동주택 부지경계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첨C4	19.5	집산도로	418	대로2-첨C1	대로3-첨C4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첨C5	19	국지도로	78	대로3-첨C2	학교첨C10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첨C6	15	집산도로	418	대로2-첨C4	중로1-첨C6	일반도로			유수지첨C1 수변공원첨C1 공공공지첨C1,2,6,7 중복결정
신설	중로	2	첨C7	16.5	집산도로	207	대로1-첨C2	중로1-첨C2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첨C8	15	집산도로	290	중로1-첨C8	중로1-첨C8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첨C9	18	집산도로	65	대로1-첨C2	공동주택 부지경계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첨C10	15	집산도로	871	광로2-첨C2	대로3-첨C15	일반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신설	중로	2	첨C11	15	집산도로	120	대로2-첨C8	공공공지첨C2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첨C12	15	집산도로	266	중로1-첨C2	전기 공급설비첨C1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첨C13	18	집산도로	19	대로2-첨C2	공동주택 부지경계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첨C14	18	집산도로	19	대로2-첨C2	공동주택 부지경계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첨C15	15	집산도로	233	대로3-첨C5	광로3-첨C2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첨C16	15	집산도로	236	광로3-첨C2	대로3-첨C5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첨C17	15	집산도로	27	광로3-첨C2	공동주택 부지경계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첨C18	18	집산도로	9	대로3-첨C7	공동주택 부지경계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첨C19	18	집산도로	9	대로3-첨C7	공동주택 부지경계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첨C1	12.25	집산도로	332	중로1-첨C2	대로1-첨C1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첨C2	12.25	집산도로	319	대로1-첨C1	중로1-첨C2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첨C3	13	국지도로	70	중로2-첨C4	학교첨C1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첨C4	13	국지도로	94	대로2-첨C2	학교첨C2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첨C5	13.5	국지도로	174	대로2-첨C4	중로2-첨C6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첨C6	13.5	국지도로	316	대로2-첨C6	중로2-첨C6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첨C7	13.5	국지도로	78	대로2-첨C4	중로3-첨C6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첨C8	13	국지도로	84	대로3-첨C7	학교첨C3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첨C9	13	집산도로	587	광로2-첨C2	대로3-첨C9	일반도로			유수지첨C1 수변공원첨C1 공공공지첨C1,2 중복결정
신설	중로	3	첨C10	13	집산도로	255	중로3-첨C9	중로3-첨C11	일반도로			유수지첨C1 수변공원첨C1 공공공지첨C1,21 중복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신설	중로	3	첨C11	13	집산도로	412	중로3-첨C11	중로3-첨C11	일반도로			유수지첨C1 수변공원첨C1 공공공지첨C21,22 중복결정
신설	중로	3	첨C12	14	국지도로	81	중로3-첨C14	일반상업 부지경계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첨C13	14	국지도로	64	중로1-첨C12	일반상업 부지경계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첨C14	12	집산도로	463	중로1-첨C12	중로3-첨C12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첨C15	13	국지도로	73	대로3-첨C10	학교첨C4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1	10-30	국지도로	0 (3,952)	인천NG 인수기지	남측 수로부경계	일반도로		1999.07.26	
신설	소로	1	첨C2	10	국지도로	119	중로1-첨C5	소공원첨C2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첨C3	10	국지도로	183	대로2-첨C6	중로1-첨C6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첨C4	11	국지도로	31	대로3-첨C9	공공공지첨C1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첨C5	10	국지도로	10	대로3-첨C7	학교첨C4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첨C6	10	국지도로	372	중로1-첨C2	중로2-첨C7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첨C7	10	국지도로	121	소로1-첨C6	소로1-첨C9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첨C8	10	국지도로	121	소로1-첨C6	소로1-첨C9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첨C9	10	국지도로	263	소로1-첨C6	소로1-첨C6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첨C10	10	국지도로	316	중로1-첨C16	중로2-첨C7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첨C11	10	국지도로	52	소로1-첨C10	소로1-첨C12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첨C12	10	국지도로	358	소로1-첨C10	소로1-첨C10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첨C1	10	특수도로	141	대로3-첨C2	광로2-21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1	첨C2	10	특수도로	195	수변공원첨C2	대로3-첨C2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1	첨C3	10	특수도로	151	대로3-첨C3	수변공원첨C2	보행자 전용도로			유수지첨C1 수변공원첨C1 공공공지첨C1,2 중복결정

※ ()는 도로 전체 연장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신설	소로	1	첩C4	10	특수도로	201	중로2-첩C4	대로3-첩C3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1	첩C5	10	특수도로	141	대로3-첩C2	광로2-21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1	첩C6	10	특수도로	340	대로3-첩C3	소공원첩C1	보행자 전용도로			유수지첩C1 수변공원첩C1 공공공지첩C1,2 중복결정
신설	소로	1	첩C7	10	특수도로	95	중로2-첩C8	광로3-35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1	첩C8	10	특수도로	99	근린공원첩C1	중로1-첩C8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1	첩C9	10	특수도로	85	수변공원첩C5	소로2-첩C6	보행자 전용도로			유수지첩C1 수변공원첩C1 공공공지첩C2 중복결정
신설	소로	1	첩C10	10	특수도로	28	소로2-첩C6	광로2-첩C2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1	첩C11	10	특수도로	60	공공공지첩C2	공공공지첩C1	보행자 전용도로			유수지첩C1 수변공원첩C1 중복결정
신설	소로	2	첩C1	8	국지도로	222	중로2-첩C6	중로3-첩C5	일반도로			유수지첩C1 수변공원첩C1 공공공지첩C1,7 중복결정
신설	소로	2	첩C2	8	국지도로	76	중로2-첩C6	소로2-첩C3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첩C3	8	국지도로	426	중로3-첩C6	중로3-첩C6	일반도로			유수지첩C1 수변공원첩C1 공공공지첩C1,6,7 중복결정
신설	소로	2	첩C4	8	국지도로	29	중로3-첩C9	공공공지첩C1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첩C5	8	국지도로	37	중로3-첩C11	문화2용지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첩C6	8	국지도로	579	중로3-첩C9	중로3-첩C12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첩C1	8	특수도로	68	공공공지첩C7	공공공지첩C2	보행자 전용도로			유수지첩C1 수변공원첩C1 중복결정
신설	소로	2	첩C2	8	특수도로	63	공공공지첩C2	공공공지첩C7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첩C1	6	국지도로	110	중로2-첩C6	소로2-첩C1	일반도로			유수지첩C1 수변공원첩C1 공공공지첩C6,7 중복결정
신설	소로	3	첩C2	6	국지도로	105	중로2-첩C6	소로3-첩C1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첩C3	6	국지도로	16	소로2-첩C1	소로3-첩C2	일반도로			유수지첩C1 수변공원첩C1 공공공지첩C6,7 중복결정
신설	소로	3	첩C4	6	국지도로	96	중로2-첩C6	소로3-첩C5	일반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신설	소로	3	첨C5	6	국지도로	65	중로2-첨C6	소로2-첨C3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첨C6	6	국지도로	113	소로2-첨C3	소로2-첨C3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첨C1	6	특수도로	20	소로1-첨C6	근린공원첨C9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첨C2	6	특수도로	74	소로1-첨C6	완충녹지첨C11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첨C3	6	특수도로	57	소로1-첨C6	소로(특수도로) 3-첨C6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첨C4	6	특수도로	20	소로1-첨C6	근린공원첨C9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첨C5	6	특수도로	58	소로1-첨C6	소로(특수도로) 3-첨C9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첨C6	6	특수도로	46	소로1-첨C6	소로1-첨C7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첨C7	6	특수도로	58	소로1-첨C7	소로(특수도로) 3-첨C6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첨C8	6	특수도로	57	소로1-첨C6	소로(특수도로) 3-첨C11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첨C9	6	특수도로	46	소로1-첨C8	소로1-첨C7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첨C10	6	특수도로	57	소로1-첨C9	소로(특수도로) 3-첨C9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첨C11	6	특수도로	46	소로1-첨C9	소로1-첨C8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첨C12	6	특수도로	48	소로1-첨C9	소로(특수도로) 3-첨C11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첨C13	6	특수도로	20	소로1-첨C10	근린공원첨C10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첨C14	6	특수도로	60	소로1-첨C12	소로(특수도로) 3-첨C15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첨C15	6	특수도로	52	소로1-첨C10	소로1-첨C12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첨C16	6	특수도로	56	소로1-첨C11	소로(특수도로) 3-첨C15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첨C17	6	특수도로	20	소로1-첨C10	근린공원첨C10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첨C18	6	특수도로	48	소로1-첨C11	소로(특수도로) 3-첨C19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첨C19	6	특수도로	52	소로1-첨C10	소로1-첨C12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첨C20	6	특수도로	48	소로1-첨C12	소로(특수도로) 3-첨C19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2-21	광로2-21	○ 변경, 연장: 1,488m	○ 첨단산업클러스터(C) 토지이용계획 변경(공간구조 및 위치조정)에 따른 가로망 신설
-	광로2-첨C1	○ 신설, 연장: 942m	
-	광로2-첨C2	○ 신설, 연장: 4,959m	
광로3-35	광로3-35	○ 변경, 연장: 2,823m	
-	광로3-첨C1	○ 신설, 연장: 941m	
-	광로3-첨C2	○ 신설, 연장: 668m	
-	대로1-첨C1	○ 신설, 연장: 1,376m	
-	대로1-첨C2	○ 신설, 연장: 2,054m	
-	대로2-첨C1	○ 신설, 연장: 937m	
-	대로2-첨C2	○ 신설, 연장: 400m	
-	대로2-첨C3	○ 신설, 연장: 155m	
-	대로2-첨C4	○ 신설, 연장: 634m	
-	대로2-첨C5	○ 신설, 연장: 98m	
-	대로2-첨C6	○ 신설, 연장: 942m	
-	대로2-첨C7	○ 신설, 연장: 403m	
-	대로2-첨C8	○ 신설, 연장: 938m	
-	대로3-첨C1	○ 신설, 연장: 802m	
-	대로3-첨C2	○ 신설, 연장: 683m	
-	대로3-첨C3	○ 신설, 연장: 697m	
-	대로3-첨C4	○ 신설, 연장: 362m	
-	대로3-첨C5	○ 신설, 연장: 401m	
-	대로3-첨C6	○ 신설, 연장: 205m	
-	대로3-첨C7	○ 신설, 연장: 403m	
-	대로3-첨C8	○ 신설, 연장: 417m	
-	대로3-첨C9	○ 신설, 연장: 1,102m	
-	대로3-첨C10	○ 신설, 연장: 405m	
-	대로3-첨C11	○ 신설, 연장: 182m	
-	대로3-첨C12	○ 신설, 연장: 827m	
-	대로3-첨C13	○ 신설, 연장: 828m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대로3-첨C14	○ 신설, 연장: 540m	○ 첨단산업클러스터(C) 토지이용계획 변경(공간구조 및 위치조정)에 따른 가로망 신설
-	대로3-첨C15	○ 신설, 연장: 245m	
-	중로1-첨C1	○ 신설, 연장: 817m	
-	중로1-첨C2	○ 신설, 연장: 3,362m	
-	중로1-첨C3	○ 신설, 연장: 230m	
-	중로1-첨C4	○ 신설, 연장: 58m	
-	중로1-첨C5	○ 신설, 연장: 433m	
-	중로1-첨C6	○ 신설, 연장: 480m	
-	중로1-첨C7	○ 신설, 연장: 134m	
-	중로1-첨C8	○ 신설, 연장: 349m	
-	중로1-첨C9	○ 신설, 연장: 537m	
-	중로1-첨C10	○ 신설, 연장: 354m	
-	중로1-첨C11	○ 신설, 연장: 172m	
-	중로1-첨C12	○ 신설, 연장: 132m	
-	중로1-첨C13	○ 신설, 연장: 78m	
-	중로1-첨C14	○ 신설, 연장: 64m	
-	중로1-첨C15	○ 신설, 연장: 180m	
-	중로1-첨C16	○ 신설, 연장: 137m	
-	중로2-첨C1	○ 신설, 연장: 326m	
-	중로2-첨C2	○ 신설, 연장: 16.5m	
-	중로2-첨C3	○ 신설, 연장: 17m	
-	중로2-첨C4	○ 신설, 연장: 418m	
-	중로2-첨C5	○ 신설, 연장: 78m	
-	중로2-첨C6	○ 신설, 연장: 418m	
-	중로2-첨C7	○ 신설, 연장: 207m	
-	중로2-첨C8	○ 신설, 연장: 290m	
-	중로2-첨C9	○ 신설, 연장: 65m	
-	중로2-첨C10	○ 신설, 연장: 871m	
-	중로2-첨C11	○ 신설, 연장: 120m	
-	중로2-첨C12	○ 신설, 연장: 266m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2-첨C13	○ 신설, 연장: 19m	○ 첨단산업클러스터(C) 토지이용계획 변경(공간구조 및 위치조정)에 따른 가로망 신설
-	중로2-첨C14	○ 신설, 연장: 19m	
-	중로2-첨C15	○ 신설, 연장: 233m	
-	중로2-첨C16	○ 신설, 연장: 236m	
-	중로2-첨C17	○ 신설, 연장: 27m	
-	중로2-첨C18	○ 신설, 연장: 9m	
-	중로2-첨C19	○ 신설, 연장: 9m	
-	중로3-첨C1	○ 신설, 연장: 332m	
-	중로3-첨C2	○ 신설, 연장: 319m	
-	중로3-첨C3	○ 신설, 연장: 70m	
-	중로3-첨C4	○ 신설, 연장: 94m	
-	중로3-첨C5	○ 신설, 연장: 174m	
-	중로3-첨C6	○ 신설, 연장: 316m	
-	중로3-첨C7	○ 신설, 연장: 78m	
-	중로3-첨C8	○ 신설, 연장: 84m	
-	중로3-첨C9	○ 신설, 연장: 587m	
-	중로3-첨C10	○ 신설, 연장: 255m	
-	중로3-첨C11	○ 신설, 연장: 412m	
-	중로3-첨C12	○ 신설, 연장: 81m	
-	중로3-첨C13	○ 신설, 연장: 64m	
-	중로3-첨C14	○ 신설, 연장: 463m	
-	중로3-첨C15	○ 신설, 연장: 73m	
소로1-1	소로1-1	○ 변경, 연장: 0m(3,952m)	
-	소로1-첨C2	○ 신설, 연장: 119m	
-	소로1-첨C3	○ 신설, 연장: 183m	
-	소로1-첨C4	○ 신설, 연장: 31m	
-	소로1-첨C5	○ 신설, 연장: 10m	
-	소로1-첨C6	○ 신설, 연장: 372m	
-	소로1-첨C7	○ 신설, 연장: 121m	

※ ()는 도로 전체 연장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1-첨C8	○ 신설, 연장: 121m	○ 첨단산업클러스터(C) 토지이용계획 변경(공간구조 및 위치조정)에 따른 가로망 신설
-	소로1-첨C9	○ 신설, 연장: 263m	
-	소로1-첨C10	○ 신설, 연장: 316m	
-	소로1-첨C11	○ 신설, 연장: 52m	
-	소로1-첨C12	○ 신설, 연장: 358m	
-	소로1-첨C1	○ 신설, 연장: 141m	
-	소로1-첨C2	○ 신설, 연장: 195m	
-	소로1-첨C3	○ 신설, 연장: 151m	
-	소로1-첨C4	○ 신설, 연장: 201m	
-	소로1-첨C5	○ 신설, 연장: 141m	
-	소로1-첨C6	○ 신설, 연장: 340m	
-	소로1-첨C7	○ 신설, 연장: 95m	
-	소로1-첨C8	○ 신설, 연장: 99m	
-	소로1-첨C9	○ 신설, 연장: 85m	
-	소로1-첨C10	○ 신설, 연장: 28m	
-	소로1-첨C11	○ 신설, 연장: 60m	
-	소로2-첨C1	○ 신설, 연장: 222m	
-	소로2-첨C2	○ 신설, 연장: 76m	
-	소로2-첨C3	○ 신설, 연장: 426m	
-	소로2-첨C4	○ 신설, 연장: 29m	
-	소로2-첨C5	○ 신설, 연장: 37m	
-	소로2-첨C6	○ 신설, 연장: 579m	
-	소로2-첨C1	○ 신설, 연장: 68m	
-	소로2-첨C2	○ 신설, 연장: 63m	
-	소로3-첨C1	○ 신설, 연장: 110m	
-	소로3-첨C2	○ 신설, 연장: 105m	
-	소로3-첨C3	○ 신설, 연장: 16m	
-	소로3-첨C4	○ 신설, 연장: 96m	
-	소로3-첨C5	○ 신설, 연장: 65m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3-첨C6	○ 신설, 연장: 113m	○ 첨단산업클러스터(C) 토지이용계획 변경(공간구조 및 위치조정)에 따른 가로망 신설
-	소로3-첨C1	○ 신설, 연장: 20m	
-	소로3-첨C2	○ 신설, 연장: 74m	
-	소로3-첨C3	○ 신설, 연장: 57m	
-	소로3-첨C4	○ 신설, 연장: 20m	
-	소로3-첨C5	○ 신설, 연장: 58m	
-	소로3-첨C6	○ 신설, 연장: 46m	
-	소로3-첨C7	○ 신설, 연장: 58m	
-	소로3-첨C8	○ 신설, 연장: 57m	
-	소로3-첨C9	○ 신설, 연장: 46m	
-	소로3-첨C10	○ 신설, 연장: 57m	
-	소로3-첨C11	○ 신설, 연장: 46m	
-	소로3-첨C12	○ 신설, 연장: 48m	
-	소로3-첨C13	○ 신설, 연장: 20m	
-	소로3-첨C14	○ 신설, 연장: 60m	
-	소로3-첨C15	○ 신설, 연장: 52m	
-	소로3-첨C16	○ 신설, 연장: 56m	
-	소로3-첨C17	○ 신설, 연장: 20m	
-	소로3-첨C18	○ 신설, 연장: 48m	
-	소로3-첨C19	○ 신설, 연장: 52m	
-	소로3-첨C20	○ 신설, 연장: 48m	

2)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63,977	증)6,557	70,534	-	-
페이지	1	주차장	11공구 내	1,100	감)1,100	-	-	-
페이지	2	주차장	11공구 내	4,594	감)4,594	-	-	-
페이지	3	주차장	11공구 내	6,115	감)6,115	-	-	-
페이지	4	주차장	11공구 내	2,185	감)2,185	-	-	-
페이지	5	주차장	11공구 내	5,937	감)5,937	-	-	-
페이지	6	주차장	11공구 내	6,521	감)6,521	-	-	-
페이지	7	주차장	11공구 내	4,106	감)4,106	-	-	-
페이지	8	주차장	11공구 내	4,566	감)4,566	-	-	-
페이지	9	주차장	11공구 내	1,700	감)1,700	-	-	-
페이지	10	주차장	11공구 내	3,561	감)3,561	-	-	-
페이지	11	주차장	11공구 내	3,983	감)3,983	-	-	-
페이지	12	주차장	11공구 내	6,146	감)6,146	-	-	-
페이지	13	주차장	11공구 내	2,394	감)2,394	-	-	-
페이지	14	주차장	11공구 내	2,875	감)2,875	-	-	-
페이지	15	주차장	11공구 내	5,838	감)5,838	-	-	-
페이지	16	주차장	11공구 내	2,356	감)2,356	-	-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첨C1	주차장	11공구 내	-	증)3,088	3,088	-	-
신설	첨C2	주차장	11공구 내	-	증)5,902	5,902	-	-
신설	첨C3	주차장	11공구 내	-	증)1,967	1,967	-	-
신설	첨C4	주차장	11공구 내	-	증)5,191	5,191	-	-
신설	첨C5	주차장	11공구 내	-	증)1,827	1,827	-	-
신설	첨C6	주차장	11공구 내	-	증)1,826	1,826	-	-
신설	첨C7	주차장	11공구 내	-	증)2,678	2,678	-	-
신설	첨C8	주차장	11공구 내	-	증)3,884	3,884	-	-
신설	첨C9	주차장	11공구 내	-	증)2,373	2,373	-	-
신설	첨C10	주차장	11공구 내	-	증)2,373	2,373	-	-
신설	첨C11	주차장	11공구 내	-	증)5,403	5,403	-	-
신설	첨C12	주차장	11공구 내	-	증)2,356	2,356	-	-
신설	첨C13	주차장	11공구 내	-	증)4,461	4,461	-	-
신설	첨C14	주차장	11공구 내	-	증)6,115	6,115	-	-
신설	첨C15	주차장	11공구 내	-	증)4,856	4,856	-	-
신설	첨C16	주차장	11공구 내	-	증)2,599	2,599	-	-
신설	첨C17	주차장	11공구 내	-	증)2,728	2,728	-	-
신설	첨C18	주차장	11공구 내	-	증)2,106	2,106	-	-
신설	첨C19	주차장	11공구 내	-	증)2,861	2,861	-	-
신설	첨C20	주차장	11공구 내	-	증)1,942	1,942	-	-
신설	첨C21	주차장	11공구 내	-	증)3,998	3,998	-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첨C1	주차장	○ 신설, 면적: 3,088㎡	○ 첨단산업클러스터(C) 토지이용계획 변경 (공간구조 및 위치조정)에 따른 주차장 신설
첨C2	주차장	○ 신설, 면적: 5,902㎡	
첨C3	주차장	○ 신설, 면적: 1,967㎡	
첨C4	주차장	○ 신설, 면적: 5,191㎡	
첨C5	주차장	○ 신설, 면적: 1,827㎡	
첨C6	주차장	○ 신설, 면적: 1,826㎡	
첨C7	주차장	○ 신설, 면적: 2,678㎡	
첨C8	주차장	○ 신설, 면적: 3,884㎡	
첨C9	주차장	○ 신설, 면적: 2,373㎡	
첨C10	주차장	○ 신설, 면적: 2,373㎡	
첨C11	주차장	○ 신설, 면적: 5,403㎡	
첨C12	주차장	○ 신설, 면적: 2,356㎡	
첨C13	주차장	○ 신설, 면적: 4,461㎡	
첨C14	주차장	○ 신설, 면적: 6,115㎡	
첨C15	주차장	○ 신설, 면적: 4,856㎡	
첨C16	주차장	○ 신설, 면적: 2,599㎡	
첨C17	주차장	○ 신설, 면적: 2,728㎡	
첨C18	주차장	○ 신설, 면적: 2,106㎡	
첨C19	주차장	○ 신설, 면적: 2,861㎡	
첨C20	주차장	○ 신설, 면적: 1,942㎡	
첨C21	주차장	○ 신설, 면적: 3,998㎡	

3) 자동차정류장(변경)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24,000	감)190	23,810	-	-
폐지	1	자동차 정류장	공영차고지	11공구 내	24,000	감)24,000	-	-	-
신설	첨C1	자동차 정류장	공영차고지	11공구 내	-	증)23,810	23,810	-	-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첨C1	자동차정류장	○ 신설, 면적: 23,810㎡	○ 첨단산업클러스터(C) 토지이용계획 변경 (공간구조 및 위치조정)에 따른 자동차정류장 신설

나. 공간시설(변경)

1) 광장(변경)

■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2,512	감)896	1,616	-	-
폐지	1	광장	경관광장	11공구 내	1,615	감)1,615	-	-	-
폐지	2	광장	경관광장	11공구 내	897	감)897	-	-	-
신설	첨C1	광장	경관광장	11공구 내	-	증)1,616	1,616	-	-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첨C1	경관광장	○ 신설, 면적: 1,616㎡	○ 첨단산업클러스터(C) 토지이용계획 변경 (공간구조 및 위치조정)에 따른 경관광장 신설

2) 공원(변경)

■ 공원 총괄표

구분	행정구역(㎡)				시가화구역(㎡)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18	1,016,762	29	1,488,594	-	-	-	-
소공원	1	3,619	4	13,382	-	-	-	-
어린이공원	1	2,134	3	11,823	-	-	-	-
근린공원	8	664,611	14	635,361	-	-	-	-
문화공원	1	237,116	-	-	-	-	-	-
도시 생태공원	-	-	1	215,700	-	-	-	-
수변공원	7	109,282	7	612,328	-	-	-	-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1,016,762	증)471,832	1,488,594	-	-
소 계		-	-	-	3,619	증)9,763	13,382	-	-
폐지	1	공원	소공원	11공구 내	3,619	감)3,619	-	-	-
신설	첨C1	공원	소공원	11공구 내	-	증)1,487	1,487	-	-
신설	첨C2	공원	소공원	11공구 내	-	증)2,840	2,840	-	-
신설	첨C3	공원	소공원	11공구 내	-	증)4,183	4,183	-	-
신설	첨C4	공원	소공원	11공구 내	-	증)4,872	4,872	-	-
소 계		-	-	-	2,134	증)9,689	11,823	-	-
폐지	1	공원	어린이공원	11공구 내	2,134	감)2,134	-	-	-
신설	첨C1	공원	어린이공원	11공구 내	-	증)4,096	4,096	-	-
신설	첨C2	공원	어린이공원	11공구 내	-	증)2,675	2,675	-	-
신설	첨C3	공원	어린이공원	11공구 내	-	증)5,052	5,052	-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 계		-	-	-	664,611	감)29,250	635,361	-	-
폐지	1	공원	근린공원	11공구 내	211,554	감)211,554	-	-	-
폐지	2	공원	근린공원	11공구 내	160,841	감)160,841	-	-	-
폐지	3	공원	근린공원	11공구 내	25,717	감)25,717	-	-	-
폐지	4	공원	근린공원	11공구 내	13,635	감)13,635	-	-	-
폐지	5	공원	근린공원	11공구 내	152,697	감)152,697	-	-	-
폐지	6	공원	근린공원	11공구 내	54,759	감)54,759	-	-	-
폐지	7	공원	근린공원	11공구 내	33,009	감)33,009	-	-	-
폐지	8	공원	근린공원	11공구 내	12,399	감)12,399	-	-	-
신설	첨C1	공원	근린공원	11공구 내	-	증)272,092	272,092	-	도로 2,517㎡, 수변공원 1,186㎡, 공공공지 328㎡, 유수지 1,186㎡ 중복결정
신설	첨C2	공원	근린공원	11공구 내	-	증)22,830	22,830	-	-
신설	첨C3	공원	근린공원	11공구 내	-	증)34,787	34,787	-	-
신설	첨C4	공원	근린공원	11공구 내	-	증)31,628	31,628	-	-
신설	첨C5	공원	근린공원	11공구 내	-	증)26,679	26,679	-	-
신설	첨C6	공원	근린공원	11공구 내	-	증)14,639	14,639	-	-
신설	첨C7	공원	근린공원	11공구 내	-	증)14,616	14,616	-	-
신설	첨C8	공원	근린공원	11공구 내	-	증)13,411	13,411	-	-
신설	첨C9	공원	근린공원	11공구 내	-	증)9,340	9,340	-	-
신설	첨C10	공원	근린공원	11공구 내	-	증)9,230	9,230	-	-
신설	첨C11	공원	근린공원	11공구 내	-	증)10,134	10,134	-	-
신설	첨C12	공원	근린공원	11공구 내	-	증)102,629	102,629	-	-
신설	첨C13	공원	근린공원	11공구 내	-	증)49,157	49,157	-	-
신설	첨C14	공원	근린공원	11공구 내	-	증)24,189	24,189	-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가정	변경	변경후		
소 계			-	-	109,282	증)503,046	612,328	-	-
폐지	1	공원	수변공원	11공구 내	79,587	감)79,587	-	-	-
폐지	2	공원	수변공원	11공구 내	4,279	감)4,279	-	-	-
폐지	3	공원	수변공원	11공구 내	2,862	감)2,862	-	-	-
폐지	4	공원	수변공원	11공구 내	2,428	감)2,428	-	-	-
폐지	5	공원	수변공원	11공구 내	2,809	감)2,809	-	-	-
폐지	6	공원	수변공원	11공구 내	3,152	감)3,152	-	-	-
폐지	7	공원	수변공원	11공구 내	14,165	감)14,165	-	-	-
신설	첨C1	공원	수변공원	11공구 내	-	증)554,983	554,983	-	도로 22,285㎡, 근린공원 1,186㎡, 공공공지 48㎡, 유수지 439,509㎡ 중복결정
신설	첨C2	공원	수변공원	11공구 내	-	증)21,879	21,879	-	-
신설	첨C3	공원	수변공원	11공구 내	-	증)1,178	1,178	-	-
신설	첨C4	공원	수변공원	11공구 내	-	증)1,276	1,276	-	-
신설	첨C5	공원	수변공원	11공구 내	-	증)8,674	8,674	-	-
신설	첨C6	공원	수변공원	11공구 내	-	증)12,158	12,158	-	-
신설	첨C7	공원	수변공원	11공구 내	-	증)12,180	12,180	-	-
소 계			-	-	-	증)215,700	215,700	-	-
신설	첨C1	공원	도시 생태공원	11공구 내	-	증)215,700	215,700	-	-
소 계			-	-	237,116	감)237,116	-	-	-
폐지	1	공원	문화공원	11공구 내	237,116	감)237,116	-	-	-

※ 공원면적 1,488,594㎡ 중 467,059㎡ 중복결정

- 중복결정면적 도로 24,802㎡, 근린공원 1,186㎡, 수변공원 1,186㎡, 공공공지 376㎡, 유수지 439,509㎡(이중중복면적제외)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첨C1	소공원	○ 신설, 면적: 1,487㎡	○ 첨단산업클러스터(C) 토지이용계획 변경 (공간구조 및 위치조정)에 따른 공원 신설
첨C2	소공원	○ 신설, 면적: 2,840㎡	
첨C3	소공원	○ 신설, 면적: 4,183㎡	
첨C4	소공원	○ 신설, 면적: 4,872㎡	
첨C1	어린이공원	○ 신설, 면적: 4,096㎡	
첨C2	어린이공원	○ 신설, 면적: 2,675㎡	
첨C3	어린이공원	○ 신설, 면적: 5,052㎡	
첨C1	근린공원	○ 신설, 면적: 272,092㎡	
첨C2	근린공원	○ 신설, 면적: 22,830㎡	
첨C3	근린공원	○ 신설, 면적: 34,787㎡	
첨C4	근린공원	○ 신설, 면적: 31,628㎡	
첨C5	근린공원	○ 신설, 면적: 26,679㎡	
첨C6	근린공원	○ 신설, 면적: 14,639㎡	
첨C7	근린공원	○ 신설, 면적: 14,616㎡	
첨C8	근린공원	○ 신설, 면적: 13,411㎡	
첨C9	근린공원	○ 신설, 면적: 9,340㎡	
첨C10	근린공원	○ 신설, 면적: 9,230㎡	
첨C11	근린공원	○ 신설, 면적: 10,134㎡	
첨C12	근린공원	○ 신설, 면적: 102,629㎡	
첨C13	근린공원	○ 신설, 면적: 49,157㎡	
첨C14	근린공원	○ 신설, 면적: 24,189㎡	
첨C1	수변공원	○ 신설, 면적: 554,983㎡	
첨C2	수변공원	○ 신설, 면적: 21,879㎡	
첨C3	수변공원	○ 신설, 면적: 1,178㎡	
첨C4	수변공원	○ 신설, 면적: 1,276㎡	
첨C5	수변공원	○ 신설, 면적: 8,674㎡	
첨C6	수변공원	○ 신설, 면적: 12,158㎡	
첨C7	수변공원	○ 신설, 면적: 12,180㎡	
첨C1	도시 생태공원	○ 신설, 면적: 215,700㎡	

3)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396,566	감)113,698	282,868	-	-
소 계		-	-	-	372,427	감)94,276	278,151	-	-
폐지	1	녹지	완충녹지	11공구 내	2,596	감)2,596	-	-	-
폐지	2	녹지	완충녹지	11공구 내	2,777	감)2,777	-	-	-
폐지	3	녹지	완충녹지	11공구 내	17,495	감)17,495	-	-	-
폐지	4	녹지	완충녹지	11공구 내	35,252	감)35,252	-	-	-
폐지	5	녹지	완충녹지	11공구 내	14,352	감)14,352	-	-	-
폐지	6	녹지	완충녹지	11공구 내	29,146	감)29,146	-	-	-
폐지	7	녹지	완충녹지	11공구 내	54,850	감)54,850	-	-	-
폐지	8	녹지	완충녹지	11공구 내	36,411	감)36,411	-	-	-
폐지	9	녹지	완충녹지	11공구 내	6,145	감)6,145	-	-	-
폐지	10	녹지	완충녹지	11공구 내	37,279	감)37,279	-	-	-
폐지	11	녹지	완충녹지	11공구 내	15,381	감)15,381	-	-	-
폐지	12	녹지	완충녹지	11공구 내	38,140	감)38,140	-	-	-
폐지	13	녹지	완충녹지	11공구 내	6,395	감)6,395	-	-	-
폐지	14	녹지	완충녹지	11공구 내	32,339	감)32,339	-	-	-
폐지	15	녹지	완충녹지	11공구 내	35,358	감)35,358	-	-	-
폐지	16	녹지	완충녹지	11공구 내	8,511	감)8,511	-	-	-
신설	첨C1	녹지	완충녹지	11공구 내	-	증)11,298	11,298	-	-
신설	첨C2	녹지	완충녹지	11공구 내	-	증)18,830	18,830	-	-
신설	첨C3	녹지	완충녹지	11공구 내	-	증)16,617	16,617	-	-
신설	첨C4	녹지	완충녹지	11공구 내	-	증)14,970	14,970	-	-
신설	첨C5	녹지	완충녹지	11공구 내	-	증)3,614	3,614	-	-
신설	첨C6	녹지	완충녹지	11공구 내	-	증)3,523	3,523	-	-
신설	첨C7	녹지	완충녹지	11공구 내	-	증)15,921	15,921	-	-
신설	첨C8	녹지	완충녹지	11공구 내	-	증)2,921	2,921	-	-
신설	첨C9	녹지	완충녹지	11공구 내	-	증)6,009	6,009	-	-
신설	첨C10	녹지	완충녹지	11공구 내	-	증)16,998	16,998	-	-
신설	첨C11	녹지	완충녹지	11공구 내	-	증)5,701	5,701	-	-
신설	첨C12	녹지	완충녹지	11공구 내	-	증)7,789	7,789	-	-
신설	첨C13	녹지	완충녹지	11공구 내	-	증)4,398	4,398	-	-
신설	첨C14	녹지	완충녹지	11공구 내	-	증)22,274	22,274	-	-
신설	첨C15	녹지	완충녹지	11공구 내	-	증)5,972	5,972	-	-
신설	첨C16	녹지	완충녹지	11공구 내	-	증)10,156	10,156	-	-
신설	첨C17	녹지	완충녹지	11공구 내	-	증)14,152	14,152	-	-
신설	첨C18	녹지	완충녹지	11공구 내	-	증)12,251	12,251	-	-
신설	첨C19	녹지	완충녹지	11공구 내	-	증)30,315	30,315	-	-
신설	첨C20	녹지	완충녹지	11공구 내	-	증)32,407	32,407	-	-
신설	첨C21	녹지	완충녹지	11공구 내	-	증)18,795	18,795	-	-
신설	첨C22	녹지	완충녹지	11공구 내	-	증)3,240	3,240	-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 계			-	-	7,752	감)7,752	-	-	-
폐지	1	녹지	경관녹지	11공구 내	3,913	감)3,913	-	-	-
폐지	2	녹지	경관녹지	11공구 내	236	감)236	-	-	-
폐지	3	녹지	경관녹지	11공구 내	905	감)905	-	-	-
폐지	4	녹지	경관녹지	11공구 내	2,587	감)2,587	-	-	-
폐지	5	녹지	경관녹지	11공구 내	111	감)111	-	-	-
소 계			-	-	16,387	감)11,670	4,717	-	-
폐지	1	녹지	연결녹지	11공구 내	6,051	감)6,051	-	-	-
폐지	2	녹지	연결녹지	11공구 내	3,524	감)3,524	-	-	-
신설	첨C1	녹지	연결녹지	11공구 내	-	증)2,463	2,463	-	-
신설	첨C2	녹지	연결녹지	11공구 내	-	증)2,254	2,254	-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첨C1	완충녹지	○ 신설, 면적: 11,298㎡	○ 첨단산업클러스터(C) 토지이용계획 변경 (공간구조 및 위치조정)에 따른 녹지 신설
첨C2	완충녹지	○ 신설, 면적: 18,830㎡	
첨C3	완충녹지	○ 신설, 면적: 16,617㎡	
첨C4	완충녹지	○ 신설, 면적: 14,970㎡	
첨C5	완충녹지	○ 신설, 면적: 3,614㎡	
첨C6	완충녹지	○ 신설, 면적: 3,523㎡	
첨C7	완충녹지	○ 신설, 면적: 15,921㎡	
첨C8	완충녹지	○ 신설, 면적: 2,921㎡	
첨C9	완충녹지	○ 신설, 면적: 6,009㎡	
첨C10	완충녹지	○ 신설, 면적: 16,998㎡	
첨C11	완충녹지	○ 신설, 면적: 5,701㎡	
첨C12	완충녹지	○ 신설, 면적: 7,789㎡	
첨C13	완충녹지	○ 신설, 면적: 4,398㎡	
첨C14	완충녹지	○ 신설, 면적: 22,274㎡	
첨C15	완충녹지	○ 신설, 면적: 5,972㎡	
첨C16	완충녹지	○ 신설, 면적: 10,156㎡	
첨C17	완충녹지	○ 신설, 면적: 14,152㎡	
첨C18	완충녹지	○ 신설, 면적: 12,251㎡	
첨C19	완충녹지	○ 신설, 면적: 30,315㎡	
첨C20	완충녹지	○ 신설, 면적: 32,407㎡	
첨C21	완충녹지	○ 신설, 면적: 18,795㎡	
첨C22	완충녹지	○ 신설, 면적: 3,240㎡	
첨C1	연결녹지	○ 신설, 면적: 2,463㎡	
첨C2	연결녹지	○ 신설, 면적: 2,254㎡	

4) 공공공지(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43,193	증)17,983	161,176	-	-
폐지	1	공공공지	11공구 내	60,389	감)60,389	-	-	-
폐지	2	공공공지	11공구 내	20,619	감)20,619	-	-	-
폐지	3	공공공지	11공구 내	1,778	감)1,778	-	-	-
폐지	4	공공공지	11공구 내	1,507	감)1,507	-	-	-
폐지	5	공공공지	11공구 내	440	감)440	-	-	-
폐지	6	공공공지	11공구 내	403	감)403	-	-	-
폐지	7	공공공지	11공구 내	640	감)640	-	-	-
폐지	8	공공공지	11공구 내	370	감)370	-	-	-
폐지	9	공공공지	11공구 내	358	감)358	-	-	-
폐지	10	공공공지	11공구 내	559	감)559	-	-	-
폐지	11	공공공지	11공구 내	1,415	감)1,415	-	-	-
폐지	12	공공공지	11공구 내	2,073	감)2,073	-	-	-
폐지	13	공공공지	11공구 내	1,486	감)1,486	-	-	-
폐지	14	공공공지	11공구 내	4,394	감)4,394	-	-	-
폐지	15	공공공지	11공구 내	14,544	감)14,544	-	-	-
폐지	16	공공공지	11공구 내	773	감)773	-	-	-
폐지	17	공공공지	11공구 내	575	감)575	-	-	-
폐지	18	공공공지	11공구 내	5,086	감)5,086	-	-	-
폐지	19	공공공지	11공구 내	1,801	감)1,801	-	-	-
폐지	20	공공공지	11공구 내	23,983	감)23,983	-	-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첨C1	공공공지	11공구 내	-	증)62,635	62,635	-	도로 2,881㎡, 근린공원 163㎡ 중복결정
신설	첨C2	공공공지	11공구 내	-	증)62,547	62,547	-	도로 3,056㎡, 근린공원 165㎡ 중복결정
신설	첨C3	공공공지	11공구 내	-	증)443	443	-	-
신설	첨C4	공공공지	11공구 내	-	증)955	955	-	-
신설	첨C5	공공공지	11공구 내	-	증)428	428	-	-
신설	첨C6	공공공지	11공구 내	-	증)3,331	3,331	-	도로 337㎡ 중복결정
신설	첨C7	공공공지	11공구 내	-	증)4,173	4,173	-	도로 326㎡ 중복결정
신설	첨C8	공공공지	11공구 내	-	증)2,412	2,412	-	-
신설	첨C9	공공공지	11공구 내	-	증)869	869	-	-
신설	첨C10	공공공지	11공구 내	-	증)985	985	-	-
신설	첨C11	공공공지	11공구 내	-	증)2,488	2,488	-	-
신설	첨C12	공공공지	11공구 내	-	증)1,765	1,765	-	-
신설	첨C13	공공공지	11공구 내	-	증)3,740	3,740	-	-
신설	첨C14	공공공지	11공구 내	-	증)1,496	1,496	-	-
신설	첨C15	공공공지	11공구 내	-	증)3,698	3,698	-	-
신설	첨C16	공공공지	11공구 내	-	증)1,505	1,505	-	-
신설	첨C17	공공공지	11공구 내	-	증)730	730	-	-
신설	첨C18	공공공지	11공구 내	-	증)1,138	1,138	-	-
신설	첨C19	공공공지	11공구 내	-	증)558	558	-	-
신설	첨C20	공공공지	11공구 내	-	증)1,059	1,059	-	-
신설	첨C21	공공공지	11공구 내	-	증)2,818	2,818	-	도로 203㎡ 중복결정
신설	첨C22	공공공지	11공구 내	-	증)1,403	1,403	-	도로 130㎡ 중복결정

※ 공공공지면적 161,176㎡ 중 7,261㎡ 중복결정
- 중복결정면적: 도로 6,933㎡, 근린공원 328㎡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첨C1	공공공지	○ 신설, 면적: 62,635㎡	○ 첨단산업클러스터(C) 토지이용계획 변경 (공간구조 및 위치조정)에 따른 공공공지 신설
첨C2	공공공지	○ 신설, 면적: 62,547㎡	
첨C3	공공공지	○ 신설, 면적: 443㎡	
첨C4	공공공지	○ 신설, 면적: 955㎡	
첨C5	공공공지	○ 신설, 면적: 428㎡	
첨C6	공공공지	○ 신설, 면적: 3,331㎡	
첨C7	공공공지	○ 신설, 면적: 4,173㎡	
첨C8	공공공지	○ 신설, 면적: 2,412㎡	
첨C9	공공공지	○ 신설, 면적: 869㎡	
첨C10	공공공지	○ 신설, 면적: 985㎡	
첨C11	공공공지	○ 신설, 면적: 2,488㎡	
첨C12	공공공지	○ 신설, 면적: 1,765㎡	
첨C13	공공공지	○ 신설, 면적: 3,740㎡	
첨C14	공공공지	○ 신설, 면적: 1,496㎡	
첨C15	공공공지	○ 신설, 면적: 3,698㎡	
첨C16	공공공지	○ 신설, 면적: 1,505㎡	
첨C17	공공공지	○ 신설, 면적: 730㎡	
첨C18	공공공지	○ 신설, 면적: 1,138㎡	
첨C19	공공공지	○ 신설, 면적: 558㎡	
첨C20	공공공지	○ 신설, 면적: 1,059㎡	
첨C21	공공공지	○ 신설, 면적: 2,818㎡	
첨C22	공공공지	○ 신설, 면적: 1,403㎡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1) 전기공급설비(변경)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5,751	증)14,345	20,096	-	-
폐지	1	전기공급설비	11공구 내	2,635	감)2,635	-	-	-
폐지	2	전기공급설비	11공구 내	3,116	감)3,116	-	-	-
신설	첨C1	전기공급설비	11공구 내	-	증)17,493	17,493	-	-
신설	첨C2	전기공급설비	11공구 내	-	증)2,603	2,603	-	-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첨C1	전기공급설비	○ 신설, 면적: 17,493㎡	○ 첨단산업클러스터(C) 토지이용계획 변경 (공간구조 및 위치조정에 따른 전기공급설비 신설)
첨C2	전기공급설비	○ 신설, 면적: 2,603㎡	

2) 공동구(변경)

■ 공동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k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변경			
폐지	1	공동구	광로2-2	광로2-2	-	2.546	-	-	-	폭 7.45m
폐지	2	공동구	광로2-2	대로2-4	-	0.606	-	-	-	폭 5.10m
폐지	3	공동구	광로2-2	광로3-1	-	0.607	-	-	-	폭 5.10m
폐지	4	공동구	광로2-2	광로3-35	-	0.983 (0.967)	-	-	-	폭 7.85m
폐지	5	공동구	광로2-2	광로2-1	-	0.985 (0.970)	-	-	-	폭 5.10m
폐지	첨C1	공동구 관리사무소	11공구 내			-	-	2,100	-	-
신설	첨C1	공동구	광로 2-첨C3	광로 2-첨C3	-	-	2.546	-	-	폭 7.45m
신설	첨C2	공동구	대로 2-첨C2	대로 2-첨C2	-	-	0.606	-	-	폭 5.10m
신설	첨C3	공동구	광로 3-첨C2	광로 3-첨C2	-	-	0.607	-	-	폭 5.10m
신설	첨C4	공동구	대로 2-첨C7	광로 3-첨C1	-	-	0.983 (0.967)	-	-	폭 7.85m
신설	첨C5	공동구	광로 2-첨C2	광로 3-첨C1	-	-	0.985 (0.970)	-	-	폭 5.10m
신설	첨C1	공동구 관리사무소	11공구 내			-	-	2,243	-	-

※ ()는 구역 내 면적

■ 공동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첨C1	공동구	○ 신설, 연장: 2.546km	○ 첨단산업클러스터(C) 토지이용계획 변경 (공간구조 및 위치조정)에 따른 공동구 신설
첨C2	공동구	○ 신설, 연장: 0.606km	
첨C3	공동구	○ 신설, 연장: 0.607km	
첨C4	공동구	○ 신설, 연장: 0.983km	
첨C5	공동구	○ 신설, 연장: 0.985km	
첨C1	공동구	○ 신설, 면적: 2,243㎡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1) 공공청사(변경)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가정	변경	변경후		
계		-	-	-	50,053	증)5,571	55,624	-	-
폐지	1	공공청사	공공청사	11공구 내	1,000	감)1,000	-	-	-
폐지	2	공공청사	공공청사	11공구 내	1,200	감)1,200	-	-	-
폐지	3	공공청사	공공청사	11공구 내	1,706	감)1,706	-	-	-
폐지	4	공공청사	공공청사	11공구 내	14,142	감)14,142	-	-	-
폐지	5	공공청사	공공청사	11공구 내	32,005	감)32,005	-	-	-
신설	첨C1	공공청사	공공청사	11공구 내	-	증)1,000	1,000	-	지구대
신설	첨C2	공공청사	공공청사	11공구 내	-	증)32,507	32,507	-	인천본부세관
신설	첨C3	공공청사	공공청사	11공구 내	-	증)1,277	1,277	-	소방정대
신설	첨C4	공공청사	공공청사	11공구 내	-	증)5,201	5,201	-	행정복지센터
신설	첨C5	공공청사	공공청사	11공구 내	-	증)1,500	1,500	-	소방파출소
신설	첨C6	공공청사	공공청사	11공구 내	-	증)14,139	14,139	-	경찰서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첨C1	공공청사	○ 신설, 면적: 1,000㎡	○ 첨단산업클러스터(C) 토지이용계획 변경 (공간구조 및 위치조정)에 따른 공공청사 신설
첨C2	공공청사	○ 신설, 면적: 32,507㎡	
첨C3	공공청사	○ 신설, 면적: 1,277㎡	
첨C4	공공청사	○ 신설, 면적: 5,201㎡	
첨C5	공공청사	○ 신설, 면적: 1,500㎡	
첨C6	공공청사	○ 신설, 면적: 14,139㎡	

2) 학교(변경)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가정	변경	변경후		
계		-	-	-	114,864	증)31,433	146,297	-	-
폐지	1	학교	초등학교	11공구 내	14,382	감)14,382	-	-	-
폐지	2	학교	초등학교	11공구 내	12,600	감)12,600	-	-	-
폐지	3	학교	초등학교	11공구 내	13,060	감)13,060	-	-	-
폐지	4	학교	초등학교	11공구 내	16,792	감)16,792	-	-	-
폐지	5	학교	중학교	11공구 내	14,000	감)14,000	-	-	-
폐지	6	학교	중학교	11공구 내	14,000	감)14,000	-	-	-
폐지	7	학교	고등학교	11공구 내	15,000	감)15,000	-	-	-
폐지	8	학교	고등학교	11공구 내	15,030	감)15,030	-	-	-
신설	첨C1	학교	유치원	11공구 내	-	증)3,000	3,000	-	-
신설	첨C2	학교	유치원	11공구 내	-	증)3,014	3,014	-	-
신설	첨C3	학교	유치원	11공구 내	-	증)3,012	3,012	-	-
신설	첨C4	학교	유치원	11공구 내	-	증)3,030	3,030	-	-
신설	첨C5	학교	유치원	11공구 내	-	증)3,000	3,000	-	-
신설	첨C6	학교	초등학교	11공구 내	-	증)15,047	15,047	-	-
신설	첨C7	학교	초등학교	11공구 내	-	증)14,042	14,042	-	-
신설	첨C8	학교	초등학교	11공구 내	-	증)14,043	14,043	-	-
신설	첨C9	학교	초등학교	11공구 내	-	증)14,107	14,107	-	-
신설	첨C10	학교	초등학교	11공구 내	-	증)14,000	14,000	-	-
신설	첨C11	학교	중학교	11공구 내	-	증)15,000	15,000	-	-
신설	첨C12	학교	중학교	11공구 내	-	증)15,001	15,001	-	-
신설	첨C13	학교	중학교	11공구 내	-	증)15,000	15,000	-	-
신설	첨C14	학교	고등학교	11공구 내	-	증)15,001	15,001	-	-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첨C1	학교	○ 신설, 면적: 3,000㎡	○ 첨단산업클러스터(C) 토지이용계획 변경 (공간구조 및 위치조정)에 따른 유·초· 중·고등학교 신설
첨C2	학교	○ 신설, 면적: 3,014㎡	
첨C3	학교	○ 신설, 면적: 3,012㎡	
첨C4	학교	○ 신설, 면적: 3,030㎡	
첨C5	학교	○ 신설, 면적: 3,000㎡	
첨C6	학교	○ 신설, 면적: 15,047㎡	
첨C7	학교	○ 신설, 면적: 14,042㎡	
첨C8	학교	○ 신설, 면적: 14,043㎡	
첨C9	학교	○ 신설, 면적: 14,107㎡	
첨C10	학교	○ 신설, 면적: 14,000㎡	
첨C11	학교	○ 신설, 면적: 15,000㎡	
첨C12	학교	○ 신설, 면적: 15,001㎡	
첨C13	학교	○ 신설, 면적: 15,000㎡	
첨C14	학교	○ 신설, 면적: 15,001㎡	

마. 방재시설(변경)

1) 우수지(변경)

■ 우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가정	변경	변경후		
계			-	-	472,480	감)32,971	439,509	-	-
폐지	1	우수지	우수지	11공구 내	472,480	감)472,480	-	-	-
신설	첨C1	우수지	우수지	11공구 내	-	증)439,509	439,509	-	도로 22,285m ² , 근린공원 1,186m ² , 수변공원 439,509m ² , 공공공지 48m ² 중복결정

■ 우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첨C1	우수지	○ 신설, 면적: 439,509m ²	○ 첨단산업클러스터(C) 토지이용계획 변경 (공간구조 및 위치조정)에 따른 우수지 신설

바. 환경기초시설(변경)

1) 하수도(변경)

■ 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가정	변경	변경후		
계			-	2,481	증)4	2,485	-	-
폐지	1	하수도	11공구 내	1,202	감)1,202	-	-	-
폐지	2	하수도	11공구 내	1,279	감)1,279	-	-	-
신설	첨C1	하수도	11공구 내	-	증)1,206	1,206	-	오수중계펌프장
신설	첨C2	하수도	11공구 내	-	증)1,279	1,279	-	오수중계펌프장

■ 하수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첨C1	하수도	○ 신설, 면적: 1,206m ²	○ 첨단산업클러스터(C) 토지이용계획 변경 (공간구조 및 위치조정)에 따른 하수도 신설
첨C2	하수도	○ 신설, 면적: 1,279m ²	

2) 폐기물처리시설(변경)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가정	변경	변경후		
계			-	-	5,924	증)159	6,083	-	-
폐지	1	폐기물 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장	11공구 내	2,924	감)2,924	-	-	-
폐지	2	폐기물 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장	11공구 내	3,000	감)3,000	-	-	-
신설	첨C1	폐기물 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장	11공구 내	-	증)3,284	3,284	-	-
신설	첨C2	폐기물 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장	11공구 내	-	증)2,799	2,799	-	-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첨C1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 면적: 3,284㎡	○첨단산업클러스터(C) 토지이용계획 변경 (공간구조 및 위치조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첨C2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 면적: 2,799㎡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정

1) 단독주택용지(Rs)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s1	Rs1	9,403 (10,925)	Rs1	9,403 (10,925)	획지분할 가능
Rs2	Rs2	16,855 (20,160)	Rs2	16,855 (20,160)	
Rs3	Rs3	10,720 (13,342)	Rs3	10,720 (13,342)	
Rs4	Rs4	8,181 (9,569)	Rs4	8,181 (9,569)	
계	-	45,159 (53,996)	-	45,159 (53,996)	-

※ ()는 블록형 단독주택 면적임

2) 타운하우스용지(Th)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Th1	Th1	37,653	Th1	37,653	획지분할 불허 (단,주택법 제2조의 제8호 및 제9호 규정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주택건설사업 사용승인후 대지분할 가능)
Th2	Th2	15,953	Th2	15,953	
계	-	53,606	-	53,606	

3) 공동주택용지(Rc)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c1	Rc1	33,079	Rc1	33,079	획지분할 불허 (단,주택법 제2조의 제8호 및 제9호 규정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주택건설사업 사용승인후 대지분할 가능)
Rc2	Rc2	37,240	Rc2	37,240	
Rc3	Rc3	45,921	Rc3	45,921	
Rc4	Rc4	41,790	Rc4	41,790	
Rc5	Rc5	64,856	Rc5	64,856	
Rc6	Rc6	65,743	Rc6	65,743	
Rc7	Rc7	76,216	Rc7	76,216	
Rc8	Rc8	96,444	Rc8	96,444	
Rc9	Rc9	105,507	Rc9	105,507	
Rc10	Rc10	85,966	Rc10	85,966	
Rc11	Rc11	69,390	Rc11	69,390	
Rc12	Rc12	74,801	Rc12	74,801	
Rc13	Rc13	45,529	Rc13	45,529	
Rc14	Rc14	39,667	Rc14	39,667	
계	-	882,149	-	882,149	-

4) 근린생활시설용지(Cn)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Cn1	Cn1	10,206	Cn1	10,206	획지분할 가능
Cn2	Cn2	6,748	Cn2	6,748	획지분할 가능
Cn3	Cn3	1,659	Cn3	1,659	획지분할 불허
Cn4	Cn4	3,508	Cn4	3,508	획지분할 가능
Cn5	Cn5	8,860	Cn5	8,860	획지분할 가능
Cn6	Cn6	1,148	Cn6	1,148	획지분할 가능
Cn7	Cn7	7,082	Cn7	7,082	획지분할 가능
Cn8	Cn8	7,059	Cn8	7,059	획지분할 가능
Cn9	Cn9	7,614	Cn9	7,614	획지분할 가능
Cn10	Cn10	2,350	Cn10	2,350	획지분할 불허
Cn11	Cn11	1,709	Cn11	1,709	획지분할 불허
Cn12	Cn12	921	Cn12	921	획지분할 불허
Cn13	Cn13	703	Cn13	703	획지분할 불허
Cn14	Cn14	1,156	Cn14	1,156	획지분할 불허
Cn15	Cn15	1,150	Cn15	1,150	획지분할 불허
Cn16	Cn16	2,987	Cn16	2,987	획지분할 가능
Cn17	Cn17	4,323	Cn17	4,323	획지분할 가능
Cn18	Cn18	5,118	Cn18	5,118	획지분할 가능
Cn19	Cn19	2,885	Cn19	2,885	획지분할 가능
Cn20	Cn20	2,162	Cn20	2,162	획지분할 가능
계	-	79,348	-	79,348	-

5) 주상복합용지(Rm)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m	Rm	46,263	Rm	46,263	획지분할 불허

6) 복합개발용지(Md)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Md1	Md1	16,541	Md1	16,541	획지분할 불허
Md2	Md2	26,881	Md2	26,881	
Md3	Md3	18,459	Md3	18,459	
Md4	Md4	16,805	Md4	16,805	
Md5	Md5	26,882	Md5	26,882	
Md6	Md6	14,032	Md6	14,032	
계	-	119,600	-	119,600	-

7) 일반상업용지(Cl, Cr, Cw, Cv)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랜드마크	Cl	Cl	39,235	Cl	39,235	획지분할 가능
소계		-	39,235	-	39,235	-
일반상업	Cr1	Cr1	7,700	Cr1	7,700	획지분할 가능
	Cr2	Cr2	7,755	Cr2	7,755	획지분할 가능
	Cr3	Cr3	8,264	Cr3	8,264	획지분할 불허
	Cr4	Cr4	4,289	Cr4	4,289	획지분할 가능
	Cr5	Cr5	8,252	Cr5	8,252	획지분할 불허
	Cr6	Cr6	7,746	Cr6	7,746	획지분할 불허
	Cr7	Cr7	9,727	Cr7	9,727	획지분할 불허
	Cr8	Cr8	13,544	Cr8	13,544	획지분할 가능
	Cr9	Cr9	4,520	Cr9	4,520	획지분할 불허
	Cr10	Cr10	7,150	Cr10	7,150	획지분할 가능
	Cr11	Cr11	7,424	Cr11	7,424	획지분할 가능
	Cr12	Cr12	10,129	Cr12	10,129	획지분할 가능
소계		-	96,500	-	96,500	-
수변 일반상업	Cw1	Cw1	8,937	Cw1	8,937	획지분할 불허
	Cw2	Cw2	5,349	Cw2	5,349	획지분할 불허
	Cw3	Cw3	851	Cw3	851	획지분할 불허
	Cw4	Cw4	828	Cw4	828	획지분할 불허
	Cw5	Cw5	1,449	Cw5	1,449	획지분할 가능
	Cw6	Cw6	1,125	Cw6	1,125	획지분할 가능
	Cw7	Cw7	510	Cw7	510	획지분할 불허
	Cw8	Cw8	707	Cw8	707	획지분할 불허
	Cw9	Cw9	1,262	Cw9	1,262	획지분할 가능
	Cw10	Cw10	1,052	Cw10	1,052	획지분할 불허
	Cw11	Cw11	6,936	Cw11	6,936	획지분할 불허
	Cw12	Cw12	6,890	Cw12	6,890	획지분할 불허
소계		-	35,896	-	35,896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미니 베니스	Cv1	Cv1	758	Cv1	758	획지분할 불허
	Cv2	Cv2	1,060	-1	535	획지분할 불허
				-2	525	획지분할 불허
	Cv3	Cv3	1,089	Cv3	1,089	획지분할 불허
	Cv4	Cv4	1,478	-1	786	획지분할 불허
				-2	692	획지분할 불허
	Cv5	Cv5	2,594	-1	803	획지분할 불허
				-2	890	획지분할 불허
				-3	901	획지분할 불허
	Cv6	Cv6	467	Cv6	467	획지분할 불허
	Cv7	Cv7	1,487	-1	618	획지분할 불허
				-2	869	획지분할 불허
	Cv8	Cv8	1,673	-1	548	획지분할 불허
				-2	555	획지분할 불허
				-3	570	획지분할 불허
	Cv9	Cv9	949	Cv9	949	획지분할 불허
	Cv10	Cv10	1,478	-1	835	획지분할 불허
				-2	643	획지분할 불허
	Cv11	Cv11	854	Cv11	854	획지분할 불허
	Cv12	Cv12	410	Cv12	410	획지분할 불허
	Cv13	Cv13	1,385	Cv13	1,385	획지분할 불허
	Cv14	Cv14	866	Cv14	866	획지분할 불허
	Cv15	Cv15	1,300	Cv15	1,300	획지분할 불허
	Cv16	Cv16	557	Cv16	557	획지분할 불허
	Cv17	Cv17	901	Cv17	901	획지분할 불허
Cv18	Cv18	1,088	Cv18	1,088	획지분할 불허	
Cv19	Cv19	995	Cv19	995	획지분할 불허	
Cv20	Cv20	279	Cv20	279	획지분할 불허	
Cv21	Cv21	1,414	-1	576	획지분할 불허	
			-2	838	획지분할 불허	
Cv22	Cv22	271	Cv22	271	획지분할 불허	
Cv23	Cv23	1,112	-1	580	획지분할 불허	
			-2	532	획지분할 불허	
Cv24	Cv24	490	Cv24	490	획지분할 불허	
Cv25	Cv25	1,779	-1	1,047	획지분할 불허	
			-2	732	획지분할 불허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미니 베니스	Cv26	Cv26	113	Cv26	113	획지분할 불허
	Cv27	Cv27	1,753	-1	841	획지분할 불허
				-2	912	획지분할 불허
	Cv28	Cv28	1,463	-1	673	획지분할 불허
				-2	790	획지분할 불허
	Cv29	Cv29	1,200	-1	616	획지분할 불허
				-2	584	획지분할 불허
	Cv30	Cv30	1,663	-1	660	획지분할 불허
				-2	1,003	획지분할 불허
	Cv31	Cv31	261	Cv31	261	획지분할 불허
	Cv32	Cv32	1,036	Cv32	1,036	획지분할 불허
	Cv33	Cv33	998	-1	421	획지분할 불허
				-2	577	획지분할 불허
	Cv34	Cv34	2,785	-1	929	획지분할 불허
				-2	923	획지분할 불허
				-3	933	획지분할 불허
	Cv35	Cv35	1,536	-1	631	획지분할 불허
				-2	905	획지분할 불허
	Cv36	Cv36	1,997	-1	997	획지분할 불허
-2				1,000	획지분할 불허	
소계	-	41,539	-	41,539	-	
총계	-	213,170	-	213,170	-	

8) 지식기반제조업용지(Ki)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Ki1	Ki1	36,362	Ki1	36,362	획지분할 가능
Ki2	Ki2	43,660	Ki2	43,660	
Ki3	Ki3	53,453	Ki3	53,453	
Ki4	Ki4	85,284	Ki4	85,284	
Ki5	Ki5	33,507	Ki5	33,507	
Ki6	Ki6	51,194	Ki6	51,194	
Ki7	Ki7	53,923	Ki7	53,923	
Ki8	Ki8	51,614	Ki8	51,614	
Ki9	Ki9	81,044	Ki9	81,044	
Ki10	Ki10	40,293	Ki10	40,293	
Ki11	Ki11	25,124	Ki11	25,124	
Ki12	Ki12	44,487	Ki12	44,487	
Ki13	Ki13	21,802	Ki13	21,802	
Ki14	Ki14	120,632	Ki14	120,632	
Ki15	Ki15	36,063	Ki15	36,063	
Ki16	Ki16	135,898	Ki16	135,898	
계	-	914,340	-	914,340	-

9) 연구용지(R&D)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D1	R&D1	124,075	R&D1	124,075	획지분할 가능
R&D2	R&D2	16,256	R&D2	16,256	획지분할 가능
R&D3	R&D3	31,808	R&D3	31,808	획지분할 불허
R&D4	R&D4	49,807	R&D4	49,807	획지분할 불허
R&D5	R&D5	16,429	R&D5	16,429	획지분할 가능
R&D6	R&D6	18,330	R&D6	18,330	획지분할 가능
R&D7	R&D7	14,001	R&D7	14,001	획지분할 가능
R&D8	R&D8	24,250	R&D8	24,250	획지분할 가능
R&D9	R&D9	8,227	R&D9	8,227	획지분할 가능
R&D10	R&D10	26,300	R&D10	26,300	획지분할 가능
R&D11	R&D11	11,911	R&D11	11,911	획지분할 가능
R&D12	R&D12	25,321	R&D12	25,321	획지분할 가능
R&D13	R&D13	27,404	R&D13	27,404	획지분할 가능
R&D14	R&D14	12,415	R&D14	12,415	획지분할 가능
R&D15	R&D15	58,600	R&D15	58,600	획지분할 가능
R&D16	R&D16	40,297	R&D16	40,297	획지분할 가능
R&D17	R&D17	38,057	R&D17	38,057	획지분할 가능
R&D18	R&D18	47,140	R&D18	47,140	획지분할 가능
R&D19	R&D19	24,854	R&D19	24,854	획지분할 가능
계	-	615,482	-	615,482	-

10) 교육연구용지(Er)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Er	Er	224,711	Er	224,711	획지분할 불허

11) 기타시설용지

■ 교육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Sp1	Sp1	3,200	Sp1	3,200	획지분할 불허	
Sp2	Sp2	3,205	Sp2	3,205		
Se1	Se1	14,382	Se1	14,382		
Se2	Se2	12,600	Se2	12,600		
Se3	Se3	13,060	Se3	13,060		
Se4	Se4	16,792	Se4	16,792		
Sm1	Sm1	14,000	Sm1	14,000		
Sm2	Sm2	14,000	Sm2	14,000		
Sh1	Sh1	15,000	Sh1	15,000		
Sh2	Sh2	15,030	Sh2	15,030		
계	-	121,269	-	121,269		-

■ 공공청사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Go1	Go1	1,000	Go1	1,000	획지분할 불허
Go2	Go2	1,200	Go2	1,200	
Go3	Go3	1,706	Go3	1,706	
Go4	Go4	14,142	Go4	14,142	
Go5	Go5	32,005	Go5	32,005	
Go6	Go6	1,277	Go6	1,277	
Go7	Go7	2,501	Go7	2,501	
Go8	Go8	5,500	Go8	5,500	
계	-	59,331	-	59,331	-

■ 문화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Cf1	Cf1	1,611	Cf1	1,611	획지분할 불허
Cf2	Cf2	1,487	Cf2	1,487	
Cf3	Cf3	4,400	Cf3	4,400	
Cf4	Cf4	1,543	Cf4	1,543	
Cf5	Cf5	3,029	Cf5	3,029	
Cf6	Cf6	1,919	Cf6	1,919	
Cf7	Cf7	4,802	Cf7	4,802	
Cf8	Cf8	1,983	Cf8	1,983	
계	-	20,774	-	20,774	-

■ 종교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11	R11	2,555	R11	2,555	획지분할 불허
R12	R12	1,424	R12	1,424	
계	-	3,979	-	3,979	-

■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P11	P11	1,100	P11	1,100	획지분할 불허
P12	P12	4,594	P12	4,594	
P13	P13	6,115	P13	6,115	
P14	P14	2,185	P14	2,185	
P15	P15	5,937	P15	5,937	
P16	P16	6,521	P16	6,521	
P17	P17	4,106	P17	4,106	
P18	P18	4,566	P18	4,566	
P19	P19	1,700	P19	1,700	
P110	P110	3,561	P110	3,561	
P111	P111	3,983	P111	3,983	
P112	P112	6,146	P112	6,146	
P113	P113	2,394	P113	2,394	
P114	P114	2,875	P114	2,875	
P115	P115	5,838	P115	5,838	
P116	P116	2,356	P116	2,356	
계	-	63,977	-	63,977	-

■ 주유소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Gs1	Gs1	3,000	Gs1	3,000	획지분할 불허
Gs2	Gs2	2,205	Gs2	2,205	획지분할 불허
계	-	5,205	-	5,205	-

■ 트램역사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Tg	Tg	15,295	Tg	15,295	획지분할 불허

■ 자동차정류장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As	As	24,000	As	24,000	획지분할 불허

■ 공동구용지(공동구관리사무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공	공	2,100	공	2,100	획지분할 불허

■ 유지관리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Et	Et	4,217	Et	4,217	획지분할 불허

■ 폐기물처리시설용지(생활폐기물자동집하장)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집하1	집하1	2,924	집하1	2,924	획지분할 불허
집하2	집하2	3,000	집하2	3,000	
계	-	5,924	-	5,924	-

■ 전기공급설비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전기1	전기1	2,635	전기1	2,635	획지분할 불허
전기2	전기2	3,116	전기2	3,116	
계	-	5,751	-	5,751	-

■ 공급처리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공급	공급	66,398	공급	66,398	획지분할 불허

■ 오수중계펌프장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오수1	오수1	1,202	오수1	1,202	획지분할 불허
오수2	오수2	1,279	오수2	1,279	
계	-	2,481	-	2,481	-

- 변경

1) 단독주택용지(Rs)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Rs1	Rs1	6,526	Rs1	6,526	○ 블록형 단독주택 ○ 획지분할 불허
Rs2	Rs2	6,527	Rs2	6,527	
Rs3	Rs3	3,345	1	270	○ 획지형 단독주택 ○ 획지분할 불허
			2	270	
			3	270	
			4	270	
			5	270	
			6	270	
			7	290	
			8	290	
			9	290	
			10	289	
			11	283	
			12	283	
Rs4	Rs4	4,598	1	391	○ 획지형 단독주택 ○ 획지분할 불허
			2	380	
			3	380	
			4	380	
			5	380	
			6	391	
			7	388	
			8	380	
			9	380	
			10	380	
			11	380	
			12	388	
Rs5	Rs5	4,570	1	384	○ 획지형 단독주택 ○ 획지분할 불허
			2	380	
			3	380	
			4	380	
			5	380	
			6	384	
			7	381	
			8	380	
			9	380	
			10	380	
			11	380	
			12	381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s6	Rs6	3,915	1	377	○ 획지형 단독주택 ○ 획지분할 불허
			2	380	
			3	380	
			4	326	
			5	326	
			6	416	
			7	373	
			8	380	
			9	380	
			10	321	
			11	256	
Rs7	Rs7	2,291	1	293	○ 획지형 단독주택 ○ 획지분할 불허
			2	285	
			3	285	
			4	285	
			5	285	
			6	285	
			7	285	
			8	288	
Rs8	Rs8	5,231	1	293	○ 획지형 단독주택 ○ 획지분할 불허
			2	280	
			3	280	
			4	280	
			5	280	
			6	332	
			7	320	
			8	320	
			9	320	
			10	320	
			11	320	
			12	332	
			13	315	
			14	308	
			15	308	
			16	308	
			17	315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s9	Rs9	5,268	1	492	○ 획지형 단독주택 ○ 획지분할 불허
			2	437	
			3	437	
			4	492	
			5	437	
			6	437	
			7	414	
			8	414	
			9	440	
			10	414	
			11	414	
			12	440	
Rs10	Rs10	4,348	1	397	○ 획지형 단독주택 ○ 획지분할 불허
			2	345	
			3	345	
			4	397	
			5	345	
			6	345	
			7	345	
			8	345	
			9	397	
			10	345	
			11	345	
			12	397	
Rs11	Rs11	1,231	1	331	○ 획지형 단독주택 ○ 획지분할 불허
			2	300	
			3	300	
			4	300	
계	-	47,850	-	47,850	-

2) 연립주택용지(Th)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Th1	Th1	37,580	Th1	37,580	○ 획지분할 불허 (단, 주택법 제2조의 제8호 및 제9호 규정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주택건설사업 사용승인 후 대지분할가능) ○ 특별계획구역2
Th2	Th2	18,815	Th2	18,815	
계	-	56,395	-	56,395	-

3) 공동주택용지(Rc)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c1	Rc1	109,722	Rc1	109,722	○ 획지분할 불허 (단, 주택법 제2조 제13호 및 제14호 규정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주택건설사업 사용승인 후 대지분할가능)
Rc2	Rc2	42,469	Rc2	42,469	
Rc3	Rc3	35,624	Rc3	35,624	
Rc4	Rc4	74,846	Rc4	74,846	
Rc5	Rc5	105,018	Rc5	105,018	
Rc6	Rc6	66,460	Rc6	66,460	
Rc7	Rc7	82,334	Rc7	82,334	
Rc8	Rc8	88,436	Rc8	88,436	
Rc9	Rc9	118,604	Rc9	118,604	
Rc10	Rc10	41,225	Rc10	41,225	
Rc11	Rc11	35,757	Rc11	35,757	
계	-	800,495	-	800,495	-

4) 근린생활시설용지(Cn)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Cn1	Cn1	23,527	Cn1	23,527	○ 획지분할 가능
Cn2	Cn2	8,688	Cn2	8,688	○ 획지분할 가능
Cn3	Cn3	12,071	Cn3	12,071	○ 획지분할 가능
Cn4	Cn4	26,077	Cn4	26,077	○ 획지분할 가능
Cn5	Cn5	11,268	Cn5	11,268	○ 획지분할 가능
Cn6	Cn6	7,291	Cn6	7,291	○ 획지분할 가능
Cn7	Cn7	11,200	Cn7	11,200	○ 획지분할 불허
Cn8	Cn8	12,623	Cn8	12,623	○ 획지분할 가능
Cn9	Cn9	5,823	Cn9	5,823	○ 획지분할 불허
Cn10	Cn10	10,203	Cn10	10,203	○ 획지분할 불허
Cn11	Cn11	2,984	Cn11	2,984	○ 획지분할 가능 ○ 특별계획구역2
Cn12	Cn12	3,016	Cn12	3,016	○ 획지분할 가능 ○ 특별계획구역2
Cn13	Cn13	4,702	Cn13	4,702	○ 획지분할 가능 ○ 특별계획구역2
Cn14	Cn14	11,206	Cn14	11,206	○ 획지분할 가능 ○ 특별계획구역2
Cn15	Cn15	2,123	Cn15	2,123	○ 획지분할 불허 ○ 특별계획구역2
Cn16	Cn16	1,551	Cn16	1,551	○ 획지분할 불허 ○ 특별계획구역2
Cn17	Cn17	921	Cn17	921	○ 획지분할 불허 ○ 특별계획구역2
Cn18	Cn18	2,885	Cn18	2,885	○ 획지분할 가능 ○ 특별계획구역2
Cn19	Cn19	2,162	Cn19	2,162	○ 획지분할 가능 ○ 특별계획구역2
계	-	160,321	-	160,321	-

5) 주상복합용지(Rm)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m1	Rm1	32,547	Rm1	32,547	○ 획지분할 불허
Rm2	Rm2	38,152	Rm2	38,152	○ 획지분할 불허
Rm3	Rm3	50,557	Rm3	50,557	○ 획지분할 불허
Rm4	Rm4	31,670	Rm4	31,670	○ 획지분할 불허
Rm5	Rm5	27,859	Rm5	27,859	○ 획지분할 불허
Rm6	Rm6	32,417	Rm6	32,417	○ 획지분할 불허
계	-	213,202	-	213,202	-

6) 업무시설용지(Bs)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Bs1	Bs1	17,989	Bs1	17,989	○ 획지분할 가능
Bs2	Bs2	15,976	Bs2	15,976	○ 획지분할 가능
Bs3	Bs3	17,957	Bs3	17,957	○ 획지분할 가능
Bs4	Bs4	16,176	Bs4	16,176	○ 획지분할 가능
계	-	68,098	-	68,098	-

7) 상업시설용지(Cl, Cr, Cw, Cv, Cm)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랜드마크	Cl	Cl	39,238	Cl	39,238	○ 획지분할 가능 ○ 특별계획구역1
소계	-	39,238	-	39,238	-	
일반상업	Cr1	Cr1	7,736	Cr1	7,736	○ 획지분할 가능 ○ 특별계획구역1
	Cr2	Cr2	10,608	Cr2	10,608	○ 획지분할 가능 ○ 특별계획구역1
	Cr3	Cr3	8,085	Cr3	8,085	○ 획지분할 불허 ○ 특별계획구역1
	Cr4	Cr4	13,629	Cr4	13,629	○ 획지분할 가능 ○ 특별계획구역1
	Cr5	Cr5	7,592	Cr5	7,592	○ 획지분할 불허 ○ 특별계획구역1
소계	-	47,650	-	47,650	-	
수변 일반상업	Cw1	Cw1	1,222	Cw1	1,222	○ 획지분할 가능 ○ 특별계획구역1
	Cw2	Cw2	1,191	Cw2	1,191	○ 획지분할 가능 ○ 특별계획구역1
	Cw3	Cw3	554	Cw3	554	○ 획지분할 불허 ○ 특별계획구역1
	Cw4	Cw4	14,773	Cw4	14,773	○ 획지분할 가능 ○ 특별계획구역1
	Cw5	Cw5	11,109	Cw5	11,109	○ 획지분할 가능 ○ 특별계획구역1
	Cw6	Cw6	7,314	Cw6	7,314	○ 획지분할 불허 ○ 특별계획구역2
	Cw7	Cw7	7,181	Cw7	7,181	○ 획지분할 불허 ○ 특별계획구역2
소계	-	43,344	-	43,344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미니 베니스	Cv1	Cv1	480	Cv1	480	○ 획지분할 불허 ○ 특별계획구역1
	Cv2	Cv2	242	Cv2	242	○ 획지분할 불허 ○ 특별계획구역1
	Cv3	Cv3	500	Cv3	500	○ 획지분할 불허 ○ 특별계획구역1
	Cv4	Cv4	3,225	Cv4	3,225	○ 획지분할 가능 ○ 특별계획구역1
	Cv5	Cv5	357	Cv5	357	○ 획지분할 불허 ○ 특별계획구역1
	Cv6	Cv6	284	Cv6	284	○ 획지분할 불허 ○ 특별계획구역1
	Cv7	Cv7	1,148	Cv7	1,148	○ 획지분할 불허 ○ 특별계획구역1
	Cv8	Cv8	210	Cv8	210	○ 획지분할 불허 ○ 특별계획구역1
	Cv9	Cv9	801	Cv9	801	○ 획지분할 불허 ○ 특별계획구역1
	Cv10	Cv10	2,192	Cv10	2,192	○ 획지분할 가능 ○ 특별계획구역1
	Cv11	Cv11	1,409	Cv11	1,409	○ 획지분할 가능 ○ 특별계획구역1
	Cv12	Cv12	3,566	Cv12	3,566	○ 획지분할 가능 ○ 특별계획구역1
	Cv13	Cv13	696	Cv13	696	○ 획지분할 불허 ○ 특별계획구역1
	Cv14	Cv14	3,395	Cv14	3,395	○ 획지분할 가능 ○ 특별계획구역1
	Cv15	Cv15	4,064	Cv15	4,064	○ 획지분할 가능 ○ 특별계획구역1
	Cv16	Cv16	873	Cv16	873	○ 획지분할 불허 ○ 특별계획구역1
	Cv17	Cv17	1,634	Cv17	1,634	○ 획지분할 불허 ○ 특별계획구역1
	Cv18	Cv18	2,695	Cv18	2,695	○ 획지분할 가능 ○ 특별계획구역1
소계	-	27,771	-	27,771	-	
미니 말리부	Cm1	Cm1	16,662	Cm1	16,662	○ 획지분할 가능 ○ 특별계획구역2
	Cm2	Cm2	37,599	Cm2	37,599	○ 획지분할 가능 ○ 특별계획구역2
소계	-	54,261	-	54,261	-	
총계	-	212,264	-	212,264	-	

8) 산업시설용지(Ki)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Ki17	Ki17	74,746	Ki17	74,746	○ 획지분할 가능
Ki18	Ki18	78,868	Ki18	78,868	○ 획지분할 가능
Ki19	Ki19	345,115	Ki19	345,115	○ 획지분할 가능
Ki20	Ki20	171,988	Ki20	171,988	○ 획지분할 가능
Ki21	Ki21	135,936	Ki21	135,936	○ 획지분할 가능
Ki22	Ki22	39,780	Ki22	39,780	○ 획지분할 가능
Ki23	Ki23	63,052	Ki23	63,052	○ 획지분할 가능
계	-	909,485	-	909,485	-

9) 연구용지(R&D)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D1	R&D1	10,009	R&D1	10,009	○ 획지분할 가능
R&D2	R&D2	60,229	R&D2	60,229	○ 획지분할 가능
R&D3	R&D3	36,627	R&D3	36,627	○ 획지분할 가능
R&D4	R&D4	71,254	R&D4	71,254	○ 획지분할 가능
R&D5	R&D5	26,579	R&D5	26,579	○ 획지분할 가능
R&D6	R&D6	51,850	R&D6	51,850	○ 획지분할 가능
R&D7	R&D7	52,560	R&D7	52,560	○ 획지분할 가능
R&D8	R&D8	56,883	R&D8	56,883	○ 획지분할 가능
R&D9	R&D9	54,179	R&D9	54,179	○ 획지분할 가능
R&D10	R&D10	42,605	R&D10	42,605	○ 획지분할 가능
R&D11	R&D11	30,802	R&D11	30,802	○ 획지분할 가능
R&D12	R&D12	9,893	R&D12	9,893	○ 획지분할 가능
R&D13	R&D13	5,721	R&D13	5,721	○ 획지분할 가능
R&D14	R&D14	14,917	R&D14	14,917	○ 획지분할 가능
R&D15	R&D15	18,398	R&D15	18,398	○ 획지분할 가능
계	-	542,506	-	542,506	-

10) 교육연구용지(Er)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Er1	Er1	141,291	Er1	141,291	○ 획지분할 불허
Er2	Er2	225,095	Er2	225,095	○ 획지분할 불허
계	-	366,386	-	366,386	-

11) 기타시설용지

■ 학교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유1	유1	3,000	유1	3,000	○ 획지분할 불허
유2	유2	3,014	유2	3,014	○ 획지분할 불허
유3	유3	3,012	유3	3,012	○ 획지분할 불허
유4	유4	3,030	유4	3,030	○ 획지분할 불허
유5	유5	3,000	유5	3,000	○ 획지분할 불허
초1	초1	15,047	초1	15,047	○ 획지분할 불허
초2	초2	14,042	초2	14,042	○ 획지분할 불허
초3	초3	14,043	초3	14,043	○ 획지분할 불허
초4	초4	14,107	초4	14,107	○ 획지분할 불허
초5	초5	14,000	초5	14,000	○ 획지분할 불허
중1	중1	15,000	중1	15,000	○ 획지분할 불허
중2	중2	15,001	중2	15,001	○ 획지분할 불허
중3	중3	15,000	중3	15,000	○ 획지분할 불허
고1	고1	15,001	고1	15,001	○ 획지분할 불허
계	-	146,297	-	146,297	-

■ 공공청사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청사1	청사1	1,000	청사1	1,000	○ 획지분할 불허
청사2	청사2	32,507	청사2	32,507	○ 획지분할 불허
청사3	청사3	1,277	청사3	1,277	○ 획지분할 불허
청사4	청사4	5,201	청사4	5,201	○ 획지분할 불허 ○ 특별계획구역1
청사5	청사5	1,500	청사5	1,500	○ 획지분할 불허 ○ 특별계획구역1
청사6	청사6	14,139	청사6	14,139	○ 획지분할 불허 ○ 특별계획구역1
계	-	55,624	-	55,624	-

■ 문화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문화1	문화1	3,089	문화1	3,089	○ 획지분할 불허
문화2	문화2	3,252	문화2	3,252	○ 획지분할 불허 ○ 특별계획구역2
문화3	문화3	4,412	문화3	4,412	○ 획지분할 불허 ○ 특별계획구역2
계	-	10,753	-	10,753	-

■ 종교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종1	종1	5,704	종1	5,704	○ 획지분할 불허
종2	종2	2,631	종2	2,631	○ 획지분할 불허
계	-	8,335	-	8,335	-

■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주1	주1	3,088	주1	3,088	○ 획지분할 불허
주2	주2	5,902	주2	5,902	○ 획지분할 불허
주3	주3	1,967	주3	1,967	○ 획지분할 불허
주4	주4	5,191	주4	5,191	○ 획지분할 불허
주5	주5	1,827	주5	1,827	○ 획지분할 불허
주6	주6	1,826	주6	1,826	○ 획지분할 불허
주7	주7	2,678	주7	2,678	○ 획지분할 불허
주8	주8	3,884	주8	3,884	○ 획지분할 불허
주9	주9	2,373	주9	2,373	○ 획지분할 불허
주10	주10	2,373	주10	2,373	○ 획지분할 불허
주11	주11	5,403	주11	5,403	○ 획지분할 불허
주12	주12	2,356	주12	2,356	○ 획지분할 불허
주13	주13	4,461	주13	4,461	○ 획지분할 불허 ○ 특별계획구역1
주14	주14	6,115	주14	6,115	○ 획지분할 불허 ○ 특별계획구역1
주15	주15	4,856	주15	4,856	○ 획지분할 불허 ○ 특별계획구역1
주16	주16	2,599	주16	2,599	○ 획지분할 불허 ○ 특별계획구역2
주17	주17	2,728	주17	2,728	○ 획지분할 불허 ○ 특별계획구역2
주18	주18	2,106	주18	2,106	○ 획지분할 불허 ○ 특별계획구역2
주19	주19	2,861	주19	2,861	○ 획지분할 불허 ○ 특별계획구역2
주20	주20	1,942	주20	1,942	○ 획지분할 불허 ○ 특별계획구역2
주21	주21	3,998	주21	3,998	○ 획지분할 불허 ○ 특별계획구역2
계	-	70,534	-	70,534	-

■ 충전·주유소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주유1	주유1	2,580	주유1	2,580	○ 획지분할 불허
주유2	주유2	2,206	주유2	2,206	○ 획지분할 불허
계	-	4,786	-	4,786	-

■ 트램역사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트램	트램	15,001	트램	15,001	○ 획지분할 불허

■ 자동차정류장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정류장	정류장	23,810	정류장	23,810	○ 획지분할 불허

■ 공동구용지(공)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공	공	2,243	공	2,243	○ 획지분할 불허

■ 유지관리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관리	관리	4,365	관리	4,365	○ 획지분할 불허

■ 폐기물처리시설용지(집하)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집하1	집하1	3,284	집하1	3,284	○ 획지분할 불허
집하2	집하2	2,799	집하2	2,799	○ 획지분할 불허
계	-	6,083	-	6,083	-

■ 전기공급설비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전기1	전기1	17,493	전기1	17,493	○ 획지분할 불허
전기2	전기2	2,603	전기2	2,603	○ 획지분할 불허
계	-	20,096	-	20,096	-

■ 우수중계펌프장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우수1	우수1	1,206	우수1	1,206	○ 획지분할 불허
우수2	우수2	1,279	우수2	1,279	
계	-	2,485	-	2,485	-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기정

1) 단독주택용지(Rs)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Rs1 ~ Rs4	용도	허용 용도	○ 단독주택(가목)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	○ 12m 이하(2층 이하)	
	배치	○ 도로변을 건축물의 전면방향으로 유도하고, 건축물 일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남향 배치 ○ 안마당 : 수로, 녹지 등과 연계되도록 배치 (권장) ○ 접안시설 : 안마당과 연계되도록 수변 배치 (권장)	
	형태	○ 다양한 수변 건축물유형 적용을 통하여 수로와 연계한 고품격 정주공간 조성 - 직선수로 종점부에 위치한 Rs2-12 ~ Rs2-14는 입면특화 (권장) ○ 테라스 : 수로, 녹지 등을 향하도록 설치 (권장) ○ 지 붕 : 경사지붕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배는 0.5이상~0.8이하로 인접한 건축물의 물매와 조화롭도록 함 ○ 옥상부분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1층부의 높이 : 4m(허용범위 ±0.5m)로 계획하며, 인접대지 1층부의 높이와 차이는 0.5m 이내로 함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단독주택용지 계획인구 지표 >

구분	면적(㎡)	주택평균면적(㎡/호)	수용호수(세대)	인구수(인)	인구밀도(인/ha)
Rs1	9,403(10,925)	485	16	41	44
Rs2	16,855(20,160)	485	28	72	43
Rs3	10,720(13,342)	485	15	38	35
Rs4	8,181(9,569)	485	15	38	46
계	45,159(53,996)	-	74	189	42

※ 가구당 인구수 : 2.55인, ()는 블록형 단독주택 면적임

2) 타운하우스(Th)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Th1 ~ Th2	용도	허용 용도 ○ 공동주택(나목 및 다목, 테라스하우스 포함) - 건축물의 지하층은 주거용도 불허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20m 이하(단, 경사지붕 설치시 25m 이하)
	배치	○ 수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와 인접한 구간에는 지상1층~2층은 테라스하우스 배치 (권장) ○ 외부공간 및 동선계획은 보행자 중심으로 계획
	형태	○ 가로경관과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 ○ 지붕 - 경사지붕을 설치(권장)하며, 인접한 건축물의 물매와 통일 ○ 옥상부분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평지붕시 옥상녹화를 조성하여 도심의 녹화공간 최대한 확보 (권장)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건축한계선 : 주요가로변	

< 타운하우스용지 계획인구 지표 >

구분	면적(㎡)	주택평균면적 (㎡/호)	수용호수 (세대)	인구수 (인)	인구밀도 (인/ha)
Th1	37,653	106	294	750	199
Th2	15,953	106	140	357	224
계	53,606	-	434	1,107	207

※ 가구당 인구수 : 2.55인

3) 공동주택용지(Rc)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Rc1 ~ Rc14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가목) ○ 「주택법」 제2조 제8호 및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가 정하는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155% 이하 Rc2
			175% 이하 Rc11, Rc12, Rc13, Rc14
			185% 이하 Rc4
			195% 이하 Rc1, Rc3, Rc5, Rc6, Rc10
		허용용적률	200% 이하 Rc7, Rc8, Rc9
			160% 이하 Rc2
			180% 이하 Rc11, Rc12, Rc13, Rc14
			190% 이하 Rc4
	높이	200% 이하 Rc1, Rc3, Rc5, Rc6, Rc10	
		205% 이하 Rc7, Rc8, Rc9	
		48m 이하 Rc11, Rc12, Rc13, Rc14	
		78m 이하 Rc1, Rc2, Rc3, Rc4, Rc7, Rc10	
	높이	130m 이하 Rc5, Rc6, Rc8, Rc9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내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조성을 위해 최고높이 주거동과 최저높이 주거동의 차이는 10개층 이상으로 함(단, 복합개발용지면 Rc11~Rc14에 한하여 5개층 이상으로 함) ○ 학교 및 복합개발용지 인접구간 : 중저층(48m이하) 주거동 배치, 교육환경평가에 의해 별도로 제시된 사항을 따르도록 함 ○ 근린생활시설 및 복합개발용지 인접구간 : 부대복리시설 배치 ○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축 및 개방감 확보 : 개방지수(50%이상) 확보 주거동 배치 ○ 단지조망 및 수변경관 확보 : 수변경관형 주거동 배치 ○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이격거리 및 직각배치 등의 소음저감 방안을 검토반영 ○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 일조시간 승인한도를 만족하도록 배치
			형태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Rc1 ~ Rc14	형태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 : 주보행동선의 결절점에 가능한 집단배치하고 경사지붕 (권장) - 어린이놀이터 : 분산배치하되, 충분한 일조량이 확보되도록 함 - 근린생활시설 : 단지내 진출입구변에 배치하고 경사지붕 (권장) - 1층부의 높이 : 4.5m(허용범위 ±0.5m)로 계획하며, 인접대지 1층부의 높이와 차이는 0.5m 이내로 함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6m 건축한계선 : 주요가로변 - 9m 건축한계선 : 학교연접구간

< 공동주택용지 계획인구 지표 >

구분	면적(m ²)	주택평균 면적 (m ² /호)	수용호수 (세대)	인구수 (인)	인구밀도 (인/ha)
Rc1	33,079	100	659	1,680	508
Rc2	37,240	100	595	1,517	407
Rc3	45,921	100	916	2,335	508
Rc4	41,790	100	792	2,019	483
Rc5	64,856	100	1,290	3,289	507
Rc6	65,743	100	1,313	3,348	509
Rc7	76,216	100	1,531	3,904	512
Rc8	96,444	100	1,935	4,934	512
Rc9	105,507	100	2,155	5,496	521
Rc10	85,966	100	1,717	4,379	509
Rc11	69,390	100	1,254	3,197	461
Rc12	74,801	100	1,345	3,430	459
Rc13	45,529	100	824	2,102	462
Rc14	39,667	100	711	1,814	457
계	882,149	-	17,037	43,444	492

※ 가구당 인구수 : 2.55인

<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Incentive) >

인센티브 가산조항	인센티브(%)	비 고
국제 및 국내 현상설계 당선작	2	•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 정부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2등급	
	3등급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인센티브 가산조항 준수시)

4) 근린생활시설용지(Cn)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Cn1 ~ Cn18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라목 중 안마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가목)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가목, 나목, 다목, 마목, 바목) ○ 노유자시설(나목 중 노인복지주택) ○ 수련시설 ○ 운동시설(가목 중 옥외골프연습장) ○ 업무시설(나목 중 오피스텔) ○ 숙박시설 ○ 위탁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나목, 다목, 라목, 마목, 바목, 사목, 아목)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 ○ 발전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관광 휴게시설 ○ 장례식장 ○ 야영장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허용도
Cn19 ~ Cn20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근린생활시설(라목 중 안마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 노유자시설(나목 중 노인복지주택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Cn1 ~ Cn20	건폐율	○ 50% 이하	Cn16 ~ Cn20
		○ 60% 이하	Cn1 ~ Cn15
	용적률	○ 120% 이하	Cn16 ~ Cn20
		○ 200% 이하	Cn1 ~ Cn15
	높이	○ 12m 이하	Cn16 ~ Cn20
		○ 16m 이하	Cn1 ~ Cn15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속되는 벽면은 매스나 재료의 변화 또는 분절을 통해 보행자에게 친숙한 가로경관 조성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배치 ○ 공공보행통로에 접한 건축물은 공공보행통로로부터 건축물에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면의 의장, 재료는 주변건물과의 조화 유지 ○ 가로환경의 활성화를 위해 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시형 벽면 : 도로에 접한 벽면적의 50%이상 투시형 벽면으로 처리 - 투시형 셔터 :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개별 설치 불허 ○ 가로변 미관 향상을 위하여 건축면적 50% 이상의 필로티구조 불허 ○ 지붕 : 경사지붕을 사용할 경우 인접한 건축물의 물매와 통일 ○ 옥상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옥상녹화를 조성하여 도심의 녹화공간 최대한 확보 (권장) ○ 1층부의 높이 : 4.5m로 하며, 인접대지 1층부의 높이와 차이는 0.5m 이내로 함 (단, Cn2~Cn5, Cn16~Cn20에 한함) ○ 1층의 바닥높이 :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는 10cm 이내로 함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m 건축한계선 : 주요가로변 	

5) 주상복합용지(Rm)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Rm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단, 주거부분의 면적이 전체면적의 70% 이하인 것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라목 중 안마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나목 중 마권관련시설, 다목, 마목) ○ 종교시설 ○ 판매시설(가목) ○ 운수시설 ○ 의료시설(가목 중 정신병원, 나목, 부수시설 중 장례식장) ○ 교육연구시설(가목, 나목, 다목, 마목, 바목) ○ 수련시설(나목, 다목, 라목) ○ 운동시설(가목 중 옥외골프연습장, 다목) ○ 숙박시설(가목, 다목, 라목) ○ 위탁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다목, 라목, 마목, 바목, 사목, 아목)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 ○ 발전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관광 휴게시설(가목, 나목, 라목, 마목, 바목) ○ 장례식장 ○ 야영장 시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100m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주거기능의 건축물은 전면도로변 저층부에 계획하며,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배치 ○ 주거기능의 건축물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소음저감 방안을 검토반영 ○ Open Space의 집중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배치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Rm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동의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의 생활여건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거환경요구의 원활한 수용을 위해 다음의 유통형 건축구조 및 설비구조 도입 (권장) • 기본구조체의 전면철거 없이 리모델링이 가능한 구조를 갖는 세대 또는 주거동 • 설비구조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를 갖는 세대 또는 주거동 • 단위세대의 평면변화가 용이한 구조를 갖는 세대 • 인접세대와의 부분 또는 전체 구조를 갖는 통합이 가능한 세대 ○ 주거동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동의 형태 : 입면상의 차별화된 외관 및 탑상형 배치 (권장) ○ 입면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동의 입면 : 색채, 창호·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에 의한 입면변화 (권장) - 비주거동의 입면분절로 가로활성화 유도 (권장) - 건축물의 외벽면의 의장, 재료는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 고려 ○ 가로활성화를 위해 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시형 벽면 : 도로 및 보행자도로 접한 벽면적의 50%이상 - 투시형 셔터 :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개별 설치 불허 ○ 옥상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옥상녹화를 조성하여 도심의 녹화공간을 최대한 확보(권장)하며, 영업행위를 금지함 ○ 1층의 바닥높이 :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 10cm 이내로 함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m 건축한계선 : 주요가로변 - 9m 건축한계선 : 주요가로변

〈 주상복합용지 계획인구 지표 〉

구분	면적(㎡)	주택평균 면적(㎡/호)	수용호수 (세대)	인구수 (인)	인구밀도 (인/ha)
Rm	46,263	100	966	2,464	533

※ 가구당 인구수 : 2.55인

6) 복합개발용지(Md)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Md1 ~ Md6	권장 용도	[수로변 2층이하 전면권장용도] ○카페, 음식점, 소규모 전시 및 공연장, 판매점 등
	용도 불허 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 단, 주거부분의 면적이 전체면적의 30% 이하인 것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라목 중 안마원)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나목 중 음식점 및 마권관련시설, 다목, 마목) ○종교시설 ○판매시설(가목)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가목, 나목, 다목, 마목, 바목) ○수련시설(나목, 다목, 라목) ○운동시설(가목 중 옥외골프연습장, 다목) ○숙박시설(가목, 다목, 라목)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라목, 마목, 바목) ○장례식장 ○야영장 시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허용 용도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40m 이하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Md1 ~ Md6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먼스케일의 연속적인 가로경관 형성 : 연도형 배치구간 지정 ○ 상기는 전면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하며, 내부공간에 보행통로 조성하여 보행활성화 유도 ○ 연속되는 벽면은 매스나 재료의 변화 또는 분절을 통해 보행자에게 친숙한 가로경관 조성 ○ Open Space의 집중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배치 ○ 수변상권 및 보행 활성화를 위해 공공공지와 연계한 아케이드 배치 ○ 보행자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보행자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배치 ○ 보행환경의 제고와 개방감 확보, 주거부분 소음 저감을 위해 건축선(3m~8m) 지정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동의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의 생활여건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거환경요구의 원활한 수용을 위하여 다음의 융통형 건축구조 및 설비구조 도입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구조체의 전면철거 없이 리모델링이 가능한 구조를 갖는 세대 또는 주거동 • 설비구조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를 갖는 세대 또는 주거동 • 단위세대의 평면변화가 용이한 구조를 갖는 세대 • 인접세대와의 부분 또는 전체 통합이 가능한 구조를 갖는 세대 ○ 주거동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동의 형태 : 입면상의 차별화된 외관 및 탑상형 배치 (권장) ○ 입면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동의 입면 : 색채, 창호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에 의한 입면변화 유도 (권장) - 비주거동의 입면분절로 가로활성화 유도 - 건축물의 외벽면의 의장, 재료는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 고려 ○ 가로활성화를 위하여 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서터를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시형 벽면 : 도로 및 보행자도로 접한 벽면적의 50%이상 - 투시형 서터 : 서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개별 설치 불허 ○ 옥상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옥상녹화를 조성하여 도심의 녹화공간을 최대한 확보(권장)하며 영업행위를 금지함 ○ 1층의 바닥높이 :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는 10cm 이내로 함 ○ 상가동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변 연도형 상가의 높이 : 20m 이하로 계획하며, 판상형 배치 (권장) - 지붕 : 수변 연도형 상가는 경사지붕을 사용하며, 인접한 건축물의 물매와 통일 (권장) - 1층부의 높이 : 4.5m(허용범위 ±0.5m)로 계획하며, 인접대지 1층부의 높이와 차이는 0.5m 이내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 1층부의 높이 : 4.5m • 지상 1층부의 높이 : 4.5m(허용범위 ±0.5m) • 지상 3층부의 높이 : 12m - 수로에 접한 3층에는 테라스(폭 3m 이상) 설치 - 수변 및 도로변 사이의 보행통로에 접한 상가동은 보행통로로부터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Md1 ~ Md6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건축한계선 : 주요가로변 - 6m 건축한계선 : 주요가로변 ○ 기타 : 공공공지(10m) 연결구간 - 5m 벽면지정선(지하1층) - 5m 건축지정선 - 8m 벽면한계선(지상3층 이상) : 테라스(3m이상) 확보

〈 복합개발용지 계획인구 지표 〉

구분	면적(㎡)	주택평균 면적(㎡/호)	수용호수 (세대)	인구수 (인)	인구밀도 (인/ha)
Md1	16,541	100	150	383	232
Md2	26,881	100	242	618	230
Md3	18,459	100	167	426	231
Md4	16,805	100	152	387	230
Md5	26,882	100	242	617	230
Md6	14,032	100	126	321	229
계	119,600	-	1,079	2,752	230

※ 가구당 인구수 : 2.55인

7) 일반상업용지(CI, Cr, Cw, Cv)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CI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라목 중 안마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나목 중 마권관련시설, 다목, 마목 중 동물원) ○ 종교시설 ○ 판매시설(가목) ○ 운수시설 ○ 의료시설(가목 중 정신병원, 나목, 부수시설 중 장례식장) ○ 교육연구시설(가목) ○ 노유자시설(나목 중 노인복지주택) ○ 수련시설 ○ 운동시설(가목 중 옥외골프연습장) ○ 업무시설(나목 중 오피스텔) ○ 숙박시설(가목 중 일반숙박시설, 다목, 라목)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다목, 라목, 마목, 바목, 사목, 아목)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 ○ 발전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관광 휴게시설 ○ 장례식장 ○ 야영장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600% 이하
	높이	○ 130m 이상 ~ 300m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배치 ○ Open Space의 집중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배치 ○ 블록 개발시 단지내 전면도로와 이면도로를 연결하는 보행통로 1개소 이상 확보 ○ 단, 획지분할 개발시 대지분할가능선으로부터 3m 이상 이격하여 건축물 배치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CI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입면·높이·형태 등에서 주변건축물과 차별화된 특색 있는 디자인 유도 ○ 가로환경의 활성화를 위해 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시형 벽면 : 도로에 접한 벽면적의 50%이상 투시형 벽면으로 처리 - 투시형 셔터 :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개별 설치 불허 ○ 지붕 : 경사지붕을 사용할 경우 인접한 건축물의 물매와 통일 (권장) ○ 옥상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옥상녹화를 조성하여 도심의 녹화공간 최대한 확보 (권장) ○ 1층의 바닥높이 :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는 10cm 이내로 함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m, 6m 건축한계선 : 주요가로변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Cr1 ~ Cr12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라목 중 안마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나목 중 마권관련시설, 다목, 마목 중 동물원) ○ 종교시설 ○ 판매시설(가목) ○ 운수시설 ○ 의료시설(가목 중 정신병원, 나목, 부수시설 중 장례식장) ○ 교육연구시설(가목) ○ 노유자시설(나목 중 노인복지주택) ○ 수련시설 ○ 운동시설(가목 중 옥외골프연습장) ○ 업무시설(나목 중 오피스텔) ○ 숙박시설(가목, 다목, 라목) - 단, Cr1, Cr4~Cr9, Cr12는 가목 중 생활숙박시설 제외 ○ 위탁시설 - 단, Cr7~Cr12는 제외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다목, 라목, 마목, 바목, 사목, 아목)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 ○ 발전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관광 휴게시설 ○ 장례식장 ○ 야영장 시설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0%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 이상 ~ 50m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배치 ○ Open Space의 집중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배치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Cr1 ~ Cr12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환경의 활성화를 위해 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시형 벽면 : 도로에 접한 벽면적의 50%이상 투시형 벽면으로 처리 - 투시형 셔터 :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개별 설치 불허 ○지붕 : 경사지붕을 사용할 경우 인접한 건축물의 물매와 통일 (권장) ○옥상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옥상녹화를 조성하여 도심의 녹화공간 최대한 확보 (권장) ○1층의 바닥높이 :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는 10cm 이내로 함 ○1층부의 높이 (Cr10, Cr11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m(허용범위 ±0.5m)로 계획하며, 인접대지 1층부의 높이와 차이는 0.5m 이내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 1층부의 높이 : 4.5m • 지상 1층부의 높이 : 4.5m(허용범위 ±0.5m) • 지상 3층부의 높이 : 12m (수로에 접한 3층에는 테라스 3m이상 설치)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m, 6m 건축한계선 : 주요가로변 - 기타(복합개발용지 인접구간 : Cr10, Cr11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m 벽면지정선(지하1층) • 5m 건축지정선 • 8m 벽면한계선(지상3층 이상) : 테라스(3m이상) 확보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Cw1 ~ Cw12	권장 용도	[수로변 2층이하 전면권장용도] ○카페, 음식점, 소규모 판매점 등
	용도 불허 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라목 중 안마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나목 중 마권관련시설, 다목, 마목 중 동물원) ○ 종교시설 ○ 판매시설(가목)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가목 중 옥외골프연습장) ○ 업무시설(나목 중 오피스텔) - 단, 1~2층에는 업무시설의 입지를 금함 ○ 숙박시설(가목, 다목, 라목) - 단, Cw1~2, Cw11~12는 가목 중 생활숙박시설 제외 ○ 위탁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 ○ 발전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관광 휴게시설(라목, 마목, 바목) ○ 장례식장 ○ 야영장 시설
	허용 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20m 이상 ~ 30m 이하	
배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배치 ○ Open Space의 집중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배치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Cw1 ~ Cw12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환경의 활성화를 위해 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시형 벽면 : 도로에 접한 벽면적의 50%이상 투시형 벽면으로 처리 - 투시형 셔터 :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개별 설치 불허 ○지붕 : 경사지붕을 사용할 경우 인접한 건축물의 물매와 통일 (권장) ○옥상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옥상녹화를 조성하여 도심의 녹화공간 최대한 확보 (권장) ○1층의 바닥높이 :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는 10cm 이내로 함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m 건축한계선 : 주요가로변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Cv1 ~ Cv36	권장 용도	[수로변 2층이하 전면권장용도] ○카페, 음식점, 소규모 판매점 등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라목 중 안마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나목 중 마권관련시설, 다목, 마목 중 동물원) ○ 종교시설 ○ 판매시설(가목)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가목 중 옥외골프연습장) ○ 업무시설(나목 중 오피스텔) - 단, 1~2층에는 업무시설의 입지를 금함 ○ 숙박시설 ○ 위탁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 ○ 발전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관광 휴게시설(라목, 마목, 바목) ○ 장례식장 ○ 야영장 시설
	허용 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Cv1~Cv4 Cv6, Cv7 Cv9~Cv36	건폐율	○ 80% 이하 (높이 제한에 따른 건폐율 완화)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12m 이상 ~ 16m 이하
Cv5, Cv8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16m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Cv1 ~ Cv36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배치 ○ Open Space의 집중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배치 ○ 광장과 인접한 Cv5, Cv8은 획지분할 개발시 대지분할가능선으로부터 1m 이상 이격 배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수변 건축물 유형을 적용하여 수변과 연계한 명품 상업단지 조성 ○ 휴먼스케일 공간 조성을 위해 입면분절을 통한 시각적 안정감 구현 (권장) ○ 가로환경의 활성화를 위해 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시형 벽면 : 도로에 접한 벽면적의 70%이상 투시형 벽면으로 처리 - 투시형 셔터 :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개별 설치 불허 ○ 지붕 : 경사지붕을 사용하며, 인접한 건축물의 물매와 통일 ○ 옥상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옥상녹화를 조성하여 도심의 녹화공간 최대한 확보 (권장) ○ 1층의 바닥높이 :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는 10cm 이내로 함 ○ 1층부의 높이 : 4.5m(허용범위 ±0.5m)로 계획하며, 인접대지 1층부의 높이와 차이는 0.5m 이내로 함 ○ 미니베니스(Cv5, Cv8에 한함) 내부 광장과 연계된 아케이드 설치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m, 2m 건축한계선 : 주요가로변 - 기타(광장 연결구간 : Cv5, Cv8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m 건축지정선(지상1층) • 4m 벽면지정선(지상1층) : 지상1층 아케이드(3m) 확보

8) 지식기반제조업용지(Ki)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Ki1 ~ Ki16	지정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용도는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95% 이상 ○ 공 장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공장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제외 -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제외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제외 ○ 단, 제조공정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변경협의) 이행시 허용 ○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의한 지원시설 규모를 따름 ○ 도시형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도시형공장으로서 유치업종 분류표에 의한 용도로 하되, 도시계획조례에서 당해 용도지역에 불허하는 공장 제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공장·지식산업센터·도시형공장의 제조공정에 필요한 시설) ○ 교육연구시설(나목 및 마목, 건축연면적의 40% 이하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도시형 공장 입지기준(수질, 대기 등의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특정수질유해 물질이 발생할 경우 전량 위탁처리 시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라목 중 안마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해당 입주자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건축물 제외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가목) ○ 노유자시설(나목 중 노인복지주택) ○ 수련시설 ○ 운동시설(가목 중 옥외골프연습장) ○ 업무시설(나목 중 오피스텔)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인공수정센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은 제외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 ○ 발전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관광 휴게시설 ○ 장례식장 ○ 야영장 시설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5% 이하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Ki1 ~ Ki16	건폐율	○ 50% 이하	Ki10-Ki16
		○ 60% 이하	Ki1-Ki9
	용적률	○ 220% 이하	Ki1-Ki9
		○ 250% 이하	Ki10-Ki16
	높이	○ 20m 이하	Ki1-Ki9
		○ 60m 이하	Ki10-Ki16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와 평행하도록 배치 ○ 공원에 연접한 Ki10-Ki15(Ki13 제외)의 부용도 배치시 공원변으로 1층 및 2층에 우선 배치 (권장)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고층부 및 옥상부) 및 외관(입면)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함 (권장) ○ 건축물은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를 사용하여 일관성을 지녀야 함 단, Ki11 ~ Ki13의 입면재질은 스틸과 유리 사용 (권장) ○ 옥상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조류대체서식지변은 조류이동 안정성을 고려하여 통유리를 지양하고, 유리창 설치시 반투명 유리 및 젓빛유리, 간유리를 사용함 ○ 굴뚝·환기설비 및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 불가하며, 디자인 개선을 위해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m 건축한계선 : 주요가로변 - 10m 건축한계선(공공조경설치) : 조류대체서식지변 (Ki5, Ki6, Ki7, Ki8, Ki9) 	

9) 연구용지(R&D)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R&D1 ~ R&D19	지정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용도는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등 제외)의 90% 이상 ○ 교육연구시설(나목 및 마목, 건축연면적의 5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업종의 교육원, 연구소 단, 도시형 공장 입지기준(수질, 대기 등의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특정수질 유해 물질이 발생할 경우 전량 위탁처리 시 허용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건축연면적의 40% 이하로 함) ○ 공장(건축연면적의 40% 이하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공장(도시형공장)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라목 중 안마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나목 중 예식장 및 마권관련시설, 다목, 마목 중 동물원) ○ 종교시설 ○ 판매시설(가목, 나목)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가목) ○ 노유자시설(나목 중 노인복지주택) ○ 수련시설 ○ 운동시설(가목 중 옥외골프연습장)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시설(나목 중 오피스텔) ○ 숙박시설 ○ 위탁시설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 ○ 발전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관광 휴게시설 ○ 장례식장 ○ 야영장 시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 「악취방지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10% 이하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R&D1 ~ R&D19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20m 이하
	배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배치
	형태	○ 형태(고층부 및 옥상부) 및 외관(입면)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함 (권장) ○ 건축물은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하여 일관성을 지녀야 함 ○ 옥상부분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옥상녹화를 조성하여 도심의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 (권장) ○ 굴뚝·환기설비 및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 불가하며, 디자인 개선을 위해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1층 바닥높이는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 10cm 이내로 함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건축한계선 : 주요가로변 - 10m 건축한계선(공공조경설치) : 조류대체서식지변 (R&D15, R&D16, R&D17, R&D18, R&D19)

10) 교육연구용지(Er)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Er	용도	허용 용도 ○ 교육연구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5%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50m 이하
	배치	○ 건축물의 저층부는 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
	형태	○ 형태(고층부 및 옥상부) 및 외관(입면)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함 (권장) ○ 대학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건축물 및 상징조형물을 조성하도록 함 (권장) ○ 옥상부분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옥상녹화를 조성하여 도심의 녹화공간 최대한 확보 (권장)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6m 건축한계선 : 주요가로변 - 9m 건축한계선 : 주요가로변

11) 교육연구용지(Er)

■ 교육시설용지(Sp, Se, Sm, Sh)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Sp1, Sp2 Se1~Se4 Sm1, Sm2 Sh1, Sh2	허용용도	○ 교육연구시설(가목 중 유치원)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의 학교(초등학교)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의 학교(중학교)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의 학교(고등학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Se1, Se4, Sm1, Sm2, Sh1, Sh2
		○ 60% 이하	Sp1, Sp2
	용적률	○ 200% 이하	Sp1, Sp2, Se1, Se4, Sm1, Sm2, Sh1, Sh2
	높이	○ 20m이하	Sp1, Sp2
		○ 40m이하	Sp1, Sp2, Se1, Se4, Sm1, Sm2, Sh1, Sh2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한 공동주택 및 공원과 연계하여 배치 ○ 교사동은 가급적 각 도로로부터 직각 또는 평행으로 배치하되 부지여건 및 일조를 감안하여 배치하고 운동장은 운동공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배치 ○ 폭 20m 이상 도로변에는 강의동/교실동의 배치 지양 및 소음과 무관한 시설 배치 (권장) ○ 교사동은 환경영향평가 등에 의해 별도의 이격거리가 제시될 경우는 그에 따르도록 함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설의 성격을 부각할 수 있는 형태 (권장) ○ 옥상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옥상녹화를 조성하여 도심의 녹화공간을 최대한 확보 (권장) ○ 주거지(공동주택)와 인접한 부분의 담장에는 학생의 원활한 보행을 위해 보행연결통로 설치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공공청사(Go)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Go1 ~ Go5	용도	지정 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의 공공청사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30% 이하
Go6 ~ Go8	용도	지정 용도	▶ 다음의 용도는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70% 이상 ○ 제1종 근린생활시설(바목) ○ 업무시설(가목)
		불허 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라목 중 안마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나목 중 마권관련시설, 다목, 마목 중 동물원) ○ 판매시설(가목, 나목)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가목) ○ 노유자시설(나목 중 노인복지주택) ○ 수련시설(나목, 다목, 라목) ○ 운동시설(가목 중 옥외골프연습장) ○ 업무시설(나목 중 오피스텔)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 ○ 발전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관광휴게시설 ○ 장례식장 ○ 야영장 시설
		허용 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30% 이하
Go1 ~ Go8	건폐율	○ 60% 이하	Go1, Go2, Go3, Go4, Go5, Go6, Go7, Go8
	용적률	○ 200% 이하	Go1, Go2, Go3, Go6
		○ 250% 이하	Go4, Go5, Go7, Go8
	높이	○ 16m이하	Go1, Go2, Go3, Go6
		○ 50m이하	Go4, Go5, Go7, Go8
	배치	○ 주차장 및 주차출입구 등 옥외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	
	형태	○ 공공청사의 인지성을 고려한 특화된 외관조성 (권장)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함 ○ 옥상부분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옥상녹화를 조성하여 도심의 녹화공간 최대한 확보 (권장) ○ 보행자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은 보행자도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 1층의 바닥높이 :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 10cm 이내로 함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6m 건축한계선 : 주요가로변		

■ 문화시설용지(Cf)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Cf1	지정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용도는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등 제외)의 50%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나목 중 예식장 및 마권관련시설, 다목, 마목 중 동물원 제외) - 조류서식지 홍보관 등
	용도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라목 중 안마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나목 중 예식장 및 마권관련시설, 다목, 마목 중 동물원) ○ 종교시설 ○ 판매시설(가목, 나목)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수련시설(나목, 다목, 라목) ○ 운동시설(가목 중 옥외골프연습장) ○ 업무시설(나목 중 오피스텔)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관광 휴게시설 ○ 장례식장 ○ 야영장 시설
	허용 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50% 이하
Cf2 ~ Cf4	지정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용도는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등 제외)의 50%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나목 중 예식장 및 마권관련시설, 다목, 마목 중 동물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가목, 다목, 마목 제외)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용도는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등 제외)의 50% 이하 ○ 제1종 근린생활시설(라목 중 안마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가목) ○ 운동시설(가목 중 골프장 및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나목 중 오피스텔 제외) ○ 관광휴게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Cf5 ~ Cf8	용도	지정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용도는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50%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나목 중 예식장 및 마권관련시설, 다목, 마목 중 동물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가목, 다목, 마목 제외)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라목 중 안마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나목 중 예식장 및 마권관련시설, 다목, 마목 중 동물원) ○ 종교시설 ○ 판매시설(가목, 나목)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수련시설(나목, 다목, 라목) ○ 운동시설(가목 중 옥외골프연습장) ○ 업무시설(나목 중 오피스텔)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관광 휴게시설(라목, 마목, 바목) ○ 장례식장 ○ 야영장 시설
		허용 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50% 이하
Cf1 ~ Cf8	건폐율	○ 60% 이하	Cf1, Cf2, Cf3, Cf4, Cf5, Cf6, Cf7, Cf8
	용적률	○ 200% 이하	Cf1, Cf2, Cf3, Cf4, Cf5, Cf6, Cf7, Cf8
	높이	○ 24m이하	Cf1, Cf2, Cf4
		○ 30m이하	Cf3, Cf5, Cf6, Cf7, Cf8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 ○ 수변 조망을 고려하여 통경 확보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변 조망차폐 및 압박감을 주는 장대한 입면 지양 (권장)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옥상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옥상녹화를 조성하여 도심의 녹화공간 최대한 확보 (권장) ○ 1층 바닥높이 :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 10cm 이내로 함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m 건축한계선 : 주요가로변 		

■ 종교시설용지(RI)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R11 R12	용도	지정 용도 ○종교시설(가목) ○노유자시설(가목) - 단,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30% 이하
		불허 용도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40m이하(종탑 포함)
	배치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
	형태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조화를 이루어야 함 ○종교시설 표식 등은 건축물과 일체형으로 설치 - 종교시설의 네온이나 백열등류의 장식 등 설치 금지 - 외부 조명의 색채는 원색사용 금지, 무채색 설치 (권장) ○불필요한 장식이나 과도한 구조물 설치를 지양 ○옥상에 설치되는 조명은 눈부심이 없는 간접조명 사용 ○1층 바닥높이 :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 10cm 이내로 함
	색채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건축한계선 - 3m 건축한계선 : 주요가로변	

■ 주차장용지(P1)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P11 ~ P17	지정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용도는 건축연면적의 70% 이상(단 P12, P13의 경우 80% 이상)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함)
	용도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라목 중 안마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나목중 마권관련시설, 다목, 마목 중 동물원) - 단, P12-P14, P17은 나목 중 음식점 제외 ○ 종교시설 ○ 판매시설(가목)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가목 중 옥외골프연습장) ○ 업무시설(나목 중 오피스텔) ○ 숙박시설 ○ 위탁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다목, 라목, 마목, 바목, 사목, 아목)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관광 휴게시설 ○ 장례식장 ○ 야영장 시설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건축연면적의 30% 이하(단 P12, P13의 경우 20% 이하)
P18 ~ P116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평면주차장에 한함)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P11 ~ P116	건폐율	-	P18, P19, P110, P111, P112, P113, P114, P115, P116
		○ 90% 이하	P11, P12, P13, P14, P15, P16, P17
	용적률	-	P18, P19, P110, P111, P112, P113, P114, P115, P116
		○ 200% 이하	P11
		○ 300% 이하	P15, P16
		○ 400% 이하	P17
		○ 500% 이하	P14
		○ 600% 이하	P12, P13
	높이	-	P18, P19, P110, P111, P112, P113, P114, P115, P116
		○ 16m 이하	P11
		○ 20m 이하	P15, P16
		○ 40m 이하	P12, P13, P14
	배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저층부의 형태·색채·재료 등은 주변지역의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가로의 연속성을 유지 ○ 마감재료 없이 주차장의 구조가 그대로 노출되는 외관의 형태를 지양하며, 편칭메탈, 메탈 패브릭, 반투명 유리 등을 사용하여 주차장의 인지성을 높일 수 있는 외관(권장) ○ 주차장의 시인성 확보를 위한 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며, 가로변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 ○ 옥상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옥상공간을 정원화 하여 도심의 녹화공간 최대한 확보(권장)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m, 6m 건축한계선 : 주요가로변 - 10m 건축한계선(공공조경설치) : 조류대체서식지변(P16에 한함) - 기타(복합개발용지 인접구간 : P17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m 벽면지정선(지하1층) • 5m 건축지정선 • 8m 벽면한계선(지상3층 이상) : 테라스(3m 이상) 확보 	

■ 주유소용지(Gs)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Gs1	지정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가목 및 나목)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의 기준에 따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의 기준에 따름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Gs2	지정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가목)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의 기준에 따름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Gs1 Gs2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옥상부분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 3m 건축한계선 : 주요가로변

■ 트램역사용지(Tg)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Tg	용도	지정 용도	○ 운수시설(나목 중 철도)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	○ 16m 이하	
	배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	
	형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옥상부분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건축한계선 : 주요가로변	

■ 자동차정류장용지(As)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As	용도	지정 용도	○ 자동차 관련 시설(아목 중 차고)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	○ 16m 이하	
	배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	
	형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옥상부분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건축한계선 : 주요가로변	

■ 공동구용지(공동구관리사무소)(공)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공	용도	지정 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의 공동구(공동구관리사무소)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	○ 8m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건축한계선 : 주요가로변		

■ 유지관리용지(Et)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Et	용도	지정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하목 중 사무소) ○ 창고시설(가목) ○ 자동차관련시설(가목, 바목, 아목 중 차고) ○ 자원순환관련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16m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건축한계선 : 주요가로변		

■ 폐기물처리시설용지(생활폐기물자동집하장)(집하)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집하1 집하2	용도	지정 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의 폐기물처리시설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15m이하	
	배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	
	형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옥상부분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옥상공간을 정원화 하여 도심의 녹화공간 최대한 확보 (권장)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건축한계선 : 주요가로변		

■ 전기공급설비용지(전기)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전기1 전기2	용도	지정 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전기공급설비(변전소)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20m 이하	
	배치	○ 본 시설은 지하화하며, 지상에는 시설유지 및 관리를 위한 시설만 허용	
	형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 옥상부분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옥상공간을 정원화 하여 도심의 녹화공간 최대한 확보 (권장)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건축한계선 : 주요가로변		

■ 공급처리시설용지(공급)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공급	용도	지정 용도	○ 자원순환 관련 시설(가목)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	○ 20m 이하	
	배치	○ 공급처리시설은 지하화하여 설치하며, 지상부는 공공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 (권장)	
	형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 옥상부분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옥상공간을 정원화 하여 도심의 녹화공간 최대한 확보 (권장)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건축한계선 : 주요가로변		

■ 오수중계펌프장용지(오수)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오수1 오수2	용도	지정 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의 하수도 (오수중계펌프장)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	○ 20m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건축한계선 : 주요가로변		

- 변경

1) 단독주택용지(Rs)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Rs1 ~ Rs2 (블록형)	용도	허용용도 ○ 단독주택(가목) ○ 단독형 집합주택 ※ 건축물의 지하층은 주거용도 불허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	○ 12m 이하(2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을 도로변으로 유도하고, 건축물 일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남향 배치 ○ 안전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진입도로변으로 함 ○ 가로변에 장벽을 형성하는 배치 지양 ○ 주거단지 내 오픈스페이스 계획 시 인접 주거단지와 연계배치 ○ 인접 단독주택과 외부공간 연계배치(권장)
	형태	○ 입면 - 입면계획 시 심플한 조형미를 강조 - 다양한 색채 및 재료 사용은 지양하고, 자연재료 사용 ○ 지붕 - 통일성 있는 단지 경관 연출을 위해 경사지붕 적용 - 경사지붕 설치 시 박공형식의 경사지붕 적용을 원칙으로 함 (평지붕은 전체 지붕면적의 30% 이내로 설치 가능) - 경사지붕의 경사는 동일 단지 내 통일감을 형성하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 경사도를 형성하는 10:5~10:7의 물매 적용 ○ 옥상부분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그 외 일체의 구조물을 설치 할 수 없음 ○ 1층부의 높이 - 4m(허용범위 ±0.5m)로 계획하며, 인접대지 1층부의 높이와 차이는 0.5m 이내로 함
	색채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m 건축한계선: 보행자전용도로변 - 3m 건축한계선: 주YG로변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Rs3 ~ Rs11 (획지형)	용도	허용용도 ○ 단독주택(가목, 다목)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라목, 바목, 자목 ※ 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설치규모는 전체 건축연면적의 40% 이하, 1층에 한함 ※ 건축물의 지하층은 주거용도 및 교육용도 불허 ※ 단독주택용지 1필지당 가구수는 3가구 이하로 함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12m 이하(3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을 도로변으로 유도하고, 건축물 일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남향 배치 ○ 안전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진입도로변으로 함 ○ 가로변에 장벽을 형성하는 배치 지양 ○ 인접 단독주택과 외부공간 연계배치(권장)
	형태	○ 입면 -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한 입면 디자인 (조형성을 강조하고 장식을 최소화한 간결한 형태의 입면 디자인 적용) - 가로환경의 활성화를 위해 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 • 투시형 벽면: 도로에 접한 벽면적의 50%이상 투시형 벽면으로 처리 • 투시형 셔터: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 지붕 - 경사지붕 설치 시 박공형식의 경사지붕 적용을 원칙으로 함 (평지붕은 전체 지붕면적의 30% 이내로 설치 가능) - 경사지붕의 경사는 동일 단지 내 통일감을 형성하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 경사도를 형성하는 10:5~10:7의 물매 적용 ○ 옥상부분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그 외 일체의 구조물을 설치 할 수 없음 ○ 1층부의 높이 - 4m(허용범위 ±0.5m)로 계획하며, 인접대지 1층부의 높이와 차이는 0.5m 이내로 함
	색채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m 건축한계선: 주요가로변, 보행자전용도로변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 단독주택용지 계획인구 지표 >

구분	면적(m ²)	주택평균 면적(m ² /호)	수용호수 (세대)	인구수 (인)	인구밀도 (인/ha)
Rs1	6,526	230	22	57	87
Rs2	6,527	230	22	57	87
Rs3	3,345	300	12	31	93
Rs4	4,598	300	12	31	67
Rs5	4,570	300	12	31	68
Rs6	3,915	300	11	29	74
Rs7	2,291	300	8	21	92
Rs8	5,231	300	17	44	84
Rs9	5,268	300	12	31	59
Rs10	4,348	300	12	31	71
Rs11	1,231	300	4	11	89
계	47,850	-	144	374	78

※ 세대당 인구수: 2.55인

2) 공동주택용지(RC)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Rc1 Rc4 Rc5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가목) - 「주택법」 제2조 제13호 및 제14호가 정하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제외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 이하
	용 적 률	기준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5% 이하
		허용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0%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0m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조성을 위해 최고높이 주거동과 최저높이 주거동의 차이는 10개층 이상으로 함 ○ 최고층 배치구간 내 공동주택의 높이를 인접 주동과 3개층 이상 층수 차이 유도 ○ 광로 2-침C2호선변으로 높아지는 스카이라인 조성 ○ 주거동의 장변이 길게 노출되는 건축물은 입면분절 및 높이변화를 통해 스카이라인의 변화감 부여 ○ 광로 2-침C2호선변으로 최고층 배치구간 및 조류대체서식지변 중저층 배치구간 설정 ○ 학교 및 조류대체서식지 인접구간: 중저층(48m이하) 주거동 배치, 교육환경평가에 의해 별도로 제시된 사항을 따르도록 함 ○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축 및 개방감 확보: 통경축 확보구간(폭 20m) ○ 단지조망 및 수변경관 확보: 최고층 배치구간(폭 40m), 중저층 배치구간(폭 40m) ○ 근린생활시설 인접구간: 부대복리시설 배치 ○ 학교, 어린이공원과 연결한 경우 보행동선 및 식재, 대지 내 공지 등을 연계하여 배치 ○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전방안검토서(협의결과)에서 제시된 이격거리 및 직각배치 등의 소유저감 방안 등을 검토반영 ○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 일조시간 수인한도를 만족하도록 배치 ※ 통경축 확보구간, 최고층 배치구간, 중저층 배치구간,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 본 지침 외 사항은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Rc1 Rc4 Rc5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러스터형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친화적 정주환경 형성을 고려하여 최고층 배치구간은 탑상형(타워형) 주거동을 계획하고, 최고층 배치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대해 중정형으로 주거동을 배치 - 중정형 주거동은 판상형, 절곡형 등을 활용하여 구성하도록 하며, 기타 필요한 경우 새로운 유형의 주거동 계획 가능 - 주거동의 정의, 형태 및 높이의 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계획에서 제시하는 주거동의 유형을 따름 ○ 건축물의 입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공동주택의 획일적인 경관을 지양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주거동 계획 및 단위세대 평면의 다양화 (권장) - 건축물 저층부는 휴먼스케일의 조망, 시각적 안정감 및 편안함을 형성하는 석재, 벽돌 등을 활용한 세밀한 패턴구성 - 자연친화적 건축경관 형성을 위해 수평적 패턴을 적용하며, 발코니 등의 입체적 구성 등을 통한 입면 특화 (권장) - 발코니 확장이 가능한 공동주택의 경우 발코니 확장 시 입면을 고려하여 계획 - 탑상형(타워형)의 주거동의 경우 클러스터형 주거동의 입면과 조화를 이루는 유사한 디자인의 건축물 계획 - 중정형을 형성하는 주거동은 1개 주거동 내 건축물 1개층 이상의 층수변화 또는 필로티 형성 - 필로티 형성 시 개방성 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공원, 녹지, 공공공지,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한 1층부에 설치 (권장) • 필로티 형성 시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계획에서 제시하는 필로티 구조를 따름 - 부대복리시설의 입면은 공동주택 디자인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 지붕 및 옥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및 옥탑부는 입면과 조화를 고려한 간결한 디자인의 형태를 권장하되, 코어부분의 단순 노출은 지양 - 중저층형 공동주택의 옥탑부는 거주민들의 활용성 및 고층부에서의 조망을 고려한 디자인 계획 - 부대복리시설의 옥탑부는 공동주택 고층부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옥상녹화 계획 - 옥상부분: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그 외 일체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음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의 주거용도의 경우, 실외기를 설치하는 공간을 발코니 내부 및 별도의 설치공간을 만들어 차폐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복리시설: 주요행동선의 결절점에 가능한 집단배치하고 경사지붕(권장) - 어린이놀이터: 분산배치 하되, 충분한 일조량이 확보되도록 함 - 근린생활시설: 단지 내 진출입구변에 배치하고 경사지붕(권장) - 1층부의 높이: 4.5m(허용범위 ±0.5m)로 계획하며, 인접대지 1층부의 높이와 차이는 0.5m 이내로 함 <p>※ 본 지침 외 사항은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p>
	색채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m 건축한계선: 주요가로변, 공원 및 녹지변 - 9m 건축한계선: 학교연접구간 <p>※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p>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Rc6 Rc7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가목) - 「주택법」 제2조 제13호 및 제14호가 정하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제외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 이하
	용 적 률	기준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 이하
		허용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m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조성을 위해 최고높이 주거동과 최저높이 주거동의 차이는 10개층 이상으로 함 ○ 최고층 배치구간 내 주거동에 대해 인접 주동간의 높이 차이(3개층 이상)를 통해 변화감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및 공동주택 최고층 배치를 통해 상징적 스카이라인 형성 ○ 첨단산업클러스터(C) 내 공동주택용지의 최고층 배치를 통해 상징적 스카이라인 형성 ○ 광로 2-첨C2호선변으로 높아지는 스카이라인 조성 ○ 광로 2-첨C2호선변으로 최고층 배치구간 및 조류대체서식지변 중저층 배치구간 설정 ○ 학교 및 조류대체서식지 인접구간: 중저층(48m이하) 주거동 배치, 교육환경평가에 의해 별도로 제시된 사항을 따르도록 함 ○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축 및 개방감 확보: 통경축 확보구간(폭 20m) ○ 단지조망 및 수변경관 확보: 최고층 배치구간(폭 40m), 중저층 배치구간(폭 40m) ○ 학교, 어린이공원과 연결한 경우 보행동선 및 식재, 대지 내 공지 등을 연계하여 배치 ○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전방안검토서(협의결과)에서 제시된 이격거리 및 직각배치 등의 소음저감 방안 등을 검토반영 ○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 일조시간 수인한도를 만족하도록 배치 ※ 통경축 확보구간, 최고층 배치구간, 중저층 배치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 본 지침 외 사항은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Rc6 Rc7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징형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후 랜드마크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단지 내 주거동의 70%이상을 수직성을 강조하는 탑상형(타워형) 주거동 배치 - 탑상형(타워형) 주거동이 아닌 타 유형의 주거동의 경우 중저층 배치구간에 한정하여 계획 - 주거동의 정의, 형태 및 높이의 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계획에서 제시하는 주거동의 유형을 따름 ○ 건축물의 입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징형 공동주택 내 계획되는 주거동의 입면패턴은 수직적 패턴을 우선적으로 구성 - 상징형 공동주택은 유리재질 등의 입면재료를 활용한 상징적 경관형성 유도 - 1개 주거동 내 벽면율을 30% 이상(외벽면에 부착된 유리마감재 포함) 확보 (단, 우수한 건축물 디자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 - 건축물의 입면은 높이 변화 및 조망거리를 고려하여 패턴의 스케일 변화를 통해 원경·중경·근경에서의 입면변화를 유도 - 건축물의 입면 디자인은 조망거리의 변화에 따라 원경에서는 건축물 형태(건축물의 형태적 분절 등), 중경에서는 보조입면(단위세대 변화 등), 근경에서는 기본패턴(색채, 재료 등)을 통한 입면 분절 유도 - 건축물 저층부는 휴먼스케일의 조망, 시각적 안정감 및 편안함을 형성하는 석재, 벽돌 등을 활용한 세밀한 패턴 구성 - 중저층의 주거동의 경우 탑상형(타워형) 주거동의 입면과 조화를 이루는 유사한 디자인 건축물 계획 - 피난층을 형성하는 고층형 주거동은 인접 주동과 피난층 연계 및 이를 활용한 특색 있는 건축경관 형성 (권장) - 부대복리시설의 입면은 공동주택 디자인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 지붕 및 옥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및 옥탑부는 입면과 조화를 고려한 간결한 디자인의 형태를 권장하되, 코어부분의 단순 노출은 지양 - 중저층형 공동주택의 옥탑부는 거주민들의 활용성 및 고층부에서의 조망을 고려한 디자인 계획 - 부대복리시설의 옥탑부는 공동주택 고층부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옥상녹화계획 - 옥상부분: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그 외 일체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음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의 주거용도의 경우, 실외기를 설치하는 공간을 발코니 내부 및 별도의 설치공간을 만들어 차폐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복리시설: 주요행동선의 결절점에 가능한 집단배치하고 경사지붕(권장) - 어린이놀이터: 분산배치 하되, 충분한 일조량이 확보되도록 함 - 근린생활시설: 단지 내 진출입구변에 배치하고 경사지붕(권장) - 1층부의 높이: 4.5m(허용범위 ±0.5m)로 계획하며, 인접대지 1층부의 높이와 차이는 0.5m 이내로 함 <p>※ 본 지침 외 사항은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p>
	색채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m 건축한계선: 주요가로변, 공원 및 녹지변, 공공공지변 - 9m 건축한계선: 학교연접구간 - 13m 건축한계선: 소음이격거리 반영 <p>※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p>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Rc8 Rc9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가목) - 「주택법」 제2조 제13호 및 제14호가 정하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기준 용적률	○ 185% 이하
		허용 용적률	○ 190% 이하
	높이		○ 110m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조성을 위해 최고높이 주거동과 최저높이 주거동의 차이는 10개층 이상으로 함 ○ 최고층 배치구간 내 공동주택의 높이를 인접 주동과 3개층 이상 층수 차이 유도 ○ 광로 2-첨C2호선변으로 높아지는 스카이라인 조성 ○ 주거동의 장변이 길게 노출되는 건축물은 입면분절 및 높이변화를 통해 스카이라인의 변화감 부여 ○ 내부수로와 조류대체서식지변으로 건축물 직각배치 및 이격배치를 통한 시각회랑 조성으로 개방감 극대화 ○ 광로 2-첨C2호선변으로 최고층 배치구간 및 조류대체서식지변 중저층 배치구간 설정 ○ 학교 및 조류대체서식지 인접구간: 중저층(48m이하) 주거동 배치, 교육환경평가에 의해 별도로 제시된 사항을 따르도록 함 ○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축 및 개방감 확보: 통경축 확보구간(폭 20m) ○ 단지조망 및 수변경관 확보: 최고층 배치구간(폭 40m), 중저층 배치구간(폭 40m) ○ 학교, 어린이공원과 연결한 경우 보행동선 및 식재, 대지 내 공지 등을 연계하여 배치 ○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전방안검토서(협의결과)에서 제시된 이격거리 및 직각배치 등의 소음저감 방안 등을 검토반영 ○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 일조시간 수인한도를 만족하도록 배치 ※ 통경축 확보구간, 최고층 배치구간, 중저층 배치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 본 지침 외 사항은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Rc8 Rc9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형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층 배치구간은 탑상형(타워형) 주거동을 계획 - 그 외 구간은 판상형, 절곡형 등을 활용하여 구성하며, 기타 필요한 경우 새로운 유형의 주거동 계획 가능(단, 전체 주거동의 70%이하에 대하여 적용) - 탑상형(타워형) 주거동을 제외한 유형의 주거동(판상형, 절곡형 등) 배치 시 광로 2-침C2호선 및 대로 1-침C2호선변으로 직각배치 또는 주거동의 단변이 향하도록 계획 - 주거동의 정의, 형태 및 높이의 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계획에서 제시하는 주거동의 유형을 따름 ○ 건축물의 입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적 건축경관 형성을 위해 정돈된 이미지의 건축경관 형성 - 내부수로 및 조류대체식지변으로 향하는 방향성을 고려한 수평적 패턴 적용 (권장) - 동일 주거동 내 입면 분절 시 벽면에 최소 2가지 이상의 입면재료 (유리&콘크리트, 벽돌&콘크리트 등)를 활용하여 형태적, 면적 분절 유도 - 주거동 내 층수변화 시 동일 주거동 내 최고높이의 20~25%이상 층수 변화 (권장) (층수 변화시 단일 주호단위의 변화 권장) - 주거동의 전용면적이 60㎡ 이상이고, 1개 주거동 내 기준층을 기준으로 5개 이상의 주호가 배치될 경우 필로티 설치 및 주거동 내 층수변화를 통해 개방적 도시경관 형성 - 필로티 형성 시 개방성 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공원, 녹지, 공공공지,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하여 설치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로티 형성 시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계획에서 제시하는 필로티 구조를 따름 - 건축물 축별부 내 창호배치 및 입체적 패턴 적용 등을 통해 단순 벽면 노출이 아닌 변화가 있는 건축물 경관 연출 - 탑상형(타워형)의 주거동의 경우 개방형 주거동의 입면과 조화를 이루는 유사한 디자인의 건축물 계획 - 부대복리시설의 입면은 공동주택 디자인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 지붕 및 옥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및 옥탑부는 입면과 조화를 고려한 간결한 디자인의 형태를 권장하되, 코어부분의 단순 노출은 지양 - 중저층형 공동주택의 옥탑부는 거주민들의 활용성 및 고층부에서의 조망을 고려한 디자인 계획 - 부대복리시설의 옥탑부는 공동주택 고층부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옥상녹화계획 - 옥상부분: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그 외 일체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음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의 주거용도의 경우, 실외기를 설치하는 공간을 발코니 내부 및 별도의 설치공간을 만들어 차폐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복리시설: 주보행동선의 결절점에 가능한 집단배치하고 경사지붕(권장) - 어린이놀이터: 분산배치 하되, 충분한 일조량이 확보되도록 함 - 근린생활시설: 단지 내 진출입구변에 배치하고 경사지붕(권장) - 1층부의 높이: 4.5m(허용범위 ±0.5m)로 계획하며, 인접대지 1층부의 높이와 차이는 0.5m 이내로 함 <p>※ 본 지침 외 사항은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p>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m 건축한계선: 주요가로변, 공원 및 녹지변 - 9m 건축한계선: 학교연접구간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Rc2 Rc3 Rc10 Rc11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가목) - 「주택법」 제2조 제13호 및 제14호가 정하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 적 률	기준 용적률	○ 155% 이하
		허용 용적률	○ 160% 이하
	높이		○ 45m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저층 혼합으로 높이 변화 유도(권장) ○ 내부수로변으로 낮아지는 스카이라인 형성 ○ 단지 내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조성을 위해 최고높이 주거동과 최저높이 주거동의 차이는 4개층 이상으로 함 ○ 내부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중정형 배치 ○ 내부수로의 통경축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 학교 인접구간: 중저층(45m이하) 주거동 배치, 교육환경평가에 의해 별도로 제시된 사항을 따르도록 함 ○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축 및 개방감 확보: 통경축 확보구간(폭 15m, 20m) ○ 근린생활시설 및 주상복합용지 인접구간: 부대복리시설 배치 ○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전방안검토서(협의결과)에서 제시된 이격거리 및 직각배치 등의 소음저감 방안 등을 검토반영 ○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 일조시간 수인한도를 만족하도록 배치 ※ 통경축 확보구간,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 본 지침 외 사항은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입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면의 입체적인 형태적 변화를 통한 리듬감 부여 - 중저층에 따른 옥상부 노출을 고려하여 옥상녹화 등을 권장 - 1층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은 투시형 입면으로 조성 - 거리에 따라 원경에서는 주요 입면, 중경에서는 보조 입면, 근경에서는 기본 패턴이 드러나도록 조성 - 부대복리시설의 입면은 공동주택 디자인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 지붕 및 옥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및 옥탑부는 입면과 조화를 고려한 간결한 디자인의 형태를 권장하되, 코어부분의 단순 노출은 지양 - 중저층형 공동주택의 옥탑부는 거주민들의 활용성 및 고층부에서의 조망을 고려한 디자인 계획 - 부대복리시설의 옥탑부는 공동주택 고층부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옥상녹화계획 - 옥상부분: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그 외 일체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음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Rc2 Rc3 Rc10 Rc11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의 주거용도의 경우, 실외기를 설치하는 공간을 발코니 내부 및 별도의 설치공간을 만들어 차폐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복리시설: 주보행동선의 결절점에 가능한 집단배치하고 경사지붕(권장) - 어린이놀이터: 분산배치 하되, 충분한 일조량이 확보되도록 함 - 근린생활시설: 단지 내 진출입구변에 배치하고 경사지붕(권장) - 1층 부의 높이: 4.5m(허용범위 ±0.5m)로 계획하며, 인접대지 1층부의 높이와 차이는 0.5m 이내로 함 ※ 본 지침 외 사항은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색채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m 건축한계선: 주요가로변, 보행자도로변, 공원 및 녹지변 - 10m 건축한계선: 소음이격거리 반영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 공동주택용지 계획인구 지표 >

구분	면적(㎡)	주택평균 면적 (㎡/호)	수용호수 (세대)	인구수 (인)	인구밀도 (인/ha)
Rc1	109,722	110	1,745	4,450	406
Rc2	42,469	110	598	1,525	359
Rc3	35,624	110	501	1,277	358
Rc4	74,846	100	1,309	3,337	446
Rc5	105,018	99.8	1,840	4,691	447
Rc6	66,460	96	1,384	3,529	531
Rc7	82,334	96	1,715	4,373	531
Rc8	88,436	100	1,636	4,171	472
Rc9	118,604	100	2,194	5,594	472
Rc10	41,225	96	665	1,695	411
Rc11	35,757	96	577	1,471	411
계	800,495	-	14,164	36,113	451

※ 가구당 인구수: 2.55인

<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Incentive) >

인센티브 가산조항		인센티브(%)	비고
국제 및 국내 현상설계 당선작	1등급	2	○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정부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2등급	3	
	3등급	2	
	에너지효율등급	1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인센티브 가산조항 준수시)

3) 근린생활시설용지(Cn)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Cn1 ~ Cn6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근린생활시설(라목 중 안마원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판매시설(나목, 다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 ○ 교육연구시설(라목) ○ 노유자시설(나목 중 노인복지주택 제외) ○ 운동시설(가목 중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나목 중 오피스텔 제외) ○ 자동차 관련 시설(가목)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제외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20m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속되는 벽면은 매스나 재료의 변화 또는 분절을 통해 보행자에게 친숙한 가로경관을 조성 ○ 내부 중정을 형성하는 배치계획(Cn1, Cn2) ○ 내부수로와 연계한 오픈스페이스 및 골목가로를 형성하는 배치계획(Cn3, Cn4) ○ 내부수로변으로 연속적인 연도형 배치계획(Cn3, Cn4) ○ 건축물간 이격 배치를 통해 시각·보행통로 확보(Cn5, Cn6)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배치 ○ 공공보행통로에 접한 건축물은 공공보행통로로부터 건축물에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 본 지침 외 사항은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수로변을 향한 테라스 조성으로 형태적 연속성을 유지하고 입면의 변화감을 유도(Cn1, Cn2) ○ 내부수로변 건물의 건축물 폭은 20~25m 간격으로 분절효과 유도(Cn3, Cn4) ○ 건축물의 저층부는 인접 건축물 간 연계되도록 조성하여 가로에서의 통일감 부여(Cn5, Cn6) ○ 건축물 외벽면의 의장, 재료는 주변건물과의 조화 유지 ○ 가로환경의 활성화를 위해 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시형 벽면: 도로에 접한 벽면적의 50%이상 투시형 벽면으로 처리 - 투시형 셔터: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개별 설치 불허 ○ 가로변 미관 향상을 위하여 건축면적 50% 이상의 필로티구조 불허 ○ 지붕: 경사지붕을 사용할 경우 인접한 건축물의 물매와 통일 ○ 옥상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그 외 일체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음 - 옥상녹화를 조성하여 도심의 녹화공간 최대한 확보 (권장) ○ 1층부의 높이: 4.5m로 하며, 인접대지 1층부의 높이와 차이는 0.5m 이내로 함 ○ 1층의 바닥높이: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는 10cm 이내로 함 ※ 본 지침 외 사항은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색채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m 건축한계선: 주요가로변, 보행자전용도로변 ○ 기타: 공공공지(10m) 연접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m, 5m, 9m 건축한계선 - 6m, 8m, 12m 벽면한계선(지상1층부)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Cn7 ~ Cn10	용도	허용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라목 중 안마원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나목 중 마권관련시설, 다목, 마목 중 동물원 제외) ○ 판매시설(나목, 다목) - 단,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 ○ 교육연구시설(라목) ○ 노유자시설(나목 중 노인복지주택 제외) ○ 운동시설(가목 중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나목 중 오피스텔 제외) ○ 자동차 관련 시설(가목)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20m 이하
	배치	○ 연속되는 벽면은 매스나 재료의 변화 또는 분절을 통해 보행자에게 친숙한 가로경관 조성 ○ 인접한 근린생활시설과 외부공간을 연계하여 건축배치 ○ 남측수로를 기준으로 건축물 이격배치(권장) ※ 본 지침 외 사항은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형태	○ 시각적인 분절효과를 유도하고 단조로운 입면 구성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입면 계획 시 일정 간격으로 입면 분절 ○ 남측수로를 향한 입면은 투시형 입면 및 개방형 구조를 적용하여 우수한 수로경관에 대한 조망환경을 구축 ○ 단조로운 박스형 건축물은 지양하고, 남측수로를 향한 조망 확보 및 외부조망에서 조망 시 장벽형상을 방지하는 테라스형으로 조성 ○ 입체적인 입면변화를 통해 변화감과 리듬감 있는 입면 연출 (권장) ○ 장방형의 필지형상에 따른 입면의 단조로움과 장벽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분절된 형태 계획 (권장) ○ 남측수로를 향하는 시각·보행통로를 확보하는 형태계획 (권장) ○ 건축물 외벽면의 의장, 재료는 주변건물과의 조화 유지 ○ 가로환경의 활성화를 위해 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서터를 사용 - 투시형 벽면: 도로에 접한 벽면적의 50%이상 투시형 벽면으로 처리 - 투시형 서터: 서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개별 설치 불허 ○ 가로변 미관 향상을 위하여 건축면적 50% 이상의 필로티구조 불허 ○ 지붕: 경사지붕을 사용할 경우 인접한 건축물의 물매와 통일 ○ 옥상부분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그 외 일체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음 - 옥상녹화를 조성하여 도심의 녹화공간 최대한 확보 (권장) ○ 1층의 바닥높이: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는 10cm 이내로 함 ※ 본 지침 외 사항은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색채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건축한계선: 주요가로변, 공공공지변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4) 주상복합용지(Rm)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Rm1 ~ Rm3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공동주택 연면적 비율은 전체 연면적의 70% 이하인 것에 한함) ○ 제1종근린생활시설(라목 중 안마원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나목 중 마권관련시설, 다목, 마목 제외) ○ 판매시설(나목, 다목) - 단, 일반계업제공업의 시설은 제외 ○ 의료시설(가목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나목, 부수시설 중 장례식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라목) ○ 노유자시설(나목 중 노인복지주택 제외) ○ 수련시설(가목) ○ 운동시설(가목 중 옥외골프연습장, 다목 제외) ○ 업무시설 - 단, 오피스텔은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40㎡미만인 오피스텔에 한함 ○ 숙박시설(나목) ○ 자동차 관련 시설(가목) ○ 관광 휴게시설(다목)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150m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로 2-첨C2호선변으로 탑상형(타워형)의 고층 주동 배치, 내부수로 및 공원변으로 중저층 주동 배치 ○ 비주거기능의 건축물은 전면도로변 저층부에 계획하며,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 하도록 배치 ○ 인접 랜드마크와의 통합된 상징경관 형성 및 특화 디자인 적용(Rm1, Rm2) ○ 인접 공동주택과 연속적인 외관 디자인 적용(Rm3) ○ 주거기능의 건축물은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전방안검토서(협의결과)에서 제시된 소음저감 방안 등을 검토반영 ※ 본 지침 외 사항은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면상의 차별화된 외관 및 탑상형(타워형) 배치 (권장) ○ 주거동의 정의, 형태 및 높이의 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계획에서 제시하는 주거동 유형을 따름 ○ 주거동의 입면: 색채, 창호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에 의한 입면변화 (권장) ○ 주거부와 비주거부 간 차별화된 입면 디자인을 적용, 저층부는 보행스케일을 고려한 패턴 적용 ○ 건축물의 외벽면의 외장, 재료는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 할 경우 재료 간 조화 고려 ○ 가로활성화를 위해 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서터를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시형 벽면: 도로 및 보행자도로 접한 벽면적의 50%이상 - 투시형 서터: 서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개별 설치 불허 ○ 옥상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그 외 일체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음 - 옥상녹화를 조성하여 도심의 녹화공간을 최대한 확보(권장)하며, 영업행위를 금지함 ○ 1층의 바닥높이: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 10cm 이내로 함 ※ 본 지침 외 사항은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색채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m 건축한계선: 주요가로변 - 6m 건축한계선: 주요가로변 - 9m 건축한계선: 주요가로변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Rm4 ~ Rm6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공동주택 연면적 비율은 전체연면적의 80% 이하인 것에 한함) ○ 제1종근린생활시설(라목 중 안마원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충포판매소, 장의사, 옥외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나목 중 마권관련시설, 다목, 마목 제외) ○ 판매시설(나목, 다목) - 단,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 ○ 의료시설(가목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나목, 부수시설 중 장례식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라목) ○ 노유자시설(나목 중 노인복지주택 제외) ○ 수련시설(가목) ○ 운동시설(가목 중 옥외골프연습장, 다목 제외) ○ 업무시설 - 단, 오피스텔은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40㎡미만인 오피스텔에 한함 ○ 숙박시설(나목) ○ 자동차 관련 시설(가목) ○ 관광 휴게시설(다목)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110m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변 연도형 상업시설의 배치로 연속적인 가로경관 연출 ○ 광로 2-21호선과 내부수로 방향으로 열린 통경축 조성 ○ 주상복합용지별 건축물의 타워부는 인접 주상복합용지 타워부 위치와 연계배치 ○ 비주거기능의 건축물은 전면도로변 저층부에 계획하며,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배치 ○ 주거기능의 건축물은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전방안검토서(협의결과)에서 제시된 소음저감 방안 등을 검토반영 ※ 본 지침 외 사항은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워부는 과도한 입면 패턴은 지양하고 국제교육의 성격에 부합하는 간결한 입면으로 계획 ○ 중고층의 타워부는 다양성과 개성 있는 형태로 계획 ○ 저층 기단부(상업시설)는 연속적이고 통일성 있는 형태를 위해 인접 부지의 저층부와 형태적인 유사성을 유지 ○ 저층부는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투시형 입면으로 계획 ○ 가로활성화를 위해 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시형 벽면: 도로 및 보행자도로 접한 벽면적의 50%이상 - 투시형 셔터: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개별 설치 불허 ○ 옥상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그 외 일체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음 - 옥상녹화를 조성하여 도심의 녹화공간을 최대한 확보(권장)하며, 영업행위를 금지함 ○ 1층의 바닥높이: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 10cm 이내로 함 ※ 본 지침 외 사항은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색채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m 건축한계선: 주요가로변 - 9m 건축한계선: 주요가로변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 주상복합용지 계획인구 지표 〉

구분	면적(㎡)	주택평균 면적(㎡/호)	수용호수 (세대)	인구수 (인)	인구밀도 (인/ha)
Rm1	32,547	100	683	1,741	535
Rm2	38,152	100	801	2,042	535
Rm3	50,557	100	1,061	2,705	535
Rm4	31,670	100	760	1,938	612
Rm5	27,859	100	668	1,704	612
Rm6	32,417	100	778	1,984	612
계	213,202	100	4,751	12,114	568

※ 가구당 인구수: 2.55인

5) 업무시설용지(Bs)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Bs1 ~ Bs4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용도: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등 제외)의 6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교육연구시설(나목, 다목, 마목) ▶ 부용도: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등 제외)의 4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근린생활시설(라목 중 안마원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 판매시설(나목, 다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 ○ 의료시설(가목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나목, 부수시설 중 장례식장 제외) ○ 노유자시설(나목 중 노인복지주택 제외) ○ 운동시설(가목 중 옥외골프연습장, 다목 제외) ○ 업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오피스텔은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40㎡미만인 오피스텔에 한함 ○ 숙박시설(나목) ○ 자동차 관련 시설(가목)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50m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수로변으로 낮아지는 스카이라인 조성 ○ 기단부와 타워부의 높이 변화로 리드미컬한 스카이라인 연출 ○ 업무용도와 상업용도를 구분하여 건축배치 ○ 휴먼스케일의 연속적인 가로경관 형성: 연도형 배치구간 지정 ○ 인접한 산업시설과 연계를 위해 업무시설을 전면도로변과 평행하도록 배치하며, 수로변 연도형 상가와의 사이공간을 단지 내 보행통로(폭 6m)를 조성하여 보행활성화 유도 ○ 내부수로를 기준으로 타워부의 이격 배치로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연출 및 수변 경관의 개방감과 변화감 형성 ○ 오픈스페이스의 집중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배치 ○ 수변상권 및 보행 활성화를 위해 공공공지와 연계한 보도형 전면공지 배치 ○ 보행환경의 제고와 개방감 확보를 위해 수로변 건축선(8m~16m) 지정 <p>※ 본 지침 외 사항은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p>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Bs1 ~ Bs4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벽면의 의장, 재료는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 할 경우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 수변의 개방적인 경관 형성 및 첨단 미래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는 입면 디자인 연출 ○ 타워부와 수변 저층 기단부의 입면 디자인 차별화 ○ 저층의 기단부는 인접 부지 저층부와 형태적인 유사성을 유지하고, 투시형 입면 및 구조(필로티, 아케이드 등)로 개방감 형성 ○ 중고층의 타워부는 다양성과 개성있는 형태에 의한 다양한 내부수로변 경관연출 ○ 연속되는 벽면은 매스나 재료의 변화 또는 분절을 통해 보행자에게 친숙한 가로경관 조성 ○ 내부수로와 인접한 구간은 휴먼스케일에 대응한 입면분절로 소규모점포 입점이 유리하도록 하여 가로활성화 유도 ○ 가로활성화를 위하여 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서터를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시형 벽면: 도로 및 보행자도로 접한 벽면적의 50%이상 - 투시형 서터: 서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개별 설치 불허 ○ 옥상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그 외 일체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음 - 옥상녹화를 조성하여 도심의 녹화공간을 최대한 확보(권장)하며 영업행위를 금지함 ○ 1층의 바닥높이: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는 10cm 이내로 함 ○ 내부수로변 연도형 상가의 높이는 공공공지와 연결하여 2개 층 이하로 계획하며, 판상형 배치(권장) ○ 1층부의 높이: 4.5m(허용범위 ±0.5m)로 계획하며, 인접대지 1층부의 높이와 차이는 0.5m 이내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 1층부의 높이: 4.5m - 지상 1층부의 높이: 4.5m(허용범위 ±0.5m) - 지상 3층부의 높이: 12m ○ 내부수로 및 도로변 사이의 보행통로에 접한 상가동은 보행통로로부터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p>※ 본 지침 외 사항은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p>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m, 9m 건축한계선: 주요가로변 ○ 기타: 공공공지(10m) 연결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m 건축지정선 - 16m 벽면지정선(지상2층 이상) ○ 기타: 산업시설용지 연결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m 벽면지정선(지상5층 이상) <p>※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p>

6) 산업시설용지(Ki)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Ki17 ~ Ki23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 장(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공장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환경보전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제외 - 「악취방지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제외 - 「물환경보존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제외 단, 제조공정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변경협) 이행시 허용 ○ 지식산업센터(Ki17, Ki18, Ki22, Ki23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3호 및 시행령 제4조의6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의한 지원시설 규모를 따름 - 단, 지원시설에는 안마원,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교육연구시설(나목 및 마목, 건축연면적의 40% 이하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도시형 공장 입지기준(수질, 대기 등의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할 경우 전량 위탁처리 시 허용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건축연면적의 10% 이하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공장·지식산업센터·도시형공장의 제조공정에 필요한 시설 ○ 동물실험시설(건축연면적의 10% 이하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에 한함 ※ 공장, 교육연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업종은 별표2 유치업종 분류코드에 제시된 유치업종을 따라야 함
		불허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 이하 Ki21~Ki23 ○ 60% 이하 Ki17~Ki20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0% 이하 Ki21~Ki23 ○ 250% 이하 Ki17~Ki20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 이하 Ki21~Ki23 ○ 60m 이하 Ki17~Ki20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 개방감 확보 및 위압감 저감을 위해 주요 가로변으로 건축물 이격배치 ○ 건축물의 저층부는 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Ki17~Ki20) ○ 업무시설용지와 인접한 Ki19, Ki20은 업무시설용지변으로 1층 및 2층에 부대시설을 우선 배치 (권장) ○ 각각부 공개공지 및 쌈지공원 조성 (권장) ○ 가로변의 리듬감 있는 경관형성을 위해 건축물의 단변이 가로변으로 향하도록 배치 (권장) ※ 본 지침 외 사항은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폭이 25m 이상인 경우 지붕의 높이 차이 및 벽면의 분절 등을 통해 시각적 분절 유도 ○ 산업시설의 건물, 설비 등의 의장, 색, 재질 등의 조화 고려 ○ 건축물 외벽은 샌드위치 판넬을 지양하며, 스틸, 유리 재질 사용 (권장) ○ 산업시설의 폐쇄적인 경관이미지 탈피를 위해 가로에 면한 입면은 투시형 재료의 혼용을 권장하며, 재료, 색채 분절로 입면의 단조로움을 최소화 ○ 옥상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그 외 일체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음 ○ 굴뚝·환기설비 및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 불가하며, 디자인 개선을 위해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조류대체서식지변은 조류이동 안정성을 고려하여 통유리를 지양하고, 유리창 설치시 반투명 유리 및 젓빛유리, 간유리를 사용함 ※ 본 지침 외 사항은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색채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m 건축한계선: 주요가로변 - 9m 건축한계선: 주요가로변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7) 연구시설용지(R&D)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R&D1 ~ R&D15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용도: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등 제외)의 9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연구시설(나목 및 마목에 한하며, 건축연면적의 5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시설용지(Ki)에서 허용하는 업종의 교육원, 연구소에 한함 단 도시형 공장 입지기준(수질 대기 등의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할 경우 전량 위탁처리 시 허용)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건축연면적의 40% 이하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시설용지(Ki)에서 허용하는 업종의 업무시설에 한함 ○ 공장(건축연면적의 40% 이하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시설용지(Ki)에서 허용하는 유치업종의 용도로 하되, 당해 용도지역(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공장의 범위에 한함 ▶ 부용도: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등 제외)의 1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근린생활시설(라목 중 안마원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충포판매소, 장의사, 옥외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회의장, 전시장에 한함) ○ 판매시설(다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 ○ 교육연구시설(가목, 라목 제외) ○ 노유자시설(나목 중 노인복지주택 제외) ○ 운동시설(가목 중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나목 중 오피스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20m 이하	R&D1~R&D11
		○ 50m 이하	R&D12~R&D15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류대체식지변 및 내부수로를 향하는 시각통로 확보 (권장) ○ 인접 연구시설과 소통·융합을 위한 보행동선 및 오픈스페이스 연계 배치 (권장) ○ 가로에서의 연속적 건축경관 형성 및 내부 중정을 확보하는 건축 배치 (권장) ○ 건축물의 저층부는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배치 ※ 본 지침 외 사항은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류대체식지변과 녹지와 접한 경계부 입면은 투시형 재료 및 열린 구조를 적용 (권장) ○ 포인트 재료 및 형태적 변화를 활용한 입면 디자인 계획 (권장) ○ 건축물 외벽은 샌드위치 판넬을 지양하며, 스텔·유리 재질 사용 (권장) ○ 조류대체식지변은 조류이동 안정성을 위해 통유리를 지양하고, 반투명 유리, 젓빛유리, 간유리를 사용함 ○ 건축물의 폭이 25m 이상인 경우 지붕의 높이 차 및 벽면의 분절 등 시각적 분절을 유도 ○ 옥상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그 외 일체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음 - 옥상녹화를 조성하여 도심의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 (권장) ○ 굴뚝·환기설비 및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물의 전면 설치 불가 ○ 1층 바닥높이는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 10cm 이내로 함 ※ 본 지침 외 사항은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색채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m 건축한계선: 주요가로변, 보행자도로변 - 10m 건축한계선(공공조경설치): 조류대체식지변 (R&D5, R&D6, R&D7, R&D8, R&D9, R&D10, R&D11)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8) 교육연구용지(Er)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Er1 Er2	용도	허용용도 ○ 교육연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5%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50m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층의 스카이라인으로 구성되는 정온한 환경의 경관 유도 ○ 건축물의 저층부는 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 ○ 대학을 대표하는 건축물로의 열린 시각축 확보 ○ 수공간 조망을 충분히 고려함과 동시에 내부수로변으로의 통경축 확보 ○ 내부수로변 외벽면은 투시형으로 계획하여 개방된 모습 연출 ○ 대학 내 지원시설은 연도형으로 배치(권장) ○ Er2는 부지내 최고층을 공공보행통로변으로 인접 배치하여 시각 초점경관 연출 (권장) ※ 본 지침 외 사항은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설의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리 및 철골소재의 건축물과 역사성을 느낄 수 있는 벽돌, 대리석 등 다양한 소재로 건축물 컨셉과 성격에 따른 입면계획 (권장) ○ 형태(고층부 및 옥상부) 및 외관(입면)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함 (권장) ○ 대학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건축물 및 상징조형물을 조성하도록 함 (권장) ○ 리듬감 있는 경관형성을 위해 건축물의 폭이 25m 이상인 경우 입면의 분절 등 시각적 분절을 유도 (권장) ○ 단조로운 박스형 형태는 지양하고 변화감 있는 매스로 형태적 변화감을 연출 ○ 옥상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그 외 일체의 구조물을 설치 할 수 없음 - 옥상녹화를 조성하여 도심의 녹화공간 최대한 확보 (권장) ※ 본 지침 외 사항은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색채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m 건축한계선: 주요가로변 - 9m 건축한계선: 주요가로변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9) 기타시설용지

■ 학교용지(유, 초, 중, 고)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유1~유5 초1~초5 중1~중3 고1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의 학교(유치원)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의 학교(초등학교)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의 학교(중학교)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의 학교(고등학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초1~초5, 중1~중3, 고1
			○ 60% 이하	유1~유5
	용적률	○ 200% 이하	유1~유5, 초1~초5, 중1~중3, 고1	
	높이	○ 20m이하	유1~유5	
		○ 40m이하	초1~초5, 중1~중3, 고1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요감을 형성하고 시각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수평적 스카이라인 형성 ○ 인접한 공동주택 및 공원과 연계하여 배치 ○ 교사동은 가급적 도로로부터 직각 또는 평행으로 배치하되 부지여건 및 일조를 감안하여 배치하고 운동장은 운동공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배치 ○ 폭 20m 이상 도로변에는 강의동/교실동의 배치 지양 및 소음과 무관한 시설 배치 (권장)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설의 성격을 부각하고 교육환경의 질을 향상하는 수준 높은 건축물 형태 및 외관계획 수립 (권장) ○ 변화감 있는 형태감으로 지루한 경관을 지양하고 입면형태 및 패턴 적용 시, 구조 및 매스 분절을 우선 적용하며 불필요한 장식적 요소 최소화 ○ 주거지(공동주택)와 연결한 부분에는 학생의 원활한 보행을 위해 보행연결통로 설치 ○ 옥상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그 외 일체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음 - 옥상녹화를 조성하여 도심의 녹화공간을 최대한 확보 (권장) 		
	색채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		

■ 공공청사용지(청사)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청사1 청사2 청사3	용도	허용 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의 공공청사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청사1~청사3	
	용적률	○ 200% 이하	청사1, 청사3	
		○ 250% 이하	청사2	
	높이	○ 16m 이하	청사1, 청사3	
		○ 50m 이하	청사2	
	배치	○ 주차장 및 주차출입구 등 옥외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		
	형태	○ 공공청사의 인지성을 고려한 특화된 외관조성 (권장)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함 ○ 보행자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은 보행자도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 1층의 바닥높이: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 10cm 이내로 함 ○ 옥상부분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그 외 일체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음 - 옥상녹화를 조성하여 도심의 녹화공간 최대한 확보 (권장)		
	색채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건축한계선: 주요가로변 - 6m 건축한계선: 주요가로변, 보행자도로변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 문화시설용지(문화)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문화1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용도: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등 제외)의 5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및 집회시설(나목 중 음식점 및 마권관련시설, 다목, 마목 중 동물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류서식지 홍보관 등 ▶ 부용도: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등 제외)의 5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근린생활시설(라목 중 안마원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판매시설(다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 ○ 교육연구시설(나목, 바목) ○ 수련시설(가목) ○ 업무시설(나목 중 오피스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24m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 ○ 조류대체서식지변 조망을 고려하여 통경 확보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류대체서식지변 조망차폐 및 압박감을 주는 장대한 입면 지양 (권장)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옥상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그 외 일체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음 - 옥상녹화를 조성하여 도심의 녹화공간 최대한 확보 (권장) ○ 1층 바닥높이: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 10cm 이내로 함
	색채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m 건축한계선: 주요가로변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 종교시설용지(종)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종1 종2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시설(가목) ○ 노유자시설(가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3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20m 이하(종탑 포함)
	배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종교시설 표식 등은 건축물과 일체형으로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시설의 네온이나 백열등류의 장식 등 설치 금지 - 외부 조명의 색채는 원색사용 금지, 무채색 설치 (권장) ○ 불필요한 장식이나 과도한 구조물 설치를 지양 ○ 옥상에 설치되는 조명은 눈부심이 없는 간접조명 사용 ○ 1층 바닥높이: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 10cm 이내로 함
	색채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m 건축한계선: 주요가로변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 주차장용지(주)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주1 주11 주12	용도	허용 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평면주차장)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2 ~ 주10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용도: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등 제외)의 70% 이상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함) ▶ 부용도: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등 제외)의 30% 이하 ○ 제1종근린생활시설(라목 중 안마원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충포판매소, 장의사, 옥외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나목 중 음식점 및 마권관련시설, 다목, 마목 중 동물원 제외) ○ 판매시설(나목, 다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 ○ 운동시설(가목 중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나목 중 오피스텔 제외) ○ 자동차 관련 시설(가목, 나목)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1 ~ 주12	건폐율	-	주1, 주11, 주12
		○ 90% 이하	주2~주10
	용적률	-	주1, 주11, 주12
		○ 200% 이하	주5, 주6
		○ 300% 이하	주2, 주3, 주4, 주8
		○ 400% 이하	주7, 주9, 주10
	높이	-	주1, 주11, 주12
		○ 12m 이하	주5, 주6
		○ 20m 이하	주2, 주3, 주4, 주8
		○ 50m 이하	주7, 주9, 주10
	배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저층부의 형태색채재료 등은 주변지역의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가로의 연속성을 유지 ○ 마감재료 없이 주차장의 구조가 그대로 노출되는 외관의 형태를 지양하며, 편칭메탈, 메탈 패브릭, 반투명 유리 등을 사용하여 주차장의 인지성을 높일 수 있는 외관(권장) ○ 주차장의 시인성 확보를 위한 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며, 가로변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 ○ 옥상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그 외 일체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음 - 옥상공간을 정원화 하여 도심의 녹화공간 최대한 확보(권장) 	
	색채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m 건축한계선: 주요가로변 - 10m 건축한계선(공공조경설치): 조류대체서식지변 (주4, 주8에 한함) ○ 기타: 공공공지(10m) 연결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m, 5m 건축한계선: (주2) - 8m 건축지정선: (주9, 주10) - 6m, 8m 벽면한계선: 지상1층 (주2) - 16m 벽면지정선: 지상1층 (주9, 주10) ○ 기타: 업무시설용지 인접구간 (주9, 주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m 벽면지정선(지상5층 이상): 주요가로변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 충전·주유소용지(주유)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주유1	용도	허용용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가목 및 나목)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의 기준에 따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의 기준에 따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유2	용도	허용용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가목)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의 기준에 따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유1 주유2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20m 이하
	배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
	형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옥상부분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그 외 일체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음
	색채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건축한계선: 주요가로변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 트램역사용지(트램)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트램	용도	허용용도 ○ 운수시설(나목 중 철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	○ 20m 이하
	배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
	형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옥상부분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그 외 일체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음
	색채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건축한계선: 주요가로변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 자동차정류장용지(정류장)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정류장	용도	허용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의 자동차정류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	○ 20m 이하
	배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
	형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옥상부분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그 외 일체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음
	색채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건축한계선: 주요가로변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 공동구용지(공동구관리사무소)(공)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공	용도	허용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의 공동구(공동구관리사무소)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	○ 8m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건축한계선: 주요가로변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 유지관리용지(관리)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관리	용도	허용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하목 중 사무소) ○ 창고시설(가목) ○ 자동차관련시설(가목, 바목, 아목 중 차고) ○ 자원순환관련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20m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건축한계선: 주요가로변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 폐기물처리시설용지(생활폐기물자동집하장)(집하)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집하1 집하2	용도	허용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의 폐기물처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20m 이하
	배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
	형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옥상부분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그 외 일체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음 - 옥상공간을 정원화 하여 도심의 녹화공간 최대한 확보 (권장)
색채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건축한계선: 주요가로변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 전기공급설비(전기)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전기1 전기2	용도	허용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전기공급설비(변전소)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20m 이하	전기2
		○ 5층 이하	전기1
	배치	○ 본 시설은 지하화하며, 지상에는 시설유지 및 관리를 위한 시설만 허용	
	형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 옥상부분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그 외 일체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음 - 옥상공간을 정원화 하여 도심의 녹화공간 최대한 확보 (권장)	
	색채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건축한계선: 주요가로변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 오수중계펌프장용지(오수)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오수1 오수2	용도	허용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의 하수도(오수중계펌프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	○ 20m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건축한계선: 주요가로변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기정

도면번호	계획내용
Rs1 ~ Rs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출입구는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대지로의 진출입 폭원은 6m 이하로 조성 ○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지하에 설치(권장)하며, 자주식 주차로 함 ■ 담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 (단, 생울타리 외의 재료로 조성시에는 관목 등으로 차폐할 것) ■ 옥외광고물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할 것)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 및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Th1 ~ T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차도율 35%이하 - 단지내 도로면적 중 30% 이상을 투수성 포장재로 포장토록 함 ○ 보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차분리포장을 원칙으로 함 - 주보행통로(6m이상, 자전거도로도 겸용)를 조성하고 부대복리시설, 공원, 수변 등과 연계되는 보행통로 조성 - 보도폭은 최소 2.0m 이상 확보 - 보도와 차도의 단차는 10cm 이내로 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내 횡단보도는 평탄형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일체화한 협프형으로 설치 ○ 단지내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 확보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지하에 설치(권장)하며, 자주식 주차로 함 ■ 단지내 공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등과의 경계부에 건축선 이격으로 생기는 공지에는 산책로 등의 보행통로와 식재, 벤치등 조성 ○ 단지내 진출입구와 도로 및 주보행동선은 교목식재 등으로 방향성 유도 ○ 단지내 옥외 생활공간 비율은 20%이상 확보 ■ 단지내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및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담장, 울타리 또는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위치에 따라 형태, 높이, 재료 등을 선택하도록 함 - 도로에 접한 담장 : 투시형 담장 또는 화목류의 생울타리, 높이 1.2m 이하 ○ 자전거보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호동 단위별 또는 2~3개 주호동별로 자전거보호대를 설치 ○ 포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의 질감, 패턴, 색채, 크기 등에 있어서 각 가구별로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옥외광고물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할 것)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 및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도면번호	계획내용
Rc1 ~ Rc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차도율 35%이하 - 단지내 도로면적 중 30% 이상을 투수성 포장재로 포장토록 함 ○ 보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차분리포장을 원칙으로 함 - 주보행통로(6m이상, 자전거도로 겸용)를 조성하고 부대복리시설, 학교, 공원 및 수변 등과 연계되는 보행통로 조성 - 보도폭은 최소 2.0m 이상 확보 - 보도와 차도의 단차는 10cm 이내로 하고, 단지내 횡단보도는 평탄형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일체화한 험프형으로 설치 ○ 단지내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 확보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지하에 설치(권장)하며, 자주식 주차로 함 ■ 단지내 공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내도로 및 주보행통로의 결절부는 광장을 조성하여 단지의 중심성을 강화 ○ 도로 등과의 경계부에 건축선 이격으로 생기는 공지에는 산책로 등의 보행통로와 식재, 벤치등 조성 ○ 단지내 진출입구와 도로 및 주보행동선은 교목식재 등으로 방향성 유도 ○ 단지내 옥외 생활공간 비율은 20%이상 확보 ■ 단지내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및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정도상에 담장설치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서 부득이하게 담장 또는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위치에 따라 형태, 높이, 재료 등을 선택하도록 함 - 도로에 접한 담장 : 투시형 담장 또는 화목류의 생울타리, 높이 1.2m 이하 ○ 자전거보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호동 단위별 또는 2~3개 주호동별로 자전거보호대를 설치 ○ 포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의 질감, 패턴, 색채, 크기 등에 있어서 각 가구별로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옥외광고물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은 외장재와 조화되도록 함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할 것)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 및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도면번호	계획내용
Cn1 ~ Cn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 차량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 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출입구는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대지로의 진출입 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지하에 설치(권장)하며, 자주식 주차로 함 ■ 대지내 공지계획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배치를 금지함 ○ 차폐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 및 수변과 접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 공공보행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n5는 일반상업용지(CI)와 공동주택을 연계하는 보행통로 조성 ■ 담장의 설치 ○ 담장 또는 울타리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 필요할 경우에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 (단, 생울타리 외의 재료로 조성시에는 관목 등으로 차폐할 것) ■ 옥외광고물의 설치 ○ 옥외광고물은 외장재와 조화되도록 함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함)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 조명 및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 차량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지하에 설치(권장)하며, 자주식 주차로 함 ■ 대지내 공지계획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배치를 금지함 ○ 차폐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접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 담장의 설치 ○ 담장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담장, 울타리 또는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위치에 따라 형태, 높이, 재료 등을 선택하도록 함 ○ 도로에 접한 담장 : 투시형 담장 또는 화목류의 생울타리, 높이 1.2m 이하 ■ 옥외광고물의 설치 ○ 옥외광고물은 외장재와 조화되도록 함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함)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 조명 및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도면번호	계획내용
<p>Md1 ~ Md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 차량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지하에 설치를 권장하며, 자주식 주차를 원칙으로 함 ■ 단지내 공지계획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배치를 금지함 ○ 보행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도로와 수변연도형 상가와의 사이공간에 수로와 평행하게 단지내 보행통로로 조성하여 보행공간 확보 ○ 차폐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접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 단지내 시설물 ○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및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정도상에 담장설치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서 부득이하게 담장 또는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위치에 따라 형태, 높이, 재료 등을 선택하도록 함 - 도로에 접한 담장 : 투시형 담장 또는 화목류의 생울타리, 높이 1.2m 이하 ■ 옥외광고물의 설치 ○ 옥외광고물은 외장재와 조화되도록 함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함)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 조명 및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p>C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 차량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지하에 설치(권장)하며, 자주식 주차로 함 ■ 대지내 공지계획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배치를 금지함 ○ 보행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도로와 이면도로를 연결하는 보행통로 확보 ○ 차폐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접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 담장의 설치 ○ 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불허. 단,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 (생울타리 외의 재료로 조성시에는 관목 등으로 차폐할 것) ■ 옥외광고물의 설치 ○ 옥외광고물은 외장재와 조화되도록 함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함)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 조명 및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도면번호	계획내용
Cr1 ~ Cr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 차량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지하에 설치(권장)하며, 자주식 주차로 함 ■ 대지내 공지계획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배치를 금지함 ○ 차폐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접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 담장의 설치 ○ 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불허. 단,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 (생울타리 외의 재료로 조성시에는 관목 등으로 차폐할 것) ■ 옥외광고물의 설치 ○ 옥외광고물은 외장재와 조화되도록 함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함)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 조명 및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Cw1 ~ Cw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 차량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수변일반상업 일부(Cw9, Cw10)는 도로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진입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조업차량 및 통과도로는 시차제 통행방식에 따라 예외 허용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지하에 설치(권장)하며, 자주식 주차로 함 ■ 대지내 공지계획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배치를 금지함 ○ 차폐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접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 담장의 설치 ○ 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불허. 단,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 (생울타리 외의 재료로 조성시에는 관목 등으로 차폐할 것) ■ 옥외광고물의 설치 ○ 옥외광고물은 외장재와 조화되도록 함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함)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 조명 및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도면번호	계획내용
Cv1 ~ Cv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 차량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니베니스는 도로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진입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조업차량 및 통과도로는 시차제 통행방식에 따라 예외 허용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역 내에서 대지 안으로의 차량 출입이 금지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100% 완화 ■ 대지내 공지계획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배치를 금지함 ■ 담장의 설치 ○ 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생울타리 외의 재료로 조성시에는 관목 등으로 차폐할 것) ■ 옥외광고물의 설치 ○ 옥외광고물은 외장재와 조화되도록 함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함)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 조명 및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Ki1 ~ Ki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 차량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도록 함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지하에 설치(권장)하며, 자주식 주차로 함 ■ 대지내 공지계획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배치를 금지함 - 전면공지에는 잔디식재를 하여 친환경 단지로 조성하되, 도로변 1m 보행공간 확보 ○ 차폐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접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 공공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미관의 증진,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 등을 위하여 경관상세계획을 따라 특화길 조성 ○ 대지내의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상 설치의무 조경면적의 1/2이상 및 식재수량의 1/2이상을 인접필지와의 경계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 인접한 필지의 조경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 - 인접한 필지가 없을 경우에는 법상 설치의무 조경면적의 1/2이상 및 식재수량의 1/2 이상을 필지 중앙부에 설치하여 중정형으로 조성하여야 함 ■ 담장의 설치 ○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생울타리 또는 조형성 있는 가로벽으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생울타리 외의 재료로 조성시에는 관목 등으로 차폐할 것) ■ 옥외광고물의 설치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함)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 조명 및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도면번호	계획내용
R&D1 ~ R&D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지하에 설치(권장)하며, 자주식 주차로 함 ■ 대지내 공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배치를 금지함 ○ 차폐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접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 공공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미관의 증진,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 등을 위하여 경관상세계획을 따라 특화길 조성 ■ 담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생울타리 또는 조형성 있는 가로벽으로 조성 (단, 생울타리 외의 재료로 조성시에는 관목 등으로 차폐할 것) ■ 옥외광고물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함)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 및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지하에 설치를 권장하며, 자주식 주차를 원칙으로 함 ■ 대지내 공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배치를 금지함 ○ 공공보행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글로벌캠퍼스와 미니베니스를 연계하는 보행통로 조성 단, 부득이한 경우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획지내에서 위치 변경 가능 ○ 차폐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접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 담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 (단, 생울타리 외의 재료로 조성시에는 관목 등으로 차폐할 것) ■ 옥외광고물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함)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 및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도면번호	계획내용
Sp1, Sp2 Se1~Se4 Sm1, Sm2 Sh1, S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옥외광고물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함)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 및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Go1 ~ Go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지하에 설치(권장)하며, 자주식 주차로 함 ■ 대지내 공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배치를 금지함 ○ 차폐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접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 옥외광고물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함)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 및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Cf1 ~ Cf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지하에 설치(권장)하며, 자주식 주차로 함 ■ 대지내 공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배치를 금지함 ○ 차폐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접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 옥외광고물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함)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 및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도면번호	계획내용
RI1 RI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지하에 설치(권장)하며, 자주식 주차로 함 ■ 대지내 공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배치를 금지함 ○ 차폐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접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 옥외광고물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함)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 및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PI1 ~ PI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 대지내 공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배치를 금지함 ○ 차폐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이 도로와 접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 공공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미관의 증진,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 등을 위하여 경관상세계획에 따라 특화길 조성 ■ 옥외광고물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함)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 및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Gs1 Gs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진출입구 분리시 1개의 대지에 2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대지로의 진출입 폭원은 4m이하로 조성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대지내 공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배치를 금지함 ■ 옥외광고물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함)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 및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도면번호	계획내용
T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대지내 공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배치를 금지함 ○ 차폐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접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 옥외광고물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함)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 및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대지내 공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배치를 금지함 ○ 차폐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접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 옥외광고물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함)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 및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집하1 집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 ■ 대지내 공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배치를 금지함 ○ 차폐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의 환경영향(악취, 소음, 미관 등)이 최소화 되도록 도로 및 대지와의 접경부에 마운딩 또는 구조물 등을 통해 차폐식재를 하도록 함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접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 담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m 이상의 환경정화수(상록수, 침엽수종 등)로 조성 ■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공원 조성계획과 조화롭게 조경 시행 ■ 옥외광고물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함)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 및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도면번호	계획내용
전기1 전기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 ■ 대지내 공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배치를 금지함 ○ 차폐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의 환경영향(악취, 소음, 미관 등)이 최소화 되도록 도로 및 대지와의 접경부에 마운딩 또는 구조물 등을 통해 차폐식재를 하도록 함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접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 담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m 이상의 환경정화수(상록수, 침엽수종 등)로 조성 ■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공원 조성계획과 조화롭게 조경 시행 ■ 옥외광고물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함)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 및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 ■ 대지내 공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배치를 금지함 ○ 차폐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의 환경영향(악취, 소음, 미관 등)이 최소화 되도록 도로 및 대지와의 접경부에 마운딩 또는 구조물 등을 통해 차폐식재를 하도록 함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접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 담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m 이상의 환경정화수(상록수, 침엽수종 등)로 조성 ■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공원 조성계획과 조화롭게 조경 시행 ■ 옥외광고물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함)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 및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별표1 경관계획 및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변경

도면번호	계획내용
Rs1 ~ Rsl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출입구는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대지로의 진출입 폭원은 6m 이하로 조성 ○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지하에 설치(권장)하며, 자주식 주차로 함 ■ 담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단, 생울타리 외의 재료로 조성시에는 관목 등으로 차폐할 것)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Rc1 ~ Rc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차도율 35%이하 - 단지내 도로면적 중 30% 이상을 투수성 포장재로 포장토록 함 ○ 보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차분리포장을 원칙으로 함 - 주보행통로(6m이상, 자전거도로 겸용)를 조성하고 부대복리시설, 학교, 공원 및 수변 등과 연계되는 보행통로 조성 - 보도폭은 최소 2.0m 이상 확보 - 보도와 차도의 단차는 10cm 이내로 하고, 단지내 횡단보도는 평탄형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일체화한 험프형으로 설치 ○ 단지내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 확보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지하에 설치(권장)하며, 자주식 주차로 함 ■ 단지내 공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내도로 및 주보행통로의 결절부는 광장을 조성하여 단지의 중심성을 강화 ○ 도로 등과의 경계부에 건축선 이격으로 생기는 공지에는 산책로 등의 보행통로와 식재, 벤치 등 조성 ○ 단지내 진출입구와 도로 및 주보행동선은 교목식재 등으로 방향성 유도 ○ 단지내 옥외 생활공간 비율은 20%이상 확보 ○ 공공보행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경축확보구간을 보행통로로 활용하여 주변 공동주택, 학교, 공원 및 수변 등과 연계되는 보행통로 조성 - 공공보행통로 및 시각회랑을 따라 부대복리시설 및 오픈스페이스 배치를 통해 동선에 따른 다채로운 경관 연출 ■ 단지내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및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상에 담장설치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서 부득이하게 담장 또는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설치위치, 형태, 높이, 재료 등을 선택하도록 함 ○ 포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의 질감, 패턴, 색채, 크기 등에 있어서 각 가구별로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옥외광고물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은 외장재와 조화되도록 함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할 것)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도면번호	계획내용
<p>Cn1 ~ Cn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 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출입구는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대지로의 진출입 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지하에 설치(권장)하며, 자주식 주차로 함 ■ 대지내 공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조성 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에서 제시하는 대지내 공지 조성기준을 따름 - 경관의 연속성 및 오픈스페이스의 용이한 확장을 위해 보도와 동일한 패턴의 보도포장 (권장) - 공공공지와 접한 전면공지는 공공공지 컨셉과 연계하여 보도패턴 및 시설물, 조경시설 등을 설치 ○ 차폐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 및 수변과 접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 공공보행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수로와 공동주택을 연계하는 보행통로 조성 - 미니베니스와 연계되는 폭 6m 보행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동선은 자유롭게 조성(Cn1~Cn4) - 공공보행통로의 출입구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 담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또는 울타리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 필요할 경우에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단, 생울타리 외의 재료로 조성시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디자인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설치 할 것) ■ 옥외광고물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은 외장재와 조화되도록 함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함)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p>Rm1 ~ Rm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지하에 설치(권장)하며, 자주식 주차로 함 ■ 대지내 공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조성 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에서 제시하는 대지내 공지 조성기준을 따름 - 경관의 연속성 및 오픈스페이스의 용이한 확장을 위해 보도와 동일한 패턴의 보도포장 (권장) ○ 차폐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접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 공공보행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m1과 Rm2의 경우 상업시설용지(CI)와 연계되는 보행통로(폭 10m) 설치 -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 담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담장, 울타리 또는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설치위치, 형태, 높이, 재료 등을 선택하도록 함 ■ 옥외광고물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은 외장재와 조화되도록 함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함)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도면번호	계획내용
Bs1 ~ Bs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도록 함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지하에 설치(권장)하며, 자주식 주차를 원칙으로 함 ■ 단지내 공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조성 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에서 제시하는 단지내 공지 조성기준을 따름 - 공공공지와 접한 전면공지는 공공공지 컨셉과 연계한 보도패턴 및 시설물, 조경시설 등을 설치 ○ 보행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도로와 수변연도형 상가와의 사이공간에 내부수로와 평행하게 단지내 보행통로로 조성하여 보행공간 확보 -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 전면도로와 내부수로를 연결하는 보행통로를 대지 내 1개소 이상 조성 (권장) ○ 차폐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접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 공개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공지 조성 시 내부수로변으로 배치하며,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에서 제시하는 단지내 공지 조성기준을 따름 ■ 단지내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및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단, 생울타 외의 재료로 조성시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디자인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설치 할 것) ■ 옥외광고물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은 외장재와 조화되도록 함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함)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단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Ki17 ~ Ki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도록 함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지하에 설치(권장)하며, 자주식 주차로 함 (단, 산업시설내 종사자를 위하여 충분한 주차면수를 확보하여야 함) ■ 단지내 공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조성 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에서 제시하는 단지내 공지 조성기준을 따름 - 전면공지에는 잔디식재를 하여 친환경 단지로 조성하되, 도로변 1m 보행공간 확보 - 경관의 연속성 및 오픈스페이스를 용이한 확장을 위해 보도와 동일한 패턴의 보도포장 (권장) ○ 차폐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접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 담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을 설치 시 생울타리 등으로 차폐감을 최소화하며 담장경계부로 조정공간 조성 (단, 생울타리 외의 재료의 담장설치 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높이, 재질, 디자인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설치 할 것) ■ 옥외광고물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은 외장재와 조화되도록 함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함)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단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도면번호	계획내용
R&D1 ~ R&D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지하에 설치(권장)하며, 자주식 주차로 함 (단, 연구시설내 종사자를 위하여 충분한 주차면수를 확보하여야 함) ■ 대지내 공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조성 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에서 제시하는 대지내 공지 조성기준을 따름 - 경관의 연속성 및 오픈스페이스를 용이한 확장을 위해 보도와 동일한 패턴의 보도포장 (권장) ○ 차폐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접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 공공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 공공조경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 대지 내 공공조경 조성시 첨단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 담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을 설치 시 생울타리 등으로 차폐감을 최소화하며 담장경계부로 조경공간 조성 (단, 생울타리 외의 재료의 담장설치 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높이, 재질, 디자인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설치 할 것) ■ 옥외광고물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함)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Er1 Er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지하에 설치를 권장하며, 자주식 주차를 원칙으로 함 ■ 대지내 공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조성 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에서 제시하는 대지내 공지 조성기준을 따름 ○ 공공보행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설용지와 내부수로를 연계하는 보행통로 조성 단, 부득이한 경우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획지 내에서 위치 변경 가능 - 공공보행통로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 차폐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접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 담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단, 생울타리 외의 재료로 조성시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디자인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설치 할 것) ■ 옥외광고물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함)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도면번호	계획내용
유1~유5 초1~초5 중1~중3 고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옥외광고물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함)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청사1 청사2 청사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도록 함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지하에 설치(권장)하며, 자주식 주차로 함 ■ 대지내 공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조성 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에서 제시하는 대지내 공지 조성기준을 따름 ○ 차폐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접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 옥외광고물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함)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문화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도록 함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지하에 설치(권장)하며, 자주식 주차로 함 ■ 대지내 공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조성 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에서 제시하는 대지내 공지 조성기준을 따름 ○ 차폐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 및 수변과 접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 옥외광고물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함)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도면번호	계획내용
종1 종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지하에 설치(권장)하며, 자주식 주차로 함 ■ 대지내 공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조성 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에서 제시하는 대지내 공지 조성기준을 따름 ○ 차폐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접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 옥외광고물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함)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주1 ~ 주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 대지내 공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조성 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에서 제시하는 대지내 공지 조성기준을 따름 ○ 차폐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와 접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 공공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미관의 증진,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 등을 위하여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에 따라 특화길 조성 ■ 옥외광고물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함)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주유1 주유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진출입구 분리시 1개의 대지에 2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대지로의 진출입 폭원은 4m이하로 조성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대지내 공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조성 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에서 제시하는 대지내 공지 조성기준을 따름 ■ 옥외광고물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함)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도면번호	계획내용
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대지내 공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조성 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에서 제시하는 대지내 공지 조성기준을 따름 ○ 차폐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접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 옥외광고물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함)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정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대지내 공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조성 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에서 제시하는 대지내 공지 조성기준을 따름 ○ 차폐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접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 옥외광고물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함)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집하1 집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 ■ 대지내 공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조성 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에서 제시하는 대지내 공지 조성기준을 따름 ○ 차폐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의 환경영향(악취, 소음, 미관 등)이 최소화 되도록 도로 및 대지와의 접경부에 마운딩 또는 구조물 등을 통해 차폐식재를 하도록 함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접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 담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m 이상의 환경정화수(상록수, 침엽수종 등)로 조성 ■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공원 조성계획과 조화롭게 조경 시행 ■ 옥외광고물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함)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도면번호	계획내용
전기1 전기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 ■ 대지내 공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조성 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에서 제시하는 대지내 공지 조성기준을 따름 ○ 차폐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의 환경영향(소음, 미관 등)이 최소화 되도록 도로 및 대지와의 접경부에 마운딩 또는 구조물 등을 통해 차폐식재를 하도록 함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접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 담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m 이상의 환경정화수(상록수, 침엽수종 등)로 조성 ■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공원 조성계획과 조화롭게 조경 시행 ■ 옥외광고물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함)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특별계획구역 지정(신설)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첨단산업클러스터(C) 특별계획구역 (미니베니스)	송도국제도시 11 공구 일원	-	증)350,362	350,362	
신설	2	첨단산업클러스터(C) 특별계획구역 (미니말리부)	송도국제도시 11 공구 일원	-	증)469,055	469,055	

나)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신설	1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일원	350,362	○ 송도국제도시의 완결적 이미지의 상징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신설
신설	2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일원	469,055	

2) 특별계획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연립주택용지(Th)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Th1 ~ Th2	용도	허용용도 ○ 공동주택(나목 및 다목) -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로 개발하는 경우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 타운하우스 ※ 건축물의 지하층은 주거용도 불허 ※ 타운하우스의 정의는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계획 참조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20m 이하(단, 경사지붕 설치시 25m 이하)
	배치	○ 단지 내 가로변으로 장벽을 형성하는 배치는 지양 ○ 가급적 인접 주거건축물과 외부공간을 연계 배치하여 개방감 있는 가로경관 연출 ○ 내부수로와 공원을 연계하는 단지 내 오픈스페이스 및 보행통로 계획 ○ 외부공간 및 동선계획은 보행자 중심으로 계획 ※ 본 지침 외 사항은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형태	○ 가로경관과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 ○ 형태 - 입면계획 시 자연재료를 포인트 요소로 활용하여 풍부한 자연녹지경관과 조화를 유도 - 내부수를 마주하는 주거건축의 경우 테라스 등의 건축형태 적용 (권장) - 동일 주거모델에 의한 단조로운 경관형성을 지양하고 블록 내 조닝계획을 수립하여 최소 3개 이상의 서로 다른 디자인 유형을 계획 ○ 지붕 - 경사지붕을 적용하여 경관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단지의 통합된 경관 연출 ○ 옥상부분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그 외 일체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음 ※ 본 지침 외 사항은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색채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건축한계선: 주요가로변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 연립주택용지 계획인구 지표 >

구분	면적(㎡)	주택평균 면적(㎡/호)	수용호수 (세대)	인구수 (인)	인구밀도 (인/ha)
Th1	37,579	106	354	903	240
Th2	18,816	106	177	452	240
계	56,395	-	531	1,355	240

※ 세대당 인구수: 2.55인

나) 근린생활시설용지(Cn)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Cn11 ~ Cn17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근린생활시설(라목 중 안마원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나목 중 마권관련시설, 다목, 마목 중 동물원 제외) ○ 판매시설(나목, 다목) - 단, 일반개입제조공업의 시설은 제외 ○ 노유자시설(나목 중 노인복지주택 제외) ○ 운동시설(가목 중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나목 중 오피스텔 제외) ○ 자동차 관련 시설(가목)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Cn18 ~ Cn19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근린생활시설(라목 중 안마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고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나목 중 마권관련시설, 다목, 마목 중 동물원 제외) ○ 판매시설(나목, 다목)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Cn11 ~ Cn19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20% 이하
	높이	○ 12m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수로를 향한 시각·보행 통로를 형성하는 배치(Cn11~Cn14, Cn18, Cn19) ○ 인접 근린생활시설과 연계하는 외부공간(친수공간) 배치(Cn11~Cn14, Cn18, Cn19) ○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배치하고 인접 시설 간 오픈스페이스의 집중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배치 ○ 내부수로를 향하는 보행통로를 조성하는 배치 (권장)(Cn18, Cn19) ※ 본 지침 외 사항은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면의 의장, 재료는 주변건물과의 조화 유지 ○ 박공지붕 적용(권장)(Cn11~Cn14) ○ 입면계획 시 자연재료를 포인트 요소로 활용(Cn11~Cn14) ○ 테라스 등의 조망형 건축형태 계획(권장)(Cn11~Cn14) ○ 내부수로를 바라보는 입면은 투시형 입면으로 계획(Cn11~Cn14, Cn18, Cn19) ○ 입체적인 형태적 변화가 있는 입면으로 조성하고 수변을 향한 입면은 개방적 구조의 입면으로 조성 (권장) ○ 가로환경의 활성화를 위해 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 - 투시형 벽면: 도로에 접한 벽면적의 50%이상 투시형 벽면으로 처리 - 투시형 셔터: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개별 설치 불허 ○ 가로변 미관 향상을 위하여 건축면적 50% 이상의 필로티구조 불허 ○ 지붕: 경사지붕을 사용할 경우 인접한 건축물의 물매와 통일 ○ 옥상부분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그 외 일체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음 - 옥상녹화를 조성하여 도심의 녹화공간 최대한 확보 (권장) ○ 1층부의 높이: 4.5m로 하며, 인접대지 1층부의 높이와 차이는 0.5m 이내로 함 ○ 1층의 바닥높이: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는 10cm 이내로 함 ※ 본 지침 외 사항은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색채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 3m 건축한계선: 주요가로변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다) 상업시설용지(Cl, Cr, Cw, Cv, Cm)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Cl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근린생활시설(라목 중 안마원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나목 중 마권관련시설, 다목, 마목 중 동물원 제외) ○ 판매시설(나목, 다목) ○ 의료시설(가목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나목, 부수시설 중 장례식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가목 제외) ○ 노유자시설(나목 중 노인복지주택 제외) ○ 운동시설(가목 중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나목 중 오피스텔 제외) ○ 숙박시설(나목) ○ 자동차 관련 시설(가목)
		불허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600% 이하
	높이	○ 130m 이상 ~ 300m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배치 ○ 오픈스페이스의 집중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배치 ○ 블록 개발시 단지 내 전면도로와 이면도로를 연결하는 보행통로 1개소 이상 확보 단, 획지분할 개발 시 대지 분할가능선으로 부터 5m 이상 이격하여 건축물 배치 ※ 본 지침 외 사항은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입면높아형태 등에서 주변건축물과 차별화된 특색 있는 디자인 유도 ○ 가로환경의 활성화를 위해 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시형 벽면: 도로에 접한 벽면적의 50%이상 투시형 벽면으로 처리 - 투시형 셔터: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개별 설치 불허 ○ 옥상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그 외 일체의 구조물을 설치 할 수 없음 - 옥상녹화를 조성하여 도심의 녹화공간 최대한 확보(권장) ○ 1층의 바닥높이: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는 10cm 이내로 함 ※ 본 지침 외 사항은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색채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m, 9m 건축한계선: 주요가로변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Cr1 ~ Cr5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근린생활시설(라목 중 안마원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나목 중 마권관련시설, 다목, 마목 중 동물원 제외) ○ 판매시설(나목, 다목) ○ 의료시설(가목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나목, 부수시설 중 장례식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가목 제외) ○ 노유자시설(나목 중 노인복지주택 제외) ○ 운동시설(가목 중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나목 중 오피스텔 제외) ○ 숙박시설(나목) ○ 자동차 관련 시설(가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20m 이상 ~ 50m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배치 ○ 오픈스페이스의 집중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배치 ※ 본 지침 외 사항은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니베이스의 유럽형 이미지와 대비되는 모던하고 현대적인 건축입면 계획 (권장) ○ 특화된 소재의 입면 및 패턴계획 ○ 발코니 등을 통한 입체적인 입면변화를 연출 (권장) ○ 가로환경의 활성화를 위해 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시형 벽면: 도로에 접한 벽면적의 50%이상 투시형 벽면으로 처리 - 투시형 셔터: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개별 설치 불허 ○ 지붕: 경사지붕을 사용할 경우 인접한 건축물의 물매와 동일 (권장) ○ 옥상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그 외 일체의 구조물을 설치 할 수 없음 - 옥상녹화를 조성하여 도심의 녹화공간 최대한 확보 (권장) ○ 1층의 바닥높이: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는 10cm 이내로 함 ※ 본 지침 외 사항은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색채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m 건축한계선: 주요가로변 - 6m 건축한계선: 주요가로변 - 9m 건축한계선: 주요가로변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참조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Cw1 ~ Cw7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근린생활시설(라목 중 안마원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나목 중 마권관련시설, 다목, 마목 중 동물원 제외) ○ 판매시설(나목, 다목) ○ 운동시설(가목 중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나목 중 오피스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1~2층에는 업무시설의 입지를 금함 ○ 숙박시설(나목) ○ 관광 휴게시설(가목, 나목, 다목)
		불허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20m 이상 ~ 30m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배치 ○ 오픈스페이스의 집중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배치 ○ 인접 상업시설과 연계되는 상업형 특화가로를 형성하는 건축 배치 (권장)(Cw4, Cw5) ※ 본 지침 외 사항은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니베이스의 유럽형 이미지와 대비되는 모던하고 현대적인 건축입면 계획 (권장) (Cw1~Cw5에 한함) ○ 경사지붕(맨사드 형식 권장) 적용 및 유럽 건축을 재해석한 건축 입면디자인 특화 (권장) (Cw6, Cw7에 한함) ○ 가로환경의 활성화를 위해 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시형 벽면: 도로에 접한 벽면적의 50%이상 투시형 벽면으로 처리 - 투시형 셔터: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개별 설치 불허 ○ 지붕: 경사지붕을 사용할 경우 인접한 건축물의 물매와 통일 (권장) ○ 옥상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그 외 일체의 구조물을 설치 할 수 없음 - 옥상녹화를 조성하여 도심의 녹화공간 최대한 확보 (권장) ○ 1층의 바닥높이: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는 10cm 이내로 함 ※ 본 지침 외 사항은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색채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m 건축한계선: 주요가로변 - 6m 건축한계선: 주요가로변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Cv1 ~ Cv18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근린생활시설(라목 중 안마원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나목 중 마권관련시설, 다목, 마목 중 동물원 제외) ○ 판매시설(나목, 다목) ○ 운동시설(가목 중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나목 중 오피스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1~2층에는 업무시설의 입지를 금함 ○ 관광 휴게시설(가목, 나목, 다목)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Cv1~Cv9 Cv12~Cv18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12m 이상 ~ 16m 이하
Cv10 ~ Cv11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16m
Cv1 ~ Cv18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배치 ○ 오픈스페이스의 집중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배치 ○ 내부수로변에 접한 접지부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 수로변으로부터 건축물 이격 배치 ○ 광장과 인접한 Cv10, Cv11은 획지분할 개발시 대지 분할가능선으로부터 1m 이상 이격 배치 ※ 본 지침 외 사항은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니스 건축 양식을 재해석 하여 특화된 건축디자인 계획 (권장) ○ 입면분절을 통한 시각적 안정감 구현 (권장) ○ 가로환경의 활성화를 위해 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시형 벽면: 도로에 접한 벽면적의 70%이상 투시형 벽면으로 처리 - 투시형 셔터: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개별 설치 불허 ○ 지붕: 경사지붕을 사용하며, 인접한 건축물의 물매와 동일 ○ 옥상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그 외 일체의 구조물을 설치 할 수 없음 - 옥상녹화를 조성하여 도심의 녹화공간 최대한 확보 (권장) ○ 1층의 바닥높이: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는 10cm 이내로 함 ○ 1층부의 높이: 4.5m(허용범위 ±0.5m)로 계획하며, 인접대지 1층부의 높이와 차이는 0.5m 이내로 함 ○ 미니베니스 내부 광장과 연계된 아케이드 설치(Cv10, Cv11에 한함) ※ 본 지침 외 사항은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m, 2m 건축한계선: 주요가로변 - 기타(광장 연결구간: Cv10, Cv11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m 건축지정선(지상1층) • 4m 벽면지정선(지상1층): 지상1층 아케이드(3m) 확보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Cm1 ~ Cm2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근린생활시설(라목 중 안마원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나목 중 마권관련시설, 다목, 마목 중 동물원 제외) ○ 판매시설(나목, 다목) ○ 운동시설(가목 중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나목 중 오피스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1~2층에는 업무시설의 입지를 금함 ○ 숙박시설(나목) ○ 위락시설 ○ 관광 휴게시설(가목, 나목, 다목)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12m 이상 ~ 16m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배치 ○ 오픈스페이스의 집중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배치 ○ 내부수로변에 접한 접지부의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 수변으로부터 건축물 이격 배치(10m) ○ 용지 내 다양한 보행공간 및 거점을 확보하는 건축배치 ※ 본 지침 외 사항은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지붕(맨사드 형식 권장)으로 전체적인 경관 통일성을 확보 ○ 유럽건축을 재해석한 특화된 외관(맞벽, 창호, 외장재 등의 건축요소 활용)계획 ○ 휴먼스케일 공간 조성을 위해 입면분절을 통한 시각적 안정감 구현 (권장) ○ 가로환경의 활성화를 위해 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시형 벽면: 도로에 접한 벽면적의 70%이상 투시형 벽면으로 처리 - 투시형 셔터: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개별 설치 불허 ○ 지붕: 경사지붕을 사용하며, 인접한 건축물의 물매와 통일 ○ 옥상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그 외 일체의 구조물을 설치 할 수 없음 - 옥상녹화를 조성하여 도심의 녹화공간 최대한 확보 (권장) ○ 1층의 바닥높이: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는 10cm 이내로 함 ○ 1층부의 높이: 4.5m(허용범위 ±0.5m)로 계획하며, 인접대지 1층부의 높이와 차이는 0.5m 이내로 함 ※ 본 지침 외 사항은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색채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m 건축한계선: 주요가로변 - 10m 건축한계선: 내부수로변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라) 기타시설용지

■ 공공청사용지(청사)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청사4 ~ 청사6	용도	허용 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의 공공청사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청사4~청사6	
	용적률	○ 200% 이하	청사4, 청사5	
		○ 250% 이하	청사6	
	높이	○ 20m이하	청사4, 청사5	
		○ 50m이하	청사6	
	배치	○ 주차장 및 주차출입구 등 옥외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		
	형태	○ 공공청사의 인지성을 고려한 특화된 외관조성 (권장)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함 ○ 옥상부분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그 외 일체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음 - 옥상녹화를 조성하여 도심의 녹화공간 최대한 확보 (권장) ○ 보행자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은 보행자도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 1층의 바닥높이: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 10cm 이내로 함		
	색채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6m 건축한계선: 주요가로변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 문화시설용지(문화)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문화2 ~ 문화3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용도: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등 제외)의 50%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나목 중 예식장 및 마권관련시설, 다목, 마목 중 동물원 제외) ▶ 부용도: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등 제외)의 50% 이하 ○ 제1종 근린생활시설(라목 중 안마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 판매시설(다목) ○ 노유자시설(나목 중 노인복지주택 제외) ○ 수련시설(가목) ○ 운동시설(가목 중 골프장 및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나목 중 오피스텔 제외) ○ 관광휴게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문화2~문화3	
	용적률	○ 200% 이하	문화2~문화3	
	높이	○ 24m이하	문화2	
		○ 30m이하	문화3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 ○ 내부수로 조망을 고려하여 통경 확보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수로 조망차폐 및 압박감을 주는 장대한 입면 지양 (권장)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조형미가 넘치는 형태 및 특화된 입면 계획 (권장) ○ 옥상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그 외 일체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음 - 옥상녹화를 조성하여 도심의 녹화공간 최대한 확보 (권장) ○ 1층 바닥높이: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 10cm 이내로 함 		
	색채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m 건축한계선: 주요가로변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 주차장용지(주차)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주13 주14 주15 주16 주17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용도: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등 제외)의 70% 이상 (단, 주13, 주14, 주15의 경우 80% 이상)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함) ▶ 부용도: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등 제외)의 30% 이하 (단, 주13, 주14, 주15의 경우 20% 이하) ○ 제1종근린생활시설(라목 중 안마원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충포판매소, 장의사, 옥외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나목 중 음식점 및 마권관련시설, 다목, 마목 중 동물원 제외) ○ 판매시설(나목, 다목) ○ 운동시설(가목 중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나목 중 오피스텔 제외) ○ 자동차 관련 시설(가목, 나목)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18 ~ 주21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평면주차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13 ~ 주21	건폐율	-	주18~주21
		○ 90% 이하	주13, 주14, 주15, 주16, 주17
	용적률	-	주18~주21
		○ 200% 이하	주16, 주17
		○ 500% 이하	주15
		○ 600% 이하	주13, 주14
	높이	-	주15, 주18~주21
		○ 12m 이하	주16, 주17
		○ 20m 이하	주15
		○ 40m 이하	주13, 주14
	배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저층부의 형태·색채·재료 등은 주변지역의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가로의 연속성을 유지 ○ 마감재료 없이 주차장의 구조가 그대로 노출되는 외관의 형태를 지양하며, 편칭메탈, 메탈 패브릭, 반투명 유리 등을 사용하여 주차장의 인지성을 높일 수 있는 외관(권장) ○ 주차장의 시인성 확보를 위한 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며, 가로변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 ○ 옥상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그 외 일체의 구조물을 설치 할 수 없음 - 옥상공간을 정원화 하여 도심의 녹화공간 최대한 확보(권장) 	
색채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m, 6m 건축한계선: 주요가로변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3) 특별계획구역 내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계획내용
Th1 ~ T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차도율 35%이하 - 단지내 도로면적 중 30% 이상을 투수성 포장재로 포장토록 함 ○ 보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차분리포장을 원칙으로 함 - 주보행통로(6m이상, 자전거도로 겸용)를 조성하고 부대복리시설, 공원, 수변 등과 연계되는 보행통로 조성 - 보도폭은 최소 2.0m 이상 확보 - 보도와 차도의 단차는 10cm 이내로 하고, 단지내 횡단보도는 평탄형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일체화한 험프형으로 설치 ○ 단지내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 확보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지하에 설치(권장)하며, 자주식 주차로 함 ■ 단지내 공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등과의 경계부에 건축선 이격으로 생기는 공지에는 산책로 등의 보행통로와 식재, 벤치등 조성 ○ 단지내 진출입구와 도로 및 주보행동선은 교목식재 등으로 방향성 유도 ○ 단지내 옥외 생활공간 비율은 20%이상 확보 ■ 단지내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보행통로는 최소한의 시설로 계획하여 보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열린 가로경관이 형성되도록 함 ○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및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담장, 울타리 또는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설치위치, 형태, 높이, 재료 등을 선택하도록 함 ○ 포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의 질감, 패턴, 색채, 크기 등에 있어서 각 가구별로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옥외광고물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할 것)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도면번호	계획내용
Cn11 ~ Cn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 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출입구는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대지로의 진출입 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지하에 설치(권장)하며, 자주식 주차로 함 ■ 대지내 공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배치를 금지함 - 경관의 연속성 및 오픈스페이스와의 용이한 확장을 위해 내부수로변 공공공지 및 인접 보도와 동일한 패턴의 보도포장 (권장) - 전면공지 조성 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에서 제시하는 대지내 공지 조성기준을 따름 ○ 차폐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 및 수변과 접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 공개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공지 조성 시 내부수로변으로 배치 (권장) ■ 담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또는 울타리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 필요할 경우에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단, 생울타리 외의 재료로 조성시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디자인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설치 할 것) ■ 옥외광고물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은 외장재와 조화되도록 함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함)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도면번호	계획내용
C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지하에 설치(권장)하며, 자주식 주차로 함 ■ 대지내 공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배치를 금지함 - 경관의 연속성 및 오픈스페이스의 용이한 확장을 위해 인접보도와 동일한 패턴의 보도포장(권장) - 전면공지 조성 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에서 제시하는 대지내 공지 조성기준을 따름 ○ 보행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도로와 이면도로를 연결하는 보행통로 확보 ○ 차폐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접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 담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불허하며, 단,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생울타리 외의 재료로 조성시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디자인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설치 할 것) ■ 옥외광고물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은 건물 외장재와 조화되도록 함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할 것)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Cr1 ~ Cr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지하에 설치(권장)하며, 자주식 주차로 함 ■ 대지내 공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배치를 금지함 - 경관의 연속성 및 오픈스페이스의 용이한 확장을 위해 인접보도와 동일한 패턴의 보도포장(권장) - 전면공지 조성 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에서 제시하는 대지내 공지 조성기준을 따름 ○ 차폐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접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 담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불허하며, 단,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생울타리 외의 재료로 조성시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디자인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설치 할 것) ■ 옥외광고물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은 건물 외장재와 조화되도록 함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할 것)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도면번호	계획내용
Cw1 ~ Cw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지하에 설치(권장)하며, 자주식 주차로 함 ■ 대지내 공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배치를 금지함 - 경관의 연속성 및 오픈스페이스의 용이한 확장을 위해 인접보도와 동일한 패턴의 보도포장(권장) - 전면공지 조성 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에서 제시하는 대지내 공지 조성기준을 따름 ○ 차폐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접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 담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불허. 단,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 (생울타리 외의 재료로 조성시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디자인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설치 할 것) ■ 옥외광고물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은 건물 외장재와 조화되도록 함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할 것)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Cv1 ~ Cv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니베니스는 도로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진입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조업차량 및 통과도로는 시차제 통행방식에 따라 예외 허용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역 내에서 대지 안으로의 차량 출입이 금지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100% 완화 ■ 대지내 공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배치를 금지함 - 경관의 연속성 및 오픈스페이스의 용이한 확장을 위해 인접보도와 동일한 패턴의 보도포장(권장) - 전면공지 조성 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에서 제시하는 대지내 공지 조성기준을 따름 ■ 담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불허. 단,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 (생울타리 외의 재료로 조성시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디자인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설치 할 것) ■ 옥외광고물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은 건물 외장재와 조화되도록 함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할 것)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도면번호	계획내용
Cm1 ~ Cm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지하에 설치(권장)하며, 자주식 주차로 함 ■ 대지내 공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배치를 금지함 - 내부수로와 접한 전면공지는 특화된 보도패턴 및 시설물, 조경시설, 수경시설, 공공미술 등을 계획 (권장) - 전면공지 조성 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에서 제시하는 대지내 공지 조성기준을 따름 ○ 차폐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접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 담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불허. 단,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 (생울타리 외의 재료로 조성시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디자인 등에 대해 협의하여 설치 할 것) ■ 옥외광고물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은 건물 외장재와 조화되도록 함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할 것)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청사4 ~ 청사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지하에 설치(권장)하며, 자주식 주차로 함 ■ 대지내 공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배치를 금지함 - 전면공지 조성 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에서 제시하는 대지내 공지 조성기준을 따름 ○ 차폐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접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 옥외광고물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할 것)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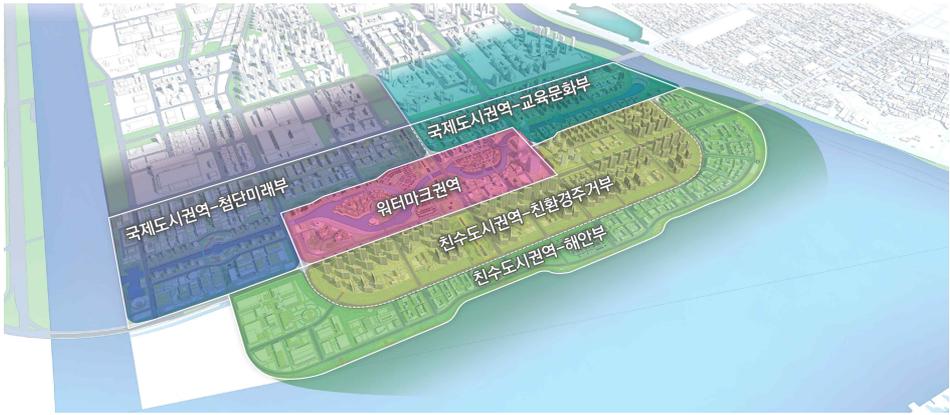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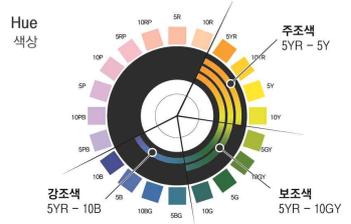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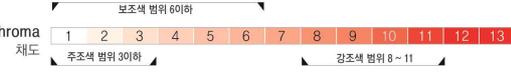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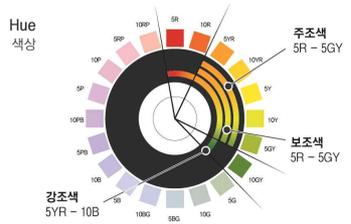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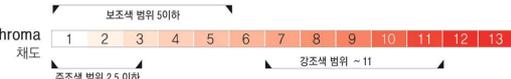
도면번호	계획내용
<p>문화2 ~ 문화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도록 함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지하에 설치(권장)하며, 자주식 주차로 함 ■ 대지내 공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배치를 금지함 - 전면공지 조성 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에서 제시하는 대지내 공지 조성기준을 따름 ○ 차폐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 및 수변과 접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 옥외광고물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할 것)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p>주13 ~ 주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 ○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도록 함 ■ 대지내 공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배치를 금지함 - 전면공지 조성 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에서 제시하는 대지내 공지 조성기준을 따름 ○ 차폐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이 도로와 접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 공공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미관의 증진,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 등을 위하여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에 따라 특화길 조성 ■ 옥외광고물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형 간판만 허용(단, 뒷판이 없는 입체형 간판으로 할 것) ○ 그 외의 사항은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 대지내 조명 및 기타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1 기타 경관계획 및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따라야 함

구 분	계 획 내 용																		
조명 및 야간경관	○ 세부사항																		
	구 분	디자인 방향 및 기준																	
	건축물	기준	○ 건축물 입면 휘도 상업 및 업무 12cd/m ² , 주상복합 6cd/m ² , 공동주택 6cd/m ² 이하 ○ 권장 휘도비 주위와의 조화 1 : 2, 약한 강조 1 : 3, 강조 1 : 5, 강한 강조 1 : 10																
	공원 및 광장	기준	○ 색온도 : 3000K~4200K ○ 조도 <table border="1" data-bbox="635 555 1437 701"> <thead> <tr> <th>구분</th> <th>수평적 조도</th> <th>수직적 조도</th> </tr> </thead> <tbody> <tr> <td>주요시설 주변</td> <td>15lx ~30lx</td> <td>6lx 이상</td> </tr> <tr> <td>산책로</td> <td>6lx</td> <td>2lx 이상</td> </tr> <tr> <td>외부계단</td> <td>40lx 이상</td> <td>20lx 이상</td> </tr> <tr> <td>경사로</td> <td>40lx 이상</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수평적 조도	수직적 조도	주요시설 주변	15lx ~30lx	6lx 이상	산책로	6lx	2lx 이상	외부계단	40lx 이상	20lx 이상	경사로	40lx 이상	-
	구분	수평적 조도	수직적 조도																
	주요시설 주변	15lx ~30lx	6lx 이상																
산책로	6lx	2lx 이상																	
외부계단	40lx 이상	20lx 이상																	
경사로	40lx 이상	-																	
보행로	기준	○ 색온도 : 3000K~4200K ○ 조도 <table border="1" data-bbox="635 768 1437 913"> <thead> <tr> <th>구분</th> <th>수평적 조도</th> <th>수직적 조도</th> </tr> </thead> <tbody> <tr> <td>고 이용로</td> <td>15lx ~30lx</td> <td>6lx 이상</td> </tr> <tr> <td>저 이용로</td> <td>6lx</td> <td>2lx 이상</td> </tr> <tr> <td>외부 계단</td> <td>40lx 이상</td> <td>20lx 이상</td> </tr> <tr> <td>경사로</td> <td>40lx 이상</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수평적 조도	수직적 조도	고 이용로	15lx ~30lx	6lx 이상	저 이용로	6lx	2lx 이상	외부 계단	40lx 이상	20lx 이상	경사로	40lx 이상	-	
구분	수평적 조도	수직적 조도																	
고 이용로	15lx ~30lx	6lx 이상																	
저 이용로	6lx	2lx 이상																	
외부 계단	40lx 이상	20lx 이상																	
경사로	40lx 이상	-																	
도로	기준	○ 자전거 도로 조도 <table border="1" data-bbox="635 947 1437 1014"> <thead> <tr> <th>구분</th> <th>직선구간 도로면</th> <th>평균 조도</th> </tr> </thead> <tbody> <tr> <td>자전거도로</td> <td></td> <td>평균 3lx 평균 5~10lx</td> </tr> </tbody> </table>		구분	직선구간 도로면	평균 조도	자전거도로		평균 3lx 평균 5~10lx										
구분	직선구간 도로면	평균 조도																	
자전거도로		평균 3lx 평균 5~10lx																	
조류 서식지	기준	○ 조도 <table border="1" data-bbox="635 1048 1437 1115"> <thead> <tr> <th>구분</th> <th>평균 조도</th> </tr> </thead> <tbody> <tr> <td>사람의 이용이 있는 곳</td> <td>평균 6lx</td> </tr> <tr> <td>사람의 이용이 거의 없는 곳</td> <td>평균 0.05lx</td> </tr> </tbody> </table>		구분	평균 조도	사람의 이용이 있는 곳	평균 6lx	사람의 이용이 거의 없는 곳	평균 0.05lx										
구분	평균 조도																		
사람의 이용이 있는 곳	평균 6lx																		
사람의 이용이 거의 없는 곳	평균 0.05lx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의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화를 위한 허용간판, 부착방법, 조명, 간판크기를 제한하고 형태별 상세계획을 지침화 - 옥외광고물은 가로형간판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뒷판이 없는 입체형으로 조성 - 예술성 : 각각의 광고물을 예술 작품화 - 조화성 : 시물레이션을 통한 설치위치, 사전검토를 통한 조화성 강조 - 장소성 : 대표 색상 및 재료 사용으로 거리 특화 - 통일성 : 관광상품으로 이용하며, 색채 및 조명을 활용한 야간거리 활성화 																		
	○ 옥외광고물의 연출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색계획의 지침화 - 배치계획의 체계화, 위계화 - 디자인 형태의 건축물과 일체화 - 디자인 형태의 모듈화/명료화/조형화 - 여백의 활용 ○ 옥외광고물의 서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목성이 좋은 서체를 사용하되 업체의 특성을 살리는 독특한 서체를 선택 사용 - 1간판에 2개 이상의 서체사용 금지 ○ 옥외광고물의 픽토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형태, 성격, 상호특성과 이미지를 고려한, 알기쉬운 그래픽구성 <div data-bbox="1066 1400 1422 1585"> </div> <div data-bbox="547 1736 1406 1899"> </div> ○ 건축물 1층부 옥외광고물의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1층부는 가로형 간판 이외에 건축물 입면 스타일을 저해하는 익스테리어(Exterior) 설치 지양 - 단, 건축 심의 및 시공 이후 건축 입면 스타일 변경시에는 경제자유구역청 내 경관위원회 경관심의를 통해 변경하여야 함 																		

<별표1> 기타 경관계획 (건축물 색채·조명·옥외광고물·기타 등)

- 변경

구분	계획내용
<p>색채</p> <p>기본원칙 및 공통지침</p>	<p>○ 색채계 사용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채계획은 IFEZ 경관색 체계에 따른 먼셀 색체계를 따름 - 색채 사용의 범위 및 사용의 대원칙은 IFEZ 경관계획 및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기본으로 따름 - 무채색을 주조색과 보조색으로 활용할 것(권장) - 순백색과 순흑색은 강조색으로 활용할 것(권장) <div data-bbox="606 705 1276 985"> <p>색채계 및 상위계획 준수</p> <p>1) 색채계획은 먼셀 색체계를 따르며 IFEZ 경관계획 및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p> <p>무채색의 사용 및 범위</p> <p>1) 무채색의 사용범위는 N1 ~ N10으로 지정</p> <p>NEUTRIAL</p> <p>N1 N2 N3 N4 N5 N6 N7 N8 N9 N10</p> </div> <p>○ 색채 적용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및 시설물의 색채 배색의 구성은 주조색/보조색/강조색으로 구분하며 각 7:2:1의 비율로 구성함 - 주조색과 강조색(보조색)의 2색 배색의 경우 비율을 7:3의 비율을 권장 <div data-bbox="542 1187 1356 1433"> <p>색채적용비</p> <p>1) 배색비는 주조색 / 보조색 / 강조색 각 7:2:1의 비율로 구성</p> <p>2) 주조색과 강조색(보조색)의 2색구성일 경우는 7:3의 비율을 권장</p> </div> <p>○ 건축물의 높이와 규모에 따른 색채적용의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채적용 대상의 높이에 따라 높을수록 고명도, 낮을수록 저명도로 적용하여 시각적 안정감과 균형감을 연출 - 색채적용대상의 규모가 작을수록 적용 색채의 수가 적고 규모가 클수록 적용 색채의 수가 다양하도록 구성 <div data-bbox="558 1680 1356 1948"> <p>높이에 따른 색채적용의 원칙</p> <p>1) 색채적용대상의 높이에 따라 높을수록 고명도, 낮을수록 저명도로 상대적으로 적용, 시각적 안정감과 균형감을 유도</p> <p>규모에 따른 색채적용의 원칙</p> <p>1) 색채적용대상의 규모가 작을수록 적용색채의 수가 적고 규모가 클수록 적용색채의 수가 다양하도록 계획</p> <p>* 공공시설물은 시설물의 색채수를 최소화 하여 전체 가로경관의 통일성을 강조</p> </div>

구분	계획내용
<p>색채경관 기본구상</p>	<p>○ 도시 전체의 통합 색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IFEZ 경관계획의 내용을 준수하여 원색, 고채도의 색상사용은 지양하고, 단일 대상의 과도한 색상의 사용은 지양토록 함</p> <p>○ 재료에 의한 연출을 권장하고 소재 본연의 색을 우선 적용</p> <p style="text-align: center;">< 색채권역 구분도 ></p> 
<p>색채</p>	<p>○ 국제도시권역 첨단미래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잡한 색채 패턴은 지양하고 건축물의 조형미를 강조하는 심플하고 세련된 색채 패턴 계획, 재료 대비를 통한 세련됨을 연출하고 색상의 수를 최소화 하여 건축 조형미를 강조 - 매스가 큰 산업시설의 경우, 색채 패턴과 재료를 통한 입면의 분절을 유도하고 수변부는 개방감을 연출하는 투시형 재료의 적극적 활용 및 보행자 접지부의 디테일한 패턴 연출로 인상적인 경관 연출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ata-bbox="518 1288 1029 1366"> <p>Value 명도</p>  </div> <div data-bbox="1077 1288 1428 1512"> <p>Hue 색상</p>  </div> </div> <p>Chroma 채도</p>  <p>○ 국제도시권역 교육문화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연한 고품격 도시경관 연출을 위해 전체적 통일성을 강조하는 색채계획의 적용, 색채 적용범위를 좁혀 고명도, 중채도 이하의 색채 환경 구축 - 강조색, 강조재료를 통한 포인트 연출 및 입체감 강조를 유도하고 주요 보행로변 입면의 분절 및 세부 패턴적용으로 휴먼레벨을 고려한 패턴 변화 계획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ata-bbox="518 1825 1029 1904"> <p>Value 명도</p>  </div> <div data-bbox="1077 1825 1428 2049"> <p>Hue 색상</p>  </div> </div> <p>Chroma 채도</p> 

구분	계획내용
조명 및 야간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 기능, 목적(권역별용도)에 따라 효율 및 연색성을 고려하고 적절한 광원을 선정하여 도시의 정체성 향상 단, 안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지역에는 투과성을 고려하여 선정 - 친환경 소재인 태양광 이용을 반드시 검토하고, 이를 IT기술과 접목시켜 단계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철새 도래 지구 등의 훼손지 복구 권역 - LED를 활용하여 친환경적이고 고효율 기능을 통한 비용 절감과 IT 기술과 접목시켜 효율적 운영이 가능토록 함 - 공원 및 조경 시설 등 사람의 이동이 많은 구간에는 유충성을 고려하여 유충성의 비율이 낮은 램프를 사용토록 함 ○ 색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층건축물, 옥탑부 등의 SKY LINE : 3500 ~ 4000K - 산업단지 : 4000~5000K - 저층 상업지구, 커뮤니티 시설 : 3500~4000K - 주간선도로 : 3900K~4300K - 보조 간선도로 : 3500~4000K - 보행로 : 3000K~3500K - 주운수로 및 공원: 3000~3500K ○ 빛공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은 Full Cut-Off 방식의 등기구 사용 및 반사판 기능이 향상된 등기구 사용으로 누수광, 눈부심 등을 최소화(수변,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등은 Semi Cut-Off 방식 가능) - 사인(Sign), 건축물 입면 조명, 오피스 내부 조명 등에 대하여 건물주와 협의하여 조명방법, 점등시간, 밝기 등을 조절하여 빛공해 최소화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내용에 준거하여 빛공해에 관하여 고려 ○ 조경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려한 불빛을 자제하고 편안하고 친환경적인 시스템이 적용된 인간 중심적 경관형성 방안 마련 - 보행유도 조명으로 안전을 우선시하고 방향성을 제시 - 수목 배치계획과 주변 상황에 맞는 조명 방식을 채택 - 조형적 특성이 고려된 열주형 식재 구간에는 수목투사등에 의한 연출 권장 - 공원 기능, 주위 환경, 야간 이용형태 등을 반영하여 조명 계획 - 유충성(벌레 유인 현상)을 고려한 색온도 계획 및 하늘로의 누광과 눈부심을 제어할 수 있는 빛공해 대책 마련 ○ 건축물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에 대한 조명은 KS A 3011 조도기준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내 조명기준에 준하여 계획함을 원칙으로 함 - 건축물의 유형 및 형태에 따라 야간경관 조명방식 채택 - 주거: 프라이버시 보호를 우선으로 하되, 건축물 상부만 강조하는 조명은 지양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살리는 조명을 권장 - 오피스: 고층 건축물(15층 이상)은 경관조명을 권장하고, 중층부분 내부 조명을 경관조명 요소로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저층부분은 공공 공지 및 도로를 연계한 경관 조명을 계획

구분	계획내용										
조명 및 야간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파사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파사드란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LED 조명, 빔 프로젝트 등을 이용하여 밝기, 색상을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조명방식을 말함 - 미디어 파사드의 설치는 특별계획구역 내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며 심의를 통과하여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미디어 파사드 표출내용은 예술작품에 한하여 허용(상표의 명칭 또는 이미지광고, 미풍양속 저해 내용은 금지)하며 내용에 대한 별도의 심의를 득해야 함 - LED 광원의 직접 노출은 지양하고,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주간과 야간 모두 건축물의 심미성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함 - 특별계획구역 내 상업지역 미디어 파사드의 표면휘도는 평균 25cd/m² 이하, 최대 300cd/m² 이하로 함 - 점등 시간은 일몰 30분 부터 23시까지 점등하며 조명기구 노출설치 금지와 원색계열 색상 제한, 친환경 조명기구 사용 등을 기본원칙으로 함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소별 가이드라인 <table border="1" data-bbox="520 927 1406 2067"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data-bbox="520 927 639 974">구분</th> <th data-bbox="639 927 1406 974">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520 974 639 1227">색채</td> <td data-bbox="639 974 1406 1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물 기본판형의 색상이 무채색계열인 경우 인지성, 시인성 확보를 위한 권역별 특성이 반영된 강조색채 사용 - 주변 광고물이나 건축물의 색채와의 조화를 고려한 색채를 적용 -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재료의 특성이 드러난 색채를 활용 </td> </tr> <tr> <td data-bbox="520 1227 639 1480">서체</td> <td data-bbox="639 1227 1406 14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목성이 높고 업체의 업종과 건축물의 디자인을 고려한 서체사용 및 3가지 이상의 서체사용 금지 - 표기내용은 국문, 영문, 숫자, 그림문자 등을 업체의 특성에 따라 조합하여 사용 -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지만 영문표기 병기를 권장 </td> </tr> <tr> <td data-bbox="520 1480 639 1733">픽토그램</td> <td data-bbox="639 1480 1406 17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형태와 업종의 성격, 상호특성, 이미지를 고려하고 알기 쉬운 그래픽을 개발로 친근감 있는 거리를 연출 - 공공공간에서는 관습화된 표준픽토그램을 선정하여 해당 항목에 사용 - 권역별, 장소별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권역별 색채를 설정하고 디자인 </td> </tr> <tr> <td data-bbox="520 1733 639 2067">조명</td> <td data-bbox="639 1733 1406 20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도 및 조명표현은 빔공해방지법을 반영하여 눈부심을 최소화하고 야간경관질서를 유지 - 조명광원 설치방식은 간판 내부에 설치하거나 간판 외부에 설치 - 옥외광고물 전체에 대한 조명보다는 정보전달 위주의 조명으로 계획 - LED 및 신소재를 이용한 조명방식 활용으로 지속적인 효율적인 관리 지향 - 네온사인, 점멸식, 직접노출형 LED 옥외광고물 설치 지양 </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물 기본판형의 색상이 무채색계열인 경우 인지성, 시인성 확보를 위한 권역별 특성이 반영된 강조색채 사용 - 주변 광고물이나 건축물의 색채와의 조화를 고려한 색채를 적용 -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재료의 특성이 드러난 색채를 활용 	서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목성이 높고 업체의 업종과 건축물의 디자인을 고려한 서체사용 및 3가지 이상의 서체사용 금지 - 표기내용은 국문, 영문, 숫자, 그림문자 등을 업체의 특성에 따라 조합하여 사용 -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지만 영문표기 병기를 권장 	픽토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형태와 업종의 성격, 상호특성, 이미지를 고려하고 알기 쉬운 그래픽을 개발로 친근감 있는 거리를 연출 - 공공공간에서는 관습화된 표준픽토그램을 선정하여 해당 항목에 사용 - 권역별, 장소별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권역별 색채를 설정하고 디자인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도 및 조명표현은 빔공해방지법을 반영하여 눈부심을 최소화하고 야간경관질서를 유지 - 조명광원 설치방식은 간판 내부에 설치하거나 간판 외부에 설치 - 옥외광고물 전체에 대한 조명보다는 정보전달 위주의 조명으로 계획 - LED 및 신소재를 이용한 조명방식 활용으로 지속적인 효율적인 관리 지향 - 네온사인, 점멸식, 직접노출형 LED 옥외광고물 설치 지양
구분	내용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물 기본판형의 색상이 무채색계열인 경우 인지성, 시인성 확보를 위한 권역별 특성이 반영된 강조색채 사용 - 주변 광고물이나 건축물의 색채와의 조화를 고려한 색채를 적용 -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재료의 특성이 드러난 색채를 활용 										
서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목성이 높고 업체의 업종과 건축물의 디자인을 고려한 서체사용 및 3가지 이상의 서체사용 금지 - 표기내용은 국문, 영문, 숫자, 그림문자 등을 업체의 특성에 따라 조합하여 사용 -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지만 영문표기 병기를 권장 										
픽토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형태와 업종의 성격, 상호특성, 이미지를 고려하고 알기 쉬운 그래픽을 개발로 친근감 있는 거리를 연출 - 공공공간에서는 관습화된 표준픽토그램을 선정하여 해당 항목에 사용 - 권역별, 장소별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권역별 색채를 설정하고 디자인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도 및 조명표현은 빔공해방지법을 반영하여 눈부심을 최소화하고 야간경관질서를 유지 - 조명광원 설치방식은 간판 내부에 설치하거나 간판 외부에 설치 - 옥외광고물 전체에 대한 조명보다는 정보전달 위주의 조명으로 계획 - LED 및 신소재를 이용한 조명방식 활용으로 지속적인 효율적인 관리 지향 - 네온사인, 점멸식, 직접노출형 LED 옥외광고물 설치 지양 										

구분	계획내용														
<p>옥외광고물</p>	<p>○ 형태별 가이드라인</p> <table border="1" data-bbox="509 349 1417 1267">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수량</td> <td>- 업소당 1개 설치가능 - 곡각지 업소는 곡각부에 설치를 권장</td> </tr> <tr> <td>설치</td> <td>- 건물의 3층까지 설치 - 4층 이상은 건물명이나 상징하는 도형만 건물 가장 - 높은층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부착 - 판형 설치시 글씨만 표기</td> </tr> <tr> <td>크기</td> <td>- 두께: 벽면으로부터 돌출부분 30cm이내 - 가로: 업소 폭가 로범위의 80%이내 - 세로: 창문간 벽면 폭 이내</td> </tr> <tr> <td>형태</td> <td>- 권역별 업종별 특색에 맞는 자유로운 형태 권장</td> </tr> <tr> <td>벽면 이용 간판</td> <td>조명 - 조명의 광원을 그대로 노출을 시켜 사용하지 않음</td> </tr> <tr> <td>기타</td> <td>- 3층 이하의 앞 벽면에 판류형 또는 입체형 표시 가능 (입체형 글씨의 경우 바는 설치금지) - 가로형 간판의 가로는 해당 업소 폭 80% 이내로 제한 - 세로크기는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초과금지 - 해당 업소 중간에 벽면이 있을 경우에는 끊어서 표기 하거나 한쪽벽만 사용 권장</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수량	- 업소당 1개 설치가능 - 곡각지 업소는 곡각부에 설치를 권장	설치	- 건물의 3층까지 설치 - 4층 이상은 건물명이나 상징하는 도형만 건물 가장 - 높은층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부착 - 판형 설치시 글씨만 표기	크기	- 두께: 벽면으로부터 돌출부분 30cm이내 - 가로: 업소 폭가 로범위의 80%이내 - 세로: 창문간 벽면 폭 이내	형태	- 권역별 업종별 특색에 맞는 자유로운 형태 권장	벽면 이용 간판	조명 - 조명의 광원을 그대로 노출을 시켜 사용하지 않음	기타	- 3층 이하의 앞 벽면에 판류형 또는 입체형 표시 가능 (입체형 글씨의 경우 바는 설치금지) - 가로형 간판의 가로는 해당 업소 폭 80% 이내로 제한 - 세로크기는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초과금지 - 해당 업소 중간에 벽면이 있을 경우에는 끊어서 표기 하거나 한쪽벽만 사용 권장
	구분	내용													
수량	- 업소당 1개 설치가능 - 곡각지 업소는 곡각부에 설치를 권장														
설치	- 건물의 3층까지 설치 - 4층 이상은 건물명이나 상징하는 도형만 건물 가장 - 높은층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부착 - 판형 설치시 글씨만 표기														
크기	- 두께: 벽면으로부터 돌출부분 30cm이내 - 가로: 업소 폭가 로범위의 80%이내 - 세로: 창문간 벽면 폭 이내														
형태	- 권역별 업종별 특색에 맞는 자유로운 형태 권장														
벽면 이용 간판	조명 - 조명의 광원을 그대로 노출을 시켜 사용하지 않음														
기타	- 3층 이하의 앞 벽면에 판류형 또는 입체형 표시 가능 (입체형 글씨의 경우 바는 설치금지) - 가로형 간판의 가로는 해당 업소 폭 80% 이내로 제한 - 세로크기는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초과금지 - 해당 업소 중간에 벽면이 있을 경우에는 끊어서 표기 하거나 한쪽벽만 사용 권장														
<table border="1" data-bbox="509 1574 1417 2067"> <tbody> <tr> <td>수량</td> <td>- 4층 이상의 건물에 한하여 건물당 1개 설치 가능</td> </tr> <tr> <td>설치</td> <td>- 해당업소의 건물부지 안에 한하여 설치가능 - 보도경계선으로부터 50cm이상 혹은 차도의 경계석으로부터 1m 이상의 거리를 확보 - 보행인,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td> </tr> <tr> <td>크기</td> <td>- 세로크기 최대 1.5m 이하, 1면의 면적 2.5㎡ 이하</td> </tr> <tr> <td>형태</td> <td>- 통합된 지주 이용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개별 지주형 광고물 설치 금지 - 동일 건물 내 동일재료를 사용</td> </tr> <tr> <td>조명</td> <td>- 내부 조명, 또는 간접조명 사용 권장</td> </tr> </tbody> </table>	수량	- 4층 이상의 건물에 한하여 건물당 1개 설치 가능	설치	- 해당업소의 건물부지 안에 한하여 설치가능 - 보도경계선으로부터 50cm이상 혹은 차도의 경계석으로부터 1m 이상의 거리를 확보 - 보행인,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크기	- 세로크기 최대 1.5m 이하, 1면의 면적 2.5㎡ 이하	형태	- 통합된 지주 이용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개별 지주형 광고물 설치 금지 - 동일 건물 내 동일재료를 사용	조명	- 내부 조명, 또는 간접조명 사용 권장					
수량	- 4층 이상의 건물에 한하여 건물당 1개 설치 가능														
설치	- 해당업소의 건물부지 안에 한하여 설치가능 - 보도경계선으로부터 50cm이상 혹은 차도의 경계석으로부터 1m 이상의 거리를 확보 - 보행인,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크기	- 세로크기 최대 1.5m 이하, 1면의 면적 2.5㎡ 이하														
형태	- 통합된 지주 이용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개별 지주형 광고물 설치 금지 - 동일 건물 내 동일재료를 사용														
조명	- 내부 조명, 또는 간접조명 사용 권장														

〈별표2〉 지식기반제조 업종분류코드

- 지정

도면표시번호	유치업종	한국표준 산업분류	비고	
IT	Ki10 ~ Ki1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전자장비 제조업	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사업지원 서비스업	45	
		출판업	58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	
		방송업	60	
		통신업	6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수리업	95	
		BT	Ki6 ~ Ki9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11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연구 개발업	70			
전문서비스업	7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			
교육서비스업	85			
보건업	86			

도면표시번호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비고
기타 첨단산업	Ki1 ~ Ki5 Ki16	식료품 제조업	10
		음료 제조업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1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1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1차 금속제조업	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전자장비 제조업	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
		기타 제품 제조업	33
		사업지원 서비스업	45
		출판업	58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
		방송업	60
		통신업	6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연구 개발업	70
		전문서비스업	7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
		교육서비스업	85
		보건업	86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수리업	95		

※ 첨단산업클러스터 특성에 부합토록 IT·BT·기타첨단산업 업종의 수용이 가능한 공장, 도시형 공장, 연구시설 및 업무시설 등을 지정용도로 하며, 용도제한의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를 용도제한의 기준으로 함

〈별표2〉 유치업종 분류코드

- 변경

도면 표시 번호	유치업종	한국표준 산업분류	비고	
기타 첨단산업	Ki17 Ki18	식료품 제조업	10	
		음료 제조업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1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1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1차 금속제조업	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전자장비 제조업	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	
		기타 제품 제조업	33	
		사업지원 서비스업	45	
		출판업	58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	
		방송업	60	
		통신업	6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연구 개발업	70	
		전문서비스업	7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	
		교육서비스업	85	
		보건업	86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수리업	95			

도면 표시 번호		유치업종	한국표준 산업분류	비고
BT	Ki19 Ki20	식료품 제조업	10	
		음료 제조업	11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연구 개발업	70	
		전문서비스업	7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	
		교육서비스업	85	
		보건업	86	
IT	K21 ~ K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전자장비 제조업	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사업지원 서비스업	45	
		출판업	58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	
		방송업	60	
		통신업	6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수리업	95			

〈별표3〉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법 제3조의5 관련 / 개정 2016.02.11.)

- 지정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과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나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마. 총포판매소
- 바. 사진관, 표구점
-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자. 일반음식점
-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타. 독서실, 기원
-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의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7. 판매시설

-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운수시설

-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 나. 철도시설
- 다. 공항시설
- 라. 항만시설
- 마. 삭제 <2009.7.16>

9. 의료시설

-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 바.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13. 운동시설

-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5. 숙박시설

-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 위락시설

-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삭제 <2010.2.18>
- 마. 무도장, 무도학원
- 바.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 나. 하역장
-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 라. 집배송 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을 허가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 사. 도료류 판매소
-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 자. 화약류 저장소
-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국방·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6. 묘지 관련 시설

- 가. 화장시설
-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 관광 휴게시설

- 가. 야외음악당
- 나. 야외극장
- 다. 어린이회관
- 라. 관망탑
- 마. 휴게소
-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식장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9. 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비고

1.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2.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가. 제4호너머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부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 나.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 다. 구분 소유자(임차인을 포함한다)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 및 9)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1 각 호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3〉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법 제3조의5 관련 / 개정 2019.10.22.)

- 변경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과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관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마. 총포판매소
- 바. 사진관, 표구점
-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자. 일반음식점
-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타. 독서실, 기원
-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러. 안마시설소,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의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7. 판매시설

-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운수시설

-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 나. 철도시설
- 다. 공항시설
- 라. 항만시설
- 마. 삭제 <2009.7.16>

9. 의료시설

-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 바.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13. 운동시설

-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5. 숙박시설

-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 위락시설

-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삭제 <2010.2.18>
- 마. 무도장, 무도학원
- 바.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포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 나. 하역장
-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 라. 집배송 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을 허가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 사. 도료류 판매소
-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 자. 화약류 저장소
-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차장(駐機場)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국방·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6. 묘지 관련 시설

- 가. 화장시설
-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 관광 휴게시설

- 가. 야외음악당
- 나. 야외극장
- 다. 어린이회관
- 라. 관망탑
- 마. 휴게소
-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식장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9. 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비고

1.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2.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가. 제4호너머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부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 나.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 다. 구분 소유자(임차인을 포함한다)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 및 9)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1 각 호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마.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1. 계획내용 적용의 기본원칙

- 본 시행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에너지 사용계획 등 과업추진 과정에서 협의 완료·승인된 내용 중 본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본 시행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승인당시의 법규나 인천광역시 및 자치구 관련조례에 따름
- 시행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유도사항 포함)으로 나누어지며, 이중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권장사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권장하는 사항임
- 시행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기존의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동 시행지침의 규제계획 내용을 따름
- 본 지침 시행 이후 본 지침과 관련된 법령 또는 조례의 제·개정으로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학교보건법,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도시경관조례,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과 상이할 경우 제·개정된 관련규정을 따름(단,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개정 2016.02.11.)을 따름)
- 대지상호간 분할·합병에 의하여 대지에 서로 상이한 지침이 적용될 경우, 그 규제내용은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전면도로가 가장 넓은 획지에 적용되는 지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단, 획지가 접한 도로의 폭이 같은 경우, 지침내용이 강화된 규정을 적용
- 향후 개별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 기타의 사유로 도로경계선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경계선을 기준으로 결정도에 지정된 폭원만큼 건축선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건축선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는 거치지 않음
- 경관상세계획에서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제시하거나 본 지구단위계획 상의 지침과 상충될 경우 경관상세계획을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하며,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이행한 것으로 봄

2. 용어의 정의

-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함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대지분할가능선 : 시장수요 및 여건변화에 따른 유통성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대형필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할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한 선을 말함
 - 획지분할 :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대지분할가능선에 따라 획지를 분할하는 것을 말함. 다만,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획지면적 대비 20% 내에서 변경 가능(단독주택용지 제외)

- 가구번호에 관한 용어의 정의

용 어	약 어	용 어	약 어
○ Residential Single 단독주택	Rs	○ Pre School 유치원	Sp
○ Town House 타운하우스	Th	○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	Se
○ Residential Common 공동주택	Rc	○ Middle School 중학교	Sm
○ Commerce Neighborhood 근린생활시설	Cn	○ High School 고등학교	Sh
○ Residential Mixed-Use 주상복합	Rm	○ Religious facility site 종교시설	Rl
○ Mixed-Use Development 복합개발	Md	○ Parking Lot 주차장	Pl
○ 일반상업		○ Gas Station 주유소	Gs
- Commerce Landmark 랜드마크	Cl	○ Tram Garage 트램역사	Tg
- Commerce Retail 일반상업	Cr	○ Automobile Stops 자동차정류장	As
- Commerce Water 수변일반상업	Cw	○ 공동구관리사무소	공
- Commerce Venice 미니베니스	Cv	○ 유지관리	Et
○ Knowledge Industry 지식기반제조업	Ki	○ 생활폐기물자동집하장	집하
○ Research & Development 연구	R&D	○ 전기공급설비	전기
○ Education & Research 교육연구	Er	○ 공급처리시설	공급
○ Government Office 공공청사	Go	○ 오수중계펌프장	오수
○ Cultural facility site 문화시설	Cf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지정용도 : 지구단위계획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필지에 지정하는 특정한 용도를 말하며, 건축연면적의 일정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비율 이상으로 사용함
-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필지 내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에서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음
- 불허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그 필지에서 사용될 수 없는 용도를 말함
- 수로변 2층 이하 전면 권장용도 : 수로에 면한 가로외 보행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2층 이하 전면에서 필요한 용도를 권장하는 용도를 말함

○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용어의 정의 >

구 분	용 어 의 정 의
건축한계선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되는 선(지하부분은 제외)
건축지정선	○가로경관의 연속적인 형태를 유지하거나 가로변의 건물을 가지런하게 하기 위해 건축물의 외벽위치를 지정한 선으로서, 건축물의 외벽면이 건축지정선 길이의 2/3이상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그 선의 수직면에 접하여야 함 단, 다음 각호의 경우 건축지정선에 접한 것으로 인정 - 전면도로의 통로기능 필로티구조 부분, 아케이드 조성 부분 - 외벽면이 곡면으로 이루어진 경우, 지정선으로부터 3m 이하로 이격된 부분 - 공개공지 및 소공원 조성에 따른 건축물 후퇴 부분
벽면지정선 (지하1층, 지상1층)	○특정위치의 벽면을 가지런하게 하기 위해 건축물의 외벽면의 위치를 지정한 선으로서, 건축물의 지하1층 및 지상1층의 외벽면이 벽면지정선의 2/3이상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그 선의 수직면에 접하여야 함 단, 다음 각호의 경우 벽면지정선에 접한 것으로 인정 - 전면도로의 통로기능 필로티구조 부분, 아케이드 조성 부분 - 외벽면이 곡면으로 이루어진 경우, 지정선으로부터 3m 이하로 이격된 부분 - 공개공지 및 소공원 조성에 따른 건축물 후퇴 부분
지상3층 이상 벽면한계선	○도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지상3층 이상의 건축선을 후퇴하는 선으로서,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이 돌출되어서는 아니됨

< 적용 범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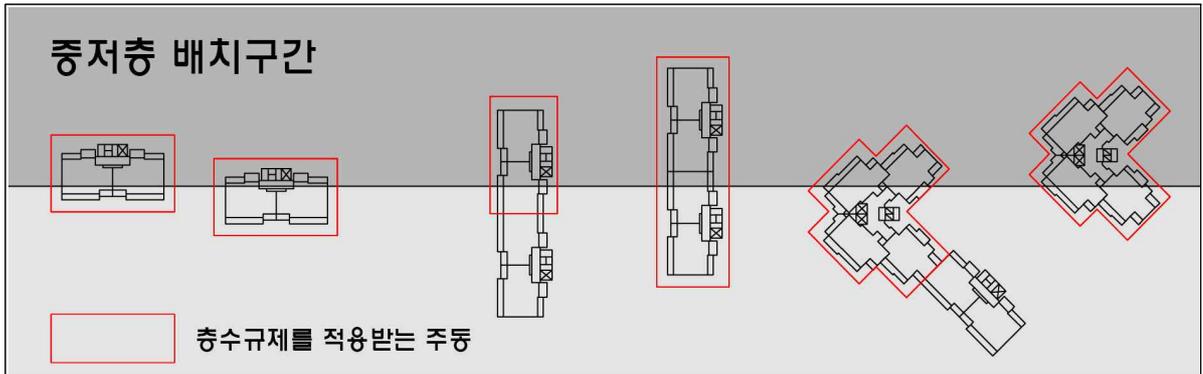
구 분	규제적용내용	규제적용범위	비 고
건 축 한계선	6m	○주요가로변 및 수로변	○가로경관의 향상 및 데크 확보를 위하여 가로변 및 수로변에 적용
	3m	○주요가로변	○가로경관의 향상 및 유효한 전면공지와 보행통로 확보를 위하여 가로변에 적용
	2m	○미니베니스 광장 연결구간	○가로경관의 향상 및 유효한 전면공지와 보행통로 확보를 위하여 가로변에 적용
	1m	○미니베니스 내부 6m이상 8m이하 가로변	○가로경관의 향상 및 보행통로 확보를 위하여 가로변에 적용
	기 타	○학교연접 공동주택 : 9m	
건 축 지정선	5m	○공공공지 연결구간	○수변 가로경관의 연속성 및 지상1층 보행통로 확보 ○복합개발용지의 수로변 지상1~2층에 적용
	1m	○미니베니스 광장 연결구간	○광장변 가로경관의 연속성 및 정연한 건축물 조성 ○미니베니스 광장에 연결한 Cv5, Cv8에 한하여 가로변에 적용
벽 면 지정선	4m	○미니베니스 광장 연결구간 (지상1층)	○광장변 특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미니베니스 광장변에 적용 ○통로기능의 폭 3m, 지상1층 아케이드 조성
	5m	○공공공지 연결구간 (지하1층)	○공공공지변 특화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복합 개발용지의 수로변에 적용
벽 면 한계선	8m	○3m 지상3층 테라스 확보 지상3층 이상	○수로변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지상3층 이상에 폭 3m 이상의 테라스 조성

○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중저층 배치구간

- 주변 용도와의 조화, 학교경관 보호, 일조권 확보 등을 위해 중저층으로 배치하는 구간을 말함
- 배치구간 내에는 48m 이하로 배치함
- 중저층 배치구간에 주거동이 걸친 경우에는 배치구간에 걸친 주동은 모두 층수규제를 적용함

< 주동이 걸친 경우 적용기준 예시도 >



-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

- 상업 활성화와 생기 있는 가로환경을 위해 1층 또는 2층에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을 배치하고, 2층 이상이 주거동인 복합건축물을 배치하는 구간을 말함
- 도로에 면한 대지경계선의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을 대지경계선 길이의 60% 이상 배치하되,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해당 블록의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의 길이가 지나치게 짧아 해당 면적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공동시설을 말함

<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 조성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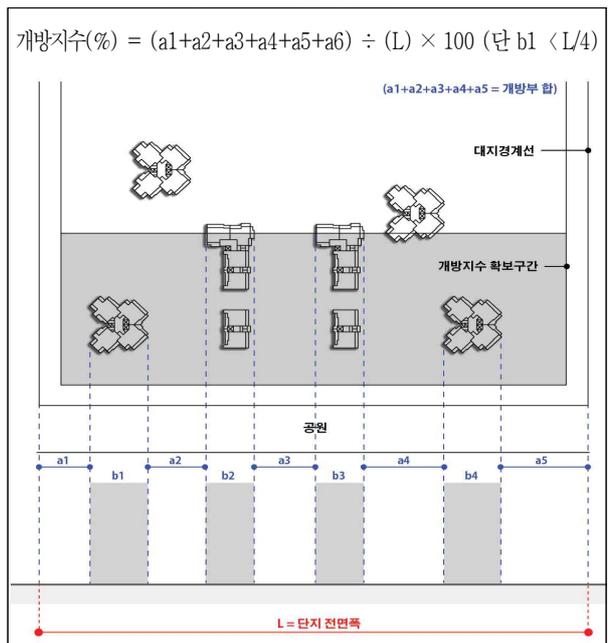
- 연도형 배치구간
 - 수변 보행 및 상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휴먼스케일의 연속적인 가로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저층부의 연도형 건축물을 배치하는 구간을 말함
 - 공공공지에 면한 대지경계선의 경우에는 연도형 상가를 대지경계선 길이의 60% 이상 배치하되,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해당 블록의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의 길이가 지나치게 짧아 해당 면적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 수로변의 건축물은 판상형 건축물을 수로변과 평행하게 배치하는 것을 권장함
 - 연도형 건축물의 높이는 20m 이하로 함

< 연도형 배치구간 조성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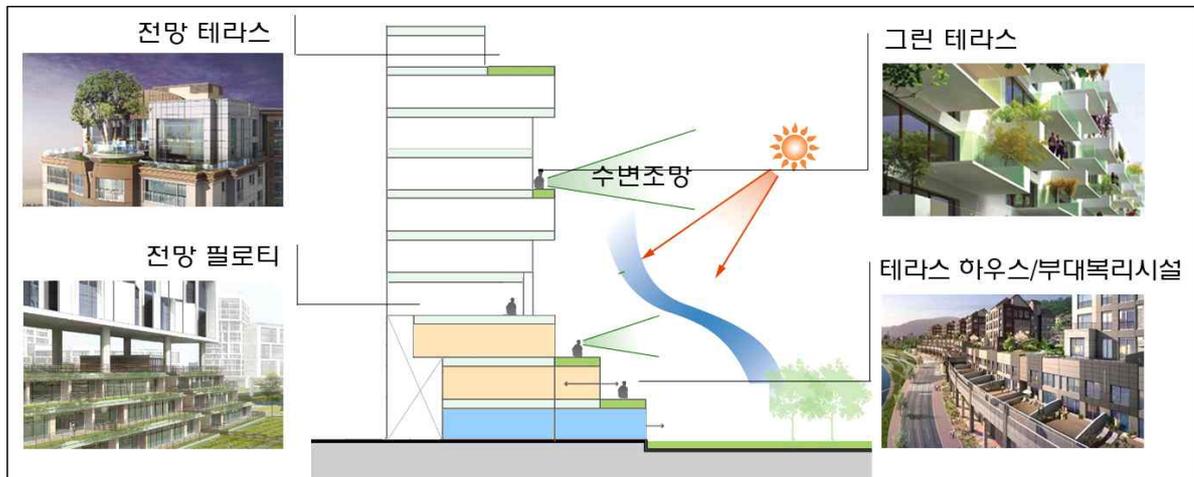
- 개방지수 확보구간
 - 조망축 및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대지경계선의 장변방향에서 수평 투영된 주거동 폭의 합과 전체 구간의 길이 비율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확보하는 구간을 말함
 - 주거동 건축면적의 50% 이상이 개방지수 확보구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를 적용함
 - 개방지수 확보구간내 개방지수의 경우 단지 전면폭을 기준으로 시각통로의 확보비율을 산정하며, 단지 전면폭이 곡선을 이루는 경우 양끝점을 연결하여 직선의 길이로 전면폭을 산정함
 - 개방지수는 50% 이상으로 하며, 건축물 전면폭 1동의 길이는 구간 직선거리의 1/4 이하로 배치함
 - 개방지수 확보구간에는 개방지수를 적용하며, 개방지수(%)는 (1-∑구간의 장변방향에서 본 건물 전면폭/단지 전면폭)×100의 산식으로 계산함

< 개방지수 산정 예시도 >



- 수변경관형 배치구간
- 단지 내·외부에서의 조망 확보와 조화로운 수변경관이 연출될 수 있도록 특화된 주거동을 배치하는 구간을 말함
- 수변을 향하여 벽면이 배치될 경우 단조로운 경관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창호설치를 권장함
- 주거동의 차별화된 이미지로 조성하고 이색적인 하천변 경관연출을 도모하기 위해 최상층부에 전망테라스를 배치한 특화주거, 중층부에는 발코니를 활용한 테라스 특화주거, 저층부에는 아래층의 지붕을 활용한 특화주거의 배치를 권장함
- 저층부와 중층부가 만나는 부분은 가급적 필로티구조로 계획하여 통풍 및 통경이 가능하도록 조성하고, 필로티구조 부분은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함
- 단지계획시 조류대체서식지변 공원과 연계되는 단지내 동선 및 필로티·통로계획을 수립하며, 저층부에는 공원과 연계한 가로활성화를 위해 부대복리시설 설치를 권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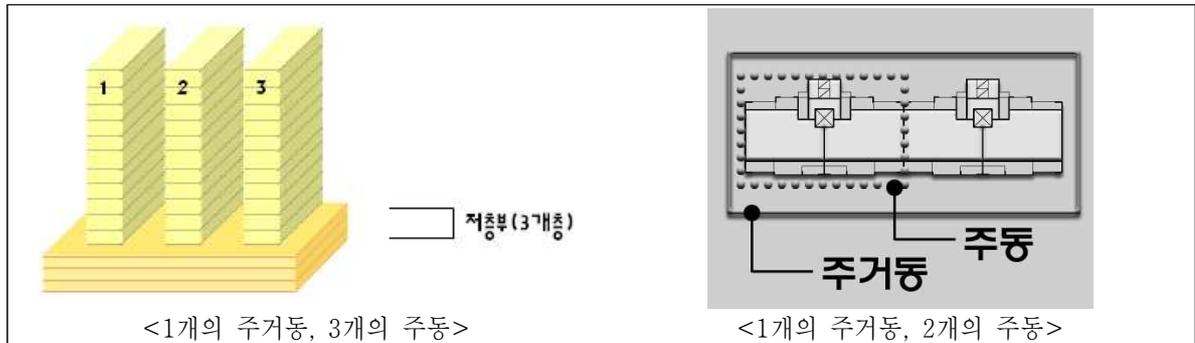
< 수변경관형 주거동 예시도 >



○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주거동 : 공동주택용지에서 공동주택이 주용도인 동일 건축물을 말함
- 주동 : 공동주택용지에서 동일 코어를 사용하는 세대들로 이루어진 독립된 공동주택을 말하며 1코어 1주동을 원칙으로 함

< 주거동 및 주동 개념도 >



- 건축물의 전면 : 건축물의 1층 용도를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주된 출입구(보행출입구)가 설치되는 면
- 탑상형 아파트 : 판상형이 아닌 경우로서 단변과 장변의 비가 1:1.5 이하인 것
- 필로티 구조 :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로서, 천정고의 유효높이가 4.5m 또는 2개층 이상이며, 폭 6m 또는 주거동1호 너비 이상이어야 함
- 아케이드 : 열주에 의해 지탱되는 아치 또는 반원형의 천장 등을 연속적으로 가설한 구조물과 그것이 조성하는 개방된 통로 공간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아케이드에 면한 필지의 사업자가 건축 건설시 아케이드를 설치함
 - 아케이드 공간내의 보도면은 인접한 포장면과 같은 높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그 차이는 10cm 이내로 하며,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설치를 원칙으로 함
 - 아케이드 공간에는 보행지장물의 설치를 불허하며, 영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음
- 투시형 셔터 :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투시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셔터를 말함
- 랜드마크 : 도시의 시각적 상징물로서, 주변과 유난히 차이나는 건축물로 주위 경관 속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기 쉬워야 함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 및 조성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전면공지

-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함.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하도록 함
- ‘보도 연결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 및 자전거 통행이 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 및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함
-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함
 - 전면공지에는 원칙적으로 보행지장물을 설치 할 수 없으며, 다만, 해당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면공지 일부는 보행통행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경관상세계획에 따라 가로환경을 위한 식재, 보행자 공간 및 가로활성화를 위한 시설(벤치, 어닝 등) 등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 ※ 전면공지 3m 이상 : 도로변 2m 이상 보행공간 확보(지식기반제조업용지는 도로변 1m 보행공간 확보)
 - ※ 전면공지 6m 이상 : 도로변 4m 이상 보행공간 확보
 - 전면공지의 조성 면적 중 건축법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개공지 및 대지안의 조경 건축심의 기준』상의 조경기준에 적합하게 조성된 부분은 조경면적에 산입함
 - 전면공지는 연결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함.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함
 - 보도 연결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 및 자전거도로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주차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함
 - 포장 : 보도 연결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우미 인정될 경우와 경관계획에서 별도의 포장 계획을 제시할 경우 별도의 포장 가능

■ 측면공지

- ‘측면공지’란 인접대지 경계선을 중심으로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를 말함
- 측면공지는 환풍기, 냉각탑, 실외기와 같은 설비시설(이하 설비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공간 및 쓰레기 투입구 설치공간, 재활용품 수거공간 등으로 이용하지 않고 전면공지 및 보도와 연계하여 쌈지공원, 휴게공간 등으로 조성
- 기타 측면공지에 대한 조성기준은 경관상세계획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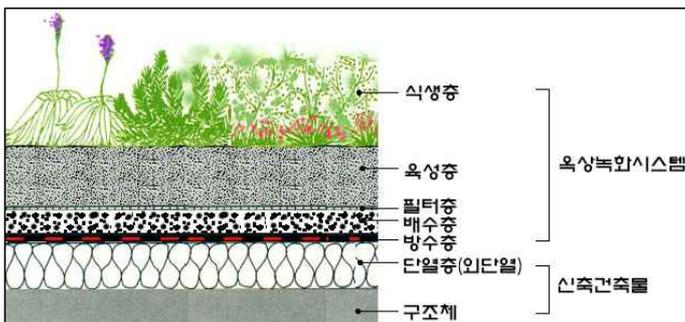
■ 공개공지

- 건축법 제43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간을 말함
- 보행자도로 및 수변부와 연결한 복합개발용지의 공개공지는 침상형 공개공지로 설치 (권장)
- 공원이나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한 대지등의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호의 상위 순으로 대지의 조건에 따라 배치하여야 함
 - 교차로 각각부(2개 이상의 교차로 일 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각각부에 배치)에 배치함
 -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쪽 부분에 배치함
 -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쪽 부분에 배치함
-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있는 경우 인접 또는 건너편 공개공지와 연계 되게 배치함
- 1개소로 집중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2개소로 분산배치 할 수 있음 단, 결정도에 의해 공개공지 위치가 지정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수로변 공공공간과 연결한 대지의 공개공지는 침상형 공지로 조성
- 공개공지의 조성기준
 -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전면도로의 접한 길이의 1/2이상에서 진입이 가능해야 하며, 인접한 공개공지 및 광장 등 공공공간에서도 일반인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 공개공지 규모는 최소 45㎡이상이어야 하며, 최소폭은 5m 이상 이어야 함
 - 공개공지에는 담장을 설치할 수 없음
 - 녹지 및 조경시설물 공간을 제외한 공개공지의 바닥은 전면도로의 보도와 같은 높이로 포장 하여야 함
 - 공개공지에는 휴식시설과 경관조성을 위한 조경시설물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공개공지 내에는 이용자에게 불편감을 주는 환풍기나 냉각탑등의 설비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 옥상녹화

- 각종 구조물들로 인한 경관악화를 완화하고 생태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반 상부에 녹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필요에 따라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한 공간을 말함

<신축건물 예시도>



<옥상녹화 사례>



■ 차폐조경

- 차폐조경의 설치기준

- 획지내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전면도로에 노출될 경우, 전면도로와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의 사이에 2m 이상의 폭으로 높이 1m 이상의 관목을 밀식식재 하여야 함
- 폭 20m 이상의 도로변에는 폭 2m 이상, 폭 20m 미만의 도로에는 폭 1m 이상의 식수대를 조성하며,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식재하고 3~5m 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토록 함
- 차폐조경의 면적은 전부 조경면적으로 산입함

■ 공공조경

-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확보된 대지의 공지중 가로미관의 증진,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하며, 공공조경 조성기준은 경관상세계획에 따라 식재를 통한 특화길을 조성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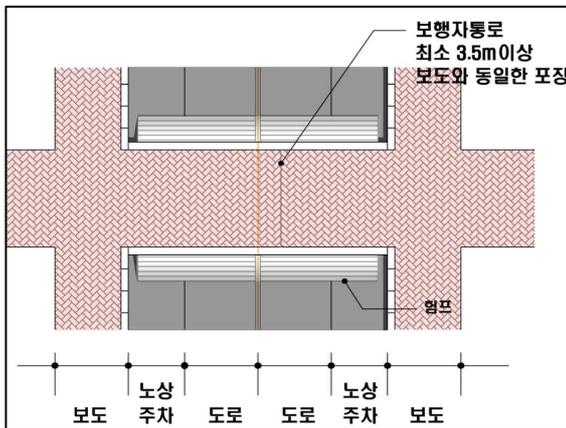
■ 공공보행통로(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며,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IFEZ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름
 -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함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됨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함.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음.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폭 6m이상으로 조성하되 건물하부를 통과 시 상부는 당초의 건축물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효 높이 4.5m 이상으로 설치
 -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을 잔디블럭과 같은 투수성 포장 등의 환경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조성하는 경우에는 공공보행통로면적의 1/2을 조경면적으로 산입함

○ 교통처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차량출입 불허구간’ 이라 함은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을 말함
- ‘전면도로’ 라 함은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면하고 있는 도로를 말함
- ‘보행우선구조’ 라 함은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 ‘보행자우선구간’ 이라 한다)의 구조로서 다음의 각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 구조를 말함
 -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
 -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함
 -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최소 3.5미터 이상으로 함
- ‘보행지장물’ 이라 함은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함

<보행자우선구조 예시도>



<보행자우선구조 예시안>



- ‘보행 주출입구’ 는 보행자가 건물 출입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출입구를 말함
- ‘생활가로’ 라 함은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중심이 되는 도로로서 통학/통근 및 생활편의 위주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동질성 형성을 위한 문화활동기능도 제공되는 보행자우선도로를 말함
- 부설주차장
 -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주차를 위한 대기장소나 차량용 램프진입을 위한 여유공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 출입 여유 공간을 고려하여야 함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됨. 특히,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함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 완화하여 적용하는 구역을 말함

3. 지구단위계획의 적용 범위

- 신축건물 및 신축구조물
- 새로운 용도로의 대지이용
- 재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 및 구조물
- 증축 또는 대수선의 해당부분

4. 건축계획의 심의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및 관련조례에 따라 심의 해당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상기 규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는 자는 그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용 도서외에 다음과 같은 도서를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상의 해당부분 표시
 - 지구단위계획지침 중 해당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의 명시
 - 외부공간 및 건축물의 평면도, 단면도
 -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입면도
 - 외부공간의 이용 및 조성계획도(축척 1/100 이상)
 -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색채, 마감재료, 지붕형태, 광고물 등)
 -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반영여부 검토서류

5. 경관계획의 적용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시행자는 경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모든 경관관련 사항을 협의함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시행자는 경관협의체를 통해 협의한 사항을 ‘경관계획’에 수록하고 이를 시행함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기 수립한 ‘경관계획’에 대한 변경은 경관협의체를 통해 작성 및 운영하도록 함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시행자는 필지별 경관계획 및 지침도를 수립하고 이를 필지별 건축 및 옥외공간 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함

6. 조경면적의 완화

- 전면공지 : 전면공지의 조성 면적 중 건축법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개공지 및 대지안의 조경 건축심의 기준』상의 조경기준에 적합하게 조성된 부분은 조경면적에 산입함
- 차폐조경 : 차폐조경의 면적은 전부 조경면적으로 산입함
- 공공조경 : 공공조경의 면적은 전부 조경면적으로 산입함
-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을 잔디블럭과 같은 투수성 포장 등의 환경친화적 재료를 사용하여 조성하는 경우에는 공공보행통로 면적의 1/2을 조경면적으로 산입함
- 옥상녹화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개공지 및 대지안의 조경 건축심의 기준』에 의거 옥상조경면적은 설치면적의 1/2을 조경면적에 산정하며, 법상 설치의무 조경면적의 1/3까지만 산정함

7. 정보통신분야

- 인천경제자유구역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을 위하여 반영되어야 할 유시티 시설물 및 구내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설치 계획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정한 「u-City인프라 시행지침(2007. 6. 1 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본 지구단위계획 구역안에서 각종 u-City건설과 관련된 행위시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함
 - 구내 정보통신설비의 적정 설치여부(공동주택 특등급, 업무용건축물 1등급 이상)
 -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설비의 적정 설치여부(분양주택 AA등급, 임대주택 A등급 이상)
 - 원격검침 설비의 적정 설치여부
 - U-City인프라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 ※ 각종 등급은 정보통신부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 지침”을 기준으로 함

- 변경**1. 계획내용 적용의 기본원칙**

- 본 시행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방안검토서(협의결과),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경관상세계획 등 과업추진 과정에서 협의 완료·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본 시행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승인당시의 법규나 인천광역시 및 자치구 관련조례에 따름
- 시행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유도사항 포함)으로 나누어지며, 이중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권장사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권장하는 사항임
- 시행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기존의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동 시행지침의 규제계획 내용을 따름
- 본 지침 시행 이후 본 지침과 관련된 법령 또는 조례의 제·개정으로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학교보건법,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도시경관조례,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과 상이할 경우 제·개정된 관련규정을 따름(단,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개정 2019.10.22.)을 따름)
- 대지상호간 분할·합병에 의하여 대지에 서로 상이한 지침이 적용될 경우, 그 규제내용은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전면도로가 가장 넓은 획지에 적용되는 지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획지가 접한 도로의 폭이 같은 경우, 지침내용이 강화된 규정을 적용
- 향후 교통영향평가 등 기타의 사유로 도로경계선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경계선을 기준으로 결정도에 지정된 폭원만큼 건축선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건축선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는 거치지 않음
- 경관상세계획에서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제시하거나 본 지구단위계획 상의 지침과 상충될 경우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을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하며,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이행한 것으로 봄

2. 용어의 정의

-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함
- “특별계획구역” 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함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대지분할가능선: 시장수요 및 여건변화에 따른 융통성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대형필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할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한 선을 말함
- 획지분할: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대지분할가능선에 따라 획지를 분할하는 것을 말함. 다만,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획지면적 대비 20% 내에서 변경 가능(단독주택용지 제외)
- 가구번호에 관한 용어의 정의

용어		약어	용어		약어
○ Residential Single	단독주택	Rs	○ 문화시설		문화
○ Town House	연립주택	Th	○ 유치원		유
○ Residential Common	공동주택	Rc	○ 초등학교		초
○ Commerce Neighborhood	근린생활시설	Cn	○ 중학교		중
○ Residential Mixed-Use	주상복합	Rm	○ 고등학교		고
○ Business	업무시설	Bs	○ 종교시설		종
상 업 시 설	- Commerce Landmark	랜드마크	Cl	○ 주차장	주
	- Commerce Retail	일반상업	Cr	○ 충전·주유소	주유
	- Commerce Water	수변일반상업	Cw	○ 트램역사	트램
	- Commerce Venice	미니베니스	Cv	○ 자동차정류장	정류장
	- Commerce Malibu	미니말리부	Cm	○ 공동구관리사무소	공
○ Knowledge Industry	산업시설	Ki	○ 유지관리		관리
○ Research & Development	연구	R&D	○ 생활폐기물자동집하장		집하
○ Education & Research	교육연구	Er	○ 전기공급설비		전기
○ 공공청사		청사	○ 오수중계펌프장		오수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필지 내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에서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음
- 불허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그 필지에서 사용될 수 없는 용도를 말함

○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용어의 정의 >

구분	용어의 정의
건축한계선	○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되는 선(지하부분은 제외)
건축지정선	○ 가로경관의 연속적인 형태를 유지하거나 가로변의 건물을 가지런하게 하기 위해 건축물의 외벽위치를 지정한 선으로서, 건축물의 외벽면이 건축지정선 길이의 2/3이상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그 선의 수직면에 접하여야 함 단, 다음 각호의 경우 건축지정선에 접한 것으로 인정 - 전면도로의 통로기능 필로티구조 부분, 아케이드 조성 부분 - 외벽면이 곡면으로 이루어진 경우, 지정선으로부터 3m 이하로 이격된 부분 - 공개공지 및 소공원 조성에 따른 건축물 후퇴 부분
벽면지정선 (지상1층, 지상2층이상, 지상5층이상)	○ 특정위치의 벽면을 가지런하게 하기 위해 건축물의 외벽면의 위치를 지정한 선으로서, 건축물의 지상1층, 2층 및 지상5층의 외벽면이 벽면지정선의 2/3이상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그 선의 수직면에 접하여야 함 단, 다음 각호의 경우 벽면지정선에 접한 것으로 인정 - 전면도로의 통로기능 필로티구조 부분, 아케이드 조성 부분 - 외벽면이 곡면으로 이루어진 경우, 지정선으로부터 3m 이하로 이격된 부분 - 공개공지 및 소공원 조성에 따른 건축물 후퇴 부분
지상1층 이상 벽면한계선	○ 도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지상1층 이상의 건축선을 후퇴하는 선으로서,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이 돌출되어서는 아니됨

< 적용 범위 >

구분	규제적용내용	규제적용범위	비고
건축한계선	1m	○ 미니베니스 내부 6m이상 8m이하 가로변	○ 가로경관의 향상 및 보행통로 확보를 위하여 가로변에 적용
	2m	○ 미니베니스 광장 연결구간	○ 가로경관의 향상 및 유효한 전면공지와 보행통로 확보를 위하여 가로변에 적용
	3m	○ 주요가로변	○ 가로경관의 향상 및 유효한 전면공지와 보행통로 확보를 위하여 가로변에 적용
	5m	○ 주요가로변 및 수로변	○ 가로경관의 향상 및 유효한 전면공지와 보행통로 확보를 위하여 공공공지 연결구간에 적용
	6m	○ 주요가로변 및 수로변	○ 가로경관의 향상 및 데크 확보를 위하여 가로변 및 수로변에 적용
	기 타	○ 학교연접 공동주택: 9m, 소음이격거리 반영: 10m, 13m	
건축지정선	1m	○ 미니베니스 광장 연결구간	○ 광장변 가로경관의 연속성 및 정연한 건축물 조성 ○ 미니베니스 광장에 연결한 Cv10, Cv11에 한하여 가로변에 적용
	8m	○ 공공공지 연결구간	○ 수변 가로경관의 연속성 및 전면공지와 보행통로 확보 ○ 업무시설용지의 수로변에 적용
벽면지정선	4m	○ 미니베니스 광장 연결구간 (지상1층)	○ 광장변 특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미니베니스 광장변에 적용 ○ 통로기능의 폭 3m, 지상1층 아케이드 조성
	10m	○ 산업시설용지 연결구간 (지상5층 이상)	○ 공공공지변 특화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산업시설용지 연결구간에 적용
	16m	○ 공공공지 연결구간 (지상1층)	○ 공공공지변 특화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업무시설용지의 수로변에 적용
벽면한계선	6m	○ 공공공지 연결구간 (지상1층)	○ 공공공지변 특화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수로변에 적용
	8m	○ 공공공지 연결구간 (지상1층)	○ 공공공지변 특화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수로변에 적용
	12m	○ 공공공지 연결구간 (지상1층)	○ 공공공지변 특화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수로변에 적용

○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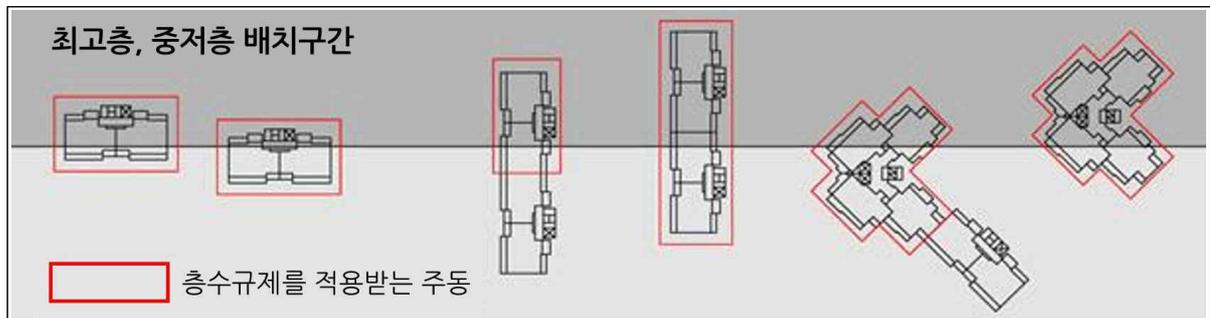
- 최고층 배치구간

- 첨단산업클러스터 내 주요 도시경관축(광로2-첨C2) 구간에 폭40m 최고층 배치구간을 적용하여, 지구내 스카이라인 형성 및 상징성, 개방감 확보를 위해 적용함
- 최고층 배치구간에 주거동이 걸친 경우에는 배치구간에 걸친 주동은 모두 최고층으로 적용함

- 중저층 배치구간

- 주변 용도와의 조화, 학교경관 보호, 일조권 확보 등을 위해 중저층으로 배치하는 구간을 말함
- 배치구간 내에는 48m 이하로 배치함
- 중저층 배치구간에 주거동이 걸친 경우에는 배치구간에 걸친 주동은 모두 층수규제를 적용함

< 주동이 걸친 경우 적용기준 예시도 >



- 통경축 확보구간

- 단지 내외부에서의 조망 확보와 조화로운 수변경관이 연출될 수 있도록 폭 20m의 통경축 확보구간을 설정하여 단지와 단지가 서로 소통하고 융합하는 통합경관 연출
- 통경축확보구간 내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하며, 아케이드, 캐노피, 발코니, 브릿지 등 건축요소에 의한 차폐가 되지 않아야 함
- 통경축확보구간에 접한 주동은 가급적 통경축에 평행이 되도록 배치(권장)
- 통경축확보구간의 지상부에 보행통로 또는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목을 식재하거나 가로등, 벤치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나, 보행자의 눈높이에서 시야가 차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

- 상업 활성화와 생기 있는 가로환경을 위해 1층 또는 2층에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을 배치하고, 2층 이상이 주거동인 복합건축물을 배치하는 구간을 말함
- 도로에 면한 대지경계선의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을 대지경계선 길이의 60% 이상 배치 하되,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해당 블록의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의 길이가 지나치게 짧아 해당 면적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공동시설을 말함

<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 조성 예시 >



- 연도형 배치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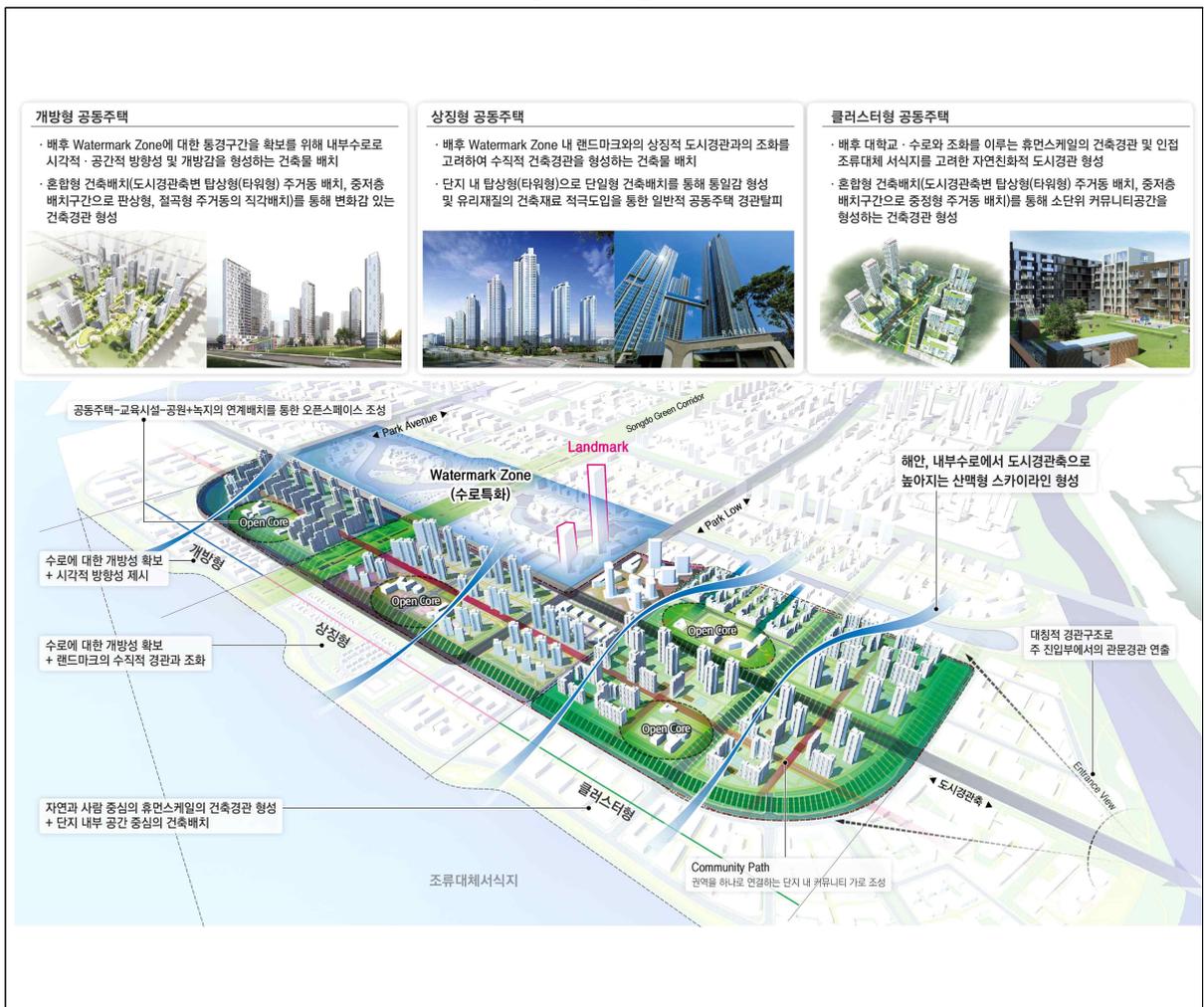
- 수변 보행 및 상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휴먼스케일의 연속적인 가로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저층부의 연도형 건축물을 배치하는 구간을 말함
- 공공공지에 면한 대지경계선의 경우에는 연도형 상가를 대지경계선 길이의 60% 이상 배치하되,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해당 블록의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의 길이가 지나치게 짧아 해당 면적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 수로변의 건축물은 판상형 건축물을 수로변과 평행하게 배치하는 것을 권장함
- 연도형 건축물의 높이는 20m 이하로 함

< 연도형 배치구간 조성 예시 >



- 개방형 공동주택
 - 배후 Watermark Zone에 대한 동경구간을 확보를 위해 내부수로로 시각적·공간적 방향성 및 개방감을 형성하는 건축물 배치
 - 혼합형 건축배치(도시경관축변 탐상형(타워형) 주거동 배치, 중저층 배치구간으로 판상형, 절곡형 주거동의 직각배치)를 통해 변화감 있는 건축경관 형성
- 상징형 공동주택
 - 배후 Watermark Zone 내 랜드마크와의 상징적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수직적 건축경관을 형성하는 건축물 배치
 - 단지 내 탐상형(타워형)으로 단일형 건축배치를 통해 통일감 형성 및 유리재질의 건축재료 적극도입을 통한 일반적 공동주택 경관탈피
- 클러스터형 공동주택
 - 배후 대학교·수로와 조화를 이루는 휴먼스케일의 건축경관 및 인접조류대체 서식지를 고려한 자연친화적 도시경관 형성
 - 혼합형 건축배치(도시경관축변 탐상형(타워형) 주거동 배치, 중저층 배치구간으로 중정형 주거동 배치)를 통해 소단위 커뮤니티공간을 형성하는 건축경관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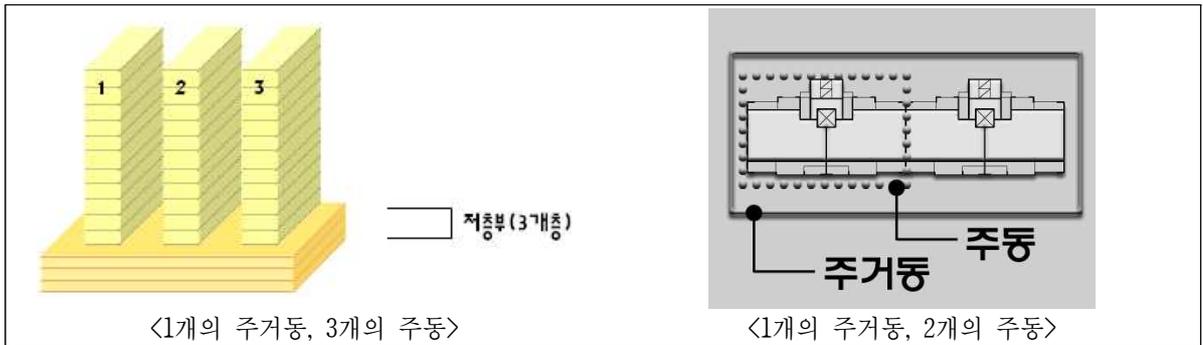
< 유형별 공동주택 >



○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주거동: 공동주택용지에서 공동주택이 주용도인 동일 건축물을 말함
- 주동: 공동주택용지에서 동일 코어를 사용하는 세대들로 이루어진 독립된 공동주택을 말하며 1코어 1주동을 원칙으로 함

< 주거동 및 주동 개념도 >



- 건축물의 전면: 건축물의 1층 용도를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주된 출입구(보행출입구)가 설치되는 면
- 주거동의 유형은 다음 표에 따름

< 주거동의 정의 및 형태, 높이 >

구분	정의	형태	높이
탑상형 (타워형)	각 주호가 하나의 코어를 공유하는 형태	$a < b \leq 1.5a$	H 1) $1.2A \leq H < 2A$ (15층 이상) 2) $A \leq 50m$
판상형	주거동 내 주호가 한곳으로 바라보며 일자형으로 배치된 형태	$a \leq b/2$	H 1) $A = 6$ 호 이하 (단, 우수한 건축경관 형성을 위해 6호를 초과할 경우 경관관련 주무부서와 사전협의 등을 거쳐 완화 가능)
복합형 (절곡형)	2개 이상의 주동이 일정한 각을 이루며 연립하는 형태	$b \leq 2.0a$	H 1) $A \leq 60m$ (단, 주거동 내 각 주동의 높이차이(H')가 5개층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경관관련 주무부서와 사전협의 등을 거쳐 완화 가능)

(a : 단변 / b : 장변 / A : 최대장변 / H : 높이)

- 필로티 구조: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로서, 천정고의 유효높이가 4.5m 또는 2개층 이상이며, 폭 6m 또는 주거동1호 너비 이상이어야 함
- 아케이드: 열주에 의해 지탱되는 아치 또는 반원형의 천장 등을 연속적으로 가설한 구조물과 그것이 조성하는 개방된 통로 공간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아케이드에 면한 필지의 사업자가 건축 건설시 아케이드를 설치함
 - 아케이드 공간내의 보도면은 인접한 포장면과 같은 높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그 차이는 10cm 이내로 하며,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설치를 원칙으로 함
 - 아케이드 공간에는 보행지장물의 설치를 불허하며, 영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음
- 투시형 셔터: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투시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셔터를 말함
- 랜드마크: 도시의 시각적 상징물로서, 주변과 유난히 차이나는 건축물로 주위 경관 속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기 쉬워야 함
- 단독형 집합주택: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 공급되는 단위 가구 내에서 2세대 이상의 독립된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은 단독 소유하되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는 공유함으로써, 진입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상하수도·전기·가스 등 공급처리시설, 관리시설·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이용 및 관리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구 단위로 주택을 집합화한 주거형태를 말함
- 타운하우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장점을 합한 것으로써 단독주택이 블록별로 10~100가구씩 모여 축벽을 공유하며, 수직적으로는 단일세대가 사용하는 단독주택군을 말함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 및 조성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전면공지

-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함.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하도록 함
- ‘보도 연결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 및 자전거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 및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함
-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함
 - 전면공지에는 원칙적으로 보행지장물을 설치 할 수 없으며, 다만, 해당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면공지 일부는 보행통행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경관상세계획에 따라 가로환경을 위한 식재, 보행자 공간 및 가로활성화를 위한 시설(벤치, 어닝 등) 등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 ※ 전면공지 3m 이상: 도로변 2m 이상 보행공간 확보(지식기반제조업용지는 도로변 1m 보행공간 확보)
 - ※ 전면공지 6m 이상: 도로변 4m 이상 보행공간 확보
 - 전면공지의 조성 면적 중 건축법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개공지 및 대지안의 조경 건축심의 기준』상의 조경기준에 적합하게 조성된 부분은 조경면적에 산입함
 - 전면공지는 연결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함.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함
 - 보도 연결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 및 자전거도로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주차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함
 - 포장: 보도 연결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우미 인정될 경우와 경관계획에서 별도의 포장계획을 제시할 경우 별도의 포장 가능

■ 측면공지

- ‘측면공지’란 인접대지 경계선을 중심으로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를 말함
- 측면공지는 환풍기, 냉각탑, 실외기와 같은 설비시설(이하 설비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공간 및 쓰레기 투입구 설치공간, 재활용품 수거공간 등으로 이용하지 않고 전면공지 및 보도와 연계하여 쌈지공원, 휴게공간 등으로 조성
- 기타 측면공지에 대한 조성기준은 첨단산업클러스터(C) 경관상세계획(변경)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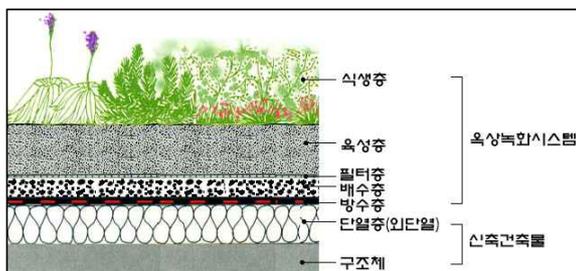
■ 공개공지

- 건축법 제43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간을 말함
- 보행자도로 및 수변부와 연결한 복합개발용지의 공개공지는 침상형 공개공지로 설치 (권장)
- 공원이나 보행자 전용도로에 접한 대지등의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호의 상위 순으로 대지의 조건에 따라 배치하여야 함
 - 교차로 각각부(2개 이상의 교차로 일 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각각부에 배치)에 배치함
 -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쪽 부분에 배치함
 -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쪽 부분에 배치함
-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있는 경우 인접 또는 건너편 공개공지와 연계되게 배치함
- 1개소로 집중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2개소로 분산배치 할 수 있음 단, 결정도에 의해 공개공지 위치가 지정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수로변 공공공간과 연결한 대지의 공개공지는 침상형 공지로 조성
- 공개공지의 조성기준
 -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전면도로의 접한 길이의 1/2 이상에서 진입이 가능해야 하며, 인접한 공개공지 및 광장 등 공공공간에서도 일반인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 공개공지 규모는 최소 45㎡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폭은 5m 이상 이어야 함(장단비 9:5 권장)
 - 공개공지에는 담장을 설치할 수 없음
 - 녹지 및 조경시설물 공간을 제외한 공개공지의 바닥은 전면도로의 보도와 같은 높이로 포장하여야 함
 - 공개공지에는 휴식시설과 경관조성을 위한 조경시설물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공개공지 내에는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환풍기나 냉각탑등의 설비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 옥상녹화

- 각종 구조물들로 인한 경관악화를 완화하고 생태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반 상부에 녹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필요에 따라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한 공간을 말함

<신축건물 예시도>



<옥상녹화 사례>



■ 차폐조경

- 차폐조경의 설치기준

- 획지내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전면도로에 노출될 경우, 전면도로와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의 사이에 2m 이상의 폭으로 높이 1m 이상의 관목을 밀식식재 하여야 함
- 폭 20m 이상의 도로변에는 폭 2m 이상, 폭 20m 미만의 도로에는 폭 1m 이상의 식수대를 조성하며,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식재하고 3~5m 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토록 함
- 차폐조경의 면적은 전부 조경면적으로 산입함

■ 공공조경

-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확보된 대지의 공지중 가로미관의 증진,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하며, 공공조경 조성기준은 경관상세계획에 따라 식재를 통한 특화길을 조성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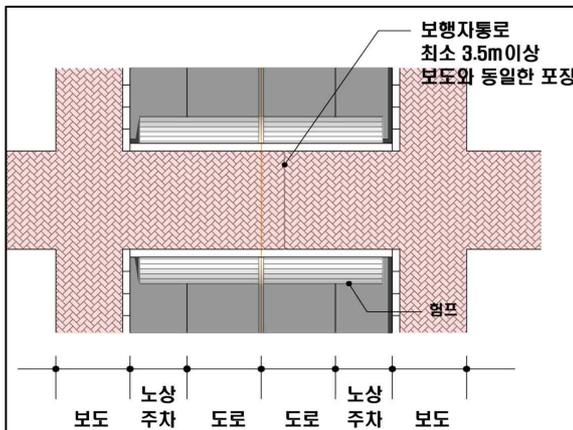
■ 공공보행통로(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며,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IFEZ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름
-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함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됨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함.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음.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폭 6m 이상으로 조성하되 건물하부를 통과 시 상부는 당초의 건축물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효 높이 4.5m 이상으로 설치
-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을 잔디블럭과 같은 투수성 포장 등의 환경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조성하는 경우에는 공공보행통로 면적의 1/2을 조경면적으로 산입함

○ 교통처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차량출입 불허구간’ 이라 함은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을 말함
- ‘전면도로’ 라 함은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면하고 있는 도로를 말함
- ‘보행우선구조’ 라 함은 공공보행통로, 보행자 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 ‘보행자우선구간’ 이라 한다)의 구조로서 다음의 각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 구조를 말함
 -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
 -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함
 -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최소 3.5미터 이상으로 함
- ‘보행지장물’ 이라 함은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함

<보행자우선구조 예시도>



<보행자우선구조 예시안>



- ‘보행 주출입구’ 는 보행자가 건물 출입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출입구를 말함
- ‘생활가로’ 라 함은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중심이 되는 도로로서 통학/통근 및 생활편의 위주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동질성 형성을 위한 문화활동기능도 제공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말함
- 부설주차장
 -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주차를 위한 대기장소나 차량용 램프진입을 위한 여유공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출입 여유 공간을 고려하여야 함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됨.
특히,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함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의하여 지구단위 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 완화하여 적용하는 구역을 말함

3. 지구단위계획의 적용 범위

- 신축건물 및 신축구조물
- 새로운 용도로의 대지이용
- 재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 및 구조물
- 증축 또는 대수선의 해당부분

4. 건축계획의 심의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및 관련조례에 따라 심의 해당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상기 규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는 자는 그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용 도서외에 다음과 같은 도서를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상의 해당부분 표시
 - 지구단위계획지침 중 해당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의 명시
 - 외부공간 및 건축물의 평면도, 단면도
 -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입면도
 - 외부공간의 이용 및 조성계획도(축척 1/100 이상)
 -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색채, 마감재료, 지붕형태, 광고물 등)
 -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반영여부 검토서류

5. 경관계획의 적용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시행자는 경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모든 경관관련 사항을 협의함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시행자는 경관협의체를 통해 협의한 사항을 ‘경관계획’에 수록하고 이를 시행함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시행자는 필지별 경관계획 및 지침도를 수립하고 이를 필지별 건축 및 옥외공간 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함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기 수립한 ‘경관계획’에 대한 변경은 경관협의체를 통해 작성 및 운영하도록 함

6. 조경면적의 완화

- 전면공지: 전면공지의 조성 면적 중 건축법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개공지 및 대지안의 조경 건축심의 기준』상의 조경기준에 적합하게 조성된 부분은 조경면적에 산입함
- 차폐조경: 차폐조경의 면적은 전부 조경면적으로 산입함
- 공공조경: 공공조경의 면적은 전부 조경면적으로 산입함
-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을 잔디블럭과 같은 투수성 포장 등의 환경친화적 재료를 사용하여 조성하는 경우에는 공공보행통로 면적의 1/2을 조경면적으로 산입함
- 옥상녹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개공지 및 대지안의 조경 건축심의 기준』에 의거 옥상조경 면적은 설치면적의 1/2을 조경면적에 산정하며, 법상 설치의무 조경면적의 1/3까지만 산정함

7. 정보통신분야

- 인천경제자유구역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을 위하여 반영되어야 할 유시티 시설물 및 구내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설치 계획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정한 「U-City인프라 시행지침(2007. 6. 1 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본 지구단위계획 구역안에서 각종 U-City건설과 관련된 행위시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함
 - 구내 정보통신설비의 적정 설치여부(공동주택 특등급, 업무용건축물 1등급 이상)
 -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설비의 적정 설치여부(분양주택 AA등급, 임대주택 A등급 이상)
 - 원격검침 설비의 적정 설치여부
 - U-City인프라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 ※ 각종 등급은 정보통신부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 지침”을 기준으로 함

8. 특별계획구역 운용방안

-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은 사업시행자가 지정대상, 지정목적, 개발방향, 마스터플랜 수립방안 등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경관위원회 자문 후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결정
-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구역의 복합개발시행자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야 함
- 특별계획구역의 해제는 해당 구역의 마스터플랜 내용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경관위원회 (MA가 위촉된 특별계획구역은 MA위원회)에 자문 후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결정
- 특별계획구역의 일부지역만 마스터플랜이 구체화되어 단계적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마스터플랜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 해제할 수 있음
- 특별계획구역의 해제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첨단 산업클러스터(C) 개발사업 준공 전에 이루어져야 함

9. 특별계획구역 마스터플랜 내용

- 특별계획구역 마스터플랜의 내용은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를 기준으로, 별도의 현상설계, 연구용역 또는 조사설계 용역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보완을 통해서 수립할 수 있다.
- 특별계획구역 마스터플랜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상세 계획안을 포함하되, 특별계획구역 특성에 따라 포함내용을 달리 할 수 있음
 -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반영사항
 - 사업계획 (복합개발 등의 사업계획이 있을 경우에 한함)
 - 사업시행자, 사업규모, 사업추진일정, 사업비 등
 - 건축 및 외부공간계획
 - 건축물 배치계획, 주요 공원·광장 등 오픈스페이스 계획, 동선처리계획
 - 주요 조망점에서 바라 본 스카이라인 등 시뮬레이션 검토자료
 - 기타 세부계획 (특별계획구역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수요조사 및 개발수요 검토자료
 - 경관상세계획, 통합설계 필요지역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경관위원회(MA가 위촉된 특별계획구역은 MA위원회) 및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267호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공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감면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20.

인 천 광 역 시 장

1. 감면대상자 :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하는 건물주

* 임차인 요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감면세목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3. 감면내용 : 2020년 7월 부과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를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① (감면 내용)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동일한 임차인에게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축물(「지방세법」 제104조제2호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소상공인이 임차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소유자에 대하여 2020년도 7월에 부과하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감면한다. 다만,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3개월로 환산하여 산출한 인하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하되, 그 산출된 인하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로 본다.

1.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세액 산출

$$\text{지역자원시설세(정당세액)} \times \text{임대료 인하율} \times (\text{해당 임대부분 시가표준액} / \text{전체 건축물 시가표준액})$$

※ “임대료 인하율”은 임대료 인하 전의 월 임대료와 인하기간 평균 월 임대료의 차액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2. 임대료 인하기간 3개월 미만시 환산식

$$\frac{(\text{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 - \text{인하기간 평균 월 임대료})}{\text{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 \times \text{임대료 인하 월 수} \div 3$$

② (감면 범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감면 한다.

1.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장기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하여는 3개월 초과 월 수(임대료를 10%미만 인하한 월은 초과 월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100분의 5를 곱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한다.

2. 임대료 인하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의 해당 감면율은 50%로 한다.
 3. 제1항, 이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감면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감면 금액으로 한다.
 4. 감면대상액이 임대료 인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인하 총액 한도 내에서 경감한다.
- ③ (감면 배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감면 신청) 임대료 인하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 ⑤ (추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1.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감면신청 내용과 다르게 임대료 인하, 인하 기간 및 임대면적 등이 상이하게 확인되는 경우
 2.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 후 2020년 12월 31일 까지 당초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높게 인상하는 경우
- ⑥ (감면 적용례) 이 감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동일한 임차인과 변경 임대차 약정을 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하며, 2020년 12월 31일 까지의 임대료 인하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271호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버스전용차로의 통행)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과태료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 합니다.

- 다 음 -

○ 과태료 납부고지 대상자

연번	단속차번	납부자명	단속일	금액	발송주소
1	43수2055	이*혜	2019-11-27	52100	강원도 원주시 원문로 ***, ***동 ***호(단계동, 동보렉스아파트*차)
2	04부2230	신*섭	2019-11-04	52700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 ** ***동 ****호 (금촌동, 후곡마을)
3	86거5004	안*삼	2019-11-18	521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번지 *호 */* ***호
4	10더3499	이*은	2019-09-26	53300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 **층 ****호 (심곡동, 부천역푸르지오시티)
5	93가4743	서*식	2019-11-12	527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서로 ** ***동 ****호(양덕동, 메트로시티)
6	21러2896	변*석	2016-10-14	759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번길 ** ***호(보정동, 죽전일성트루엘)
7	89고5984	정*구	2020-01-23	5000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 , ***호 (석수동)
8	36다5989	함*경	2020-03-11	500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길 **_**
9	06머7056	성*훈	2020-03-11	50000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삼울로 *_**
10	05모4845	임*옥	2020-03-11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로 ** ***동 ***호 (부개동, 주공아파트)
11	73수6187	은혜***** ***	2020-03-11	6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웃우물동길 *, *동 ***호(작전동, 킹스그린빌)
12	18도3300	남*	2020-03-12	50000	경상북도 구미시 백산로 ***, **동 ***호(송정동, 우방*차아파트)

13	36다5989	함*경	2020-03-13	500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길 **_**
14	18라9074	김*수	2020-02-19	50000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지산로 ***, ***동 ***호(유호월드피아)
15	인천99아 2245	백마***** **	2020-02-19	6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두리로 **_* , ***호(계산동, 대양나이스빌)
16	42서8426	최*순	2020-02-20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로***번길 * (계산동)
17	18라9074	김*수	2020-02-24	50000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지산로 ***, ***동 ***호(유호월드피아)
18	138가582 3	김*구	2020-02-27	50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남로 ***_* (대부남동)
19	64루3478	유한***** ***	2020-02-28	5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길 ** , ***호(합정동, 신우빌딩)
20	72거9171	(주***** *)	2020-03-04	6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 선릉대림아크로텔(삼성동)
21	61어7114	김*윤	2020-03-10	50000	경기도 부천시 서촌로 ** (송내동)
22	69루0983	정*자	2020-03-1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개동로**번길 * *층호 (만수동)
23	67버4062	주식***** ****	2020-03-11	5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 비동 ***호(가양동, 강서한강자이타워)
24	59조0715	주식***** **	2020-03-11	5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길 ** , *층(삼성동, 도안빌딩)
25	83고7352	김*준	2020-03-13	50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화*길 *_*(사동)
26	140하139 4	이*만	2020-02-12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번길 * , ***호 (문학동)
27	42구9976	주식*****	2020-02-16	5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길 ** , ****호(대치동, 선릉역롯데골드르즈*)
28	인천32러 2391	김*성	2020-02-18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로 ** (선학동)
29	19호7395	김*	2020-03-13	500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김정문화로**번길 ** , ***호 (강정동)
30	72하4445	(주***** *)	2020-02-20	6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 *층 ***호 (성내동, 라이저강동빌딩)
31	93수5778	정*준	2020-02-20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고잔동)
32	59하2474	김*욱	2020-02-20	50000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 ***동 ***호 (낙양동, 민락노블랜드엔에이치에프)
33	26조2117	유*숙	2020-02-21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계림로**번길 ** , ***호(청학동)
34	인천32바 2581	조*현	2020-02-2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원대로***번길 ** , 가동 ***호(간석동, 현광아파트)
35	53머2832	홍*용	2020-02-2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학길 *_* , ***호(문학동)
36	50부0506	(주***** *)	2020-02-2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번길 ** , *층(남촌동, 남동공단 **블록 **롯데)
37	92라0977	(주***** *)	2020-02-2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숙골로**번길 * * , ***호(도화동, 센타프라자)
38	50부0506	(주***** *)	2020-02-26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번길 ** , *층(남촌동, 남동공단 **블록 **롯데)
39	서울06파 7996	김*환	2020-02-26	60000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 **동 ***호 (신흥동*가, 향운아파트)

40	01하8361	박*갑	2020-02-27	50000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시동중앙길 **_*
41	03조6372	최*옥	2020-02-26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_* ***동 ***호 (청천동, 효마을타운)
42	96가2857	한*환	2020-02-28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번길 ** , ***호(간석동, 형진프라자)
43	26가1702	가람***** **	2020-03-02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향동*가 *번지 *_**_*_*
44	27부2014	박*규	2020-03-0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번길 ** , 비동 ***호 (간석동, 코지빌)
45	148나630 3	이*레	2020-03-03	50000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번길 ** , ***호(심곡동)
46	인천82바 4464	티에***** ***	2020-03-03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 ** , *층(원창동)
47	24마6381	전*성	2020-03-04	50000	경기도 시흥시 오동마을로 ** , ***호 (정왕동)
48	인천80더 9631	김*환	2020-03-0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용현동)
49	23소1758	주식***** **	2020-03-04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번길 ** , ***호(왕길동, 지니스토리)
50	62조7366	강*호	2020-03-05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번길 ** , ****호(가좌동, 신현대아파트)
51	22마1994	주*화	2020-03-05	50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동로*길 *(월피동)
52	82부8900	주식***** **	2020-03-09	5000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수리산로**번길 ** , *층 ***호(안양동)
53	61부3617	장*경	2020-02-26	50000	경기도 광명시 덕단이로 ** , ***호(광명동, 우성그린빌라)
54	60저5205	조*자	2020-03-06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번길 ** , 청영주택 *_****(부평동)
55	82머9052	(주*****	2019-09-18	53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번길 **_* , *층(구월동, 노암빌딩)
56	24더9195	김*만	2020-02-14	50000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번길 ** , ***동 ***호 (정왕동, 동보아파트)
57	101하331 4	양*철	2020-02-1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번길 ** ***호 (구월동, **오피스텔)
58	57오1017	인천***** *****	2019-12-06	52100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로 ** ***동 ****호(박촌동, 박촌풍림아이원)
59	86라1362	김*규	2020-02-24	50000	충청남도 서산시 대사동*로 **_* (동문동)
60	33러5468	최*임	2020-02-26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로***번안길 * (덕교동)
61	58무1130	김*진	2020-03-05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서로 ****(남북동)
62	48오2516	이*은	2020-03-10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 *** ***동 ***호(산곡동, 신명스카이뷰숲아파트)
63	33누1074	이*수	2020-03-11	50000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윤봉길로 ***_*
64	인천99아 2460	김*순	2020-03-11	6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 , 지층 (임학동)
65	15무3436	김*영	2020-03-11	5000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번길 **_*(안양동)

66	28로4156	이*승	2020-03-11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번길 **, ***동 ****호(산곡동, 경남아파트)
67	65조1653	이*자	2020-03-12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번길 **, *동 ***호(부평동, 옥일아파트)
68	334나114 2	신*을	2020-03-12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폴로 **, ***동 ***호(효성동, 유승아파트)
69	28버3045	김*기	2020-03-12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번길 *_*, ***동 ***호(작전동, 대경빌라트)
70	09고7359	박*남	2020-03-12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번길 *_*, ***호(십정동, 남우그린빌라트)
71	59서7513	김*희	2020-03-13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천로 **, *동 ***호(부개동, 삼화빌라)
72	35구1077	홍*웅	2020-03-13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남로***번길 **, *동 ***호(효성동, 미추홀드림빌)
73	55도5186	이*은	2020-03-13	5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 ***동 ****호(이매동, 아름마을)
74	13소1745	이*선	2020-03-14	50000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 ***호
75	34보2444	김*지	2020-02-18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번길 *, ***호(부평동)
76	69구2276	이*현	2020-02-18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번길 **, ***동 ****호(부평동, 한국아파트)
77	29버7207	유*범	2020-02-18	5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안길 **, ***호(연남동)
78	63오7805	이*숙	2020-02-18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_**, *동 ****호(도화동, 동아아파트)
79	인천30바 1083	이*태	2020-02-18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항동로**번길 **, ***호(부개동, 원우빌라)
80	47서8844	정*태	2020-02-18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 ***동 ***호(부개동, 상우보람아파트)
81	41버7511	박*래	2020-02-18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번길 **, ***동 ***호(용현동, 엑슬루타워)
82	41소1747	김*랑	2020-02-19	5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다길 **, ***호(화곡동, 덕현제왕타워아파트)
83	29버7207	유*범	2020-02-19	5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안길 **, ***호(연남동)
84	42루0181	배*실	2020-02-19	50000	경기도 부천시 부광로*번길 **, *동 ***호(괴안동, 강남그린빌라)
85	43오9870	전*욱	2020-02-19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 *동 ***호(부평동, 알토빌)
86	54무8548	정*래	2020-02-19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번길 **, ***호(부평동, 태광아트빌라)
87	17모7667	강*순	2020-02-19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분로 **_*, ***호(부개동)
88	84도8071	안*희	2020-02-19	50000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 ***동 ***호(황지동, 주공아파트)
89	332오216 4	안*성	2020-02-20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 ***동 ****호(주안동, 더월드스테인아파트)
90	02구3175	신*섭	2020-02-21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번길 **, ***동 ***호(작전동, 동보아파트)
91	57도6389	이*복	2020-02-21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번길 **, ***동 ***호(방축동, 한성아파트)
92	25거1490	모*범	2020-02-23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 ***동 ***호(병방동, 학마을서해아파트)

93	인천30바 7279	김*제	2020-02-24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번길 **, *동 ***호(십정동, 미래슈타인빌)
94	30더8539	이*웅	2020-02-24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 가동 ***호(계산동, 대성빌라)
95	15무3436	김*영	2020-02-24	5000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번길 **.*(안양동)
96	48거6395	전*환	2020-02-25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로 **, ***동 ***호 (병방동, 학마을한진아파트)
97	13루8694	윤*영	2020-02-26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 ****호(부평동, 문화드림빌)
98	13나0841	양*영	2020-02-26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 ,***동 ***호 (산곡동, 현대아파트)
99	29버7207	유*범	2020-02-27	5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안길 **, ***호 (연남동)
100	25노0254	차*윤	2020-02-27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번길 ** ***호 (십정동, 리버시티)
101	29버7207	유*범	2020-02-28	5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안길 **, ***호 (연남동)
102	14라7808	김*식	2020-02-28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번길 **.*(십정동)
103	53주7285	남*한	2020-02-28	50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길 **, ***동 ***호(상계동, 주공아파트)
104	50더0946	안*숙	2020-02-28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남로***번길 **.*, *동 ***호 (효성동, 반도빌라)
105	52모9900	백*숙	2020-03-02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육동로*번길 **.*(부평동)
106	36구5089	임*규	2020-03-03	50000	경상북도 구미시 상사동로 **, ***호 (사곡동, 장원빌딩)
107	04조6387	홍*의	2020-03-03	50000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구들들길 ***_*
108	인천30바 7023	유*선	2020-03-03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번길 **, ***동 ***호(효성동, 태산아파트)
109	26무4263	윤*	2020-03-0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 ,***동 ***호(간석동, 현대홈타운아파트)
110	27어4670	박*준	2020-03-03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정석로 * 나동 ***호(십정동, 노블하우스)
111	398로105 4	박*민	2020-03-04	50000	전라북도 군산시 의료원로 **, ***동 ***호 (나운동, 신일아파트)
112	34수4228	박*민	2020-03-04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번길 *, *층(계산동)
113	충북83아 8975	(주*****	2020-03-05	60000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로 **** (대량동)
114	71조1254	안*윤	2020-03-05	6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로**번길 *, *동 ***호(병방동, 삼성하이츠빌라)
115	38러1652	김*선	2020-03-05	5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길 **, ***동 ****호(등촌동, 등촌투웨니퍼스트*차)
116	16무9996	최*원	2020-03-06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번길 **, ***동 ***호(산곡동, 경남아파트)
117	인천30바 7625	김*성	2020-03-09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 ***동 ***호(효성동, 뉴서울아파트)
118	40모5847	김*중	2020-03-09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까치말로**번길 *_*, ***동 ***호 (작전동, 정우그린빌)

119	36구5089	임*규	2020-03-09	50000	경상북도 구미시 상사동로 *** , ***호 (사곡동, 장원빌딩)
120	20마0399	이*희	2020-03-10	50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길 **, ***호(성정동, 보성빌)
121	54우6885	김*미	2020-03-10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옹곡로 *** , 나동 ***호(석남동, 황해아파트)
122	57마6861	오*석	2020-03-10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번길 ** , ****호 (주안동, 더젠시티)
123	인천32바 1263	나*상	2020-03-10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 ***동 ****호(만수동, 향촌휴먼시아*단지아파트)
124	167호151 4	채*병	2020-03-1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번길 ** , ***동 ****호 (간석동, 한신더휴아파트)
125	01조8166	김*경	2020-03-11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 , ***호(주안동, 해마루더펠리체)
126	인천81다 5926	신*배	2020-03-1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번지 *호 **/ * 우성아파트 *동 ****호
127	50주9648	안*용	2020-03-11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주길**번길 ** , ***호(주안동, 우리빌)
128	10머8521	이*은	2020-03-11	50000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번길 **, *층 **호(평내동, 평내엠트프라자)
129	64두5650	신*용	2020-03-1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 , *층호(간석동)
130	18오1428	이*철	2020-03-11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 *동 ****호(청천동, 대안파크타운)
131	17두1228	강*지	2020-03-1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 ***동 ***호(만수동, 삼환아파트)
132	42무3576	임*상	2020-03-1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 ***동 ****호(간석동, 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133	11다7419	김*수	2020-03-11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 ***동 ****호(연수동, 솔밭마을아파트)
134	인천30바 4708	최*득	2020-03-11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화길***번길 ** , ***동 ***호(주안동, 한신희플러스아파트)
135	인천32바 1380	연*우	2020-03-1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 , ***동 ****호(간석동, 어울림마을아파트)
136	01주1185	가*순	2020-03-1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번길 *_* (만수동)
137	24다7180	이*용	2020-03-11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번길 ** (주안동)
138	34고9890	CH***** ****	2020-03-11	50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 , ****호(고잔동)
139	46하7947	위*진	2020-03-11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숙골로***번길 ** , ***동 ***호 (도화동, 도화서희스타힐스)
140	인천30바 4423	유*원	2020-03-11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월서로 **, ***동 ****호(갈산동, 하나아파트)
141	59오5240	차*완	2020-03-1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번길 **, ***동 ****호(논현동, 논현휴먼시아 범마을)
142	51소3460	황*준	2020-03-11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번길 *** , ****동 ****호(송도동, 송도더샵그린위크*차)

143	39수7982	전*하	2020-03-11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 ***동 ***호(산곡동, 현대아파트)
144	08마1299	김*영	2020-03-1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번길 * *동 ***호(만수동, 해마루빌리지)
145	51러0109	박*미	2020-03-11	50000	인천광역시 동구 새천년로**번길 ** ***동 ****호(송림동, 동산휴먼시아)
146	40하0853	심*범	2020-03-11	50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길 **_* ***호
147	13모0668	허*숙	2020-03-11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북로***번길 *, ***호(부평동, 남부빌라)
148	인천30바 2969	이*걸	2020-03-11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울도로**번길 **_* 가동 ***호(신현동, 원흥아파트)
149	01서1961	조*명	2020-03-11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번길 **_* (관교동), ***호
150	36고0385	박*주	2020-03-11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산로 ** ****호(주안동, 두산아파트)
151	08로6650	방*우	2020-03-11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번길 **_* , ***호(송의동, 우성그랑빌)
152	59너6723	조*철	2020-03-12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외전로 *** ***동 ***호(송의동, 행복캐슬)
153	91어6929	김*주	2020-03-1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곡로*번길 ** ***호(서창동, 파크타운)
154	인천30바 8292	이*득	2020-03-11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독배로 ** ***동 ****호(옥련동, 현대아파트)
155	11구8902	최*현	2020-03-1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번길 *_** (논현동)
156	156주913 0	손*구	2020-03-12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로**번길 **_* , ****호(송의동, 해담아트빌 *차)
157	96오0371	(주*****)	2020-03-12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고래울로 **_* (가좌동)
158	인천86바 4152	한*근	2020-03-12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 ****호(신현동 신현*-편한세상.하늘채아파트)
159	18서7395	서*은	2020-03-12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 ** ***동 ****호(청라동 청라제일풍경채*차에듀엔파크)
160	09러0397	변*태	2020-03-12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정공원로 ** ***동 ****호(용현동, 인천 ** ***) ****)
161	인천32바 1324	장*화	2020-03-1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번길 * ****호(구월동, 웰메이드)
162	인천30바 4107	강*석	2020-03-12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번길 ** ***동 ***호(송의동, 미가애)
163	12라9731	JI*****	2020-03-12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번길 **_* *동 ***호(가좌동, 성광주택)
164	인천81바 1815	임*식	2020-03-12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번길 ** 가동 ***호(가좌동, 인향아파트)
165	28버5633	김*열	2020-03-12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울도로**번길 ** ***호(석남동, 신광아파트)
166	20라5261	박*규	2020-03-1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번길 * *층(간석동)
167	33누7873	이*규	2020-03-1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 ***호(간석동 간석마을풍림아이원아파트)

168	72다8403	김*욱	2020-03-12	6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동 ****호(간석동, 인천간석** *단지)
169	96조7509	안*민	2020-03-12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정공원로 **, ***동 ****호(용현동, 인천 ** ***)
170	57하8090	김*빛	2020-03-12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 ***호(주안동, 더원시티)
171	15우7029	장*호	2020-03-12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번길 **_*, 라동 ****호(부개동, 한우주택)
172	인천30바 5852	김*언	2020-03-12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번길 **_** ***동 ****호(학익동, 학익*차현광아파트)
173	76무2983	안*순	2020-03-12	6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번길 **, ***동 ****호(옥련동, 현대아파트)
174	48누3831	허*욱	2020-03-1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번길 **, *차동 ***호(간석동, 헤이미쉬)
175	14모8795	안*애	2020-03-1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번길 **_**, *동 ***호(구월동, 대하빌라)
176	66소7749	양*나	2020-03-12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번길 **_*, *동 ***호(검암동, 하늘미소빌)
177	66노4482	이*국	2020-03-1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동 ***호(만수동, 대흥빌라)
178	51러0109	박*미	2020-03-12	50000	인천광역시 동구 새천년로**번길 **, ***동 ****호(송림동, 동산휴먼시아)
179	97저6857	유*희	2020-03-13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서로**번길 **_** (도화동)
180	69서2477	고*자	2020-03-1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개서로 **, *동 ***호(구월동, 세일빌라)
181	18부8481	노*찬	2020-03-13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월서로 **, *동 ***호(갈산동, 태화아파트)
182	13무9559	정*원	2020-03-13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호(도화동, 라이프타워)
183	66거3545	유*화	2020-03-1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번길 *_**, ***호(간석동, 갤러시타운)
184	12주7029	김*련	2020-03-13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랜드마크로 **, ***동 ****호(송도동, *편한세상 송도)
185	13구7616	윤*	2020-03-1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번길 **, *동 ***호(간석동, 한진아파트)
186	39버0843	이*호	2020-03-13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번길 **, ***동 ***호(운서동, 영종***단지아파트)
187	65무1100	김*영	2020-03-13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번길 **, *동 ***호(가좌동, 세우아파트)
188	97로6079	박*성	2020-03-13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번길 **_*, ***호(도원동)
189	12러4720	김*균	2020-03-13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도산로**번길 **, ***호(도원동, 대한빌라)
190	17소2990	강*숙	2020-03-13	5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로 **, ***동 ***호(가좌동, 가좌마을)
191	16조9405	채*철	2020-03-1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호(간석동)
192	37가2523	함*은	2020-03-13	50000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로 **, ***동 ****호(송현동, 솔빛마을주공아파트)

193	64루1168	최*정	2020-03-13	5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가길 **_**, *동 ***호(온수동, 오덕빌라)
194	03보7621	임*자	2020-03-13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번길 **, ***동 ***호(갈산동, 신한국아파트)
195	42서8837	염*섭	2020-03-1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번길 *, ***동 ****호(논현동, 소래마을풍림아파트)
196	경기37바 6425	한*희	2020-03-13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고래울로**번길 **_*(가좌동)
197	18루8791	노*한	2020-03-13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번길 **_**, *동 ***호(갈산동, 그린빌)
198	31버1901	노*석	2019-03-07	50000	경기도 의왕시 동부시장*길 **, ***호(내손동)
199	16호7702	장*수	2020-02-04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로 *** ***동 ****호 (선학동, 뉴서울*차아파트)
200	52다6996	주식***** ***	2020-02-11	50000	경기도 김포시 옹정로 **, *동
201	64루3169	정*수	2020-02-15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개서로 **, ***호(구월동)
202	83거6132	조*경	2020-02-1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 ***동 ****호(서창동, 청광플러스원아파트)
203	31버1901	노*석	2019-03-08	50000	경기도 의왕시 동부시장*길 **, ***호(내손동)
204	인천30바 3796	이*호	2019-09-14	25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 ***동 ****호 (간석동, 어울림마을아파트)
205	38호1220	오*혜	2020-02-08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번*길 **, ***호(마전동)
206	28호5301	이*영	2020-02-14	50000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상경로지선길 **
207	인천30바 4883	강*준	2020-02-15	50000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로 ** *동 ***호(송현동, 동부아파트)
208	24가2086	곽*덕	2020-02-16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길파로 *_**, ***호(주안동, 덕산하이츠빌)
209	37마1802	정*호	2020-02-15	50000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로 **, ***동 ***호(송현동, 솔빛마을주공아파트)
210	19나2607	유*호	2020-02-15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_**, ***동 ***호(만수동, 삼익세라믹아파트)
211	43거0495	황*승	2020-02-15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 ***동 ****호(구월동, 구월아시아드선수촌*단지)
212	07노2231	송*홍	2020-02-15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천로**번길 **, 다동 ***호(송의동, 장미연립)
213	95도7122	최*순	2020-02-16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호(항동*가)
214	185보869 5	김*억	2020-02-1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번길 **, ***호(송의동, 진주빌라)
215	43가5080	권*조	2020-02-17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번길 **, 나동 ***호(가정동, 청송빌라)
216	19버1110	이*훈	2020-02-1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번길 **, ***호 (주안동, **팰리스)
217	85고7944	박*	2020-02-1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번길 **, 지하층 ***호 (남촌동, 정산빌라)

218	28어5292	강*수	2020-02-17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 , ***동 ***호 (연수동, 연수주공*차아파트)
219	57수6493	이기***** ***** ***	2020-02-17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열우물로***번길 **_* , ***동 ***호(가좌동, 가좌라일실크빌)
220	63가0446	최*수	2020-02-1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동 ***호(만수동, 현대다세대주택)
221	10다1240	김*현	2020-02-1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 ***동 ****호 (학의동, 동아풍림아파트)
222	252누746 4	김*승	2020-02-1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경로*번길 * *동 ***호(만수동, 동남다세대주택)
223	28조1199	이*등	2020-02-1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 **_* *동 ***호 (만수동, 동도다세대주택)
224	인천30바 8685	김*원	2020-02-1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호(도화동, 주영팰리스)
225	47나2848	박*욱	2020-02-1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번길 **_*(주안동)
226	13조8600	장*오	2020-02-18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번길 **_* , ***호 (구월동)
227	54보6676	한*정	2020-02-1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 ***동 ***호(서창동, 현대모닝사이드아파트)
228	88라6996	최*선	2020-03-13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번길 * , ***호(송의동, 하늘뜨락)
229	01주5172	조*흠	2020-03-13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호 (도화동, 해피타운)
230	33부3412	김*찬	2020-03-13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호 (도화동, 해피타운)
231	29소3574	안*열	2020-03-13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번길 **_* , ***호(당하동)
232	인천30바 1011	안*식	2020-03-1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 ****동 ****호(구월동, 구월힐스테이트)
233	04마9763	신*순	2020-02-18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번길 * ***호(구월동, 금영다세대주택)
234	30고2593	마*정	2020-02-18	50000	인천광역시 동구 송미로**번길 **_* **동 ***호 (송림동, 미래다세대)
235	45거5412	임*래	2020-02-18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번길 **_* , ***호 (구월동)
236	02나0864	박*련	2020-02-18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 ***동 ***호 (산곡동, 현대아파트)
237	91우0278	김*표	2020-02-18	50000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 ***호(상동, 대신스카이빌)
238	69호7371	양*원	2020-02-18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 가동 ***호 (갈산동, 신정연립)
239	19고6303	권*구	2020-02-18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 *동 ****호(청라동, 청라센트럴에일린의뜰)
240	245너522 4	조*경	2020-02-18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동 ***호 (구월동, 신세계아파트)
241	26소0594	함*하	2020-02-18	50000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번길 ** ***호(상동)
242	61무7799	한*민	2020-02-18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 *동 ***호(구월동)

243	66조6989	LE*****	2020-02-19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번길 **, ***호(용현동, 대웅빌라)
244	11모7592	김*엽	2020-02-19	50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서로*길 **, ***호(월피동, 두원하이츠빌)
245	66호1649	(주*****	2020-02-19	50000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번지 제비동 ***호
246	88러7483	김*기	2020-02-19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대평로 **, *동 ***호 (심곡동, 연희타운)
247	62로7040	(주*****	2020-02-19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 *층(주안동)
248	76무8161	권*근	2020-02-19	60000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번길 **, * 가동 ***호(가좌동, 신동아연립)
249	14구6442	서*석	2020-02-19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번길 *_*, ***호 (가좌동, 청민주택)
250	80우3915	박*욱	2020-02-19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번길 ***, **동 ***호(학익동, 신동아아파트)
251	28부1474	최*실	2020-02-19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번길 **_*, *동 ***호(만수동, 성신아파트)
252	61루0329	박*선	2020-02-19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 ***동 ****호 (만수동, 햇빛마을벽산아파트)
253	42다5451	노*원	2020-02-19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층선로 **_*, *동 ***호(삼산동, 삼익주택*차)
254	30하0517	김*석	2020-02-19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염전로 ** , **동 ***호 (간석동, 신동아파밀리에명품아파트)
255	22루8506	이*진	2020-02-19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벽돌말로**번길 **_*, *동 ***호(간석동, 삼용빌라)
256	40누0208	김*일	2020-02-19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로 * , ***호 (송의동, 더젠시티)
257	04보7505	유*순	2020-02-19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주길**번길 **, ***호(주안동, 현대연립)
258	51무0893	양*팔	2020-02-19	50000	인천광역시 동구 제물량로***번길 ** , *다동 ***호(만석동, 만석***)
259	40부4397	박*욱	2020-02-19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 , ***호(주안동, 주안웰가)
260	21로4788	이*숙	2020-02-19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번길 **_*(신생동)
261	66오8479	신*의	2020-02-19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번길 ** , ***동 ****호 (논현동, 논현휴먼시아 범마을)
262	인천30바 7126	김*항	2020-02-19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번길 **, * ***동 ****호(산곡동, 한신아파트)
263	43마1877	임*호	2020-02-20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일로 **, * ***호(도화동, 연주프라임)
264	54머3629	지*현	2020-02-20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 ***동 ****호(만수동, 담방마을아파트)
265	95부6793	최*숙	2020-02-20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번길 *_*, *동 ***호(학익동, 우성빌라)

266	66두8725	윤*환	2020-02-20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 , ***호 (부평동, 갤럭시아파트)
267	64수6096	이*열	2020-02-20	50000	경기도 부천시 심종로***번길 ** (중동)
268	79러3482	이*선	2020-02-20	6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 ***동 ***호 (구월동, 구월유승한내들퍼스티지)
269	27거0357	유*환	2020-02-20	50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번길 **_* , *층 (탑동)
270	인천30바 3464	서*범	2020-02-20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 ****동 ****호(동춘동, 송도파크레인 동일하이빌)
271	39러3925	이*만	2020-02-20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번길 ** , ***호 (도화동, 효성주택)
272	43루8975	김*기	2020-02-20	50000	경기도 부천시 도약로 *** , ***동 ****호(중동, 덕유마을)
273	55우0163	유*선	2020-02-20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 **-* ***동 ***호(간석동, 대경빌라트)
274	30부3670	유*욱	2020-02-20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 ***동 ****호(만수동, 주공아파트)
275	62구0919	박*구	2020-02-20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창로 **, ***호(주안동, 행복마을아파트)
276	67머2246	김*순	2020-02-20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 ***호(관교동, 관교오피스텔)
277	48수9601	방*배	2020-02-20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로 ** ***동 ****호(신현동, 루원시티투에블리)
278	05모7975	신*현	2020-02-20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 , *동 ***호(주안동, 쌍용아파트)
279	19버1257	이*석	2020-02-20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번길 ** , *층(도화동)
280	337서827 1	이*상	2020-02-20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 , ***호(간석동)
281	36누4467	김*철	2020-02-20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번길 ** , ****호 (논현동, 유승테라폴리스)
282	92마1805	정*진	2020-02-2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번길 ** , ***호 (구월동, 황금빌라)
283	20수5171	김*화	2020-02-21	50000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번길 ** (화수동)
284	14고1706	임*혁	2020-02-21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종로 **, ***호(송의동, 썬에이스빌아파트)
285	91도5726	오*만	2020-02-21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번길 ** , ***호(십정동, 소나무타운)
286	231조833 5	김*아	2020-02-2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번길 ** , *층 ***호(구월동, 메종야베스)
287	인천30바 1458	장*화	2020-02-21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번길 ** , ***동 ***호(주안동, 진흥아파트)
288	19보4126	서*석	2020-02-21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번길 ** , *동 ****호(관교동, 동아아파트)
289	인천32바 1059	고*모	2020-02-2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 *동 ***호(만수동, 삼용아파트)
290	13소7697	차*숙	2020-02-21	50000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고부백운길 ***_*
291	251소733 0	이*수	2020-02-21	50000	인천광역시 동구 재능로 *** ***동 ****호(송림동, 동산휴먼시아)

292	33러0851	이*동	2020-02-2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번길 ** *, *층(구월동)
293	31로0951	이*기	2020-02-21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번길 **(주안동)
294	17도0809	김*호	2020-02-21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 ***동 ****호(용현동, 용현*단지 금호타운)
295	43저0468	한*실	2020-02-2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 ***동 ****호(만수동, 향촌휴먼시아*단지아파트)
296	08부8953	AK***** *****	2020-02-21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룡로 **, (옥련동)
297	50로4253	김*현	2020-02-21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번길 ** *동 ****호(항동*가, 비취맨션)
298	20다0925	김*우	2020-02-2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 ***동 ***호(논현동, 논현하늘마을엘에이치*단지)
299	63로7012	고*자	2020-02-2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번길 **, *동 ***호(논현동, 대양빌라)
300	41다0779	김*미	2020-02-2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번길 **_*, ***호(구월동)
301	86구0231	손*성	2020-02-21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월서로 **, ***동 ****호(갈산동, 하나아파트)
302	64마0666	송*남	2020-02-21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 *동 ***호(작전동, 삼천리아파트)
303	11가1486	한*수	2020-02-21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 ***동 ****호(가좌동, 가좌한신희플러스아파트)
304	55부8331	신*연	2020-02-21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 ***동 ***호(연수동, 연수주공*차아파트)
305	42로0960	허*웅	2020-02-21	50000	경기도 시흥시 신천*길 **_*, *층(신천동)
306	51서6310	황*선	2020-02-22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 ***동 ****호(청라동, 청라**블럭 호반베르디움)
307	66저5068	김*윤	2020-02-2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번길 **, *동 ****호(구월동, 팬더아파트)
308	268수884 8	한*규	2020-02-2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번길 **, 사동 ***호(만수동, 아주아파트)
309	14무0717	김*수	2020-02-2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번길 **_*, *동 ***호(만수동, 화성아트빌)
310	09서1450	배*경	2020-02-24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후정동로 **, *동 ***호(삼산동, 태산아파트)

311	66호1649	(주*****	2020-02-24	50000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번지 체비동 ***호
312	26구1011	조*환	2020-02-24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 , ***호(갈산동)
313	52조1975	백*명	2020-02-24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 *동 ***호(연희동, 연희아트빌)
314	62어3676	세무*****	2020-02-24	500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 , ***호(중동, 연안빌딩)
315	인천32바 1059	고*모	2020-02-2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동 ***호(만수동, 삼용아파트)
316	인천30바 4600	강*식	2020-02-2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동 ***호(만수동, 주공아파트)
317	96수0838	이*선	2020-02-2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_*** ***동 ****호(서창동, 인천서창엘에이치*단지)
318	인천30바 7006	함*서	2020-02-2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염전로 *** ***동 ****호(간석동, 간석 신동아파밀리에 명품아파트)
319	13구7616	윤*	2020-02-2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번길 ** *동 ***호(간석동, 한진아파트)
320	38하9987	유*운	2020-02-2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 **_** (송의동)
321	15누0460	JI*****	2020-02-24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번길 **_* , ***호(십정동)
322	59도6388	정*영	2020-02-2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번길 *_** ***호(문학동, 미래빌라)
323	인천32바 1703	한*식	2020-02-24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번길 ** , ***호(부평동, 태강플러스)
324	17부9557	신*금	2020-02-24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 , ***호(답동, 월드리치빌)
325	43누7667	조*선	2020-02-24	50000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로 ** ***동 ****호(송현동, 솔빛마을주공아파트)
326	62마1407	이*호	2020-02-2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로 ** ***동 ****호 (송의동, 광해리드빌)
327	63다3671	서*철	2020-02-24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번길 **_*, 가동 ***호(가좌동, 송림빌라)
328	26우7169	박*남	2020-02-25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번길 ** , ***호(간석동, 해마루플러스)
329	인천30바 8486	임*빈	2020-02-25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 ***동 ****호(서창동, 인천서창엘에이치*단지)

330	57우6058	김*호	2020-02-25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번길 **_*, *층(문학동)
331	09서0218	전*호	2020-02-25	50000	경기도 부천시 도약로 *** **동 ****호(중동, 덕유마을)
332	398모220 6	이*석	2020-02-25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번길 ** , ***동 ***호(주안동, 진흥아파트)
333	인천30바 7614	이*태	2020-02-25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 ***, ***호(서창동, 영종하이빌)
334	61다8356	김*수	2020-02-25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번길 **, ***동 ***호(가정동, 하나아파트)
335	01너2785	이*화	2020-02-25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번길 ** , ***호 (주안동, 포인빌라)
336	04다6958	이*은	2020-02-25	50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 ***동 ****호(오목천동, 꿈에그린아파트)
337	18호2629	정*주	2020-02-25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번길 **, ***호 (전동,하이뷰우리빌)
338	69노2517	김*혁	2020-02-25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 ***동 ****호(간석동, 간석마을풍림아이원아파트)
339	48루5692	권*목	2020-02-25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번길 **_**, *동 ***호(구월동, 현대로얄빌라)
340	34너9509	정*수	2020-02-25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 ***동 ***호 (만수동, 주공아파트)
341	35서6858	염*선	2020-02-25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종로 **, *동 ***호 (송의동, 한마음아파트)
342	31오7620	강*중	2020-02-25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번길 *(주안동)
343	40오4716	김*아	2020-02-25	50000	경기도 부천시 상이로**번길 **, ***호 (상동)
344	68두1724	전*기	2020-02-25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 **, ***동 ***호(석남동, 월드메르디앙아파트)
345	경기37바 6378	김*만	2020-02-25	5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길 **, ***호(공동, 예촌빌라)
346	31소3242	박*남	2020-02-26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 *동 ****호 (가좌동, 진주아파트)
347	인천32바 1876	조*환	2020-02-26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 ***호(주안동, 코지리움)
348	06서1928	김*훈	2020-02-26	50000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번길 **(중동)
349	24오7473	노*행	2020-02-26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번길 **_*, *층(주안동)

350	인천30바 8232	김*수	2020-02-26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도산로**번길 *~*(도원동)
351	38고1349	추*선	2020-02-26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번길 **~**, 나동 ***호 (주안동, 반석빌라)
352	293서901 9	홍*기	2020-02-26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동 ***호 (구월동, 롯데캐슬골드)
353	19보4926	한*석	2020-02-26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모래내로**번길 *~*, ***호 (구월동, 한신그린빌라)
354	10마3675	조*미	2020-02-26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 **~**, ***호 (구월동, 상신빌라)
355	34어4103	진*호	2020-02-26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 ***호 (만수동, 한올라운체)
356	38오8575	김*열	2020-02-26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 ***동 ***호(만수동, 주공아파트)
357	71보7790	김*선	2020-02-26	6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동 ***호 (만수동, 햇빛마을벽산아파트)
358	86모5423	김*희	2020-02-26	50000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 ***동 ****호(화수동, 화도진그린빌주공아파트)
359	16버8352	장*식	2020-02-26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번길 **~**, **동 ***호(갈산동, 세종빌리지)
360	20너0499	최*진	2020-02-26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가동 ***호(간석동, 청산빌라)
361	75머8217	김*현	2020-02-26	60000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번길 *~* , ***호(검암동, 라움)
362	86무7160	고*만	2020-02-26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창로 **, ***호(주안동, 행복마을아파트)
363	서울06하 8167	노*철	2020-02-26	6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번길 *** (논현동,동보아파트) ***동 ****호
364	09우0251	이*미	2020-02-26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 ***호(용현동, 선우아파트)
365	66호1649	(주*****	2020-02-26	50000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번지 제비동 ***호
366	44호7643	이*솔	2020-02-2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북길***번길 ** ***동 ***호 (도화동,롯데맨션)
367	24어6840	조*영	2020-02-27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번*길 *, ***동 ***호(불로동, 삼보해피하임)
368	52조2122	유*일	2020-02-2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숙골로**번길 **, ***동 ***호(도화동, *편한세상도화*~*단지)
369	인천30바 9199	진*석	2020-02-27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솔로 *** (청학동)

370	90라2477	김*욱	2020-02-26	50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번길 **, ***동 ***호(성사동, 신원당마을)
371	39도0770	윤*민	2020-02-26	50000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 ***동 ****호(상동, 상동스카이뷰자이)
372	06소7568	CU***** *	2020-02-26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번길 **, ****호(송의동)
373	인천32바 1059	고*모	2020-02-2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동 ***호(만수동, 삼용아파트)
374	인천30바 2308	최*균	2020-02-27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 ***동 ***호(청학동, 용담마을아파트)
375	인천30바 2364	조*충	2020-02-2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중로 **, *동 ***호(용현동, 한양아파트)
376	인천30바 5629	문*선	2020-02-2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번길 **, ***동 ****호(학익동, 신동아아파트)
377	인천30바 4241	안*렴	2020-02-27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번길 **, ***동 ***호(가좌동, 진주아파트)
378	12부3260	임*성	2020-02-27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 ***동 ****호 (산곡동, 현대아파트)
379	인천30바 8303	이*철	2020-02-2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번길 **-**, ***호(구월동, 대림빌라)
380	32루9480	윤*영	2020-02-2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번길 **, *동 ***호(만수동, 진흥아파트)
381	59고5351	오*택	2020-02-2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길파로**번길 **, *동 ***호(주안동, 성도빌라)
382	11부6158	장*희	2020-02-27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 ***동 ***호(가좌동, 가좌한신휴플러스아파트)
383	07노1810	황*연	2020-02-27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번길 **, ***호(옥련동)
384	26주0674	김*희	2020-02-2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 ****동 ****호(구월동, 구월힐스테이트)
385	86부6887	배상***** *****	2020-02-28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로**번길 **-*, ***동 ***호(일신동)
386	17조7835	정*현	2020-02-2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햇골길**번길 **, ***호(학익동, 정림주택)
387	47저6614	유*진	2020-02-28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진로 **, ***동 ***호 (옥련동, 현대아파트)
388	62구2206	장*재	2020-02-28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번길 **(주안동)
389	22머4672	김*철	2020-02-28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동 ****호 (구월동, 신세계아파트)

390	인천30바 9229	박*순	2020-02-28	5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길 **, ***호(온수동, 온수아트빌)
391	49나0852	진*영	2020-02-28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번길 **, ***동 ****호 (논현동, 소래휴먼시아)
392	26도8131	윤*진	2020-02-28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점로 **, *동 ***호(구월동, 웰메이드 *차)
393	50두8620	변*희	2020-02-28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영로**번길 **, ***호(부평동, 현대주택)
394	313나931 9	주식***** *****	2020-02-28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 ***호(주안동, 태양빌딩)
395	인천30바 3712	김*산	2020-02-28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번길 **, ***동 ***호(논현동, 논현휴먼시아 범마을)
396	42어3868	JI*****	2020-03-02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로**번길 **, 가동 ***호(선화동, 뉴월드그린빌라)
397	97고5690	천*희	2020-03-02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영로**번길 *, *동 ***호 (부평동)
398	인천30바 5616	윤*정	2020-03-02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주길***번길 **-** (주안동)
399	32소5600	이*봉	2020-03-02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호(갈산동)
400	22누5800	김*미	2020-03-02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번길 **, ****동 ****호 (송도동, 송도더샵마스터뷰)
401	인천84바 4484	이*화	2020-03-0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번길 *, *동 ***호(구월동, 벽산아파트)
402	인천30바 1741	김*태	2020-03-02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번길 **, ***호(송의동, 태양아파트)
403	인천30바 4270	양*록	2020-03-02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 ***동 ****호(연수동, 유천아파트)
404	83노2246	조*희	2020-03-02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번길 **, **동 ***호(항동*가, 비취맨손)
405	43구0200	홍*기	2020-03-02	50000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번길 **, ***동 ****호 (월곶동, 진주마을풍림*차아이원아파트)
406	13구7616	윤*	2020-03-0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번길 **, *동 ***호(간석동, 한진아파트)
407	85도6147	김*선	2020-03-02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상정로 **, 나동 ***호(십정동, 정원아파트)
408	33우0505	최*수	2020-03-0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 ***동 ****호(만수동, 담방마을아파트)
409	35모2894	문*라	2020-03-02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명로*번길 *-*, ***호(청학동)

410	80머7519	김*창	2020-03-0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로 ***, ***호(간석동, 부삼빌라)
411	35두8043	정*희	2020-03-02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번길 **, *동 ***호(도화동, 대성빌라)
412	343루982 2	오*호	2020-03-0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번길 **_**, ****동 ***호(만수동, 주공아파트)
413	경기37바 5603	권*봉	2020-03-02	50000	경기도 부천시 삼작로***번길 **(원종동)
414	80보0983	명연***** **	2020-03-0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번길 *, ***호(간석동)
415	68노0227	강*진	2020-03-02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번길 ** ***동 ***호(송도동, 송도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
416	79누4900	박*규	2020-03-02	6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화랑로**번길 *_*(산곡동)
417	53마1314	이*희	2020-03-02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 ***, ***동 ****호(산곡동, 금호이수 마운트밸리)
418	42고6909	JI*****	2020-03-0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번길 **_*, ***호(간석동)
419	90누8805	장*영	2020-03-02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번길 **_**, ***호(주안동, 신비주택)
420	53마6616	최*희	2020-03-02	50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 **_*, ***호(석관동)
421	86모5411	임*철	2020-03-02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호(송의동, 스카이스테이트)
422	63우6626	조*애	2020-03-02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호(도화동, 주영팰리스)
423	28부7222	김*희	2020-03-02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 *동 ***호(도화동, 아우단빌라)
424	58서3290	양*진	2020-03-03	50000	경기도 부천시 역곡로***번길 **_**, 지층*호(고강동, 옥산주택)
425	59러6811	송*정	2020-03-0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리미로*번길 ** , ***호(도림동, 샤인빌)
426	64러0262	권*원	2020-03-0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번길 **_** *동 ***호(만수동, 인성다세대주택)
427	72나3403	최*용	2020-03-03	60000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번길 ** ***동 ***호(구래동, 김포한강나비마을엘에이치*단지)
428	66구3097	김*정	2020-03-03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 ***동 ****호(학익동, 동아풍림아파트)

429	인천30바 5478	김*준	2020-03-03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 **동 ***호(삼산동, 삼산타운*단지아파트)
430	18머1531	이*진	2020-03-0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 , ***호 (간석동)
431	인천30바 1359	조*열	2020-03-03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 ***동 ***호(관교동, 동부아파트)
432	인천30바 3667	임*배	2020-03-03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중로**번길 **-**(용현동)
433	86리5506	윤*채	2020-03-03	50000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로 **, ***동 ****호(송현동, 슬빛마을주공아파트)
434	36무2576	정*화	2020-03-0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 , ***동 ***호 (서창동, 현대모닝사이드아파트)
435	27부5204	PI***** ***	2020-03-03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 더 프라임 클래스 ****호(청천동)
436	02나0864	박*련	2020-03-03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 , ***동 ***호 (산곡동, 현대아파트)
437	53도1524	이*진	2020-03-03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번길 ** , ***동 ****호(옥련동, 현대아파트)
438	27누7846	김*진	2020-03-03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번길 ** , *동 ***호(항동*가, 다흥탑스빌)
439	24도1096	황*선	2020-03-03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운중로**번길 * , ***호(운남동)
440	인천31노 5626	류*근	2020-03-03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개항로**번길 **-**(울목동)
441	23우4084	NG***** *****	2020-03-03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샘말로 **-** , ***호(연수동)
442	22가3960	김*욱	2020-03-0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번길 ** , *동 ***호 (구월동, 성화빌라)
443	29리4120	이*순	2020-03-03	50000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로**번길 **-* , *동 ***호(화수동, 미건빌라)
444	52루7784	황*오	2020-03-03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월천로 ***-* , *동 ***호(청천동, 주천그린빌라)
445	86소5495	문*규	2020-03-0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 ***동 ***호(간석동, 아르떼빌)
446	37부1356	박*용	2020-03-03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 , ***동 ***호(청라동, 청라**)
447	51노9004	신*영	2020-03-03	50000	인천광역시 동구 송화로**번길 **-* , ***동 ***호(송현동, 초롱마을*차)
448	11소6852	소*식	2020-03-03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 , ***동 ***호(용현동, 용현*단지 금호타운)

449	51더4844	박*규	2020-03-03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 ***동 ****호(청천동, 금호타운)
450	07러6301	김*태	2020-03-03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번길 **-* , ***호(관교동)
451	45나4964	이*수	2020-03-0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번길 ** , ***호(간석동)
452	45라1544	이*규	2020-03-03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번길 ** *동 ***호(학익동, 종민빌라)
453	72루4433	한*수	2020-03-03	6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동로 ***-* *동 ***호(용현동, 목화빌라)
454	인천30바 1741	김*태	2020-03-0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번길 ** , ***호(송의동, 태양아파트)
455	41두2811	문*균	2020-03-04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 ***호(부평동, 삼성캐슬)
456	인천30바 9311	박*복	2020-03-0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번길 ** ***동 ***호(주안동, 한신희플러스아파트)
457	인천30바 3078	박*인	2020-03-0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 , ***동 ****호(만수동, 향촌휴먼시아*단지아파트)
458	인천30바 9716	신*식	2020-03-0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로 ** ***동 ****호(장수동, 주공아파트)
459	인천30바 1630	최*후	2020-03-0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 , ****호(만수동, 리더스힐)
460	128더668 6	정*희	2020-03-0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 , ****동 ***호(만수동, 주공아파트)
461	30수2166	인*선	2020-03-0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호(주안동)
462	47루6995	강*고	2020-03-04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 ** ***동 ****호(청라동, 청라한라비발디)
463	46부1045	김*관	2020-03-04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 *** , ***동 ****호(청라동, 청라한화꿈에그린)
464	78루7537	문*	2020-03-04	60000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 ***동 ***호(당하동, 영남탑스빌아파트)
465	55거6994	임*훈	2020-03-04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번길 *-* , ***호(선학동, 진성주택)
466	90어8956	이*건	2020-03-0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 , ***동 ***호(관교동, 동부아파트)
467	49마1095	김*미	2020-03-0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번길 ** , ***호(송의동, 태양아파트)
468	66머1592	박*순	2020-03-04	50000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로 ** , ***동 ****호(송현동, 슬빛마을주공아파트)

469	36로8272	최*지	2020-03-0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개서로 **-* , *동 ***호(구월동, 세일빌라)
470	43거3163	김*호	2020-03-04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번길 * , ***호(청학동)
471	386서330 5	박*현	2020-03-0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 , ****동 ****호(구월동, 구월힐스테이트)
472	27도5893	남*현	2020-03-04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남로**번길 ** (십정동)
473	88오5038	이*연	2020-03-04	50000	경기도 시흥시 숫돌재길 **-* (포동)
474	16나9703	변*권	2020-03-04	50000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 , ***동 ***호 (운양동, 전원마을)
475	29다2524	강*호	2020-03-04	50000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번길 ** , *동 ***호(심곡동, 휘미리빌라)
476	26구1011	조*환	2020-03-04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 , ***호(갈산동)
477	43버7042	강*식	2020-03-05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중로**번길 ** , ***호(청천동, 라이프탑스빌)
478	22하1643	윤*직	2020-03-05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로**번길 ** , ***호 (연수동)
479	43더7159	표*희	2020-03-05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번길 **_** , *차동 ***호 (도화동, 대흥빌라)
480	41루1646	주*지	2020-03-05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일로 ** , ****호(도화동, 삼라마이다스)
481	58보0573	김*지	2020-03-05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외전로 ** , ***동 ***호(송의동, 행복캐슬)
482	84소0520	김*래	2020-03-05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번길 ** , ***동 ***호(도화동, 대진성웅산호빌라)
483	인천34도 1264	이*근	2020-03-05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번길 ** , 나동 ***호(간석동, 청실아파트)
484	77부6560	조*호	2020-03-05	60000	인천광역시 동구 새천년로**번길 ** , ***동 ***호(송림동, 동산휴먼시아)
485	20어1462	PI*****	2020-03-05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번길 ** , 대준블루온 ****호(송의동, 대준블루온)
486	58두6066	강*석	2020-03-05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 , ***동 ****호(주안동, 더월드스테이트아파트)
487	66소3430	남*원	2020-03-05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 , ****호(간석동, 리더스아파트)

488	25다1844	기*혁	2020-03-05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곡로**번길 * , ***동 ****호 (서창동, 서해그랑블아파트)
489	29조0864	노*숙	2020-03-05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번길 **, **동 ***호(가좌동, 진주아파트)
490	인천30바 3712	김*산	2020-03-05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번길 ** , ***동 ***호(논현동, 논현휴먼시아 범마을)
491	인천30바 3553	김*호	2020-03-05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 ***동 ***호(간석동, 간석마을풍림아이원아파트)
492	37소0169	박*순	2020-03-05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동 ****호(도화동, 나산아파트)
493	19두6512	강*숙	2020-03-05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동 ****호(도화동, 동아아파트)
494	25오1112	연*옥	2020-03-05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샛골로 *-**, ***호(송의동, 스위트리아)
495	92모1860	조*식	2020-03-05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 ***-* , *층(가정동)
496	16고6229	진*용	2020-03-05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번길 **, ***동 ***호(산곡동, 한신아파트)
497	04부1318	조*읍	2020-03-05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중로 **, ***호(청천동, 영진아파트)
498	38라5238	양*식	2020-03-05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 ***, ***동 ***호(서창동, 임광그대가아파트)
499	06부8951	오*화	2020-03-05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번길 **-**, *층(주안동)
500	인천84바 2081	한*현	2020-03-05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번길 **, ***호(주안동, 힐카운티)
501	03버1225	김*수	2020-03-05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길파로**번길 **, ***호(주안동, 우진빌라)
502	83머1200	조*호	2020-03-06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번길 *(주안동)
503	08누9120	송*식	2020-03-05	50000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번가길 **-*, ***호(송내동)
504	64호9709	이*주	2020-03-05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번길 **-**, ***호 (만수동, 성신빌라)
505	240모140 5	사단***** *****	2020-03-06	5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길 **, *층 제*호(개봉동)
506	66마2205	박*목	2020-03-06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번길 **-* , 나*동 ***호 (가좌동, 대성로얄빌라)

507	70모0565	최*우	2020-03-06	60000	인천광역시 동구 인종로 *** **동 ***호(송현동, 송현아파트)
508	04부1318	조*읍	2020-03-06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중로 **, ***호(청천동, 영진아파트)
509	38머0544	김*오	2020-03-06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 *동 ***호(송도동,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
510	83보4265	윤*현	2020-03-06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번길 ** 나동 ***호(주안동, 영동아파트)
511	22오6856	윤*리	2020-03-06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대평로**번길 **, ***동 ****호(연희동, 우성아파트)
512	15수0590	오*순	2020-03-06	50000	전라북도 익산시 동천로*길 **, *동 ***호(동산동, 한성아파트)
513	64서6424	임*환	2020-03-06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번길 **, ***호(송의동, **리치뷰)
514	67오6050	송*근	2020-03-06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번길 ** , ***동 ****호(당하동, 풍림아이원아파트)
515	68우4143	김*정	2020-03-06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번길 *-**, ***호(관교동)
516	31고3468	김*수	2020-03-06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중로 **, ***호(주안동, 골드팰리스)
517	05어9617	서*수	2020-03-06	500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번길 **-* ***동 ***호(원천동, 주공아파트)
518	57수2086	손*진	2020-03-06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 *동 ****호(간석동, 간석오피앙)
519	14두8377	변*민	2020-03-06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뱀범로***번길 **-*, ***동 ***호(만수동, 한아름맨션)
520	01저2023	김*원	2020-03-06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 ****호 (인현동, 반석행복마을*차)
521	61고6277	김*진	2020-03-06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 ***동 ****호(신현동, 신현*-편한세상-하늘채아파트)
522	57구3935	정*수	2020-03-06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로***번길 ***, ***호(주안동, 행복마을)
523	06도3361	김*희	2020-03-06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중로 ***, *동 ****호(용현동, 유원용현아파트)
524	인천30바 2655	유*호	2020-03-06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번길 ** 가동 ***호(학익동, 삼경아파트)
525	69서6627	김*숙	2020-03-06	50000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번길 **, ***동 ***호(교동, 설악현대아파트)

526	69머3483	이*상	2020-03-06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번길 **, ***동 ****호(송도동, 금호어울림***)
527	53모7426	김*태	2020-03-06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호(송의동, 스카이스테이트)
528	140호142 3	안*숙	2020-03-09	5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 **동 ****호 (중산동,하늘마을*단지
529	33하9021	슈니***** ****	2020-03-09	50000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번길 *, ***호 (삼정동,한진아트빌)
530	16어6313	김*수	2020-03-09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번길 **-* , ***호(만수동, 유명화이트빌)
531	05버7502	이*복	2020-03-09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번길 **-* (주안동)
532	64도9454	김*철	2020-03-09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번길 ** , ***동 ***호 (논현동, 소래휴먼시아)
533	인천30바 1188	최*섭	2020-03-09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숙골로***번길 ** , ***동 ****호(도화동, 도화서희스타힐스)
534	311다401 7	김*진	2020-03-09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 , ***호(주안동, 진도로르빌)
535	인천30바 3329	강*호	2020-03-09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용두산로**번길 **-* , *동 ***호(심곡동, 공인파크빌)
536	50부0112	채*옥	2020-03-09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번길 ** , *동 ***호 (간석동, 한진아파트)
537	인천30바 7299	박*년	2020-03-09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정공원로 ** , ***동 ****호(용현동, 인천 ** ** ****)
538	34서2119	박*란	2020-03-09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 , ***동 ***호(주안동, 인천관교한신휴플러스)
539	33루8515	홍*봉	2020-03-09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안길**번길 * , 제안동 ***호(송의동, 프린스아파트)
540	인천32바 1776	이*제	2020-03-09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 ***호(간석동, 워더스빌)
541	64노0375	김*길	2020-03-09	50000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로 ** , ***동 ***호(송현동, 솔빛마을주공아파트)
542	03보7621	임*자	2020-03-09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번길 ** , ***동 ***호(갈산동, 신한국아파트)
543	인천32라 3466	정*화	2020-03-09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개항로**번길 **-* , ***호(내동, 성신파크뷰아파트)

544	63라2424	조*기	2020-03-09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 ****동 ****호 (동춘동, 송도파크레인 동일하이빌)
545	116하607 4	김*민	2020-03-09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번길 **, ***호 (석남동,아내트아파트)
546	70마4673	배*곤	2020-03-09	6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동 ***호(만수동, 대흥빌라)
547	53루2882	김*숙	2020-03-09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경로*번길 *, 지층 *호 (만수동, 이진다세대주택)
548	48마9605	권*운	2020-03-09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연송로**번길 **-* (도화동)
549	20서5303	손*남	2020-03-09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번길 **, ***호(만수동, 제니스빌 *차)
550	24주2189	김*효	2020-03-09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번길 **-* , 지층 ***호(구월동)
551	17우1891	남*연	2020-03-10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번길 **, ***동 ***호(가정동, 하나아파트)
552	63다4468	김*준	2020-03-10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번길 **, ***호 (구월동, 쓸로타운*차)
553	45더1402	정*훈	2020-03-10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 *동 ***호(도화동, 동원아파트)
554	12다2738	(주***	2020-03-09	50000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 *층(토평동, 정민빌딩)
555	11오7185	박*규	2020-03-09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 ***동 ***호(용현동, 용현*단지, 금호타운)
556	332나699 0	배*임	2020-03-10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번길 *, ***동 ***호(가좌동, 풍림아파트)
557	34마9182	김*수	2020-03-10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번길 **-* , ***호(송의동, 룬성하우젠)
558	49러3716	강*수	2020-03-10	50000	전라북도 정읍시 학산로 **, ***동 ****호 (상동, 우미타운)
559	28어7896	정*범	2020-03-1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동 ****호(구월동, 롯데캐슬골드)
560	55라2365	김*영	2020-03-12	50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원로 **, ***동 ***호 (노형동, 부영아파트)
561	서울36바 1159	심*득	2020-02-1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번길 **, *동 ***호(간석동, 동진아파트)
562	66나5826	이*연	2020-02-21	50000	충청남도 홍성군 청사로 **, ***동 ****호(내포신도시 경남아너스빌)
563	74루1233	곽*기	2020-02-21	60000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내신동*길 **-*

564	33모8734	여*이	2020-02-2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번길 ** (***호 (학익동, 노블레스도시형주택)
565	26무3363	차*환	2020-02-25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번길 * ***동 ***호(간석동, 다정한마을서해아파트)
566	86오6382	윤*봉	2020-02-25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자로*번길 ***- ***호 (장수동, 중앙힐타운*차)
567	30보4710	박*이	2020-02-25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번길 *-** ***호 (경서동, 더클라우드)
568	40마2781	(주*****	2020-03-06	50000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 ***호(혜승빌딩)
569	37고8465	성*영	2020-02-24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 **동 ***호(가정동, 한신그랜드힐빌리지)

○ 공고기간 : 2020. 5. 19. ~ 2020. 6. 1.

○ 문의전화 : 인천광역시청 교통관리과(032-440-8500, Fax 032-440-3929)

2020년 5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273호

도시계획시설(연희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공고

도시계획시설(연희근린공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의거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계양공원사업소(☎ 032-458-7182),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 032-458-7038), 서구청(공원녹지과 ☎ 032-560-4494)에 비치 하였습니다.

2020. 5. 20.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 경)

- 당 초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산127번지 일원
- 변 경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산12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
- 2) 명 칭 : 연희근린공원 4단계 조성사업

3. 면적 및 규모(변 경)

- 당 초 : 366,887.8㎡
- 변 경 : 331,525.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99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3.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외 권리의 명세서 : 붙임(변 경)**7.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09:00~18:00)
- 열람장소 : 계양공원사업소,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 서구청

붙임 : 토지조서 1부

□ 토지조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면적(m ²)	편입면적(m ²)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종류	
1	경서동	124-26	답	64.0	64.0	인천광역시					
2		124-271	답	44.0	44.0	인천광역시					
3	연희동	162-3	답	143.0	143.0	인천광역시					
4		163	답	1,290.0	1,290.0	박○근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	○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 ○	근저당권	
5		163-2	답	111.0	111.0	인천광역시					
6		163-3	답	39.0	39.0	인천광역시					
7		163-7	답	439.0	439.0	박○근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				
8		163-8	답	77.0	77.0	인천광역시					
9		163-9	답	16.0	16.0	인천광역시					
10		163-14	답	30.0	30.0	인천광역시					
11		164	답	1,160.0	1,160.0	이○근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69번길 ○				
12		165-12	전	1,248.0	1,248.0	신○식	서구 심곡동 302 한국아파트 ○	○농업 협동조합	서구 가정동○	지상권 근저당권	
13		165-13	답	1,574.0	1,574.0	인천광역시					
14		165-14	답	2,003.0	2,003.0	인천광역시					
15		165-15	답	1,464.0	1,464.0	인천광역시					
16		165-16	답	3,246.0	3,246.0	이○숙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				
17		165-17	답	1,864.0	1,864.0	인천광역시					
18		165-18	답	2,328.0	2,328.0	인천광역시					
19		165-19	답	2,202.0	2,202.0	인천광역시					
20		165-20	답	2,651.0	2,651.0	인천광역시					
21		165-21	답	2,754.0	2,754.0	인천광역시					
22		165-22	답	1,188.0	1,188.0	인천광역시					
23		165-24	답	2,562.0	2,562.0	인천광역시					
24		165-38	제	2,097.0	9.4	국(국토교통부)					
25		165-39	답	1,633.0	1,633.0	국(기획재정부)					
26		165-40	도	809.0	809.0	국(국토교통부)					
27		165-41	답	390.0	390.0	국(기획재정부)					
28		165-48	답	96.0	91.5	인천광역시					
29		165-49	답	293.0	293.0	인천광역시					
30		165-50	답	528.0	514.4	인천광역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면적(m ²)	편입면적(m ²)	토지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31		165-51	답	844.0	844.0	인천광역시					
32		165-52	답	269.0	269.0	인천광역시					
33		165-59	답	262.0	88.0	인천광역시					
34		165-61	답	990.0	45.8	인천광역시					
35		165-62	도	29.0	29.0	국(국토교통부)					
36	연희동	165-63	도	56.0	56.0	국(국토교통부)					지적분할 면적변경
37		165-66	답	42.0	42.0	인천광역시					
38		165-67	답	194.0	194.0	인천광역시					
39		165-68	답	64.0	64.0	인천광역시					
40		166-2	답	843.0	843.0	인천광역시					
41		166-3	답	2,466.0	2,466.0	인천광역시					
42		166-4	답	790.0	790.0	인천광역시					
43		166-5	답	1,144.0	1,144.0	인천광역시					
44		166-6	답	1,286.0	1,286.0	하○희	742-29 중앙빌라 ○	○농업 협동조합	서구 가정동○	지상권 근저당권	
45		166-7	답	893.0	893.0	인천광역시					
46		166-8	답	235.0	235.0	인천광역시					
47		166-9	답	404.0	404.0	인천광역시					
48		166-17	답	3,936.0	3,936.0	인천광역시					
49		166-18	답	1,706.0	1,706.0	최○숙	삼곡동 ○				
50		166-19	답	565.0	565.0	오○희	석남동 ○				
51	166-20	도	1,428.0	1,428.0	국(국토교통부)						
52	166-21	답	16,812.0	16,812.0	국(기획재정부)						
53	166-22	답	284.0	284.0	국(기획재정부)						
54	166-42	답	843.0	843.0	인천광역시						
55	166-43	답	1,703.0	1,703.0	인천광역시						
56	166-45	답	402.0	56.7	인천광역시						
57	166-55	답	742.0	157.3	인천광역시						
58	166-56	답	87.0	84.0	인천광역시						
59	166-61	답	52.0	52.0	인천광역시						
60	166-62	답	36.0	36.0	인천광역시						
61	166-63	답	228.0	228.0	인천광역시						
62	166-64	답	158.0	158.0	인천광역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면적(m ²)	편입면적(m ²)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종류		
63		166-65	답	14.0	14.0	인천광역시						
64		166-68	답	72.0	72.0	인천광역시						
65		167	답	1,038.0	1,038.0	인천광역시						
66		167-1	답	1,983.0	1,983.0	인천광역시						
67		168	답	872.0	872.0	인천광역시						
68		168-3	답	589.0	589.0	인천광역시						
69		169	답	10.0	10.0	인천광역시						
70		170-3	답	53.0	53.0	인천광역시					필지분할 면적변경	
71		연희동	171-6	답	109.0	84.5	인천광역시					
72			407-1	전	1,127.0	1,127.0	인천광역시					
73	407-2		전	1,084.0	1,084.0	인천광역시						
74	408		전	2,271.0	2,271.0	이○열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					
75	409		답	2,053.0	2,053.0	인천광역시						
76	410		전	741.0	741.0	이○열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	○농업 협동조합	서구 가정동○	지상권 근저당권		
77	411		전	1,531.0	1,531.0	인천광역시						
78	411-1		도	149.0	149.0	인천광역시						
79	411-3		도	10.0	10.0	인천광역시						
80	428-11		답	595.0	595.0	인천광역시						
81	428-83		구	40.0	40.0	인천광역시						
82	428-84		답	3,451.0	3,451.0	인천광역시						
83	428-85		답	255.0	255.0	인천광역시						
84	428-86		답	767.0	767.0	인천광역시						
85	428-87		답	4,476.0	4,476.0	인천광역시						
86	428-151		유	756.0	756.0	국(국토교통부)						
87	428-224		유	23.0	23.0	국(국토교통부)						
88	428-225	유	41.0	41.0	국(국토교통부)							
89	430	답	1,501.0	1,501.0	인천광역시							
90	430-1	전	1,825.0	1,825.0	인천광역시							
91	430-3	답	1,501.0	1,501.0	인천광역시							
92	431	답	1,279.0	1,279.0	인천광역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면적(m ²)	편입면적(m ²)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종류	
93		432	답	1,888.0	1,888.0	인천광역시					
94		432-1	전	1,435.0	1,435.0	인천광역시					
95		432-2	전	1,914.0	1,914.0	인천광역시					
96		432-3	전	3,970.0	3,970.0	인천광역시					
97		432-4	전	380.0	380.0	인천광역시					
98		432-11	답	10,656.0	286.0	인천광역시					
99		432-12	제	732.0	732.0	국(기획재정부)					
100		433	답	724.0	198.0	인천광역시					5단계편입 526.0m ²
101		433-1	답	1,726.0	399.0	인천광역시					5단계편입 1,327.0m ²
102		433-4	답	72.0	61.0	인천광역시					5단계편입 11.0m ²
103		433-5	답	1,917.0	1,512.0	인천광역시					5단계편입 405.0m ²
104		433-6	답	2,235.0	1,534.0	인천광역시					5단계편입 701.0m ²
105		433-7	답	1,974.0	1,974.0	인천광역시					
106		433-8	답	1,177.0	1,177.0	인천광역시					
107		433-10	답	1,204.0	1,204.0	인천광역시					
108		433-16	답	1,088.0	1,088.0	인천광역시					
109		433-17	답	444.0	444.0	인천광역시					
110		433-18	도	20,584.0	502.9	인천광역시					5단계편입 3,032.0m ²
111		433-26	제	521.0	9.8	인천광역시					
112		559-5	도	2,069.0	2,069.0	국(국토교통부)					면적변경
113		산119-5	임	404.0	404.0	인천광역시					
114		산119-7	임	158.0	151.1	인천광역시					
115		산121-1	임	1,604.0	1,604.0	국(산림청)					
116	연희동	산121-3	도	99.0	99.0	국(기획재정부)					
117		산121-4	임	198.0	198.0	국(기획재정부)					
118		산121-7	임	68.0	68.0	국(산림청)					면적변경
119		산122-1	임	2,658.0	2,658.0	인천광역시					
120		산122-3	임	452.0	452.0	인천광역시					
121		산122-4	도	166.0	166.0	인천광역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면적(m ²)	편입면적(m ²)	토지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22		산122-5	임	478.0	478.0	인천광역시					
123		산122-8	임	1,206.0	1,045.7	인천광역시					
124		산122-9	임	126.0	90.2	인천광역시					
125		산122-10	임	8.0	8.0	인천광역시					
126		산122-11	도	29.0	21.9	인천광역시					
127		산123	임	2,975.0	2,975.0	국(기획재정부)					
128		산125-1	임	8,003.0	8,003.0	○정씨	인천 서구 연희동 ○				
129		산125-2	도	307.0	307.0	국(국토교통부)					
130		산125-3	임	23.0	23.0	○정씨	인천 서구 연희동 ○				
131		산126-1	임	28,108.0	28,108.0	국(산림청)					
132		산126-2	도	73.0	0.1	국(기획재정부)					
133		산126-4	도	40.0	40.0	국(기획재정부)					
134		산126-5	임	20.0	20.0	국(기획재정부)					
135		산126-7	임	230.0	230.0	국(산림청)					면적변경
136		산127-4	임	1,241.0	1,241.0	이○주 이○후	부평구 청천동 ○ 부평구 부개동 ○				
137		산127-5	임	5,630.0	5,630.0	인천광역시					
138		산127-16	임	4,462.0	4,462.0	인천광역시					
139		산127-26	임	1,242.0	1,242.0	이○주 이○후	전북 완주군 고산면 신당길 ○ 부평구 부개동 ○	○신용 보증재단	남동구 남동대로○	근저당	
140		산128-5	도	595.0	342.0	인천광역시					
141		산128-6	임	397.0	267.7	인천광역시					
142		산129	임	67,107.0	27,776.1	인천광역시					
143		산138	임	2,063.0	250.0	인천광역시					5단계편입 1,813.0m ²
144	연희동	산138-3	임	368.0	180.4	인천광역시					5단계편입 136.0m ²
145		산139-1	임	20,033.0	4,292.0	인천광역시					5단계편입 15,741.0m ²
146		산140-1	도	694.0	574.0	국(기획재정부)					5단계편입 120.0m ²
147		산140-2	임	1,289.0	359.0	국(산림청)					5단계편입 930.0m ²
148		산141-2	임	595.0	595.0	인천광역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면적(m ²)	편입면적(m ²)	토지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49		산141-5	도	992.0	904.0	인천광역시					5단계편입 88.0m ²
150		산141-6	임	397.0	56.0	인천광역시					5단계편입 341.0m ²
151		산141-7	도	893.0	893.0	인천광역시					
152		산141-8	임	595.0	595.0	인천광역시					
153		산141-9	도	893.0	893.0	인천광역시					
154		산141-10	임	694.0	694.0	인천광역시					
155		산143-1	임	198.0	198.0	인천광역시					
156		산143-3	도	496.0	496.0	인천광역시					
157		산143-4	임	9,140.0	9,140.0	인천광역시					
158		산144-1	임	12,298.0	12,298.0	인천광역시					
159		산145	임	992.0	565.0	인천광역시					5단계편입 427.0m ²
160		산146	임	2,406.0	2,406.0	인천광역시					
161		산146-1	임	432.0	432.0	인천광역시					
162		산146-2	임	534.0	534.0	인천광역시					
163		산147	임	1,908.0	1,908.0	인천광역시					
164		산147-1	임	2,158.0	2,158.0	인천광역시					
165		산148-1	임	49,833.0	23,722.0	국(기획재정부)					
166		산148-3	임	298.0	298.0	국(기획재정부)					
167		산148-9	도	2,876.0	2,535.0	국(국토교통부)					
168		산148-10	임	6,149.0	432.0	인천광역시					
169		산148-13	임	10,306.0	10,306.0	국(기획재정부)					
170		산148-14	임	4,497.0	4,497.0	국(국방부)					
171		산148-15	임	16,760.0	878.0	인천광역시					
172	연희동	산148-16	임	12,583.0	12,583.0	인천광역시					
173		산148-17	임	2,202.0	2,202.0	인천시 서구					
174		산148-18	임	17,065.0	17,065.0	국(국방부)					
175		산148-21	임	1,766.0	1,766.0	인천광역시					
176		산148-22	임	803.0	803.0	국(기획재정부)					
177		산148-23	임	522.0	522.0	국(기획재정부)					
178		산149	임	3,570.0	3,570.0	국(기획재정부)					
179		미지번	-	2.6	2.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279호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 호 (대표자)	등 록 말소일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폐업사유	비고
롯데송도쇼핑타운(주) (김두원)	2020. 5. 19.	인천200003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138번길 11, 101동 314호(송도동, 송도캐슬센트럴파크)	전문인력 부족	

2020년 5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장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59호

「인천광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0.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역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인천광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물류센터의 설치 및 명칭 등(안 제2조)
- 영업일 및 운영시간(안 제3조)
- 운영의 위탁(안 제4조)
- 물류센터의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참조: 소상공인정책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송도동) 미추홀타워 1910호, 전화: 032-440-4227, 팩스: 032-440-8692, 전자우편: hjg554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규정안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붙임 1】

인천광역시예규 제 호

인천광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역 중소유통사업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수행하는 인천광역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류센터의 설치 및 명칭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라 한다)를 건립한다.

1. 상품의 포장·배송·보관 등 공동물류사업
2. 상품의 기획·개발 및 공동구매
3. 상품의 전시
4. 유통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제공
5.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중소유통사업자의 서비스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등

② 물류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인천광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2. 소재지: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24번길 19-29

제3조(영업일 및 운영시간) ① 물류센터의 영업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한다

② 물류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운영주체(제4조에 따라 물류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류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물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단체 또는 법인에게 물류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장관이 고시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계획의 수립·변경 등 보조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사업비의 집행 등 처리에 관한 사항
3. 물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4. 사업비로 구축한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물류센터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2. 운영주체의 책임자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 가. 산·학·연 유통물류산업전문가
 - 나. 중소유통사업자
 - 다. 회계전문가, 변호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라. 그 밖에 유통물류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직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자문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할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자체운영규정) 운영주체는 물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input type="checkbox"/>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7조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은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사항 없음”</p>
특이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사항 없음”</p>

관련법령 발췌사항

□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유통기업자단체"라 한다)가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물류센터(이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라 한다)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품의 보관·배송·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2. 상품의 전시
3. 유통·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제공
4.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의 고도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자단체
2.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해당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의 매출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시설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센터별로 구성·운영하는 "운영위원회"는 사업비 집행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로 해당 지자체의 사업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광역지자체의 사업담당자(해당 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일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또는 팀장), 운영기관 책임자 등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지자체의 장이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계획의 수립·변경 등 보조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사업비의 집행 등 처리에 관한 사항
3. 센터 운영 활성화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4. 사업비로 구축한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금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1.~3. 생략

4. (자체 세부규정 등) 지자체의 장은 이 요령을 준용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